

**통일대비 북한의 범죄양상과 치안대책에 관한 연구**

**통일대비 북한의 범죄양상과 치안대책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연구관 김 윤 영

##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목적과 연구사 검토 .....	1
1. 연구 목적 .....	1
2. 선행연구 검토 .....	3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	7
1. 연구 범위 .....	7
2. 연구 방법 .....	9
제2장 북한의 형사법제상 범죄와 형벌 .....	13
제1절 북한의 형사법제와 범죄 .....	13
1. 북한의 형사법제 .....	13
가. 형사법제의 개관 .....	13
나. 형사법제의 특징 .....	15
2. 북한의 형법상 범죄와 유형 .....	17
가. 범죄의 개념 .....	17
나. 범죄의 유형 .....	18
제2절 북한의 형벌과 형사처리 원칙 .....	29
1. 형벌의 본질과 유형 .....	29
가. 형벌의 본질 .....	29
나. 형벌의 유형 .....	29
2. 형사소송법상 형사처리의 원칙 .....	37
가. 정치범죄 처리 원칙 .....	38
나. 일반범죄 처리 원칙 .....	38
3장 북한의 사법기관과 위법행위 처리 .....	41
제1절 북한의 사법기관과 유사사법 제도 .....	41
1. 북한의 사법기관과 상호관계 .....	41
가. 사법기관 .....	41

나. 사법기관간의 상호관계 .....	61
<b>2. 북한의 유사사법 제도 .....</b>	<b>66</b>
가. 사회안전단속법 .....	67
나. 동지심판회 .....	71
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	72
<b>제2절 북한 수사기관의 범죄자 처리 절차 .....</b>	<b>76</b>
<b>1. 수사 .....</b>	<b>76</b>
가. 수사의 개념 .....	76
나. 수사기관의 권한과 의무 .....	77
다. 수사절차 .....	78
<b>2. 예심 .....</b>	<b>80</b>
가. 예심의 개념 .....	81
나. 예심기관의 권한과 의무 .....	81
다. 예심절차 .....	82
<b>3. 기소 .....</b>	<b>89</b>
<b>4. 재판 .....</b>	<b>90</b>
가. 재판소의 관할대상 .....	90
나. 재판의 구분 .....	91
<b>제4장 북한의 범죄실상과 보안기관(경찰)의 대응책 .....</b>	<b>103</b>
<b>제1절 북한의 범죄 유형 .....</b>	<b>104</b>
<b>1. 국내 범죄 .....</b>	<b>104</b>
가. 정치범죄 .....	104
나. 절도범죄 .....	109
다. 사회범죄 .....	113
라. 권력형 범죄 .....	122
<b>2. 국가 범죄 .....</b>	<b>125</b>
가. 위조지폐 .....	125
나. 가짜담배 .....	128
다. 마약범죄 .....	129
라. 테러범죄 .....	132

제2절 보안기관의 범죄대책과 주민통제 .....	136
1. 보안기관의 범죄대책 .....	136
가. 포고령 선포와 지시 .....	136
나. 범죄통제 제도 .....	148
2. 보안기관의 범죄자 수용시설과 주민통제 .....	157
가. 범죄자의 수용시설 .....	157
나. 주민통제 사업 .....	167
제5장 남북한 통일대비 범죄전망과 치안대책 .....	175
제1절 독일통일의 범죄양상과 치안대책 .....	175
1. 독일통일 후의 범죄 실태와 유형 .....	175
가. 독일통일의 치안환경 변화 .....	175
나. 통일 후의 범죄 실태 .....	176
다. 범죄발생 요인과 특징 .....	178
2. 독일경찰의 임무와 범죄예방 정책 .....	181
가. 경찰기관의 주요 임무 .....	181
나. 경찰기관의 범죄예방책 .....	184
제2절 남북한 통일 전후 범죄 전망과 대책 .....	186
1. 남북한 치안환경의 변화와 범죄전망 .....	187
가. 남북한 치안환경의 변화 .....	187
나. 통일 후 남북한 범죄전망 .....	193
2. 통일대비 경찰통합과 치안대책 .....	195
가. 통일대비 남북한 경찰통합 방안 .....	195
나. 통일대비 경찰의 치안대책 .....	195
제6장 결론 .....	220
제1절 요약 .....	220
제2절 정책적 제언 .....	223
<참고문헌> .....	227

## 〈표 목차〉

<표 2-1> 반국가범죄 .....	20
<표 2-2> 반민족범죄 .....	21
<표 2-3>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 불신고죄, 방임죄 .....	22
<표 2-4> 북한 형벌의 변화 .....	30
<표 2-5> 구금시설에 수용하는 범죄 .....	33
<표 2-6> 형사소송법상 사회적 교양처분 .....	36
<표 3-1> 인민보안성 형사처리 관련부서의 업무와 편제 .....	42
<표 3-2> 북한의 검찰소와 재판소 .....	56
<표 3-3> 형사처리 관할기관 .....	61
<표 3-4> 형사소송법상 범죄사건 담당 관할기관 .....	63
<표 3-5> 형사사건 제기결정서 예문 .....	80
<표 3-6> 형사책임추궁결정서 예문 .....	84
<표 3-7> 형사처리 중 구류 기간 .....	86
<표 3-8> 구류의 보전처분 결정서 예문 .....	87
<표 3-9> 북한의 공개재판 판결문 .....	97
<표 4-1> 북한의 전국 주요도시 물가 동향(2006년 10월 초순) .....	111
<표 4-2> 북한의 위조지폐 주요 적발사례 .....	127
<표 4-3> 북한의 국제마약거래 주요 적발사례 .....	132
<표 4-4> 북한의 주요 테러 및 국지도발 횡수 및 피해 .....	134
<표 4-5> 북한의 주요 대남테러 및 도발사례 .....	135
<표 4-6> 사회안전부(현 인민보안성) 포고령 .....	137
<표 4-7> 인민보안성 포고문 .....	139
<표 4-8> 밀수단속 지시 문건 .....	143
<표 4-9> 정치범수용소 관리현황 .....	161
<표 4-10> 정치범수용소 현황 .....	162
<표 4-11> 주민성분 조사사업 .....	171
<표 4-12> 3계층 51개 부류 분류표 .....	172
<표 4-13> 북한의 신주민 성분분류 .....	173
<표 5-1> 독일경찰의 일반현황과 범죄발생 건수 .....	177
<표 5-2> 동서독과 남북한 비교 .....	189
<표 5-3> 랜드 연구소의 통일비용 산출방식 .....	190
<표 5-4> 특별전담팀의 분야별 업무 .....	205
<표 5-5> 인민보안성 조정 방안 .....	206
<표 5-6> 통일한국의 인구추계와 경찰인력 소요 예상(2010-2015) .....	207
<표 5-7> 실무대책반 임무 .....	212
<표 5-8> 북한이탈주민 국내입국 현황 .....	213

## 통일대비 북한의 범죄양상과 치안대책에 관한 연구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연구사 검토

##### 1. 연구의 목적

북한은 정권 수립 이후 유일체제의 안정을 위해 ‘수령에 대한 충실성’, ‘전체를 위한 희생’, ‘끝없는 혁명적 투쟁심’을 공산주의의 최고 ‘덕목’으로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집단주의 조직생활과 체계적인 정치·사상적 교화를 강화하여 외형상 아무런 모순이 없는 사회모습을 부각시켜 왔다.<sup>1)</sup>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인차원에서 당(黨)이 요구하는 공식적인 가치덕목으로부터 현저히 이탈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80년 중반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 1990년대 김일성사망(1994)과 최악의 경제(식량)난 등의 내외부적인 요인들은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크게 변화시키면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개인주의나 이기주의 등의 사적신호가<sup>2)</sup> 확산내지 일반화되어 각종 사회적 부조리를 비롯한 범죄사건이 급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sup>3)</sup>

\* 김윤영: 안보대책연구실 연구관(문학박사: 북한문학전공)

1) 북한의 종래 주장에 따르면 사회일탈행위는 소수의 반동계급이 인민대중을 착취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나 존재하는 것이며, ‘공산주의 미풍’이 꽃피어 나고 ‘혁명적 의리’로 일심단결된 ‘사회주의 대가정’인 북한에서는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권영경 외, 『북한이해 2000』,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00, 361-362면)

2) 개인이 정치적 불만이 있을 때는 정부를 비판하며 저항운동에 참여하느냐 또는 비판을 하지 않으면서 운동에 참여하지 않느냐의 갈림길에 있다. 즉, 개인의 선택은 사적선호(private preference)와 공적선호(public preference)로 나누어진다. 두 개의 선호에 차이가 있는 한 개인은 선호위장(preference falsification)을 한다. 공적선호는 혁명에 참여하면서 입게 될 외적 박해와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느끼게 될 양심의 손상 사이의 균형에 의해서 결정된다. 사적선호는 고정되어 있지만 공적선호는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이 혁명에 참여하느냐에 따라 변하게 된다.(Timur Kuran, Now Out of Never : The Element of Surprise in the East European Revolution of 1989, World Politics, 44(1) 참조)

북한이탈주민과<sup>4)</sup> 방북자들의 증언, 당·정간부의 ‘사업작풍’ 비판 등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북한이 범죄가 없는 사회주의사회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자본주의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병리현상 즉, 절도, 폭력, 성범죄, 부정부패 등의 사건이 사회전반에 확산되어 범죄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탄광이나 건설, 농업 등 힘든 일을 회피하고, 부수입이 많은 상점직원, 운전사, 식당종업 등 서비스업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범죄학자들은 범죄발생 원인을 부르주아 의식의 잔재와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오는 물질주의와 상업주의 같은 나쁜 영향력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체제 외적인 요인으로 돌리고 있다.<sup>5)</sup> 왜냐하면 ‘계급으로부터 해방된 사회주의 사회’에서 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은 범죄 없는 지상낙원으로 선전하여 왔던 사회주의 체제를 그들 스스로 부정하기 때문이다.<sup>6)</sup>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양상과 범죄대책을 규명하고, 통일 과도기와 통일 후 남북한 지역에 예상되는 치안환경의 변화와 범죄전망을 통해 치안대책을 제언하는데 있다.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급변사태나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통합체제의 치안확보는 1차적으로 국가경찰이 담당해야 한다.

- 3) 북한체제는 개인주의를 금지하기 때문에 인간의 보편적 속성인 개인주의는 감추어져 있고 정치적으로 허용된 행위와 태도인 공적선호(public preference)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억압이 약화되면 언제든지 사적선호(private preference)가 현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한다.(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서울: 나남, 1995, 222면)
- 4) 탈북자들의 국내입국은 2007년 2월 현재 1만명이 넘어서고 있다.
- 5) 체제외적 요인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서구와 접촉을 할 수 있었던 동구 유럽이나 소비에트 러시아 같은 사회에서 가능한 설명이지만, 과거 주민들을 철저히 외부와 차단시켜 왔던 북한과 같은 사회에서는 그 설득력이 약하다. 북한의 공식적인 매체들은 범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북한 정권은 이것을 자랑스럽게 발표한다. 그들의 자랑은 공산주의 낙원에 대한 자랑이요, 한편으로는 김일성의 은혜로운 통치에 대한 선전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 급증한 탈북자들의 증언과 위성사진 등에 의하면 북한은 적어도 몇십만명의 범죄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감옥시설들이 편재해 있다고 추정된다.(김문조, 『북한 사회론』, 서울: 나남, 1994, 216면)
- 6) 공산주의 사회의 이론적 출발점은 범죄 없는 사회이다. 그것의 사회경제적 토대는 바로 계급 없는 사회다. 사회적 모순의 원천인 계급현상으로부터 해방된 사회에서 범죄의 존재 그 자체는 공산주의 사회의 규범성에 대한 강한 이론적, 경험적 부정이다. 범죄의 집단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들은 계급 없는 사회자체로부터 소외된 사람이다. 그러나 그들의 소외를 설명할 아무런 이론이 공산주의에는 없다. 따라서 범죄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공산주의 범죄학자들은 공산주의 체제외적인 요인 탓으로 돌리고 있다.(박원홍, “북한주민의 이탈현상과 부조리 실태 연구”, 명지대 석사학위논문, 4면)

국가경찰이 남북한 관계의 정치적 환경변화에 대비한 치안환경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전략을 모색해야하는 작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찰은 사회 내 어느 집단보다도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을 추구하는데 가장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급변사태나 남북한 통일 전후 북한지역의 치안확보를 위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는 선행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2. 선행연구 검토

남북통일에 대비한 북한의 범죄 실태와 대책 연구에 앞서 선행되어야할 것이 기존 연구를 검토하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삼을 수 있음은 물론, 그 한계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미진한 부분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보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북한연구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 함께 분단국가들의 통일, 남북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통일에 대비한 북한의 범죄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는 자료수집의 한계와 전문가들의 관심부족으로 미미한 수준에 있으며, 이러한 연구조차도 형사법상의 범죄와 처벌을 분석하거나, 북한이탈주민들의 체험담을 정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북한 형법상 범죄와 형벌절차, 범죄자의 처벌담당기관과 수용시설, 사법제도의 운용 등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이다. 예를 들어 김수암의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sup>7)</sup> 북한의 범죄관, 위법행위처리 절차와 형사적용 실태 중심의 연구서이다. 그리고 북한 형법상의 범죄와 형벌 중심의 연구는 정찬성의 “북한형법에 관한 연구”(한양대 석사논문, 1999), 박세진의 “북한형법에 관한 연구”(연세대 석사논문, 2004) 등이 있다. 장명봉의 “북한

7) 김수암,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05.

의 최근 법제동향과 전망”은<sup>8)</sup> 김정일 체제하의 북한법제의 평가와 전망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외에도 김재운의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형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sup>9)</sup> 한인섭의 “북한의 형법, 변화하고 있는가?”,<sup>10)</sup> 윤익수의 “북한 형법의 반혁명적 범죄와 남한의 국가 보안법상의 규정과의 비교고찰”,<sup>11)</sup> 이덕구의 “북한형법상의 범죄의 성립요건”,<sup>12)</sup> 북한법연구회의 『북한법연구』<sup>13)</sup> 등이 있다. 이러한 연구는 법제처를 비롯한 유관연구기관이나, 학술지, 학위논문 등을 통해 비교적 다양한 성과물로 출간되고 있으나, 범죄 실태를 직접 다루고 있기 보다는 형법상 규정된 범죄의 종류를 분류하거나 분석하는 수준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체험담을 통해 사회일탈행위를 다루고 있다. 서동익의 『인민이 사는 모습』(1995)은 북한 주민이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일탈행동을 부분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분석이라기보다는 기술적(descriptive)인 수준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1990년대 초반의 범죄와 사회일탈을 비교적 체계적으로 다룬 연구도 있다. 서재진의 『또하나의 북한사회』(1995)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1990년대 초반의 북한의 범죄와 주민일탈 현상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범죄와 일탈행위 그 자체가 연구목적이라기 보다는, 1990년대 북한사회의 변동 특히 집단주의 원칙의 약화와 개인적·물질적 가치관의 증대를 논하면서 뇌물과 절도, 남한문화의 수용 등 사회일탈행위를 그 근거로 제기하고 있다. 고성호는 “북한의 사회구조”(1999)에서 생계형범죄, 권

- 
- 8) 장명봉, “북한의 최근 법제동향과 전망”, 『2005년도 남북법제개선 연구보고서』, 서울: 법제처, 2005.
- 9) 김재운,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형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제4회 한·중 형법 국제 학술심포지움) - 러시아, 중국, 북한의 경제형법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서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6.
- 10) 韓寅燮, “북한의 형법, 변화하고 있는가?”, 『북한법연구』, 서울: 북한법연구회, 2003.
- 11) 尹益洙, “北韓刑法의 反革命的 犯罪와 南韓의 國家 保安法상의 規定과의 比較考察”, 『東北亞研究論叢』, 강릉: 關東大學校 東北亞平和研究所, 1995.
- 12) 이덕구, “북한형법상의 범죄의 성립요건”, 『統一問題와 國際關係』, 인천: 仁川大學校 平和統一研究所, 2001.
- 13) 북한법연구회, 『북한법연구』, 서울: 북한법연구회, 2003.

력형범죄, 청소년이탈을 구분하여 다루고 있다. 이 연구는 북한사회의 이해라는 종합적인 차원의 일부로서 범죄와 이탈행동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심층적인 연구라고 할 수 없다. 특히 내외통신사에서 출판한 『북한실상 종합자료집』 제3편에서는<sup>14)</sup>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범죄양상과 폭력조직, 범죄자의 수용실태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 자료로서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김종일의 “범죄의 늪에 빠진 북한정권”<sup>15)</sup>에서는 북한의 위조지폐 등 국가범죄를 다루면서 나름의 대응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진술 내용을 엮은 자료들도 있는데, 남한의 전문가가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엮은 책과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출판한 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남북문제연구소가 출판한 『평양은 거대한 세트장』(1997), (사)좋은 벗들이 펴낸 『사람답게 살고싶소』(1999)와 『북한주민들이 말하는 북한이야기』(2000)는 주민들이 1990년 경제위기로 사회주의적 규범을 어기고 범죄와 이탈행위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사회통제가 느슨해졌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데이빗 호크의 『감춰진 수용소』<sup>16)</sup>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하여 정치범 수용소 실태를 다루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출간한 것으로는 권혁의 『고난의 강행군』(1999), 김승철의 『북한동포들의 생활문화양식과 마지막 희망』(2000), 강철환의 『수용소의 노래』, 황만유의 『반역자의 땅』, 김옥애의 시집 『죽사발 소동』(2004) 등이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겪은 다양한 경험담과 함께 범죄와 사회이탈행위를 소개하는 수기도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문헌은 범죄행위를 다루고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으나, 분석적 연구라기보다는 개인적 경험담을 중심으로 기술한 것이다.

셋째, 북한의 범죄 실태에 대한 연구이다. 최인섭의 “북한의 일반범죄에 관한

14) 내외통신사, 『북한실상 종합자료집』, 서울: 내외통신사, 1996.

15) 김종일, “범죄의 늪에 빠진 북한정권: 북한정권은 범죄행위 중단으로 국제적인 오명을 씻어야 한다”(『북한』 2006년 3월호, 서울: 북한연구소, 2006), 84-92면.

16) 데이빗 호크/ 이재광 역, 『감춰진 수용소』, 서울: 시대정신, 2003.

예비적 고찰”은<sup>17)</sup>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을 통해 북한사회의 일반범죄의 발생 실태를 탐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범죄를 고찰하고 있는 초기연구로서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박원홍의 “북한이주민의 이탈현상과 부조리 실태 연구”는<sup>18)</sup> 언론보도와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 내용 등을 토대로 당·정 관료, 군부, 주민, 노동현장, 청소년,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정부패와 범죄 등 다양한 사회 일탈을 다루고 있다는데 그 의의를 부여할 수 있으나, 심층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기존자료들을 재정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고성호의 “북한주민의 범죄와 일탈”은<sup>19)</sup> 주민들의 범죄와 일탈행동의 동기와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전현준의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은<sup>20)</sup> 북한경찰(인민보안성)의 기능을 중심으로 다루면서, 주민들의 사회일탈현상을 부분적으로 다루었다. 정원경의 “북한은 국제범죄 종합 백화점”은 북한의 마약, 위조달러, 가짜담배 제조와 유통에 대한 2006년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와<sup>21)</sup>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북한실무팀장의 리포트 등 최근 자료들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sup>22)</sup> 이외에도 각종 언론매체나<sup>23)</sup> 인터넷<sup>24)</sup> 등을 통해 북한의 국가범죄 실태를 소개하고 있다.<sup>25)</sup>

남북한 통일 이후 북한의 범죄발생 전망에 대한 연구서도 있다. 기광도의 『체제통합에 따른 사회변화와 범죄양상』은<sup>26)</sup> 독일통일 후의 사회변화와 범죄

17) 최인섭, “북한의 일반범죄에 관한 예비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9』,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1992.

18) 박원홍, “북한이주민의 이탈현상과 부조리 실태 연구”, 2002.

19) 고성호, “북한주민의 범죄와 이탈”(정영철 외,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변화』, 서울: 한국방송공사, 2005.12), 99-161면.

20)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서울: 통일연구원, 2003.

21) 미국 국무부, 『2005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The 2005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 INCSR), 2005.3.4; 미국 국무부, 『2006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The 2006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 INCSR), 2006.3.1

22) 정원경, “북한은 국제범죄 종합 백화점”(『주간동아』 546호, 서울: 동아일보사, 2006.8.1), 18-20면.

23) 『세계일보』, 2005년 12월 24일; *The Times*, October 11, 2006년 10월 11일; 국가정보원, <http://www.nis.go.kr>(2006.10.15); 『연합뉴스』, 2007년 3월 15일.

24) <데일리 NK>(http://www.dailynk.com);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http://www.goodfriends.or.kr); <http://www.koreascope.org> 등.

25) 위의 글, 18-20면.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통일 후 북한의 사회변화와 범죄전망을 고찰하고 있다. 강승수의 “통일후 북한지역의 범죄와 사회전망”은<sup>27)</sup> 독일통일 후의 사회변화 범죄양상을 중심으로 북한의 범죄전망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나, 북한의 범죄 실태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기 보다는 개괄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연구는 남북한 통일 후 예상되는 북한지역의 범죄발생 전망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는 초기연구라는 성과도 있으나, 북한의 범죄전망에 대한 치안대비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북한의 범죄양상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과 각종 언론매체의 보도 자료를 정리하여 분석한 성과와 더불어 통일 후 북한지역의 범죄발생과 치안대비책을 모색하는데 있어 새로운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자료수집의 한계성이라는 이유로 초기 연구자의 자료를 재인용하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경험담에 의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연구 대상에 대한 범위나 성과들 역시 서로 중첩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연구목적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북한의 범죄 실태와 북한경찰의 치안대책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통일 전후(前後) 남북한 범죄발생전망과 치안대책을 제언하여 선행연구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 당위성을 시사 받을 수 있다.

##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 1. 연구 범위

6·15남북공동선 이후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되었다고는 하나, 북한연구를 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봉착하는 문제가 자료수집의 한계성에 있다.

26) 기광도, 『체제통합에 따른 사회변화와 범죄양상』,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27) 김승수, “통일후 북한지역의 범죄와 사회전망”, 『청람 17호』, 용인: 경찰대학, 2001.

북한의 범죄양상과 치안대책에 관한 연구의 한계성 역시 북한당국의 공식적인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데 있다. 연구자가 북한지역에 들어가서 보고 들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혹 현지에 간다고 하더라도 북한 당국의 경직된 통제 하에서 연구자가 원하는 자료에 접근하기란 불가능하다.<sup>28)</sup> 이러한 자료 확보의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의 범죄연구는 지속되어야 한다.

지난 날 북한사회의 범죄 실상은 단편적인 첩보나 정보에 근거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 탈북자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의 증언에 의해 범죄 실상이 하나하나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1990년대의 경제난 등 사회 변혁기를 거치면서 새로운 범죄가 발생하거나 빈도가 급증한 범죄였다.<sup>29)</sup>

북한정권의 수립과 함께 주민들의 사회일탈 등 범죄행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왔다는 점에서, 북한정권 수립이후 현재까지의 광범위한 기간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극단적인 폐쇄성으로 인하여 범죄 실태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운 1990년대 이전의 시기의 범죄 실상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199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시공간(時空間)을 대상으로 북한의 형사법제와 범죄, 사법기관, 형벌, 위법행위 처리, 북한의 범죄실태와 경찰기관의 대책, 통일전후 범죄전망과 대책 등을 분석할 것이다. 특히 북한에서 발생하는 국내범죄를 정치범죄, 절도범죄, 사회범죄, 권력형범죄로, 국가범죄를 위조지폐, 가짜담배, 마약범죄, 테러범죄 등의 유형으로 각각 분류하여 북한의 범죄 실태를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남북한 통일을 대비한 시기까지 논하고자 한다.

28) 류길재, “김일성·김정일 문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북한연구방법론』,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3), 46-47면.

29) 북한의 범죄는 체제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을 때는 미미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 2. 연구 방법

북한은 정권수립 후 프롤레타리아트독재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반체제적 요소를 적발하여 제거하는 등 주민들을 김일성과 김정일 유일체제로 동원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때문에 북한의 범죄 실상을 객관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보편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북한체제의 변화와 발전 속에서 형성되고 표출된 특수성에 대한 역사적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북한의 범죄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 접근방법(historical approach)을<sup>30)</sup> 활용하고자 한다. 현존하는 북한사회의 모든 것이 역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역사를 떠나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북한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어 왔는지 등에 대한 해답 역시 북한의 역사 속에서 찾아야만 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sup>31)</sup>

그리고 북한에서 발생하는 범죄 실체를 규명하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자원이 문헌이라는 점에서 문헌연구(文獻研究)<sup>32)</sup>에 주목하고자 한다. 북한의 범죄 실태를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한 문헌 중심의 분석이 필요하다. 북한은 자유로운 접근이 극도로 제한된 폐쇄적인 사회일 뿐만 아니라 외부의 연구자들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문헌을 통해 접근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2004년 개정형법은 정치범죄(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 일반범죄(경제범죄, 문화범죄, 행정질서범죄, 공동생활침해범죄, 생명·재산범죄)로 대별하여 범

30) 역사적 접근방법이란 특정한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관련사건·기관·제도·정책 등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파악·설명하는 접근 방법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연구의 대상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역사적 접근방법을 통한 연구는 일종의 사례연구라 할 수 있다 (<http://terms.naver.com/item.php?dclid=8&docid=41>, 2006년 4월 19일 검색).

31) 심지연, “북한연구에 대한 역사적 접근”(『북한연구방법론』, 도서출판 한울, 2003), 239-240면 참조

32) 역사적 시간적 조건의 틀 속에서 북한을 연구하기 위한 역사적 연구방법(historical method)은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발전론적 접근법과 이데올로기를 중시한 문헌접근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한상완, 『학술정보 교류 방안: 북한의 학술정보 유통현황 및 교류방안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1.9.25, 4면).

죄자 처벌절차나 형사소송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북한당국이 북한사회 내에 다양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북한범죄 실상을 직간접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sup>33)</sup>

그리고 최근 급증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통해서 북한사회의 범죄 실상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북한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북한이탈주민들과의 면접을 통해 범죄 실태의 단초를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sup>34)</sup> 과거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들의 회소성으로 인해 그들 자신의 정보가치를 높이고자 북한사회 전반을 대변할 수 있다는 식의 주관적이거나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어 정보의 한계성이 내포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이후 탈북자들이 급증하고, 그들에 대한 접근 통로나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었다. 이들에 대한 연구도 다양화되어 연구성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편에 있다. 현실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 중에서 치안을 담당했던 인민보안성(경찰)의 출신자들과 면담을 통해 조사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 그들의 진술과정을 통해 획득한 선행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자료접근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 논문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북한에서 발행한 공식적인 문헌과 함께 각계각층의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일부, 정보기관,<sup>35)</sup> 통일연구원,<sup>36)</sup> 대한변호사협회,<sup>37)</sup> 외국문헌<sup>38)</sup> 등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영역에서 축적된 연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활용할 것이다. 그

33)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대중용)』, 평양: 법률출판사, 2004.8.25 참조.

34) 북한사회의 폐쇄성으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 역시 그들의 거주지나 직업 등과 관련된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의식구조와 가치관 등을 획득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접근방법과 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35) 정보기관에서는 인민보안성 전직요원 탈북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자료가 있다.

36)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된 연구서이다.

37)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2006년 9월 『북한인권백서』를 출판한 바 있다. 이 책자의 집필진들은 북한인권 실태를 탈북자의 면접과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획득하고 있다.

38) 이재광이 번역한 데이빗 호크의 『감춰어진 수용소』는 필자가 탈북자들의 면접조사 등을 기초로 집필한 책자이다.

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사회의 범죄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를 보강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는 작업은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는다.

이 본 논문의 각 장에 대한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사 검토, 연구범위와 방법 등을 밝히고, 제2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북한의 형사법제와 형법상 범죄의 개념과 유형(정치범죄와 일반범죄)을 살펴 본 후, 북한 형벌의 본질과 유형, 형사소송법상 형사처리의 원칙 등을 분석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사법기관인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 검찰소, 재판소, 변호사 제도와 유사사법제도인 사회안전단속법, 동지심판회, 사회주의범무생활지도위원회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 북한 수사기관의 범죄자 처리철자인 수사, 예심, 기소, 재판 등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2·3장에서는 주로 역사적 접근과 함께 문헌적 접근 방법을 혼용할 것이다.

제4장에서는 북한의 정치범죄, 사회범죄, 권력형범죄 등 국내범죄와 위조지폐 및 가짜담배 제조와 유통, 마약범죄, 대량살상무기, 테러범죄 등 국가범죄 유형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후, 북한의 보안기관(경찰)의 범죄대책과 범죄자 수용시설 그리고 주민통제사업에 대하여 고찰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면접조사 내용에 대한 선행연구 자료들과 북한의 각종자료 등 문헌적 접근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제3·4장에서 분석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통일전후 남북한의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전망과 그에 따른 치안대책을 논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독일 통일 후의 범죄양상과 치안대책을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통일 전후 예상되는 남북한 치안환경의 변화와 범죄전망을 제언하고, 통일대비 경찰의 치안대책을 모색할 것이다. 특히 통일대비 경찰의 치안대책에서는 향후 남북한 경찰통합방안과 치안대책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이는 북한정권이 위기관리 실패로 급변사태가 발생하거나, 남북한이 상호 신뢰구축과 긴장완화를 통하여 평화적 합의에 의한 남한 주도의 국가통합을 논하게 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전자의 경

우는 북한지역의 치안을 주도적으로 사전에 대처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치안을 확보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는데 있고, 후자 경우는 남북한 경찰 통합 과정에서 그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여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제6장 결론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요약 평가하고,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경찰의 해결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 제2장 북한의 형사법제상 범죄와 형벌

### 제1절 북한의 형사법제와 범죄

#### 1. 북한의 형사법제

##### 가. 북한 형사법제의 개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1950년 3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5차 회의에서 총 2편 23장 301개 조문으로 제정하여 동년 4월 1일 시행한 이후, 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32호로 개정(제9장 제303조)하여 시행되고 있다.<sup>39)</sup>

북한은 형법을 “조선에 세워진 노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며 혁명위업의 실현을 반대하는 반혁명범죄자들을 진압하고 사회주의 제도의 공고한 발전에 지장을 주는 일반범죄자들을 제재할 목적으로 국가가 제정한 범죄 및 형벌을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sup>40)</sup>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4년 전면 개정된 형법은 사회주의 형사법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반국가범죄·군사범죄·사회주의문화제도에 관한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죄형법정주의 도입과 구성요건의 구체화, 노동단련형의 도입, 사법기관의 불법행위 처벌강화, 단순월경자의 처벌완화 등을 통한 인권보장적 측면과 시장경제질서를 전제로 한 새로운 경제범죄 관련조항을 다수 신설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치범죄는 과거의 ‘반혁명분자’, ‘불건전한 사상을 가진 자’, ‘적대분

39) 북한의 형법은 1974년 12월 19일 제1차 개정(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을 한데 이어서, 1987년 2월 5일 제2차 개정(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호), 1995년 3월 15일 제3차 개정(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4호), 1999년 8월 11일 제4차 개정(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53호), 2004년 4월 29일 5차 개정(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32호)을 하였다. 이후 2005년 4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84로 형법 제242조가 수정보충 되었다. 즉, “특히 대량의 피물을 주었거나 받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가 보충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대중용) 증보판』, 법률출판사, 2006.3, 458면.

40) 김근식, 『형법학 (1)』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86); 법무부, 『북한법연구(VII)』-신형법-법무자료 제128집(서울: 법무부, 1990), 44면 재인용.

자' 등 '반국가범죄'의 모호한 표현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로 수정하여 구체화하였다. 북한이 반국가범죄를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로 규정하여 중요시한 것은 북한이 형법을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예리한 무기'라고 하여 형법의 노동계급적 본질을 강조한데 따른 것이다.<sup>41)</sup>

북한의 형법학자들에 따르면 법의 계급적 본질은 그 법이 어떤 계급의 의사, 정치를 표현하며 옹호하는가에 따라 규정되는데,<sup>42)</sup> 형법은 그들의 수령과 지도자가 영도하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노동계급의 정치, 전체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정치를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회주의 형법이라고 한다.<sup>43)</sup> 다시 말해 북한 형사법제도는 사회주의체제를 나라의 안과 밖의 모든 반혁명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모든 주민들을 계급투쟁과 주체사상을 맹종하는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범위 내에서만 그 존재 의의를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보장, 실체적 진실의 발견, 적법절차의 원리를 기본이념으로 하는 남한의 형사법제도와는 그 본질과 기능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북한 형법은 죄형법정주의의 미비, 형사재판의 목적달성을 위한 노동당의 지도, 인민대중의 재판절차 참여, 현지공개재판, 증거능력의 제한 철폐 등을 기본적 내용으로 하며, 수사기관, 예심기관, 검찰소, 재판소는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상호 보충적으로 작용하는 기능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sup>44)</sup>

결국 북한의 형사정책은 마르크스 범죄학이론을 기반으로 한 구소련의 형사정책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의한 사회주의 국가의 완성이

41) 북한 형법 제2조(범죄자의 처리원칙)는 “국가는 범죄자의 처리에서 노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42) 북한에서 법이란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국가관리의 수단이고, 혁명에서 싸워 얻은 전취물을 지키기 위한 무기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형사법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적극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북한에서 최고의 규범력을 가진 주체사상과 김일성·김정일 교시,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조선노동당의 혁명노선과 결정들이 헌법과 형사법을 포함한 모든 법률의 상위규범으로 기능하고 있다.

43) 법무부, 『북한형법의실상(VII) -신형법-』, 46면.

44) 법무부, 『개정 북한형사법제 해설』(서울: 법무부, 2005), 1면.

라는 목표를 위해 과도기적인 범죄현상 즉, 노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와 법질서를 침해하는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sup>45)</sup>

#### 나. 형사법제의 특징<sup>46)</sup>

북한에서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와 노동당 정책은 최고 법규성을 가진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하 사회주의헌법)을 정점으로 법률체계가 형성되어 있으나,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 노동당 강령과 규약은 모든 법률의 상위규범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형사법의 법규범성은 태생적인 한계를 가진다.

첫째, 북한의 형사법은 프롤레타리아계급의 권리와 이익,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의 가치와 질서를 모든 침해로부터 보호하는 보호적 성격과 범죄인들뿐만 아니라, 인민들에 대하여 사회주의 법질서와 가치를 지키고 존중하도록 교육하는 사회적 교육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북한의 형법은 인권보장제도가 미비하다. 북한의 2004년 개정 형법은 법률로 규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묻고 유추해석의 허용원칙 조항을 삭제하였으나, 여전히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규정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형법은 사회주의 형법의 사명과 본질에 따라 계급노선과 균중노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범죄 수사단계에서 피심자·피소자의 구인·구금·구류·압수·수색 등 강제처분을 할 경우 판사의 영장 없이 검사의 승인만으로 충분하다. 즉, 법관에 의한 영장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과학적·객관적 증거재판주의를

45) 백원기, “북한 형사법체제에 관한 연구”(『북한·통일 연구논문집(V)』, 서울: 통일원, 1991), 437면.

46) 법무부, 『개정 북한형사법제 해설』, 4-7면 참조.

채택하고, 강압적 수사에 의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며 자백에 대하여 보강 증거를 요구하는 등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보석·구속적부심제도의 미채택과 전문법칙 배제 등 적정절차 원칙의 미비하다. 그리고 재판소는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만 강제처분을 채택·존속·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만 인정되는 등 근본적으로 인권보장의 한계성이 존재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형사범죄에 대해 비법률가들이 광범위하게 재판 참여하고 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근로인민 중에서 인민참심원을 선출하여 재판에 관여토록 하고, 재판소 판사를 선거에 의하여 선출함으로써 주체사상과 당성에 충실한 근로자이면 누구나 판사나 인민참심원이 되어 직접 재판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재판단계에서 정치사업의 일환으로 현지료해(了解), 현장검증 등 현지재판을 통하여 인민대중을 소송활동에 적극 참여시키고, 사건의 심리절차에도 노동자, 농민대표를 직접 참여시켜 군중재판을 운영하기도 한다.

넷째, 상급 재판소의 변태적 운영으로 인민의 상소권 박탈과 정치사업의 편리성을 제공한다. 북한의 재판제도는 1심 관할에 대한 뚜렷한 관할분배의 기준이 없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급재판소인 중앙재판소와 도(직할시) 재판소가 제1심 사건에 대한 포괄적인 관할권을 가진다. 즉, 상급재판소는 하급재판소에 계속 중인 사건을 상급재판소로 이송하거나 동급의 다른 재판소로 이송토록 요구할 수 있어 인민의 상소권을 무제한으로 박탈하고 정치사업의 편리를 위하여 관할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부여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의 소송절차는 민사와 형사절차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 북한의 형사소송절차에서 손해보상청구를 병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한편, 손해보상청구가 기각당한 경우에는 동일사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동일사건에 대해 형사사건에서 손해보상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사건의 확정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그 사실이 유무죄에 관한 것이 아닌 한 형사사건의 재판소를 기속하도록 하여 사실인정에 대하여 확정력을 부여하고 있다.

검사는 국가·사회·공민의 이익을 위해 재판소에 손해보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예심원은 범죄행위로 입은 국가 등의 재산상 손해보상을 위해 보상책임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여섯째, 북한 형사법의 현실 적용의 불투명성이 여전히 상존한다. 2004년 6월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포함한 총 112개의 법률이 수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대중용)』을 발간하여 이를 공개하였다. 이 법전의 서문에서 “법은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다. 국민들이 법을 알고 스스로 지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법전을 편찬하여 발행한다.”<sup>47)</sup>고 명시하여, 그동안 법률, 특히 형사법에 대한 비밀주의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개정된 형법과 형사소송법에는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법률주의의 선언, 유추해석 허용규정의 삭제, 범죄구성요건의 구체화, 형사소송절차의 세분화와 체계화 등 인권보장절차에 있어서 일부 개선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인권기구의 인권보고서 내용,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식 인권’의 주장, 북한 법 현실에 대한 공개자료, 탈북자들의 증언내용 등에 의하면 북한사회의 현실에서는 형사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 2. 북한 형법상 범죄와 유형

### 가. 범죄의 개념

북한은 형법상 범죄의 개념에 대한 기본 인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형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제정 형법(1950.3.3) 제7조에서는 ‘범죄’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그에 수립된 법률질서를 침해할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일체의 가벌적 행위”로 규정하였으나, 1974년 개정형법에서는 “로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법률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는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sup>48)</sup>로 수정하였다.

4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대중용)』, 평양: 법률출판사, 2004.8.

48) 김근식, 『형법학 (1)』(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83면.

1987년 개정 형법부터는 범죄의 개념을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는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제9조)<sup>49)</sup>로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 형법학자들은 ‘노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근로인민대중에게 위험한 행위인 동시에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의 발전 및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제정된 사회주의법을 어기는 위법성 있는 행위’<sup>50)</sup>로 정리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범죄의 개념을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침해하고 사회주의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범죄개념이 정치적 측면에서 형사 처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주권의 침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sup>51)</sup> 즉, 2004년 개정형법 제1조(형법의 사명)에서는 기존형법과는 달리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형벌제도’를 바로 세우는 것을 사명한다는 점에서 진일보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보위’라는 정치에 대한 법의 기능이 라는 기본 틀이 유지되고 있어 형사처리가 정치적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한계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sup>52)</sup>

## 나. 범죄의 유형

북한 형법은 범죄를 정치적 범죄와 일반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 구분은 사회주의 체제와 연관된 범죄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에 기인한다. 즉, 북한은 정치범죄와 일반범죄의 범죄발생 원인에서부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sup>53)</sup>

49) 2004년 개정형법 제10조(범죄의 개념)는 “범죄는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와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50) 김근식, 『형법학 (1)』, 83-84면.

51) 위의 책, 34면.

52) 북한 “형법 제 1 조(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형벌 제도를 바로 세워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53) 김수암,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 실태』, 34면.

## 1) 정치범죄

북한은 형법을 근거로 정치범에 대한 형사처리를 한다. 2004년 개정형법(이하 개정형법) 이전에는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고 ‘착취제도’를 복구하려는 반혁명적대분자들에 의해 감행되는 정치범을 ‘반혁명범죄’<sup>54)</sup>나 ‘반국가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였다.<sup>55)</sup> 그리고 정치범의 개념과 범위를 ‘반혁명분자’, ‘불건전한 사상을 가진 자’, ‘적대분자’ 등으로<sup>56)</sup> 애매하게 규정하여 정치적 숙청을 위한 목적에 활용하였다. 그러나 개정형법에서는 정치범을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행위자’로 규정하여 정치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행위를 명시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제도를 전복하거나 와해시키려는 행위의 범죄를 정치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형법에 규정된 정치범인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제3장 1-3절)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정리할 수 있다.<sup>57)</sup>

### 가) 반국가 범죄

개정형법 제3장(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제1절(반국가범죄)에서는 반국가적 목적의 정변·폭동·시위·습격행위(제59조)와 조국배반의 투항, 변절, 비밀누설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제62조, 제63조)을 신설하고, 선전선동행위의 구성요건적 행위 모습을 완화하여(제61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확대하는 한편, 전반적으로 그 법정형(法定刑)을 상향조정함으로써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54) 북한은 반혁명범죄를 발생시키는 근원을 찾아내어 이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 반혁명범죄에 대한 조선노동당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주장한다. 반혁명범죄는 사회의 혁명과 건설을 저해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다(김근식, 『형법학 (1)』, 5면). 반혁명과의 법적 투쟁을 전개하는 목적은 죄를 범한 자에게 죄과에 따른 형벌을 주어 범죄의 개별 예방과 일반예방을 실현하자는 데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계급투쟁의 승리에 철저히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위의 책, 28, 33면)

55) 1980년대 북한은 반혁명범죄를 정치범죄로 규정하여 철저히 탄압해야할 것을 강조했다. 북한은 제1차 개정형법에서 반혁명범죄(1974.12.19)를 보충한 후 2차 개정(1987)에서 ‘반국가범죄’로 용어를 수정하고, 2004년 개정형법에서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로 범죄로 개칭하였다.

56) 서재진, 『북한인권백서 2003』 (서울: 통일연구원, 2003), 172면.

5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형법”(주체93(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2호로 수정보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대중용)』, 796-798면.

<표 2-1> 반국가범죄

구분	범죄 행위	형벌
국가전복음모죄 (제59조)	·반국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 혹은 음모에 가담한 자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테로죄 (제60조)	·반국가 목적으로 간부들과 인민들을 살인, 랍치하였거나 그들에게 상해를 입힌 테로행위를 한 자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반국가 선전, 선동죄 (제61조)	·반국가 목적으로 선전, 선동행위를 한 자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조국반역죄 (제62조)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간첩죄(제63조)	·공화국 공민이 아닌 자가 국가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 수집, 제공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파괴암해죄 (제64조)	·반국가 목적으로 파괴, 암해행위를 한 자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앞 항의 행위를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무장간섭 및 대외관계단절사추죄(제65조)	· 타국 사람이 부추겨서 북한에 대한 무장간섭이나 외교단절, 조약파기 행위를 한 자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 (제66조)	·공화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공화국에 체류하는 다른 나라 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한 자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동 개정형법은 종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국가전복을 위한 ‘무장폭동’뿐만 아니라 정변, 폭동, 시위, 습격행위도 처벌하고 그 법정형의 상한을 삭제하였다. 그리고 주관적 구성요건도 ‘반국가적 목적’이라 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애국적 인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인민에 대한 테러행위도 처벌하도록 하였다. 또한

선전선동의 내용을 불문하고 반국가적 목적인 경우에는 처벌하며, 공화국을 전복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도 조국반역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테러죄에 있어서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을 선택적으로 추가하는 등 일부 법정형을 완화한 측면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 나) 반민족범죄

기존형법에서는 민족반역죄의 기본형을 “사형 또는 전재산몰수형”으로 하고 감경사유가 있을 때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및 전재산몰수형”으로 규정했던 것을, 개정형법(제3장 2절)에서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기본형으로 하고 가중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제67조)으로 규정하여 처벌 정도를 완화하였다. 특히 외국인이 ‘조선민족을 적대시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조선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하거나 민족적 불화를 일으킨 행위’(제69조)도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2〉 반민족범죄

구분	범죄행위	형벌
민족반역죄 (제60조)	·제국주의의 지배 밑에서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이익을 팔아먹은 민족반역 행위를 한 자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조선민족해방운동 탄압죄(제68조)	·타국인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조선민족 적대죄 (제69조)	·타국인 조선민족을 적대시할 목적으로 해외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 조선사람의 인신이나 재산을 침해한 자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 불신고죄, 방임죄**

개정형법 제3절(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불신고·방임죄)은 종전의 규정을 조정한 것으로 기본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표 2-3>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 불신고죄, 방임죄**

구분	범죄행위	형벌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에 대한 은닉죄(제70조)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를 저지른 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 준 자	·4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반국가범죄에 대한 불신고죄(제71조)	·반국가 범죄를 준비하고 있거나 저지른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반국가범죄에 대한 방임죄(제72조)	·반국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긴급히 막는 데 필요한 대책을 능히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 자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

**2)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개정형법에서는 군사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 별도의 장(4장)을 신설하여 국방위원회의 결정·명령·지시 집행태만죄(제73조), 군사시설파괴죄(제75조, 제76조), 무기 등 불법휴대·양도죄(제78조), 군사복무동원기피죄(제83조), 국방비밀누설죄(제88조) 등 총 16개 조항으로 규율하고 있다. 종전 형법 제6장 제1절(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에서 군사에 관한 범죄로 규정하였던 총 6개 조항은 삭제했다. 다시 말해 종전에 군사에 관한 중요범죄를 ‘국가의 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에서 개별적으로 규율하였으나, 이를 체계화하여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하는 범죄’를 별도의 장으로 신설하여 국방위원장의 결정·명령·지시를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집행한 경우를 처벌하는 등 민간인의 군사범죄를 확대하고 군수품에 대한 범죄유형을 다양화하는 한편, 법정형에 가중처벌을 확대함으로써 처벌을 강화하였다.

형사소송법은 군사범죄에 대한 수사와 예심은 특별수사·예심기관인 군사검찰 기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군사범죄에 대하여 특별재판소인 군사재판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군사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한 것은 북한이 최근 경제난을 극복하고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강성대국론과 선군정치론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3) 일반범죄

북한은 일반범죄를 “반국가적 목적 없이 개인 이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로부터 국가사회질서를 문란시키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약취하며 국민의 생명,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sup>58)</sup>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반범죄의 근원을 북한의 형법학자들은 ‘일부 근로자들의 의식 속에 남아있는 개인 이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 탓으로 돌리고 있다.<sup>59)</sup> 다시 말해 일반범죄는 노동계급의 사상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근로자들의 의식 속에 남아 있는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의 잔재로부터 발현되는 범죄라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범죄(절도·살인·불량행위·매음·축첩 등)는 사회주의제도가 확립된 후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개인주의·이기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상 잔재가 뿌리 깊이 남아있어 사회주의적 소유관계를 침해하고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질서 및 혁명적 규율을 문란 약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sup>60)</sup>

그리고 북한은 일반범죄를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고 소위 착취제도를 복구하려는 반혁명적대분자들에 의해 감행되는 반혁명범죄(반국가범죄)와는 달리 낡은 사상잔재에 깊이 물들어 있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로서 어디까지나 그들 근로자들 내부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sup>61)</sup> 이러한 일반범죄를 사전

58) 김근식, 『형법학 2』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50면.

59) 위의 책, 50면.

60) 법무부, 『북한법연구(VII)』, 47-48면, 69-70면.

61)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403-404면; 김수암, 『북한의 형사법제상

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상교양과 준법교양을 강화하고 제도와 질서의 규율을 강화하며 미리 발생된 범죄를 적발하여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고<sup>62)</sup> 강조하고 있다.

개정형법에서는 일반범죄를 ① 경제범죄(형법 제5장: 사회주의 경제를 침해하는 범죄) ② 문화범죄(형법 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③ 행정질서범죄(형법 제7장: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④ 공동생활침해범죄(형법 제8장: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⑤ 생명·재산범죄(형법 제9장: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sup>63)</sup>

### 가) 경제범죄

북한은 자본주의적 경제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그 지도이념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경제적 착취의 배제와 전체인민의 복리와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있다.<sup>64)</sup> 경제적 착취의 원인으로 간주되는 모든 생산수단의 사회화가 요청되고, 사회주의적 재산제도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채택하게 된다. 그 결과 생산·분배·소비 등 경제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국가적 통제, 경제질서의 공법적 규제,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무제한적인 명령과 강제, 개인의 생존이 국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sup>65)</sup> 이러한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에 따라서 생산수단은 국가에 귀속되고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소비적 목적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형법(제5장)은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하는 범죄’를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제1절 제89-98조),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제2절 제99조-172조),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를 침해한 범죄’(제3절 제173-184조),

형사처리절차와 적용 실태』, 39-40면 재인용.

62) 김근식, 『형법학(1)』, 57면.

6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대중용)』, 801-840면.

64) 법무부,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I)』(서울: 법무부, 1993), 435면.

65) 권영성, 『헌법학원리』(서울: 법문사, 1997), 157-158면.

‘노동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제4절 185-192조 )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소유를 침해한 범죄’는 국가재산에 대한 범죄로서 종전의 기본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가재산공갈죄를 신설하고, 특히 대량재산에 관한 범죄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으로 엄중히 가중 처벌하는 등 법정형을 다소 강화하였다.(제91조)

둘째,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는 종전의 18개 조항을 74개 조항으로 확대하여 전면 개정한 것으로 증권위조·위조증권사용죄(제101조, 제102조), 탈세죄(제108조), 법인가장 경제거래죄(제112조), 상표권침해죄(제113조), 거간죄(제114조), 수출입질서위반죄(제117조), 고리대죄(제118조), 불법외화벌이죄(제125조), 계약규율위반죄(제131조), 상품공급및판매질서위반죄(제156조, 제157조), 밀주죄(제159조, 제160조), 가격사업질서위반죄(제170조) 등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을 다수 신설하거나 구체화하고 있다.

셋째,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를 침해한 범죄’와 ‘노동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는 종전의 기본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되, 자의적 해고·전보죄(제189조), 분배질서위반죄(제190조), 미성년에게 노동을 시킨 죄(제191조) 등을 신설하고 법정형을 다소 높임으로써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다.

결국 개정형법을 통해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를 다소 구체화하거나 강화한 것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질서를 수호하고, 경제·개방에 따른 새로운 범죄현상과 식량난 등 경제악화로 새롭게 발생하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66)</sup>

## 나) 문화범죄

개정형법은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대외 교역과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사회주

66) 법무부, 『개정 북한형사법제 해설』, 16-18면 참조.

의 문화를 해치는 퇴폐풍조가 급증하자 그에 대응하기 위해 퇴폐적인 문화반입·유포죄(제193조), 퇴폐행위죄(제194조) 등 성풍속 형법적 요소를 대폭 확대하였다.

풍속형법의 성격을 띤 규정은 매음죄(제261조), 미신행위나 조장죄(제267조, 제268조), 비법혼인죄(제270조) 등이 있다. 또한 종전 형법의 6개 조항을 26개 조항으로 확대하여 전면 개정한 것으로 컴퓨터망침입죄(제201조), 정보파손죄(제202조), 허위정보입력유포죄(제203조) 등 컴퓨터관련 범죄와<sup>67)</sup> 역사적 도굴(제197조)과 밀수행위관련죄(제198조) 등을 신설하여 노동교화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료형법적 요소가 포함되어 치료거부죄(제208조), 의료사고죄(제209조), 불량약품·의료기구 생산죄(제210조), 사람장기 등 매매죄(제214조), 가짜의약·식료품 제조·판매죄(제215조), 마약밀수·밀매죄(제218조) 등을 신설하거나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적대방송청취, 인쇄물·유인물수집 및 보관, 유포죄(제195조)’를 신설하여 대외개방 등에 따른 사회의 이완분위기에 대처하고 사회기강을 확립함으로써 사회주의 경제·문화·공동생활을 유지할 목적으로 주민생활의 통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형법의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는 반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사회주의 문화·공동생활을 침해한 범죄에 대하여 새로운 범죄유형을 신설하고,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대외개방과 경제적·현실적 이유에 기인한 사회질서의 이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경제·사회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음란·퇴폐 등 외래문화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주민사회에 유입되고 있어 매음행위·미신행위 등이 사회문제화 될 수 있는 정도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sup>68)</sup>

67) 컴퓨터범죄의 신설과 관련하여 북한사회에 컴퓨터가 비교적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인터넷 사용은 극히 제한된 인원이 제한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68) 북한은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를’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사회 안에 썩어

### 다) 행정질서범죄

개정형법의 행정질서범죄는 종전의 군사에 관한 범죄를 제4장으로 재편하고, 28개 조항을 39개 조항으로 확대하는 등 대폭 개정하였다. 특히 법일꾼의 불법 체포·구속죄(제252조), 사건과장·날조죄(제253조), 비법석방죄(제254조) 등 법일꾼의 직무집행관련 범죄를 신설하거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증인협박죄(제237조), 직무집행자에 대한 복수죄(제238조), 부당한 신소죄(제244조),<sup>69)</sup> 판결과 관정을 집행하지 않은 죄(제256조) 등을 신설하여 사법제도와 관련된 범죄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하고 처벌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외에도 일반행정질서와 관련하여 출판질서위반죄(제226조), 과실적 비밀누설죄(제231조), 대외적 권위를 훼손한 죄(제245조), 관리일군이 아닌 자의 뇌물죄(제242조), 증명서매매죄(제225조), 허위날조·유포죄(제222조) 등을 신설하거나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특히 비법국경출입죄(단순탈북자)에 대해 종전(1999)의 “국경을 넘는 자”를 “국경을 넘나든 자”로 개정하고, 형량을 종전의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제233조)으로 법정형을 대폭 완화하고 있는데, 이는 주민들의 탈북사태에 대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sup>70)</sup> 반면에 ‘조국반역죄’(제62조)에서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

빠진 부르조아 반동문화를 침투시키고 널리 퍼트리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한 결과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노선의 관철을 방해하며 저해하는 불건전한 문화적 요소들과 경향들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에 뒷받침하여 법적 투쟁’을 힘 있게 전개해야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김근식, 『형법학 2』, 120면)

69) ‘신소’는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침해를 미리 막거나 또는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회복시켜줄데 대하여 당 및 국가기관, 기업소, 근로단체에 제기하는 인민들의 요구이다.(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1916면)

70) 북한헌법(1992.4.9) 제86조는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고 규정하였으나, 1998년 개정 헌법에는 “조국보위는 공민의 최대의 의무이며 영예이다. 공민은 조국을 보위하여야 하며 법이 정한데 따라 군대에 복무하여야 한다”라고만 하여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는 부분을 삭제하였다.

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하여 탈북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격상시키고 있는데, 이는 생계형 탈북자 등 단순탈북자와 구별을 두는 한편, 체제유지를 위한 방편으로 볼 수 있다.

#### 라) 공동생활침해범죄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는 종전의 10개 조항을 20개 조항으로 확대하였다. 특히 매음죄(제261조), 음탕행위죄(제262조), 비법혼인죄(제270조), 미신행위 및 조장죄(제267조, 제268조) 등 음란·풍속에 관한 범죄를 확대·강화하여 반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패싸움죄(제259조), 검열원·감독원 등 거짓행세죄(제264조), 칭호참용죄(제265조), 권리의 실력행사죄(제269조), 공무원이 사례금 및 이득금을 국가기관에 바치지 않은 죄(제274조), 엄중한 결과발생방임죄(제277조) 등 최근 새롭게 제기되는 사회범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있다.

#### 마) 생명·재산범죄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한 범죄’(제1절)는 종전의 14개 조항에서 18개 조항으로 확대하였으나 그 기본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살인죄를 고의적 중살인죄, 고의적 경살인죄, 과실적살인죄(제278조 내지 제282조) 등으로, 상해죄를 고의적 중상해죄, 과실적 중상해죄, 고의적 경상해죄(제283조 내지 제287조) 등으로 각각 세분화하고 있다.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제2절)는 그 기본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개인재산을 빼앗은 죄와 개인재산 공갈죄를 구분하고(제297조, 제298조), 특히 대량재산에 대한 범죄 등 정상관계를 세분화하여 그에 따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제301조 등)하고 있다.

## 제2절 북한의 형벌과 형사처리 원칙

### 1. 형벌의 본질과 유형

#### 가. 형벌의 본질

형벌의 본질이 응보에 있다고 하는 응보형주의와 사회방위의 달성의 수단이라는 목적형주의의 상호대립은 학설상 많은 논의가 되어왔다. 그러나 북한의 형법학자들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달리 형벌을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반대하고 저해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유린하고 침해하는 반혁명범죄들과 일반범죄자들에게 가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폭력적인 진압수단이며 제재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sup>71)</sup>

북한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반혁명범죄자들을 철저히 진압하고 일반범죄자들을 제재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능을 보장하는 폭력적 강제수단이요 프롤레타리아의 예리한 무기가 바로 형벌이라는 것이다.<sup>72)</sup> 북한의 형벌은 폭력적인 징벌의 성격을 띠는 점에서 다른 제재 수단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형벌은 재판기관들에 의해 형사재판의 절차로서만 적용되는 강제수단이기 때문에 다른 제재와 구별된다.<sup>73)</sup>

#### 나. 형벌의 유형

북한의 형벌관은 형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변화를 보이는데, 1954년 형법에서는 사형, 징역, 교화로동형, 벌금, 일정한 권리의 박탈, 일정한 직업 또는 영업의 금지, 일부 또는 재산의 몰수 등을 규정하였다. 1974년 개정 형법에서는 사형, 징역형, 교화로동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등으로 수정하였다.

71)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 403-404면.

72) 김근식, 『형법학 (1)』, 156.

73) 위의 책, 157-158.

1987년 개정형법부터는 기본형벌과 부가형벌로 구분하고, 기본형벌에는 사형, 로동교화형이, 부가형벌로는 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은 새로 도입된 것이다.

오늘날 적용되는 개정형법상(2004) 형벌은 기본형인 사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노동단련형이 있고, 부가형으로는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이 있다. 동 형법에서는 ‘로동단련형’을 신설하고, 자격박탈형과 자격정지형을 별도의 부가형벌로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표 2-4> 북한 형벌의 변화

구분	형벌	
1950년 형법	사형, 징역, 교화로동, 벌금, 일정한 권리의 박탈, 일정한 직업 또는 영업의 금지, 일부 또는 재산의 몰수	
1974년 형법	사형, 징역형, 교화로동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1987년 형법	기본형벌	부가형벌
	사형, 로동교화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
2004년 형법	사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

1) 기본형벌

가) 사형

사형은 ‘범죄자의 육체적 생명을 박탈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형벌로,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세 미만이거나 임산부’에 대해서는 사형을 금지하고 있다.(형법 제29조)

개정형법 이전에는 사형집행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다만 1997년에 채택하고 1998년 개정된 판결판정집행법 제32조에서 “사형에 처할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재판소가 발급한 판결서 등본, 사형집행지휘문건을 받은 다음 총살 같은

방법으로 한다”고 하여 다른 법률에서 집행방식을 규정하고 있었다.

북한형법상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국가전복음모죄(형법 제 59 조), 테로죄(제 60 조), 조국반역죄(제 62 조), 민족반역죄(제67조) 등이 있고, 일반범죄 중 고의적 중살인죄(제278조) 등이 있다.

형사소송법상 사형집행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승인이 필요(제419조)하며, 사형은 사형집행지휘문건과 판결서 등본을 받은 후(제422조) 검사의 참가하에 집행하며(제 421 조), 형벌집행기관은 사형 집행결과를 3일 안으로 해당 재판소에 송부(제423조)하도록 되어 있다.

#### 나) 노동교화형

중전의 징역형을 노동교화형으로 개칭하여 ‘범죄자를 교화소에 넣어 노동을 시키는 방법’ 즉,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신체상의 자유를 박탈하고 강한 육체적 노동을 시켜 육체적, 정신적으로 일정한 고통을 주는 형벌이라 할 수 있다.

유기로동교화형과 무기로동교화형 집행기간에는 국민의 기본권리가 정지된다. 유기로동교화형 기간은 1년부터 15년까지로 하며, 범죄를 병합하거나 합산할 경우에도 유기로동교화형 기간은 15년을 넘을 수 없다. 범죄자가 구속되어 있는 기간 1일을 유기로동교화형 기간 1일로 계산한다.(제30조) 그러나 구형법의 경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구류되어 있었던 기간은 로동교화형 기간에 계산하여 넣는다”(1999년 형법 제25조)고 하여 다소 애매한 표현을 쓰고 있었다. 특히 2004년 이전의 종전 형법에서는 공민권의 정지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다만 공민등록법에서 “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로동교화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을 회수한다. 그러나 집행을 유해하는 판결을 받은 자의 출생증, 공민증, 평양시민증은 회수하지 않는다”(제13조)라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개정형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일

반범죄 등 대부분의 범죄행위에 노동교화형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다) 노동단련형

노동단련형은 새로운 도입된 것으로 ‘범죄자를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노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형벌이다. 노동교화형과는 달리 노동단련형 집행기간 중 국민의 기본권리가 보장된다.

노동단련형 기간은 6개월부터 2년까지로 하고 범죄를 병합하거나 합산할 경우에도 노동단련형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그리고 범죄자가 구속되어 있는 기간 1일을 노동단련형 기간 2일로 계산하도록 규정(제 31 조)하고 있어, 노동교화형 1일이 노동단련형 2일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노동단련형과는 달리 ‘일정한 장소’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정형법의 총 245개 처벌조항 중 169개 조항에서 노동단련형을 기본형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자의 노동력을 국가경제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형법의 기본형벌은 생명의 박탈과 인신의 구속이라는 형태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범죄자에 대한 인신구속의 기준은 ‘집행유예적용조건과 기간’(형법 제51조), ‘집행유해의 법률적효과’(제52조)라는 집행유해 제도를 두고 있다. ‘판결관정집행법’(제37조)에 의하면 집행유해는 판결에서 지정한 장소에서 노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sup>74)</sup>

그리고 형법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특사, 대사를 통해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형벌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53조). 무기로노동교화형, 유기로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을 받은 자가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개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교양개조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기로동

74) ‘판결관정집행법’ 제37조에는 “집행유해를 적용할데 대한 판결의 집행은 판결서 등본, 확정통지서를 받은 기관이 판결서에 지적된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내어 노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교화형, 로동단련형은 받은 형기의 절반이 지난 다음 형벌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무기로동교화형은 15년이 지난 다음 형벌집행을 면제하거나 유기로동교화형으로 감형할 수 있다. 형벌집행의 면제 또는 변경과 관련한 제기는 형벌집행기관이 하며 이 제기는 해당 재판소가 심리, 판정한다(제54조).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범죄 유형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5〉 구금시설에 수용하는 범죄<sup>75)</sup>

범죄 유형	교화소		일정한 장소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제59-72조 중 14개 범죄)	국가전복음모죄 등 6가지	국가전복음모죄 등 14가지	
제4장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제73-88조 중 17개 범죄)		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은 죄 등 15가지	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는 죄 등 10가지
제5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죄(제89-192조 중 104개 범죄)	국가재산략취죄, 국가재산강도죄 등 6가지	국가재산훔친죄, 국가재산 빼앗은 죄 등 81가지	국가재산훔친죄, 국가재산 빼앗은 죄 등 83가지
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제193-218조 중 26개 범죄)	역사유물 밀수, 밀매죄, 마약 밀수 등 3가지	퇴폐적 소요죄, 직무집행방해죄 등 30가지	직무집행방해죄, 허위 날조, 유포죄 등 29가지
제7장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제219-257조 중 39개 범죄)		집단적 소요죄, 직무집행방해죄 등 30가지	집단적 소요죄, 직무집행방해죄 등 29가지
제8장 사회주의공동생활 질서를 침해한 범죄(제258-277조 중 20개 범죄)		불량자행위죄, 패싸움죄 등 15가지	불량자행위죄, 패싸움죄 등 18가지
제9장 국민의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제27-303조 중 26개 범죄)	고의적중살인죄, 유괴죄 등 3가지	고의적중살인죄 등 25가지	정당방위초과중상해죄 등 13가지

7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대중용)』, 796-840면 제정리.

## 2) 부가형벌

### 가) 선거권박탈형

선거권박탈형은 ‘반국가 범죄와 반민족 범죄를 저지른 자로부터 일정한 기간 선거할 권리를 빼앗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형벌이다. 재판소는 반국가 범죄와 반민족 범죄사건을 심리할 경우 선거권박탈 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선거권박탈형 기간은 5년을 넘길 수 없으며 유기로동교화형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형법 제 32 조).

선거권박탈형은 기본형벌집행 종료후 판결서 등본과 출소증을 접수한 지역 인민위원회가 담당하고(형사소송법 제426조), 자격박탈·정지형은 기본형벌집행 종료 후 판결서등본 등을 접수한 해당 자격을 준 기관이 담당(형사소송법 제427조)하도록 하고 있다.

### 나) 재산몰수형

재산몰수형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재산을 국가에 넘기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형벌이다. 이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가족이 최저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식량과 생활필수품과 돈을 남겨놓는다.(형법 제33조) 특히 재산몰수형은 집행문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으로 재판소 집행원이 하되, 이 경우 2명의 입회인을 세우며 재산몰수목록을 기록에 첨부하도록 하는 등 형벌의 집행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형사소송법 제428조)하고 있다.

또한 재산몰수형이 취소되었거나 사건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몰수하였던 재산을 돌려주며, 현물로 돌려줄 수 없을 경우에는 그 물건에 해당하는 값을 돌려준다(형법 제 34 조). 그리고 재산을 몰수당한 자가 재산담보처분이 있기 전에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산으로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배상한다. 그러나 재산담보 처분 이후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산으로 배상하지 않는다(형법 제 35 조).

### 다) 자격박탈형과 자격정지형

2004년 개정형법에서는 종전의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을 자격박탈형과 자격정지형으로 분리하였다. 자격박탈형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가지고 있던 일정한 자격을 완전히 빼앗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형벌이다. 재판소는 일정한 자격을 범죄를 저지르는 데 이용한 사건을 심리할 경우 자격박탈 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제 36 조).

자격정지형은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가지고 있던 일정한 자격을 일시적으로 빼앗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형벌로서, 재판소는 일정한 자격을 범죄를 저지르는 데 이용한 사건을 심리할 경우 자격정지 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자격정지형 기간은 3년을 넘길 수 없으며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제 37 조).

### 3) 사회적 교양처분

북한은 ‘사회적 교양처분’이라는 형태로 인신 구속 없이 처벌하는 제도가 있다. 과거 형법(1987)에는 사회적 교양처분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사회적 교양처분은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개준성 정도’, ‘범죄의 위험성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교양의 방법으로 고칠 수 있을 경우에는 사회적 교양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49조).<sup>76)</sup> 이외에도 ‘판결판정집행법’(제29조, 제38조), 검찰감시법(제36조),<sup>77)</sup> 형사소송법(제62-69조) 등의 법률을 통하여 사회적 교양처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sup>78)</sup>

76) 형법 제50조에서는 사회적 교양 처분을 받은 자가 이미 저지른 범죄의 형사소추 시효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사회적 교양처분을 받았던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양정하고 그 전부 또는 새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양정한 형벌을 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7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검찰감시법” 제36조에서 “검사는 국가의 법을 어긴자를 사회적 교양을 통하여 개조하려 할 경우 사회주의범무생활지도위원회에 넘기거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군중투쟁을 벌이도록 제기할 수 있다”라 규정했다.

78) ‘사회적 교양처분’에 대하여 1999년 형사소송법 제13조에서 간략히 언급하였으나, 2004년 개정형사소송법에서는 제2장 제7절 8개조(제62-69조)로 구체화하였다.

사회적 교양처분을 받게 되면 즉시 석방(형사소송법 제64조)하여 범지를 저지르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을 인정(형사소송법 제66조)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회적 교양처분은 범죄가 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하지만 처벌 상 범지를 저지르지 않은 자와 같이 대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판결의 종류’와 관련하여 “피소자에게 형벌을 적용하는 판결, 사회적 교양처분을 하는 판결은 유죄판결이며 그에게 범죄가 없다는 판결은 무죄판결” (형사소송법 제 343 조)로 규정하고 있다.

<표 2-6> 형사소송법상 사회적 교양처분

구분	주요 내용
사유(제62조)	· 14살 이상 17살에 이르지 못한 자가 범지를 저질렀을 경우 · 형벌을 주지 않고도 교양 개조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절차(제63조)	- 검사, 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62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 검사는 상급검찰소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에게 사회적 교양처분결정 · 재판소는 피소자에게 사회적 교양처분판결, 판정
처리(제64조)	· 구류되어 있는 피심자, 피소자에게 사회적 교양처분결정, 판결, 판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 석방
지위(제66조)	· 사회적 교양처분을 받은 자는 범지를 저지르지 않았던 자와 같이 인정
교양담당자(제67조)	· 사회적 교양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교양은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거주하고 있는 리(읍·구·동)에서 책임
취소사유(제68조)	· 사회적 교양처분을 받은 자가 이미 저지른 범죄의 형사소추시효기간에 새로운 범지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에게 적용하였던 사회적 교양처분을 취소하고 형사책임을 지우고, 사회적 교양처분을 받았던 범죄도 함께 계산
취소절차(제69조)	· 검사, 재판소는 동법 제68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사회적 교양처분을 취소하고 형사사건을 예심원에 반송

특히 2004년 개정 형사소송법 제2장 일반규정 제5절에서는 ‘형사소송의 중지’라는 새로운 절을 신설했다. 피심자, 피소자가 일시적인 정신병, 중병에 걸렸거나 도주하여 형사사건을 계속 취급할 수 없을 경우 형사소송을 중지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정신병과 중병에 대한 감정은 법의 감정의사 또는 인민병원 의사협 의회가 한다(제43조). 예심원, 검사, 재판소는 동법 제43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①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아 예심을 중지하는 결정을 한다.’ ② ‘검사는 기소를 중지하는 결정을 한다.’ ③ ‘재판소는 재판을 중지하는 판정을 한다.’라 규정하고 있다(제44조). 그리고 의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감시는 범죄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인민보안기관이 담당하게 되어 있다(제47조).

## 2. 형사소송법상 형사처리의 원칙

2004년 개정형법 제2조에서는 범죄자 처리에 있어 ‘로동계급적 원칙’과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 제재를 배합’하도록 하는 두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여기서 “계급적원칙을 지킨다는것은 발생한 사건을 로동계급적립장, 혁명의 리익을 고수하는 립장에서 심의하고 처리한다는것”<sup>79)</sup>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원칙은 형사소송법(2004) 제 2 조(계급로선의 관철원칙)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국가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의 투쟁에서 적아를 엄격히 가려내어 극소수의 주동분자를 진압하고 다수의 피동분자를 포섭하며 일반범죄와의 투쟁에서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2004년 형사소송법 제 2 조: 계급로선의 관철원칙)

형사소송법에서 보여주고 있는 범죄자 처리의 두 가지 원칙은 정치범죄와 일반범죄를 구분하는 북한의 범죄관과 연관이 있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범죄와 일반범죄를 명쾌하게 구분하여 계급노선의 원칙에 따라 처벌도 다르게 적용해야한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조 사명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은 수사, 예심, 기소, 재판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79) 김정일, “사범검찰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전국사범검찰일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2년 11월 21일”(『김정일선집(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318면.

세워 형사사건을 정확히 취급처리하는데 이바지 한다”(제1조)고 하여 정치적 색채가 삭제되고 있지만, 정치범죄와 일반범죄를 구분하는 정치적 태도가 견지되면서 형사처리상 이러한 범죄관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제2조).

### 가. 정치범죄 처리 원칙

북한은 정치범죄의 처벌은 폭력수단인 형벌<sup>80)</sup>에 의한 법적 제재<sup>81)</sup>를 위주로 한다. 형사소송법은 반혁명범죄를 범한 계급적 원수를 찾아내어 핵심인물을 철저히 진압하기 위해서 계급노선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형법의 계급적 본질은 비노동계급적 요소들을 제거하여 사회주의제도와 전체근로인민대중의 이익을 철저히 옹호 보위하는데 있기 때문에, 반혁명범죄를 범한 소위 계급적 원수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고 가혹하게 처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일성은 ‘사회안전기관들(현 인민보안기관, 국가보위기관 등)과 사법검찰기관들은 당의 정치적 보위자로서 당 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그 집행을 감독하며 특히 우리 국가사회제도를 해치려는 간첩, 파괴암해분자들을 모조리 잡아내 철저히 진압해야 한다’<sup>82)</sup>고 강조했다.

### 나. 일반범죄 처리 원칙

북한은 일반범죄를 법적 제재를 위주로 처리해야 한다는 정치범죄와는 달리 ‘근로자 내부의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법적 제재를 배합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형사정책은 일반범죄를 범한 근로인민에 대해서는 교양하고 개조하는 방향에서 징벌과 관대를 바르게 결합하는데

80) 김정일, “사회주의제도에 악의를 품고 의식적으로 적대행위를 감행한자들에 대하여서는 반혁명분자로 규정하고 엄격한 징벌을 가하여야 합니다.”(『김정일선집(7)』, 319면)

81) 김정일, “사회주의제도에 악의를 품고 의식적으로 적대행위를 감행한자들에 대하여서는 반혁명분자로 규정하고 엄격한 징벌을 가하여야 합니다.”(『김정일선집(7)』, 319면)

82)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1970년 11월 2일)(돌베개 편집부, 『북한 ‘조선로동당’대회 주요 문헌집』, 서울: 돌베개, 1988), 349면.

있다. 김정일은 사회적 교양위주의 법적 제재 배합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일반범죄사건은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제재를 배합하는 원칙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일반범죄와의 투쟁은 근로자들내부의 문제인것만큼 어디까지나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여야 합니다. 법적통제의 날을 세운다고 하여 법을 어긴 사람들을 덮어놓고 재판에 넘겨 형벌을 주어서는 혁명에 리로울것이 없습니다. 범죄상습자들과 극심한 개인리기주의에 사로잡혀 죄를 저지른자들을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들에 대하여서는 재판에 넘겨 형벌을 주어야 하지만 일시적인 물욕이나 과실로 법을 어긴자들은 사회적교양을 통하여 개조하여야 합니다.”<sup>83)</sup>

김일성은 근로자들의 낡은 사상 잔재를 법적으로만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오래동안 내려오면서 사람들의 머리속에 형성된 개인리기주의사상을 뿌리빼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라고 볼수 없습니다. 낡은 사상 잔재를 단지 법적제재만으로는 없앨수 없으며 또 그러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여서는 끝이 없습니다. 탐오랑비현상을 없애며 국가재산을 애호절약하기 위해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없애고 그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교양하며 특히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의 부가운데 자지의 몫도 있으며 사회의 부가 늘어날수록 자기도 더 잘살수 있게 된다는 것을 똑똑히 깨닫도록 사상사업을 강화하는 것입니다.”<sup>84)</sup>

다만, 밖으로부터 제국주의 사상문화가 계속 침투해 오고 있는 데도 일반범죄와의 투쟁을 약화시킨다면 낡은 사상 잔재가 되살아나고 조장될 수 있으므로 일반범죄에 대해서도 엄격한 제재를 가하여야 할 것이 강조되고 있다.<sup>85)</sup> 범죄자에게 강력하게 법적 제재를 가하는 이유는 범죄의 재발 방지뿐만 아니라 낡은 사

83) 『김정일선집(7)』, 319면.

84) 김일성, “국가재산을 애호절약하며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9년 6월 30일”(『김일성저작집 2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1-2면.

85) 법무부, 『북한법연구(VII)』, 45면, 47-48면.

상 잔재가 발현될 수 있는 자들에게 강한 경고를 줌으로써 낡은 사상 잔재를 극복하고 그 발현을 저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회적 교양으로 개조해야 할 일반범죄와 법적제재를 가해야 할 일반범죄에 대한 처리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범죄행위를 감행한 자 중에서 범행이 경미한 자들을 사회적 교양으로 개조하고 범행이 엄중한 자들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범죄자의 사회계급적 처지, 낡은 사상에 물젖은 정도 등에 의해서 개선성 여부를 ‘정치적으로 평가’한 후 개선성이 없는 자에 대해 엄격히 징벌하는 방침을 취한다. 셋째, 일반범죄를 감행한 자 중에서 상습범들과 극단적인 개인이기주의 때문에 죄를 지은 자들에게는 법적 제재를 가하고 일시적인 몰욕이나 과실에 의해 법을 어긴 자들은 사회적 교양으로 돌린다. 넷째, 추종분자와 피동분자들은 사회적 교양에 돌리고 범죄를 조직하고 부추긴 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제재를 가한다.<sup>86)</sup>

이외에도 개정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군중노선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형법의 사명이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형벌제도’(형법 제1조)를 바로 세우는 데 있다고 하지만, “국가는 형사사건의 취급처리에서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하도록 한다.”(형소소송법 제3조: 군중노선의 관철원칙)라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군중노선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군중노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인민참심원 제도’, ‘현지 공개재판’, ‘현지료해, 현지검증’ 등을 통해 인민대중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리고 ‘판결판정집행법(제3조)’의 경우 “국가는 판결, 판정 집행에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며 국민의 이익도 다같이 보호하도록 한다”<sup>87)</sup>고 하여 개인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사회주의체제의 법률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86) 위의 책, 79-80면.

87) “판결판정집행법”, 1998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보충.

## 제3장 북한의 사법기관과 위법행위 처리

### 제1절 북한의 사법기관과 유사사법 제도

#### 1. 북한의 사법기관과 상호관계

북한의 형사소송법상 형사처리 절차를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기관으로는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이하 보위부),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 검찰소, 재판소, 변호사 등이 있다.

#### 가. 사법기관

##### 1) 인민보안성

북한의 인민보안성은 남한의 경찰조직에 해당하며, 사회안전성(1962.10.23), 사회안전부(1972.12.27), 사회안전성(1998.9.5), 인민보안성(2000.4.4) 순으로 개칭되어 왔다. 인민보안성은 부대부문과 보안부문으로 양분화 되어 있고, 부대부문 근무자를 ‘경비대 군인’, 보안부문 근무자를 ‘보안원’으로 호칭한다.

인민보안성은 수사와 예심 그리고 교정시설인 교화소를 담당하고, 사회안전단 속법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한다. 중앙에 인민보안성, 각도·직할시에 보안국, 시·군·구역에 보안서, 리·동·노동자구 단위별로 보안소가 있다. 범죄자들의 형사처리 절차와 관련된 인민보안성에는 안전사업 1부 소속의 감찰지도국(1국), 수사국(4국), 예심국(6국)이, 안전사업 2부 산하의 교화국(3국)이, 과학기술부문 산하의 형사감정국(9국)이 있다. 그리고 도·직할시 보안국에는 감찰처, 수사처, 예심처가, 시·군·구역의 보안서에는 감찰과, 수사과, 예심과, 반탐과가 있다. 인민보안성은 일반범죄를 처리하는 반면, 국가안전보위부는 정치범죄를 담당하고 있다. 인민보안기관의 경제감찰 업무와 검찰소의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 업무는 서로 중복될 여지가 있다.

<표 3-1> 인민보안성 형사처리 관련부서의 업무와 편제

부서	담당 업무	편제	
안 전 사 업 1 부	감찰 지도 국 (1국)	· 인민보안성 본부 국·처 및 각 도·직할시 보안국 지도·통제와 업무 종합(前 종합지휘국 업무) * 2004년 4월 인민보안성 개편시 참모부서인 '종합지휘국'(1국)을 해편하면서, 동 업무를 이관 · 범죄정보 수집·적발, 사건조사 후 예심국에 인계, 각종 포고령 등 지시내용 전파 및 이행실태 감독 · 각종 '그루빠' 지도·감독, 산하 도·직할시 보안국에 감찰지도원 파견 등 감찰업무 지도·감독 · 공장·기업소·협동농장 등에서 발생하는 경제범죄 기획 수사 및 감시·감독 · 각종 사건·사고 발생건수, 구류장 구속인원, 체포건수 등 산하기관의 일일상황 종합	· 편제는 국장(중장), 부국장 2명(소장, 부장(대좌), 부부장(상좌), 책임부원(상좌), 부원(중좌) 등 대부분 김일성대학교 법학부 출신으로 구성 · 산하 부서는 경제감찰부, 일반감찰부, 과학기술 감찰부(1999년 신설) 등이 있음
	수사 국 (4국)	· 각종 일반범죄 사건 수사(범죄자 체포, 현장검증, 혈액·필적감정)와 도·직할시 보안국의 과학수사활동의 지도·감독 * 인민보안성 수사국은 중앙당에서 하달하는 '김정일 방침사건' 수사로 일반범죄사건에 투입할 인력부족으로 수사업무에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편제는 국장(소장), 부국장(대좌), 부장(상좌), 책임부원(상좌), 부원(중좌) 등으로 구성
	예심 국 (6국)	· 산하 도·직할시 보안국 예심업무 지도·감독 · 미해결 사건에 대한 수사 및 범죄자 체포 · 감찰·수사 부서에서 인계된 범죄 혐의자에 대해 심문을 통한 여죄 추궁, 범증 확보, 사건 검찰소 송치, 재판에 의한 형 확정시까지 구류장 설치운영·감독 * 예심은 보안국 감찰 및 수사 부서들의 유죄확정 증거자료와 물적 증거들에 대해 재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사건처리의 최고 전문가들이 활동	· 편제는 국장(중장), 부국장(소장), 부장(대좌), 책임부원과 상급예심원(상좌), 예심원과 부원(중좌) 등으로 구성
안 전 사 업 2 부	교화 국 (3국)	· 범죄자 수용 관리 · 북한 전지역의 교화소·노동교양소(노동단련대)·인민보안성 담당 관리소에 대한 업무 지도·통제·감독 · 사면·감형·기한전 출소 등 행형(行刑) 업무 수행 * 정치범·반국가사범을 수용하는 관리소(일명 정치범수용소)는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운영	· 편제는 국장(중장), 부국장(소장), 부장(대좌), 교화소장(상좌), 교양소장(상좌), 부소장(중좌), 관리지도원(대위편제), 계호원(하사관) 등으로 구성, 산하에 외화벌이 전담과인 원천동원과 운영
과 학 기 술 부 문	형사 감정 국 (9국)	· 인민보안성 수사국 및 산하 도·직할시 보안국에서 의뢰한 사건 증거자료(지문·혈액·정액·모발 등) 및 토지·기계·전기 등 각종 기술분야 감정업무 수행	· 편제는 국장(소장), 부국장(대좌), 부장(상좌), 부원(중좌) 등으로 구성, 안전기술국 지문관리부가 최근 형사감정국에 흡수된다는 설(說)이 있으나 그 결과는 미확인

### 가) 인민보안성의 기본임무<sup>88)</sup>

인민보안성은 ‘혁명의 수뇌부’로 일컬어지는 수령 옹호보위, 조선로동당과 북한정권의 보안사업 보위, 인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사회질서 유지 등의 매우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인민보안성은 보편적인 경찰업무인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치안질서의 유지기능 보다는 수령과 당을 ‘결사옹위보위’하는 것을 제1차적 임무로 하고 있다. 이는 북한권력의 핵심테제인 ‘수령-당(국가기관)-인민대중’의 ‘혁명적 수령관’에서 기인한 것이다.

1999년 9월 30일과 10월 1일 평양 봉화예술극장에서 진행된 ‘전국분주소장회의’에 조명록 차수(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가 전달한 축하문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그동안 사회안전원(현 인민보안원)들이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지니고 혁명의 수뇌부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지킨 데 대한 공로를 치하하며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으로 무장할 것을 최우선적으로 강조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안전사업은 일군들이 높은 당성과 혁명성, 창발성과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전투적으로 일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분주소장들을 비롯한 모든 사회안전원들이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를 충효일심으로 높이 모시고 혁명의 수뇌부의 안전을 백방으로 보장하는 수령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 자폭정신을 지닌 진짜배기 충신들로 튼튼히 준비해 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sup>89)</sup>

### 나) 인민보안성의 주요임무

#### (1) 수령의 옹호보위사업

88)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23-29면, 전현준은 인민보안성(사회안전성) 출신 탈북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면담한 탈북자들의 가명은 황정수(1997년 탈북), 김영수(1999년 탈북), 김정호(1988년 탈북), 이상호(1998년 탈북), 심상영(1999년 탈북) 등이다.

89) “전국분주소장회의 및 국가표창수여식 진행”, <로동신문>, 1999.10.2, 3면.

국가수반인 김정일 수령(혁명 수뇌부) 옹호보위사업은 인민보안성의 가장 핵심적 임무이며 절대 과업이다. 때문에 반국가·반혁명행위<sup>90)</sup> 감시업무를 최우선적으로 하여 김정일 체제와 정권을 수호하고 있다. 다만 인민보안성은 반국가적 행위를 감시하며, 적발된 반국가범죄자에 대한 간단한 조사를 마친 후 바로 국가안전보위부로 이첩한다. 이들 사범들의 수사 및 사법처리는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인민보안성은 김정일의 경호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호위사령부와 국가안전보위부를 지원하여 수령 호위사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북한은 김정일이 참가하는 행사를 ‘1호 행사’라고 하는데, 호위업무는 호위사령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무력부 보위국, 인민보안성 등 전 무력기관이 동원되고 있다. 인민보안성은 행사 참가자 신원조사 및 검토, 김정일 이동시 교통신호 조작, 행사장 주변 도로경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도 인민보안성은 김일성사상 연구실, 김일성 선물사적관, 김정일 온실 등을 직접 운영관리하며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업적을 선전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인민보안성은 매년 2월 16일 김정일 생일에 즈음하여 김정일 우상화 사업을 개최하고 있다.

## (2) 당과 국가의 보안사업 총괄

인민보안성은 당과 국가 노선을 옹호관철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의 기밀문서 보관관리와 운반(문서수발) 등 국가보안사업을 총괄하고 있다. 이 업무는 인민보안성 총무국 직할기관인 기요(비밀)연락소가 담당한다. 인민보안성 총무국에서는

90) 북한 형법에 규정된 반국가범죄(북한 형법 59조-66조)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 반국가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 행위’(제59조 국가전복음모죄), ‘살인, 납치, 상해 등 테러행위’(제60조 테로죄), ‘선전, 선동행위’(제61조 반국가 선전, 선동죄), ‘공화국 공민이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도망치거나 투항, 변절하여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제62조 조국반역죄), ‘비밀을 탐지·수집·제공하는 행위’(제63조 간첩죄), ‘반국가목적하의 파괴, 암해행위’(제64조 파괴암해죄) 등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대중용)』, 796-787면)

국가기밀문서 우송을 위한 통행증, 암호문 제작, 변신문(해독문)을 제작하고,<sup>91)</sup> 기요연락소에서는 기밀문서 수발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북한 자강도 만포시 소재 인민보안성 기요문서(지하갱도에 위치)에는 국가 중요 기요문서가 보관되어 있다.

인민보안성의 경비훈련국은 도 및 시(市)급 당청사 등 국가 주요시설물에 대한 경비와 당간부, 내각 간부들의 사택 등 주요 인사들의 호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5처(반항공처)에서는 전시주민 및 공장기업소 소개 그리고 관리업무와 평시에 전시대비의 주민대피 훈련, 반항공(反航空)·반화학훈련 등을 수행한다.

인민보안성 경제감찰국은 공장기업소나 협동농장 등에서 시행하는 국가경제정책 수행여부를 감시·감독하고, 1처(외사처)는 해외 주재 대사관에 보안원을 파견하여 해외주재 북한인을 감시하는 안전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 중앙은행 발행 공용화폐를 제작하는 임무도 수행하고 있다.

### (3) 치안질서 유지

인민보안원성 치안질서 유지라는 보편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극심한 경제난과 외부사조의 유입으로 각종 범죄 등 사회일탈행위가 급증됨에 따라 인민보안원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인민보안성은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서 산하 도·직할시 인민보안국, 시·군·구역 인민보안서, 리·동 인민보안소 등 지방조직을 통해 각종 범죄예방 및 수사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난 심화로 자본주의 성향의 범죄가 증가되자, 국가안전보위부 등과 합동으로 ‘비사회주의적 요소’를 적발하기 위한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인민보안성은 본부 호안국 및 산하 지방조직을 통해 교통질서 유지·단속, 교통사고 처리, 운전면허자격 심사와 면허증 발급, 차량등록, 차량번호판 제작·관리업

91) 변신원은 통신암호 해독 기술자를 의미한다.

무를 담당한다. 이와 함께 화약, 전기, 기계분야의 폭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화약류취급 자격증 및 관리설비 승인 등 폭발물을 검열, 단속, 조사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 (4) 주민의 사상동향 감시

인민보안성은 체제수호와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주민들의 사상동향 감시와 함께 주민성분 분류, 주민등록사업 관리, 공민증 발급, 여행증 발급, 주민들의 거주지 변동사항과 퇴거·전출 등을 직접 통제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인민보안성 산하 지방조직인 시·군 인민보안서의 주민등록과는 매 2년마다 인구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조사된 주민 개개인에 대한 성분 분류작업을 병행한다. 또한 주민등록과는 공민등록(출생·사망신고) 관리와 17세 이상 전 주민에 대한 공민증 발급 업무를 담당한다. 인민보안성의 주민 사상동향 감시에 대해서는 제4장 제2절 2항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 (5) 특수 임무 수행

인민보안성은 일반적인 업무 외에도 정치사업, 주민요해 사업, 교화사업, 소방사업, 지진관리, 지하철 운영관리, 자체 외화벌이사업, 주소안내 등의 특수 업무를 수행한다.

첫째, 인민보안성은 사회주의 경찰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는 정치사업(政治事業)<sup>92)</sup>과 주민요해사업(住民了解事業), 교화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4장 제2절 2항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둘째, 인민보안성은 소방대를 통해 화재예방과 진화 등의 소방업무와 산하에 지진연구소를 운영하며 지진관측과 예고 및 발생원인 조사 등의 업무도 담당하

92) 정치사업이란 공산혁명의 목적과 의의, 그 수행방법과 전망에 대해 당원과 군중들에게 인식시켜 이른바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있다. 소방대는 인민보안성 호안국(護安局)에서 관할한다. 직할시·도 인민보안국과 시·군·구역 인민보안서의 경우 소방대에서 담당한다.

셋째, 인민보안성은 국토관리 보존 업무를 담당한다. 인민보안성 직속 독립기관인 국토총국(國土總局)에서 관할하며, 직할시·도의 경우 해당 인민보안국 국토관리처에서, 시·군·구역 인민보안서의 경우 국토과에서 담당한다. 주요 업무는 고속도로 및 국가도로 관리, 강과 하천의 관리·단속, 산림보호, 수자원 보호 등의 환경 및 국토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넷째, 인민보안성은 소속 부대(7총국, 8총국)와 산하 지방조직을 통해 국가의 주요 시설물을 직접 건설하며 도로를 관리하는 공병업무를 수행한다. 산하 독립부대인 7총국(일명 공병총국)은 김일성·김정일 특각(별장) 등 국가 주요 시설물이나 비밀기지를 직접 건설하는 특별 공병업무를 담당한다. 이와 함께 산하 8총국(일명 도로총국)은 주요도로를 건설·보수하는 도로 관리업무도 병행한다.

다섯째, 인민보안성 산하 철도안전국은 여객열차의 안전과 여행 질서를 단속한다. 지하철도관리국은 평양시 지하철의 안전운행 등 지하철도 운영과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여섯째, 인민보안성은 외화벌이 업무도 담당한다. 무역국(안전사업 2부)은 산하 외화벌이 회사와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sup>93)</sup> 1998년 3월부터는 ‘주소안내소’를 설치하여 주민실종자와 ‘이산가족’ 찾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일곱째, 인민보안성은 중앙은행 발행의 공용화폐를 인쇄, 제작한다. 인민보안성 직속의 ‘화폐공장’(평안남도 평성시 배산동)에서 지폐와 동전 그리고 외화바꾼돈표를 직접 제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덟째, 인민보안성은 주민들의 거주이동 통제업무를 수행하는데, 이를 ‘2업무’라고 한다. 1966년부터 17세 이상의 북한주민들이 타 지역을 방문하고자할

93) 외화벌이 회사인 대외운송사업소, 조일요업회사, 명창지사, 외산선박회사, 룡산회사(평양, 남포, 신의주, 원산, 함흥, 청진, 라진)를 비롯하여 지사로 중국로력합영, 단동로력회사, 단동평양지사, 단동고려원식당, 대련화산선박 등이 있다.

때는 의무적으로 여행증명서를 시·군·구역 인민보안서 2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한다. 2부는 시·군·구역 인민보안서 소속이나, 업무의 편의상 해당 군(郡) 사무소(인민위원회)에 독립 사무실을 설치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다) 인민보안성의 특성

인민보안성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찰제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sup>94)</sup>

첫째, 인민보안성은 강력한 중앙집권적 지휘통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인민보안성 본부(정치국 간부부)는 보안원의 선발, 교육훈련, 승진, 감독, 해임 등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민보안성의 지휘와 명령은 절대적이다.<sup>95)</sup> 보안원은 출신성분과 정치사상성이 양호한 자를 선발하기 때문에 명령체계가 일사분란하고 모든 지시상황이 신속히 처리된다. 그러나 인민보안성은 오로지 수령과 당의 명령을 옹호 관철해야 하기 때문에 치안체계가 경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정책수립 등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

둘째, 인민보안성은 명목상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령체제 유지를 위한 주민 사찰기관이다.

셋째, 인민보안성은 군대식 조직체계를 활용해 군대식의 계급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보안원은 청색바탕에 노란색 계급장으로, 인민군은 붉은색 바탕에 노란색 계급장을 착용하여 구별하고 있다.

넷째, 인민보안성은 부수적 업무를 광범위하게 취급하고 있다. 인민보안성은 그 업무범위에서 수사와 범죄 예방의 경찰업무 뿐만 아니라 호적정리, 소방, 출입국관리, 외국인거주관리, 변경지대 경비, 철도 등 광의의 경찰업무를 수행하고

94) 통일교육원, 『2001 북한이해』 (서울: 통일교육원, 2001), 56면.

95) 이재현, 『북한의 치안행정실태와 강약점 분석』 (서울: 국토통일원, 1986), 55면.

있다. 이외에도 인민보안성은 비밀유지를 위해서 국가 기간산업에서 건설까지도 직접 담당하고 있다.<sup>96)</sup>

다섯째, 북한경찰의 검찰과의 관계에서 수사의 주체는 경찰(보안원)이 된다. 다만 검찰은 경찰을 지휘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북한에서 수사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의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예심에 검사가 물론 직접 참여할 수 있다.<sup>97)</sup> 그러나 검사는 예심원이 작성한 기소장에 대해 승인여부만 결정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직접수사는 경찰이 주요 업무로 하고 다만 검사는 수시 참여적 역할보다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통제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인민보안성은 사회주의 경찰의 특징인 정치사상사업을 비롯하여 주민성분조사, 교화사업 등 주민사찰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 2) 국가안전보위부<sup>98)</sup>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국가정보원에 해당, 약칭 보위부)의 창설에 대한 공식 문건이나 기록을 찾기 어렵다. 다만 1945년 11월 19일 김일성이 평안남도 남포시 소재의 보안간부훈련소를 시찰했다고 하여 이날을 보위부창설일로 정하고 있다. 북한은 혼란스런 해방공간에서 ‘친일주구와 민족반역자들’을 숙청하고 사회 질서를 정비할 목적으로 조직했던 보안간부 훈련소들이 재판소·검찰소·인민보안성·국가안전보위부의 전신이 되고 있다.

96) 남궁 승필, “남북한 통합경찰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 박사논문, 2003, 62-64면 재경리.

97) 인민보안성 안전사업 1부 산하에 검찰국(20국)을 두고 있는데, 검찰국은 인민보안성 보안원 대상 범죄수사 및 준수여부와 감시 등을 담당하고 있다. 2002년 10월 이전에는 중앙검찰소 3국에서 동업무를 담당하였으나 국가안전보위부 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민보안성에도 독립부서로 신편하였다. 검찰국 산하에 수사부, 예심부, 검사부 등 3개부서가 있으며, 각 부서에는 상급수사원, 수사원, 상급예심원, 예심원, 책임 검사, 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98) 국가정보원,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현황”(『북한동향』 2005.12.2-2006.1.13)을 참조하였음.

국가안전보위부는 8.15해방 이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산하 안전국의 정보 담당 부서로 출발하여 주로 ‘친일주구와 반동세력’을 숙청·진압하고 사회치안 유지를 담당하였다. 1948년 2월 8일 인민군이 창설된 직후, 내무성(현 인민보안성)의 정보국으로 북한 내의 반동세력 진압 및 체제안정에 주력하였다. 1962년부터 1973년 4월까지의 내무성의 후신인 사회안전성의 정치보위국으로 존재하면서 간첩과 반체제인사 색출을 담당하는 동시에 대남공작을 주도하였다. 1973년 2월 1일 김일성이 “사회안전부는 치안사업·질서유지만 담당하고 간첩잡이 업무만 전문으로 하는 국가정치보위부를 따로 내야 합니다. 국가정치보위부는 당의 1개 부서입니다”라고 지시함에 따라서 1973년 5월 ‘정치보위국’을 분리하여 ‘국가정치보위부’로 승격시켰다.

1980년대 초 김정일이 “국가정치보위부가 당의 영도를 성실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당위에 군림한다. 당의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왜곡집행하여 애매한 사람들을 잡아 죽인다”고 하여 중앙당의 집중검열을 받고 국가정치보위부를 국가보위부로 개칭했다. 1984년 11월 24일경 김정일이 국가보위부에 “당의 군중노선과 계급노선을 철저히 관철하라”고 지시한 후 주민들의 일반 사상동향을 당기관에서 장악하고 국가보위부는 반탐활동 등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토록 그 역할을 제한하기도 했다. 1992년 8월 한중수교에 따라 남한을 견제하고 국가안전의 확보를 목적으로 1993년부터 국가안전보위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구를 개편하는 등 일련의 변화를 보였다. 이 시기 국경봉쇄 부서와 해외 반탐정국의 모략 부서가 신설되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김정일 직속으로 25국·1실·1총국과 본부요원 8천여명을 포함하여 시·도 지도부 요원 등 5만여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직 체계로는 부장아래 수명의 부부장이 있고 산하의 행정체계에 따라 도(직할시)·시(군·구역) 각 기관·기업소별로 보위기관이 조직되어 있으며, 지방의 리(동), 군부대 대대·중대단위까지 보위부원을 파견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인민보안성과 더불어 대주민 사찰기관으로 김부자 비방사건

수사 및 정치범수용소 관리, 반국가 행위자 및 대간첩수사, 공항·항만 등의 출입 통제 및 수출입품 검사와 밀수 단속, 해외정보 수집·공작, 호위사령부의 협조 아래 김정일을 비롯한 고위간부 호위 등의 임무를 맡고 있다. 특히 9국 인민보안성 담당국은 인민보안성 요원들의 사상동향을 감시하고 있다. 국가안전보위부장은 이진수의 사망(1987.8) 이후 김영룡이 대행하다 1998년 3월 외화별이 관련 수괴혐의로 숙청된 후, 후임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평양기술대학(국가안전보위부 정치대학)은 국가안전보위부 요원 양성과정 교육기관으로 보위부장이 대학장을 겸임하고 있다. 1973년 5월 국가정치보위부가 사회안전성에서 독립하던 시기 사회안전성 정치대학에서 보위부 정치대학으로 분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대학은 남포시 강서구역에서 1996년경 평양시 형제산구역으로 이전한 후 1998년경 청사건설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과정은 6개월에서 5년 과정까지 있다. 6개월 과정은 현직 요원들에 대한 재교육과정으로 시·군보위부 과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한다. 2년 과정은 일반 사회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며, 3년 과정은 35세 이하의 현직 지도원급 요원들과 신입 지도원을 대상으로 한다. 5년 과정은 해외에 파견할 요원들과 대외사업 분야에서 종사할 요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교육과정 이수 후 10-15명 단위로 3개월간 함북 회령에서 종합실습을 한다. 실습내용은 탈북자 색출과 송환활동 지원, 위장 탈북자 양성 및 한국인 대상 정보 수집과 포섭 등의 교육을 한다.

교육 내용은 정보사업, 수사의 전문교육, 정치·사회·과학·외국어 등 기초교육과 사격·운전·무술 등으로 되어 있다. 졸업 요원들은 3개월간의 현지 실습기간을 거친 후 보위부간부부에서 간부 선발·배치 원칙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출신 지역이 아닌 타지방으로 배치된다.

‘1개월 강습소’는 평양시 삼석구역 성문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설립 목적은 현직 보위부 요원들을 대상으로 정보실무 학습, 시기별 국가정책 방향 하달 등을 하고 있다. 운영 초기에는 강습기간을 1개월로 진행하였으나, 그 후 여러 사정

으로 현재는 강습시간을 13일로 하고 있으며, 현직요원들은 무조건 1년에 1회 '1개월 강습소'에서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다.

소집교육은 평양 또는 지역별로 매년 1월에 실시하고 있다. 평양 소집교육은 1998년 이후 전무하나 간부들이 교육 관련 해외출장을 선호하는 관계로 지역회의는 지속되고 있다. 해외파 소집교육시에는 해외반탐정국장, 정치일꾼 1명, 담당부서 관계자 1명이 출장을 간다. 지역회의는 유럽(불가리아), 아프리카(카이로), 아시아(말레이시아), 중국(북경, 심양, 단둥, 연길), 러시아(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톡, 나호드카) 등에서 개최된다.

### 3)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

인민군 보위사령부는 군의 반혁명음모를 감시하는 부대이다. 국가안전보위부가 주민을 감시하는 정보기관이라면 인민군 보위사령부는 인민군을 감시하는 군 정보기관이다. 다시 말해 보위사령부는 군을 대상으로 반체제 인물들을 색출, 제거하는 활동을 기본 임무로 하고 있으며, 계급적 토대가 나쁘고 사상적으로 불건전하다고 판단되는 인민군을 감시하고 숙청한다.

보위사령부는 김정일이 군부대를 방문할 때 경호하는 일도 담당한다. 군관(장교)과 장령(장군)들이 사용하는 전화를 도청하고 이들의 자녀가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갈 때 필요한 주민등록 문건을 발급한다. 군사보안을 위해 군인과 군인가족의 주민등록업무는 인민보안성에서 관할하지 않고 보위사령부에서 담당한다. 중·러 국경지역 및 휴전선과 인접한 전연지역(전방지역)에서는 군인과 민간인의 이동상황을 점검하며 군 복무 기피자를 색출하는 일도 한다.

김일성은 1948년 인민군을 창설할 때부터 반탐(反探)기관인 안전기관을 군에 조직하였다. 6.25 이후 안전기관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1956년과 1968년 군사쿠데타를 적발하고 민족보위상 김창봉, 대남총책 허봉학과 같은 '반체제 분자들을 숙청'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주도했다. 1968년 국가안전보위부(당시 국가보위

부)의 직접 통제를 받고 있던 인민군 보위기관에서 분리하여 ‘인민군정치안전국’으로 독립되었다. 인민군정치안전국은 1970년대 중반 ‘인민군보위국’으로 개칭되고, 1995년 12월 국가안전보위부 산하 국경경비대를 흡수하면서 1996년 보위사령부로 확대, 개편되었다.

보위사령부 최고 책임자로는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혁명 1세대인 태병렬 중장(1997년 2월 사망)이,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중엽까지는 한영옥 소장(전 군사정전위원회 수석위원, 1988년 사망)이, 1980년대 중반에서 말까지는 이남선 중장(전 5군단 보위부장)이, 1989년부터 2000년까지는 원응희 대장(전 공군 및 반항공사령부 정치위원)이 임명되었다.

보위사령부의 조직은 11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부 조직계획부는 전체업무의 통제와 군단과 사단 이하 각 보위부대로 하달하는 지휘 문건 발송, 2부 수사부는 간첩과 반당·반혁명 분자 색출, 3부 예심부는 2부가 색출한 범죄자를 전문적으로 심문, 4부 감찰부는 탈영과 군사 물자 절취·횡령 등 군 관련 범죄 담당, 5부 사건종합부는 2·3·4·6부가 다루는 사건을 분석·평가, 6부 미행부는 오랫동안 행방이 묘연한 범죄자 추적, 7부 기술부는 장령들의 집과 자택 그리고 주요 호텔의 전화도청, 8·9·10부는 군수공장과 인민무력부 내의 특수기관을 담당하고 군관들에 대한 주민등록 업무 관장, 11부 국경검열초소는 외국에 파견되는 무관과 인민무력부 산하 외화별이 일꾼의 감시 등을 담당한다.

이밖에 간부부는 보위 군관을 선발하고 임명하는 일을 맡는다. 정치부는 인민군 보위사령부원들의 사상을 통제하는 곳으로, 보위사령부 속의 보위사령부라고 할 수가 있다. 인민군보위사령부 직할 기관으로는 과거 국가안전보위부 휘하에 있던 3개 국경 경비 여단과 김정일이 군부대를 방문할 때 경호를 맡는 경호대가 있다. 이외의 직속기관에는 신의주를 비롯한 국경 지역에 있는 국경 검열 초소 60여 개와 군인들의 편지를 검열하는 검열대(1개 대대의 여군으로 구성) 그리고 보위부대원을 양성하는 보위대학 등이 있다. 모든 북한군 부대에는 보위군관과 비밀 정보원이 있다. 군단과 사단에는 군단 보위부와 사단 보위부가 있어, 군단

장과 사단장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 연대와 대대에는 보위 군관이 1~3명씩 파견된다. 군사분계선 내에 근무하는 민경중대원들의 월남을 막기 위해 소대와 중대 내에도 보위군관을 배치하고 있다.

보인민군 위군관 선발은 비밀정보원 출신 사병을 대상으로 엄격한 신원 조사를 거쳐 이루어진다. 이들은 인민군 보위대학(남포직할시 강서구역)에서 4년간 교육을 받은 후 중위나 상위 계급으로 보위군관에 임명된다. 보위군관과 비밀정보원들은 6차 원칙에 따라 정보보고서를 작성하는 훈련을 받기 때문에, 이들이 현장에 투입되면 1년 이상 시간을 가지고 요주인물의 일거수일투족과 접촉자를 감시해 사건화 한다. 보위대학은 보위부원들에 대한 보수 교육도 담당하게 되는데, 대대를 담당하는 보위군관은 보위대학 재직반에서 2년간의 교육을 받아야 연대이상 부대의 보위군관이 될 수 있다. 보위사령부와 각 군단 보위부 책임자(중장·소장)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위대학의 2년제 연구반 과정을 거쳐야 한다.

#### 4) 검찰소

과거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재판소를 검찰소 앞에 규정하였으나, 1998년 개정 헌법을 통해 검찰소를 재판소보다 앞서 나열하여 검찰소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동 헌법은 검찰소의 구성, 임무 및 내부관계 등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고 있다. 헌법에 검찰과 관련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에서 검찰기관이 갖는 특수성 때문이다. 북한의 검찰은 사회주의적 준법성 확립을 위한 사법감시와 더불어 체제수호를 담당하는 통치기구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sup>99)</sup>

1998년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에 의하면 북한의 검찰기관은 재판기관과 동일하게 중앙검찰소를 정점으로 그 밑에 도(직할시)검찰소, 시(구역)·군 검찰소 및 특

9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검찰감시법(1998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보충)” 제2조에는 “검찰기관은 감시활동을 통하여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온갖 범죄적 및 위법적 침해로부터 튼튼히 보위하며 국가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제도와 질서를 세워 조선로동당의 정책관철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별검찰소를 두고 있다(제147조). 중앙검찰소는 검찰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며, 하급 검찰소가 상급검찰소에 절대 복종하는 ‘검찰동일체제’이다(제151조). 검찰동일체제는 사회주의 준법성을 보장하려는 검찰업무 수행의 확실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고, 당의 사업정책과 법령해석의 통일성 그리고 당의 독재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검찰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이 있고 그 산하에 일반감시부, 예심감시부, 재판감시부, 특별감시부 등의 부서가 있다. 중앙검찰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의 임기와 같고(헌법 제148조), 임명과 해임은 최고인민회의가 한다(제91조 11항). 각급 검찰소 검사의 임명과 해임은 중앙검찰소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149조). 중앙검찰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책임을 진다(제152조).

1998년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에 규정된 검찰소의 임무(제150조)는 첫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한다. 둘째, 국가 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의 법령, 결정,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최고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셋째, 범죄자를 비롯한 범위반자를 적발하고 법적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검찰감시법”(1998)이라는 단행법령을 제정하여 헌법상의 감시 임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검찰감시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집행하는가를 감시하는 국가의 권력적 활동”(검찰감시법 제1조)으로, “감시활동을 통하여 혁명의 전취물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온갖 범죄적 및 위법적 침해로부터 튼튼히 보위하며 국가사회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제도와 질서를 세워 조선로동당의 정책관철을 법적으로 보장”(검찰감시법 제2조)하는데 있다. 결국 검찰감시법은 당의 노선과 정책을 전국 곳곳에 정확하게 관철되도록 하고 혁명과 건설의

성과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판단된다.<sup>100)</sup>

<표 3-2> 북한의 검찰소와 재판소



\* 자료: 통일부, “권력기구도”, 2006.12.

북한의 검찰은 우리의 형사소송법상의 검사와 같이 범죄수사와 공조 제기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북한 검사는 ‘계급노선과 균중노선’에 입각하여 임무를 수행<sup>101)</sup>하고, “국가의 믿음직한 정치적 보위자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의 참다운 옹호자”(제7조)로서 ‘사회주의적 준법성의 유일성 확립’을 위한 사법감시 기능<sup>102)</sup>과 ‘사회안전기관사업에 대한 준법감시’<sup>103)</sup>(검찰감시법 제9조)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100) 김동한, “북한 사법관련법의 동향과 평가”(『분단 60년: 북한법의 어제와 오늘』, 북한법연구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5); 김수암,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 실태, 55면 재인용.

101) ‘검찰감시법’(1998년) 제4조에서 “검찰기관은 감시활동에서 계급적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광범한 균중에 의거하여 사업한다”라 명시하고 있다.

102) ‘검찰감시법’(1998년) 제12조에서 “검사는 확정된 판결, 판정, 재결, 결정이 제때에 정확히 집행되는가를 감시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103) ‘검찰감시법’(1998년) 제9조에서는 “검사는 사회안전기관사업에 대한 준법감시를 하여야 한다. 사회안전기관사업에 대한 준법감시는 따로 정한 법규에 따라 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 5) 재판소

북한의 재판기관은 조선로동당의 사법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조선로동당에 예속되어 있어서 자율적이며 독립적인 사법적 판단은 기대하기 어렵다. 재판소는 중앙재판소를 정점으로 그 밑에 도(직할시)재판소와 지방인민재판소를 두고 있다. 이외에 특별재판소로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가 있다. 중앙재판소 소장의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헌법 제154조).

재판은 인민참심원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재판은 3급(인민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중앙재판소)심제를 원칙으로 판사 1명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되어 수행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하여 할 수 있다.(헌법 제157조)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 회의에서 선거(재판구성법 제5조)<sup>104</sup>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민참심원은 1년에 14일간 재판심리에 참가(재판구성법 제12조)하며, 재판심리에 참가한 기간 동안의 생활비, 보수, 여비는 소속 기관과 단체에서 지급하도록 한다(재판구성법 제13조).

최고인민회의에서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하고 소환한다. 중앙재판소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된 소장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헌법 제91·110조), 북한의 최고재판기관으로서 하부 기관의 재판사업을 감독하고 사법행정사업을 지도하고 감독한다(헌법 제161조). 중앙재판소는 확정된 판결과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의 심리와 도재판소, 군사재판소 및 철도재판소의 상소·항의사건의 심리를 수행한다. 중앙재판소는 자기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와 그 휴회 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앞에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62조).

104) 1998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보충'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구성법' 제5조에서는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의 판사는 중앙재판소에서 임명하고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도(직할시)재판소는 도(직할시)인민회의에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는데, 이들의 임기는 4년이다. 도(직할시)재판소는 관할지역 내 인민재판소의 재판을 감독하며, 제1심 판결과 판정에 대한 상소와 항의사건을 재판한다. 인민재판소는 최하급 재판기관으로서 시, 군인민회의에서 선출된 판사와 인민참심원으로 구성되며, 수 개의 시, 군을 모은 단위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다. 인민재판소는 일반범죄사건 및 민사사건을 취급하며, 중재, 법령해설, 자료폭로, 법률상담 등 군중정치사업을 수행한다.<sup>105)</sup>

특별재판소인 군사재판소와 철도재판소의 소장과 판사는 중앙재판소에서 임면(任免)한다. 군사재판소는 인민군대와 사회안전기관에,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에 조직되어 있다. 특별재판소의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나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헌법 제155조). 군사재판소는 군 및 사회안전기관 소속 인사의 범죄를,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 및 철도운수사업 관련 범죄를 각각 취급한다. 특별재판소는 중앙재판소로부터 재판사업상의 감독과 사업행정상의 지도를 받는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6조(1998)에는 재판소의 임무로 첫째, 재판활동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 인민의 헌법적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한다. 둘째,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정확히 지키고 계급적원썩들과 온갖 법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 셋째, 재산에 대한 판결, 판정을 집행하며 공증사업을 한다.

재판소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 1976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9호’로 제정된 재판소구성법에서는 ‘조선로동당의 정치적 보위자로서 사법정책을 집행’(제1조)<sup>106)</sup>하고 ‘법을 노동 계급적 입장에 적용’(제6조)<sup>107)</sup>하며, ‘판사와 인민

105)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팀, 『2006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49면.

106) 1976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9호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에서는 “조선로동당 정치적 보위자로서 당의 사법정책을 집행하며 노동자, 농민, 병사,

참심원은 주체사상으로 무장하고 조선노동당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몸 받쳐 투쟁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만 될 수 있다'(제15조)<sup>108)</sup>라는 등의 정치적 성향의 조항들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었으나, 1998년 개정법<sup>109)</sup>에서는 이러한 구법의 정치적 성향의 조항들이 전면 삭제되었다. 그러나 1998년 개정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56조 재판소의 임무에서 "계급적원썬들과 온갖 범위반자들을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여전히 계급적 원칙은 존속하고 있다.

## 6) 변호사

북한 역시 민주주의 사회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리 관련 당사자로서 변호사가 있다. 북한은 1948년 내각 결정 제59로 '변호사에 관한 규정'(전문 3장 20조 부칙)에 따라 변호사 제도를 유지해 왔으나, 1993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변호사법을 채택하였다.

1998년 개정 사회주의헌법 제158조에서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고 하여 변호권을 명시한 후, 1993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변호사법"(이하 변호사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변호제도를 체계화하고, 형사소송법에서 구체적인 임무를 규정하였다.<sup>110)</sup> 변호사법 제20조에 따르면 변호사의 자격을 '법률전문가의

근로인테리의 리익을 법적으로 옹호하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무기"(제1조), "맑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 지침"(제3조), "계급적 원썬들과 온갖 범위반자들을 반대하며 적극 투쟁토록 함으로써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역사적 위업의 수행에 이바지"(제4조)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107) 1976년 제정된 재판소구성법에서는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하여 법을 노동계급적 입장"(제6조)에 적용해야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108) 1976년 제정된 재판소구성법 제15조에 의하면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선거권을 가진 공화국 공민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조선노동당의 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몸 받쳐 투쟁하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만이 될 수 있으며, 지주, 부농, 예술자본가, 반동관료배들과 제국주의 통치 밑에서 판사 또는 검사를 한자는 판사, 인민참심원으로 될 수 없도록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109) 1998년 7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2호로 수정보충'된 이후 1998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보충' 되었다.

110)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변호사법"을 1993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3호'로 채택하였다.

자격을 가진 자’, ‘법무문에서 5년 이상 일하던 자’,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단기 법률교육을 받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 사회주의헌법, 변호사법, 형사소송법 등에 나타난 변호사 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있다.

첫째, 북한의 변호사 역시 피심자와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 “변호사는 우리 당 사업정책에 의거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에게 법률상의 방조를 주며 재판소의 활동을 도와줌으로써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실현에 이바지한다”<sup>111)</sup>고 하여 피소자를 변호하기 보다는<sup>112)</sup> 당 사업 정책에 의거하여 프로레타리아독재의 실현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1998년 개정된 사회주의헌법(제158조)과 1993년 제정된 변호사법(제9조 5항)에서는 민주주의 사회와 같이 ‘피심자와 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을 인정하고 있다.

둘째, 2004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은 피심자, 피소자의 법적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 검사 또는 재판소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제 121 조)고 하여 변호인이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셋째, 북한 변호사법 제6조에서는 변호사활동의 독자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제8조에서는 ‘해당 변호사회의 지도 밑에 활동’하도록 하여 배치되는 면이 있다.

넷째, 북한의 각급 변호사위원회는 하급 위원회와 변호사들의 활동을 일상적으로 지도 통제(변호사법 제30조 8항)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변호사 개개인이 아니라 변호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이다.<sup>113)</sup>

111) 사회과학출판사 어문편집부, 『조선문화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원 어문학연구소, 1973), 424면

112) 북한은 변호사를 “당 정책의 선전자로서 재판심리과정에 당 사업정책의 정당성을 인민들에게 옹계 인식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당 정책을 옹호하여 투쟁”하여야 하는 지위로 인식하는 한편, 변호사는 “피소자가 범한 죄의 엄중성과 함께 그가 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와 원인을 깊이 룬중함으로써 피소자로 하여금 조국과 인민 앞에 진 죄과의 엄중성을 똑똑히 인식하고 깊이 뉘우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변호인은 피소자의 대리자가 아니며 피소자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서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리재도, 『형사소송법학』,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87, 76, 207면; 김수암,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 실태』, 59면 재인용)

113) 북한 변호사법(1993)은 변호사위원회의 수행 임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0조 각급

다섯째, 형사소송법 제276조에서는 피심자나 피소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가 없이도 재판심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사법기관간의 상호관계<sup>114)</sup>

북한의 형사처리는 수사, 예심, 기소, 재판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이러한 단계별 형사절차에 따라 담당기관을 규정하고 있다. 즉, 수사 단계는 해당기관의 수사원이나 필요시 검사가 담당한다. 예심은 인민보안원이나 검찰, 인민무력기관의 예심원 등이 하고, 검사는 기소를 담당하게 한다. 그리고 형벌의 적용은 재판소의 판결에 따른다. 이외 검사는 수사, 예심, 재판에 대한 감시업무를 수행한다(검찰감시법 10-12조).

<표 3-3> 형사처리 관할기관

구분	관할 기관	1999년과의 비교
수사	· 해당기관의 수사원 · 필요시 검사	· 사회안전성, 국가안전보위부 기관의 수사일군 · 필요시 검사
예심	· 인민보안원, 검찰, 국가안전보위, 인민무력기관의 예심원	· 인민보안, 검찰, 국가안전보위 기관의 예심원
기소	· 검사	· 검사
재판	· 재판소 · 형벌의 적용은 재판소 판결에 의거	· 재판소 · 형벌 적용은 재판소 판결에 의거
감시	· 수사, 예심, 재판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담당	

변호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변호사들에게 국가의 법과 규정을 제때에 알려 주고 그들이 인민의 충실한 복무자로 활동하도록 교양한다. 2. 법률상 방조를 요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청을 접수하고 사업분담을 조직한다. 3. 변호사들의 우수한 사업경험을 일반화하며 그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조직한다. 4. 아래 위원회와 변호사들의 활동을 일상적으로 지도통제한다. 5. 변호사들의 사업조건을 보장하며 변호사 보수를 받는다”

114) 김수암,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 실태』, 60-66면 재정리.

### 1) 범죄사건의 관할기관

북한은 정치범죄와 일반범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담당 형사처리 기관도 다르다.

#### 가) 수사관할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자기 관할지역 안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일반수사와 특별수사로 구분하여 담당 수사원이 수사한다.

첫째, 일반수사에 대한 관할 기관이다. 정치범죄(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의 수사는 안전보위기관의 수사원이 담당하고,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인민보안기관의 수사원이,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검찰기관이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122조)

검찰감시법에서 “검사는 감시과정에 적발한 위법행위가 일반범죄사건일 경우 그것을 예심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반국가범죄사건은 해당 예심기관에 넘겨야 한다”(제35조)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특별수사기관의 관할이다.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과 철도운수사업을 침해한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철도인민보안기관의 수사원이, 철도부문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철도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철도검찰기관이 담당한다. 군인, 인민보안원과 군사기관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의 수사는 군사검찰기관이 한다.(형사소송법 123조)

#### 나) 예심관할

형사소송법상 예심원은 자기의 관할지역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예심한다. 필

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 밑에 관할지역의 예심원에게 알리고 범죄자가 사는 곳 또는 범죄사건을 적발한 지역을 관할하는 예심원이 예심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24조).

<표 3-4> 형사소송법상 범죄사건 담당 관할기관

구분		범죄 사건	담당 기관
수사 (수사원)	일반 수사 (형사소송법 제122조)	·일반범죄 사건	·인민보안기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	·안전보위기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범죄 사건	·검찰기관
	특별 수사 (형사소송법 제123조)	·철도운수부분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 사건	·철도인민보안기관
		·철도부문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철도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범죄사건	·철도 검찰기관
	·군인, 인민보안원과 군사기관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	·군사검찰기관	
예심 (예심원)	일반 예심 (형사소송법 제124조)	·일반범죄사건	·인민보안기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	·안전보위기관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범죄 사건	·검찰기관
	특별 예심 (형사소송법 제125조)	·군사상 범죄사건 ·군대안의 일반범죄사건 ·군인, 인민보안원, 군사기관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	·군사검찰기관
		·철도운수부분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 사건 ·철도운수사업을 침해한 일반범죄사건	·철도인민보안기관
	·철도부문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철도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범죄사건	·철도 검찰기관	

첫째, 일반예심 관할 기관이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의 예심은 국가안정보위기관의 예심원이 한다.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인민보안기관의 예심원이,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 사건의 예심은 검찰기관의 예심원이 한다(형사소송법 제124조).

둘째, 특별예심 관할 기관이다. 군사상 범죄사건과 군대안의 일반범죄사건, 군인·인민보안원·군사기관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군사검찰기관 예심원이 한다.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과 철도운수사업을 침해한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철도인민보안기관의 예심원이, 철도부문의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철도부문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철도검찰기관의 예심원이 한다(형사소송법 제125조).

## 2) 사법기관의 형사처리 제도의 특징

첫째,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범죄사건에 대한 관할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법기관 상호간의 독립성이 모호한 실정에 있다. 사회주의헌법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제11조)고 규정하여 사법기관의 사업 역시 당의 영도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사법기관의 사명이 당 정책의 구현에 있다는데도 잘 드러나 있다. 또한 인민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로 선출하고(재판소구성법 제4조) 자기 사업에 대해 해당 인민회의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 19조). 인민회의에서는 판사를 소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동법 제 8조). 검찰소의 경우에도 중앙검찰소 소장의 임명과 해임권한이 최고인민회의에 있고(사회주의헌법 제91조 11항) 자기 사업의 책임을 최고인민회의에 지도록 되어 있다(헌법 제152조). 이는 군중의 힘과 지혜에 의거한다는 군중노선 원칙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검찰소는 검찰감시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검사감시법에 따라 사회안전기관사업에 대한 준법감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정한 법규에 따라 행사할 수 있다(검찰감시법 제9조). 그리고 검사는 재판, 중재에서 사건을 법의 요구에 맞게 제때에 정확히 심리 해결하는 감시(동법 제11조)와 확정된 판결, 판정, 재결, 결정이 제때에 정확히 집행되는가를 감시(동법 제12조)하는 임무도 부여받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사법기관 감시기능은 ‘검찰기관들이 수사, 예심 활동과 재판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제기된 모든 사건이 당정책과 법적요구에 맞게 정확히 처리’<sup>115)</sup>되도록 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김정일의 교시와 무관하지 않다. 다시 말해 검찰은 사건처리 과정에 참가하여 재판과 중재사건을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검사가 판사를 감시하는 사법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검사의 기능은 사법기관이 당이 요구하는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정치적 보위대’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여한 권한이라 할 수 있다.

“사법검찰기관은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는 우리 당의 믿음직한 정치적보위대이며 온갖 범죄적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전취물과 인민의 생명재산을 굳건히 보위하는 우리 혁명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법검찰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 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습니다. 사법검찰기관들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당과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먼저 당정책관철을 법적으로 철저히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sup>116)</sup>

셋째, 범죄자의 ‘사회적 교양처분’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상호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검찰감시법(제36조)에서 “검사는 국가의 법을 어긴자를 사회적 교

115) 김정일, “사법검찰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전국사법검찰일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2년 11월 21일”(『김정일선집(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321면.

116) 위의 책, 312면.

양을 통하여 개조하려 할 경우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 넘기거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군중투쟁을 벌리도록 제기할 수 있다”하여 사회적 교양처분은 검사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117)</sup> 그러나 사회적 교양처분 절차에 대해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재판소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담당 기능을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sup>118)</sup> 다시 말해 사회적 교양처분의 집행 결정에 대해서도 검사는 검찰감시법 제36조에 규정되어 있고, 재판소의 판정,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판결, 판정 집행법”(이하 판결판정집행법)<sup>119)</sup> 판결서에 지적된 기관(제29조) 즉, 판결서등본, 확정통지서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책임지고 교양하는 방법(판결판정집행법 제38조)으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재판소는 재판준비 단계인 제 293 조(범죄사건의 반송판정)와 판결단계인 제 351 조(사건반송의 판정), 제2심재판 제 376 조(범죄사건의 반송판정)에 따라 범죄사건을 검사나 예심기관과 제1심 재판소로 반송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재판소는 예심과정이나 수사기관의 범죄사건에 대한 ‘반송판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수사기관이나 예심기관이 기소한 범죄사실에 대해 추가나 변경에 직접 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 및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이 엄밀하게 분리되지 않고 모호한 관계에 놓여있다.

## 2. 북한의 유사사법 제도

북한은 형사소송법 이외에 법률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 주민들의 위법행위를

117) 김정일은 “사법검찰기관들은 법을 어긴 사람들 가운데서 재판에 넘길 대상은 재판에 넘기고 사회적교양을 통하여 개조할 대상은 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 넘겨 처리하게 하거나 해당 기관들과 근로단체조직들에서 짜고들어 교양개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위의 책, 319면)라고 강조한 바 있다.

118) 북한 형사소송법 제63 조(사회적교양처분의 절차)에서는 “검사, 재판소는 이 법 제62조의 사유가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검사는 상급검찰소의 승인을 받아 피소자에게 사회적교양처분결정을 할 수 있다. 2. 재판소는 피소자에게 사회적교양처분판결, 판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11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판결, 판정 집행법”은 1997년 1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0호로 채택되어 1997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92호로 수정된 후 1998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보충되었다.

통제하고 단속하는 형사처리 기제로 ‘사회안전단속법’,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동지심판회’ 등을 운영하고 있다.

### 가. 사회안전단속법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단속법’(이하 사회안전단속법)을 통해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 사회안전단속법은 1992년 12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22호로 채택하여 1999년 3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40호로 수정·보충하여 운영되고 있다.

#### 1) 기본 목적

사회안전단속법 제1조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단속법은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회안전단속법은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보위’ 및 ‘인민의 권리와 생명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국가는 준법교양과 법적 단속을 강화하여 온갖 위법행위를 미리 막도록 한다”(제3조)는 것이다.

형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단속법을 제정한 것은 “형사범을 제외한 법 위반자를 조사, 처리하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과 방법, 절차를 규제”(제7조)하는데 있다. 또한 제5조에서는 사회안전을 단속하는 방법으로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법적제재를 옹계 결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조항은 형상법상 일반범죄에 대한 처벌원칙을 그대로 적용한 조항이라 할 수 있다.

#### 2) 단속대상

사회안전단속법 제2장은 사회안전 단속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사회안전기관은 사회질서 문란행위(제8조), 국가의 정치적 안전에 위협

을 주는 행위(제9조), 설비와 원료, 자재, 생산물을 못 쓰게 만들거나 그것을 유용, 낭비, 비법처분, 계획실행정형의 거짓보고, 수출입질서를 어기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다만 위법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제조직사업은 간섭할 수 없다.(제10조)

둘째, 사회안전기관은 상업질서(비법적 상품판매 및 수매가격 조작) 위반(제11조), 외화관리 위반(제12조), 노동질서(무단결근, 근무태만 등) 위반(제13조), 퇴폐적인 음악, 춤, 그림, 사진, 도서, 녹화·녹음을 허가 없이 유입하거나 복사·유포 행위(제14조), 공중질서(패싸움, 불량자, 공공시설물 파손) 위반행위(제15조)를 단속한다.

셋째, 사회안전기관은 비법적 의료행위와 약품제조(제16조), 여행과 보행 질서 위반(제17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기밀누설(제18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비질서 위반(제19조), 공민등록, 숙박등록, 살림집이용의 위반(제20조), 무면허 운전과 교통안전질서 위반(제21조), 위법적인 도로건설과 도로 차단, 교통안전시설 미비 행위(제22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화재예방 시설 미비(제23조), 화약류, 총기류, 방사성 및 독성 물질의 취급 위반행위(제24조) 등을 단속한다.

넷째, 사회안전기관은 내압설비 및 나룻배의 검사나 운영 행위위반(제25조), 홍수·지질·익사사고 예방 대책 미비(제26조), 동식물 불법 포획·채취,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 위반행위(제27조),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과 국민의 헌법적 권리, 생명재산 침해(제28조) 행위 등을 단속한다.

### 3) 단속 절차

인민보안원(구 사회안전원)은 단속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법 위반자를 사회안전단속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단속하게 된다.

첫째, 인민보안원은 범위반자를 단속하면 신분을 확인하고 위법행위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과 문서를 보거나 필요한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신분이

나 범위반내용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단속된 자의 증인에게 다른 장소 또는 인민보안기관까지 함께 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단속된 자와 증인은 인민보안원의 요구에 응하며 위법행위와 관련된 물음에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한다(제30조).

둘째, 인민보안원은 위법행위와 관련된 증거를 찾아내고 진술서를 비롯한 조서에 고착시켜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을 찍거나 녹음이나 녹화를 할 수 있다. 녹음, 녹화한 범위반내용은 해당 조서가 있어야 사건 취급과 처리의 증거로 쓸 수 있다(제31조).

셋째, 인민보안원은 범위반자를 단속한 경우 24시간 안으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조서를 범위반자와 증인의 자필로 받을 수 있다. 조서에는 작성자와 진술자, 입회인, 해석인, 통역인의 도장이나 지장을 찍는다(제32조).

넷째, 인민보안원은 범위반행위가 엄중하거나 범위반자가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범위반자를 한 장소에서 한 번에 여러명 단속하였을 경우 억류할 수 있다. 운행질서를 어긴 자동차, 트랙터, 배를 비롯한 운수 수단도 억류할 수 있다. 범위반자 또는 운수수단을 억류하였을 경우에는 24시간 안으로 단위책임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억류된 자에게 노동을 시킬 수 없으며 억류된 운수수단은 이용할 수 없다(제33조).

다섯째, 범위반자의 억류기간은 3일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위책임자의 비준을 받아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제34조).

여섯째, 인민보안원은 범위반자가 단속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위법행위를 단속하는 보안원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사회질서를 심히 위반한 자를 체포할 수 있는데, 다른 방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투기술기재를 사용할 수 있다(제35조).

일곱째, 인민보안원은 위법행위로 단속된 자를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꾼 또는 개별적 공민으로부터 필요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위법

행위와 관련된 물건과 문서를 해당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정해진 장소에 보관시킬 수 있으며, 전문 감정기관 또는 해당 부문의 국가적 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과학기술적 방조를 받을 수 있다(제36조).

여덟째, 인민보안원은 사회안전단속에 군중을 인입할 수 있으며 도주하는 범 위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가지고 있는 운수수단이나 기술기재를 이용할 수 있다(제37조).

#### 4) 범 위반자의 처리

첫째, 인민보안기관은 범 위반자의 개준성과 위법행위의 위험성정도를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제38조). 범 위반자의 처리는 해당 인민보안기관 책임일군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나 따로 정한 절차에 따라 범 위반자를 단속한 인민보안원이 직접 처리할 수 있다(제39조). 범 위반자의 처리는 각종 조서와 증거물, 해당 증명문건에 기초하고(제40조), 처리기간은 단속한 때부터 30일간으로 한다(제41조).

둘째, 범 위반자를 단속한 인민보안기관은 그 처리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범 위반자가 사는 지역이나 일하는 직장을 관할하는 인민보안기관에 넘길 수 있다. 이 경우 범 위반조서와 증거물 등을 첨부해야 한다(제42조). 그리고 위법행위가 가벼운 경우에는 범 위반자의 보호자나 그의 교양을 책임진 자로부터 해당한 담보를 받고 교양처리 할 수 있다(제43조).

셋째, 인민보안기관은 해당 위법행위를 바로잡기 위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책적 의견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다. 대책적 의견에는 범 위반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시정할 것인가를 지적하여야 한다. 대책적 의견을 제기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은 그것을 심의 처리하여야 한다(제44조)

넷째, 위법행위에 이용한 수단, 부당하게 얻은 돈과 물건은 압수 또는 몰수 할 수 있고(제45조), 위법행위가 엄중할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책임을 지우

거나 해당 기관에 넘긴다(제46조).

이와 같이 사회안전단속 대상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다. 이러한 단속대상들은 2004년 개정형법에 상당부분 편입되어 있다. 형법에 편입된 범죄에 대한 처벌은 새롭게 신설된 ‘노동단련형’으로 되어 있다. 노동단련형의 그 기간이 6개월부터 2년까지로서 그 기간 동안 공민권이 보장되나 범죄자를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노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했다(형법 제30조, 제31조). 다시 말해 형법은 형벌의 종류와 형집행의 방법과 기준을 세분화하였는데, 종래 기본형벌이었던 노동교화형을 무기와 유기로 구분하여 종신자유형을 도입하였으며, 노동단련형을 도입하여 2년 이하의 자유형은 기본형벌을 노동단련형으로 대체<sup>120)</sup>하였다. 이러한 형벌의 강화는 1990년대의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사회일탈현상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은 치안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법률에 의존하는 정도가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나. 동지심판회

정규재판제도를 거치지 않고 주민을 처벌하는 북한의 유사사법제도에는 동지심판회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있다. 검찰감시법<sup>121)</sup> 제40조 제3항은 “범죄자를 예심에 넘기거나 법을 어긴자를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또는 동지심판회” 넘길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동지심판회는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 및 각 지역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자아비판이라는 사상투쟁을 통해 범법자를 심판하는 독특한 재판 형식이라 할 수 있다. 동지심판회는 심판대상자가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조직이 구성되는 비상설

120) 형법에서 규정하는 총 245개 처벌조항 중에서 170개 조항에서 노동단련형을 규정하여 기본형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범죄자의 노동력을 국가경제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가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12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검찰감시법”은 1985년 9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5호로 채택하여 1997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78호로 수정·보충했다. 이어서 1998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보충하였다.

적인 제도이다. 심판대상자가 있으면 소속된 기관이나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등의 당위원회가 주도하여 동지심판회에 회부 여부를 결정을 한다. 심판원은 당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보통 당위원회 비서 등이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동지심판위원회의 대상은 경제범, 과오로 인한 손실, 김일성 유일사상에 저해되는 행위 중 경미한 사건, 기타 사범 등 형사나 도덕적 비리 등과 관련된 사건만을 처리한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무보수노동 처분, 경제적 탐오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액수의 10배 내지 20배 정도 되는 벌금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행정벌금 처벌, 행정적 권리행사 중지 처분, 자아비판 처분, 엄중 경고 등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22)</sup>

동지심판회는 주민들 내부의 모순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범위반 행위를 주민 자신이 자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인민을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교양·교육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다시 말해 정식 형사재판절차나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 위원회에 회부하여 엄한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없는 경미한 사안 또는 노동당의 방침이나 각 기관, 기업소, 단체의 협의에 따라 구제해주기로 한 사안을 심판대상자가 속해있는 단체의 구성원 앞에서 일단 폭로하고 사상투쟁을 전개하도록 하되 그 대신 경미한 제재로 같음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sup>123)</sup>

동지심판회는 인민군내 중대, 대대 등의 단위에서도 열린다. 부대 내 구타나 사건화지 않은 탈영 등이 발생하였을 때 중대의 정치지도원이 제기하게 된다. 먼저 해당자가 자아비판을 하고 다른 부대원의 의견을 들어 처벌을 결정한다. 해당자는 식당 일, 눈치우기 등의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은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중앙기관과 각 도(직할시), 시, 군의 지방인민위원회 산하에 협의체로 조직되었다. 1981년 김정일은 “도,

122) 김수암,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 실태』, 71면.

123)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 개관』(서울: 법원행정처, 1996), 630-635면.

시, 군 당위원회들앞에 나서는 과업”이라는 연설을 통하여 “법적통제를 강화하려면 법무생활지도위원회를 바로 운영”<sup>124)</sup>해야 한다는 진제하에 “당일군도 공화국국민인것만큼 국가의 법질서를 어기었을 때에는 마땅히 법적제재”를 받아야 하며, 법적통제의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sup>125)</sup> 이어서 김정일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1982)라는 교시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활동 지침을 제시하였다. 1992년 개정헌법 제18조에서는 “국가는 사회주의 법률체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한다”(제18조)고 명시하여 헌법상 근거를 마련하였다.

각급 지방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검찰소장, 인민보안책임자, 검열위원회 위원장, 당책임비서로 구성되는 준사법적 지도기관이다.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위원장을 서기장이 서기장을 겸직하고 있다. 각 인민위원회별로는 사회주의법무생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위원장, 법무과가 있다.<sup>126)</sup> 1999년 1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정령 제382호로 수정 보충된 “지방주권기관법”<sup>127)</sup> 제24조에는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1항은 “해당 지역 안의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장악 지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법제정사에 따르면 사회주의법무생활에 대한 주권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규정”, “도인민위원회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규정”, “시, 군인민위원회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규정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를 기관, 기업소, 협동단체

124) 김정일, “도, 시, 군 당위원회들앞에 나서는 과업: 도당책임비서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1년 4월 3일” (『김정일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64면.

125) 위의 책, 65면.

126) 김수암,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 실태』, 72면.

1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은 1975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호로 채택되어 1993년 8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31호로 수정·보충되었다. 이어서 1999년 1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2호로 수정·보충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대중용)』, 649~655참조.

일군들과 공민들이 사회주의법무생활을 잘하도록 지도·통제하는 비상설 기관으로 명시하고, 그 구성과 임무, 권한과 활동절차, 위법현상에 대한 심의절차와 제재형태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규정을 “사회주의법무생활에 대한 주권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해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독창적인 사상을 관철하기 위하여 제정·실시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sup>128)</sup>

김정일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시하고 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 및 공민들의 법무생활을 조직지도하는 집체적지도기관입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중요한 임무는 국가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이 권력을 람용하지 말고 모든 사업을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하도록 법적으로 통제하며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는것입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법무생활과 관련되는 문제를 정상적으로 토의하여 관할지역안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법무생활을 잘하도록 교양하고 통제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매 시기 제시되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따라 준법교양과 법적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검열위원회와 검찰소를 비롯한 감독통제기관들에 과업을 주고 그 집행정형을 보고받으며 제기된 문제들을 옹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sup>129)</sup>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첫째, 행정경제기관, 기업소들을 검열하거나 감독통제기관들을 망라하여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직접 책임지고 통일적으로 검열사업을 조직·진행한다. 둘째, 관할지역 근로자들이 법을 준수하도록 교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 및 경제사범에 대한 징계 처벌과 책벌방침을 결정한다. 넷째, 김일성

128) 홍극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24면; 세종연구조소 편, 『북한법 체계와 특색』(성남: 세종연구소, 1994), 56-57면 재인용.

129) 김정일,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김정일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344-345면.

교시를 비롯하여 각종 규정 및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의 차이로 야기되는 각 기관간의 분규 및 오류사항 등에 대한 유권해석의 권한을 갖는다.<sup>130)</sup>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다양한 범위반 중에서 주로 국가경제기관의 지도일군 또는 공무원들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탐오횡령 등의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전 사회에 혁명적 준법기풍을 확립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모든 범위반 사실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히 관료주의에서 파생되는 지도일군 등의 범위반 사실을 심의대상으로 삼는다. 동 위원회는 스스로 범위반사실을 밝혀내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법무과 이외에 조사 기구를 따로 갖고 있지 않으므로 국가검열기관이나 검찰기관, 인민보안기관의 제기에 따라 범위반사실을 심의하여 조치를 취한다. 또 재판소가 형을 선고하지 않고 사회적 교양처분에 처한 경우에도 사건기록이 동 위원회에 이관되며, 그에 따라 동 위원회가 처분대상자에게 부과할 사회적 제재처분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하고 있다. 동 위원회가 재판기관 등 다른 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제재조치는 행정적 제재와 동지심판회에 회부하는 것이다. 행정적 제재에는 경고, 엄중경고, 벌금, 강직(降職), 면직,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무보수노동에 처하는 처분 등이 있다.<sup>131)</sup> 형사적 책임을 물을 사건에 관하여는 검찰소에 이송 조치한다. 결국 동 위원회는 동지심판회와 정규 재판소와의 중간적인 위치에서 실질적인 사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132)</sup>

130) 위의 책, 345-346면 재정리.

131)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령 제4252'로 채택된 "행정법적제재규정"에 의거하여 공무원에게 행정적 책임을 가하고 있다("행정법적제재규정",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정령 제4252호, 1995.3.30), 행정법적 제재에는 행정처벌과 기업중지, 몰수, 보상이 있다. 행정처벌에는 경고, 엄중경고, 자격정지, 자격박탈, 강급, 강직, 해임, 철직, 무보수 노동, 노동단련, 벌금 등이 있다(제12조). 경고는 비교적 가벼운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가하는 제재(한국의 계고)이다. 엄중경고는 가벼운 위반행위나 비교적 사안이 중요하여 주의 촉구보다는 좀 더 강한 제재(한국의 견책)를 한다. 자격정지는 위반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한국의 정직)시키는 제재다. 강급은 위반자의 위반행위가 중하여 급여를 감액(한국의 감봉)하는 방법이다. 강직은 위반자의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직무를 정지(한국의 정직)를 시킨다. 철직은 위반자의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그 직위를 해제하는 처분(한국의 직위해제)하는 방법이다. 해임은 위반자의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그 직무로부터 이탈시키는 처분(한국의 해임)을 말한다. 무보수 노동은 위반자의 위반행위가 중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무보수로 근무하는 제재를 의미한다.

132)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 개관』, 645-647면.

## 제2절 북한 수사기관의 범죄자 처리 절차

북한의 인민보안원(경찰) 등 사회안전기관의 범죄자의 위법행위 처리는 형사소송법에 따르고 있다.<sup>133)</sup> 형사소송법상에 규정된 수사, 예심, 기소 등의 범죄자 처리절차는 인민보안원을 비롯한 사회안전기관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이들 형사관련법이 당의 규약이나 수령의 교시를 우선시될 수 없다는 한계성이 내포되어 있다. 실제적으로 북한은 사회주의헌법 전문(1998.9.5 개정)과 ‘조선로동당 규약’ 전문 등에서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것을 밝히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98년 9월 5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회의에서 채택)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 …(중략) …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조선로동당 규약 전문: 1980년 10월 13일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개정)

### 1. 수사

#### 가. 수사의 개념

북한의 형사처리절차상 수사는 ‘범죄자를 적발하여 예심에 넘기는 것’(형사소송법 제134조 수사의 임무)을 임무로 하고, 활동범위는 제기된 형사사건의 범죄자를 찾아내며 사건해결의 기초가 될 증거로서 그 수집을 뒤로 미룰 수 없는 것

133) 북한의 형사소송법 제1조(사명)는 범죄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 예심, 기소, 재판(판결) 단계를 거쳐 형사사건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을 제때 수집·보전하는데 한정한다.<sup>134)</sup> 따라서 수사의 핵심에 해당하는 증거수집 등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 수사기관의 내사단계<sup>135)</sup>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수사는 범죄와 그 흔적을 찾아내어 수집 고착하여 범죄자를 적발하고 체포하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범죄자를 적발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증거수집 등 수사활동을 할 수 없고(동법 제141조), 예심에 이첩(移牒)되기 때문에 수사는 범죄사실을 완전하게 규명하기 보다는 범죄자의 적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0조(수사의 담당자)에서 수사는 해당 기관의 수사원이 하고, 필요에 따라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사는 일반적으로 인민보안원의 주된 임무라 할 수 있다.

#### 나. 수사기관의 권한과 의무

일반범죄 수사는 인민보안성 산하 시·군·구역 보안서의 감찰과, 수사과, 예심과에서 담당하며, 이러한 담당부서의 구성원을 ‘수사일군(수사원)’으로 부른다. 이들에게는 수사원증이 별도로 지급된다. 수사원은 법에 따라 범죄자를 적발하여 예심에 넘기는 임무를 담당하고 범죄자 적발 후의 수사활동은 예심기관에서 담당한다.

수사원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으로부터 범죄자를 적발하는데 필요한 자료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술자에게 거짓 진술을 하면 형사책임을

134)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 33-34면; 다만 “범죄의 흔적이 없어지거나 증거를 얻을 수 없게 되는 경우 등 증거 수집을 뒤로 미룰 수 없을 경우에는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141조).

135) 한국경찰에서 “내사는 수사의 전단계로서 신문 등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소문 등에 범죄 혐의 유무를 조사할 가치가 있는 내용이 있을 때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입건하지 아니하고 조사하는 단계를 말한다.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고 입건의 필요와 가치가 있을 때에는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므로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여 입건하고, 범죄혐의가 없거나 입건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내사 종결한다.”(이운주, 『경찰학개론』, 용인: 경찰대학, 2003, 291면)

진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동법 제 137 조). 수사원은 범죄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검증, 수색, 압수, 심리실험, 식별, 대질행위를 할 수 있으며 감정을 맡길 수 있다(동법 제 138 조).

수사원이 검사의 승인 없이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체포하고 그의 몸이나 거처를 수색하며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첫째, 범죄자가 범죄에 착수하였거나 범죄를 저지르다가 또는 저지른 즉시에 발견되었을 경우 둘째, 피해자 또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본 사람이 범죄자라고 하면서 붙잡았거나 가리킨 경우 셋째, 범죄혐의자의 몸 또는 거처에서 범죄를 저지른 흔적이 나타났을 경우 넷째, 범죄혐의자, 범죄자가 자살 또는 도망치려 하거나 뒤 쫓기고 있을 경우 다섯째, 범죄혐의자, 범죄자로서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등이다(동법 제 143 조). 이러한 경우는 남한의 현행범 내지 준현행범에 대한 규정과 유사하다.

수사원이 위의 해당 법규(동법 제143조)에 따라 체포한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구금한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구금결정서를 만들어 검사의 승인을 받고 체포한 날부터 10일 안으로 조사하여 예심에 넘겨야 한다. 검사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체포한 날부터 10일 안에 범죄자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즉시 범죄혐의자를 석방해야 한다(동법 제144조).

#### 다. 수사절차

첫째, 수사원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국민의 신고에 기초하거나, 해당 법기관이 직접 수집한 범죄 자료(동법 제 30 조)를 얻었을 때에는 그 근거를 밝힌 수사 시작결정을 하고 수사를 시작하여야 한다(동법 제135조).

둘째, 수사원은 수사시작 결정 24시간 이내에 결정서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동법 제 136 조). 수사원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범죄사건의 범죄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자기 관할지역 밖에서 수사를 직접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지역의 검사가 감시한다(동법 제 139 조). 특히 수사원은 자기 관할지역 밖에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지역의 수사원에게 의뢰할 수 있고, 수사를 의뢰받은 수사원은 제때에 정확히 수사하고 회보하여야 한다(동법 제 140 조).

셋째, 수사원은 수사시작결정을 한 범죄사건을 관할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넘길 경우 검사에게 알리고 사건 이송결정을 하여 해당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 이 경우 범죄혐의자, 범죄자가 구금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건이송 및 이감결정을 하여야 한다. 수사과정에 알게 된 범죄사건과 관련이 없는 범죄 자료도 해당 수사기관에 넘겨주어야 한다(제 142 조).

넷째, 수사원은 체포한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구금하지 않을 경우 체포 일과 사유 같은 것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구금된 자에게 이 법 ‘형사소송의 중지사유’(동법 제43조)<sup>136)</sup>가 나타날 경우에는 구금을 중지하며 ‘형사소송중지의 해지·취소’(동법 제52조)<sup>137)</sup>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구금중지를 해제하거나 취소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동법 제 145 조).

다섯째, 수사시작결정을 한 범죄사건의 범죄자를 적발한 수사원은 즉시 그 사건을 예심에 넘기는 결정을 하고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이 경우 도주하였거나 거주불명 범죄자를 체포하여 예심에 넘겨야 한다(동법 제 146 조).

수사 활동에 대한 감시는 검사가 한다. 검사는 담당한 범죄사건의 수사에 참가하거나 사건기록을 검토할 수 있으며 위법적인 수사를 바로잡거나 수사원에게 필요한 수사방향을 서면으로 지시할 수 있다. 수사원은 검사의 지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먼저 집행하고 상급 검찰소에 제기할 수 있다. 의견을 제기 받은 상급 검찰소는 3일안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동법 제 147 조). 특히 수사기관으로부터 결정서등본을 받은 검사는 수사근거가 없을 경우 수사시작 결정을 취

136) 형사소송법 제 43 조(형사소송의 중지사유)는 “피심자, 피소자가 일시적인 정신병, 중병에 걸렸거나 도주하여 형사사건취급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형사소송을 중지한다. 정신병, 중병에 대한 감정은 법의감정의사 또는 인민병원 의사협의회가 한다”라 규정하고 있다.

137) 형사소송법 제 52 조(형사소송중지의 해지, 취소)는 “형사소송중지사유가 없어졌거나 의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 법 제48조를 어긴 경우에는 형사소송중지를 해제하거나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형사사건 취급을 계속한다. 이 경우 검사에게 알린다”라 규정하고 있다.

소할 수 있다(동법 제 136 조).

**<표 3-5> 형사사건 제기결정서 예문**

**형사사건 제기결정서**

0000년 00월 00일 00도 00군 검찰소 소장 000는 00읍 3반 000의 신고조서 3매, 현장검증조서 4매를 보고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2000년 1월 17일 10-11시 사이에 00읍 0반에 사는 000의 집에 범죄자가 침입하여 양복장에 채운 자물쇠를 파괴하고 양복 2벌을 비롯한 의복류와 천류 0원분과 현금 0원을 훔쳐가지고 도주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00조, 제00조 0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0000년 0월 0일 00읍 0반 00의 집에서 발생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형법 00조 0항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을 제기한다.
2.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00군 보안서에 넘긴다.

00군 검찰소 소장 000

검사는 수사기관의 범죄혐의자에 대한 구금결정의 승인에 관한 권한(동법 제 144조)을 가짐으로써 수사원의 수사 활동을 통제할 수 있으며, 검사는 수사관으로서 수사에 참여하는 권한보다 수사 통제적 권한이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 수사의 주체는 ‘해당 기관의 수사원’이 되고, 필요에 따라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0조)

**2. 예심**

북한의 형사소송법 특징 중 하나는 제7장에 예심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어 ‘예심의 임무와 기간’, ‘예심의 시작과 형사책임 추궁’으로 구분하고 있다.

### 가. 예심의 개념

북한의 형사처리 절차는 수사와 기소 사이에 예심이라는 절차를 별도 두고 있다. 예심은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피심자를 확정하고 연루자를 적발하는 등<sup>138)</sup> 범죄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동법 제148조). 그리고 “예심원은 객관적 증거에 근거하여 피심자가 저지른 범죄의 성격, 동기와 목적, 범죄의 수단과 방법, 행위정도와 결과, 범죄를 저지른 데서는 역할과 책임정도 같은 범죄사건의 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실을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라고 하여 예심에서 밝혀야 할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동법 제 149 조). 따라서 예심이라 함은 피심자를 확정하고 범죄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규정을 고찰해 볼 때 북한에서의 예심이란 별도의 예심기관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본격적인 수사활동과 강제처분을 통하여 피심자에 대한 범죄의 유무와 책임정도를 밝혀내어 기소 또는 사건기각을 결정하는 절차로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의 핵심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예심이 재판기관이 아닌 수사기관의 예심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구형사소송법상 공소제기 후 공판전에 예심판사에 의해 진행되는 예심과는 다른 형태이다. 이러한 예심제도는 프랑스의 개혁된 형사소송법에서 비롯되어 소련의 형사재판 절차기본법에 이식된 후 북한의 형사소송법에 수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 나. 예심기관의 권한과 의무

예심은 인민보안기관, 검찰, 국가보위기관, 인민무력기관의 예심원이 한다(동법 제11조). 이외에 특별 예심기관으로 군검찰기관, 철도인민보안기관, 철도검찰기관의 예심원이 있다.

138) 북한의 구 ‘형사소송법(1992) 제70조’는 “예심은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내고 검토하는 과정을 통하여 피심자를 확정하고 그의 범죄사실을 남김없이 밝히며 연루자를 적발하는 것을 비롯하여 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을 임무로 한다”라 명시하고 있다.

예심원은 자기의 관할지역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예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의 승인 밑에 관할지역의 예심원에게 알리고 범죄자가 사는 곳 또는 범죄사건을 적발한 지역을 관할하는 예심원이 예심 할 수 있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의 예심은 안전보위기관의 예심원이 담당하고,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인민보안기관의 예심원이,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 사건의 예심은 검찰기관의 예심원이 한다(동법 제124조). 그리고 사상 범죄사건과 군대(軍隊)안의 일반범죄사건, 군인, 인민보안원, 군사기관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군사검찰기관 예심원이 하고,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일반범죄사건과 철도운수사업을 침해한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철도인민보안기관의 예심원이, 철도부문의 행정경제사업에 대한 감시와 철도부문 법기관의 법준수집행정형을 감시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일반범죄사건의 예심은 철도검찰기관의 예심원이 담당한다(동법 제125조).

## 다. 예심절차

### 1) 예심시작결정

예심원은 범죄사건을 넘겨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으로 예심시작결정을 하고 예심을 시작하여야 한다. 예심과정에 범죄사건과 관련이 없는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에게 알리고 그것을 수사에 넘기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이 다른 범죄사건은 해당 수사기관에 넘겨야 한다(제 157 조). 예심시작결정서는 예심의 결과에 대하여 예심원이 법 앞에 책임을 지겠다는 보증 문건인 동시에 예심을 시작할 권리를 발생시키는 소송문건이다.

예심의 기간은 범죄사건의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2개월 안으로 종결해야 한다. 로동단련형의 신설에 따라 로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10일 안으로 끝내야 한다. 예심을 연장하기 위하여 재판소에서 돌려보낸 유기로

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20일 안으로,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사건의 예심은 7일 안으로 종결해야 한다(동법 제 151조). 예심을 2개월 내에 끝낼 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의 예심은 예심을 시작한 날부터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152조). 다시 말해 예심기간을 2개월 연장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시(구역), 군예심원과 도(직할시)예심원은 도(직할시)검찰소장, 중앙예심원은 중앙검찰소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1개월 더 연장(특별히 복잡한 범죄사건)하기 위해서는 중앙검찰소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동법 제188조). 로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죄사건에 대하여 수사에서 넘긴 증거가 충분히 조사 확정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심을 종결한다(동법 제150조).

## 2) 형사책임추궁결정

형사책임추궁결정은 범죄혐의자를 정식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피심자로서 결정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예심원은 증거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예심과정을 통하여 피심자를 확정하기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해야 한다.<sup>139)</sup> 동 결정서에는 예심원의 이름, 결정일자, 피심자의 이름, 적용할 형법조항,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 이유 등을 밝혀야 한다(동법 제158조).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예심원은 48시간 안으로 피심자에게 알려주고 변호인 선정권리를 공지해야 하며(동법 제 159 조), 형사추궁결정서등본을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동법 160조).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통지 후 48시간 내로 피심자를 심문해야 하는데(동법 제162조) 피심자의 심문은 8시~20시 사이에 한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된 시간 외에 피심자를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의

139) 증거는 법에 따라 수집되고 객관적으로 충분히 검토 확인되어야 사건 해결의 기초로 쓸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88조). 증거의 종류로는 증인의 말, 감정결과, 검증결과, 증거물, 증거문서, 피소자의 말에서 얻은 자료 등이 있다(동법 제89조). 수사원, 예심원, 재판소는 법이 정한데 따라 형사사건의 취급 처리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동법 제93조).

참가 하에 실시한다(동법 제163조). 구류하지 않은 피심자를 심문하기 위해서는 예심원은 소환장을 발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인할 수 있다(제164조). 구류된 피심자의 심문은 예심장소에 호송하여 심문해야 한다(동법 제165조). 다시 말해 형사책임추궁결정에 의해 범죄자 및 재판 대상자가 확정되고 피심자에게 소송상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게 된다. 그리고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후부터 피심자는 소추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고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예심원은 피심자가 도망했거나 사는 곳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체포의뢰결정을 해야 하고, 체포의뢰결정서에는 피심자를 찾는데 필요한 자료를 밝히며 그것을 체포령장과 함께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 체포의뢰를 받은 수사기관은 피심자를 체포하고 회보하여야 한다(동법 제166조).

**<표 3-6> 형사책임추궁결정서<sup>140)</sup> 예문**

**형사책임추궁결정서**

0000년 00월 00일 함경남도 00군 검찰소 예심원 000은 수집된 증거를 보고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000은 군피복공장 노동자로서 0000년 0월부터 0001년 0월까지의 기간에 국가재산 0여원을 훔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① 000을 형법 제00조 0항 사건의 피심자로 확정하고 그에게 이 결정을 알려준다.

② 이 결정서 등본을 00군 검찰소 소장에게 보낸다.

예심원 000

0000년 0월 0일에 이 결정을 나에게 알려주었다.

피심자 000

140) 형사책임추궁결정서에는 예심원의 이름, 결정 날짜, 피심자의 이름, 적용할 형법조항, 형사책임을 추궁하게 된 이유 등을 밝혀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58조).

### 3) 구속처분

예심원은 피심자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범죄사건의 조사를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심자를 체포하거나 구속처분을 할 수 있다(동법 제176조). 체포 또는 구류구속처분은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줄 수 있는 피심자가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거나 범죄사건의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로동단련형을 적용할 수 있는 피심자에 대하여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만 체포, 구류구속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동법 제179조).

체포와 구속처분은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한 다음에 실시할 수 있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기 전에 예심원은 검사의 승인을 받고 체포, 구류구속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안으로 형사책임추궁결정을 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면 구류구속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동법 제178조).

구속처분에는 피심자를 구류장에 수감하는 하는 구류구속처분, 피심자가 질병, 임신 등 구류구속 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피심자 집에 억류하는 자택구속처분, 유기로동교화형이나 로동단련형에 해당하는 피심자에 대해 예심원 또는 재판소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호출할 수 있도록 정해진 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지역구속처분 등 3가지형태가 있다(동법 제184조).

피심자를 구속처분하려는 예심원은 피심자에게 적용한 형법조항과 구속처분이유를 밝힌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동법 제185조). 2004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비법적인 체포, 구속의 금지’ 조항(제177조)을 신설하고 있는데, 법에 규정된 절차 이외에는 체포나 구속할 수 없고, 검사는 비법적으로 체포, 구속된 자를 발견했을 경우 석방해야한다.

북한의 경우 남한과 달리<sup>141)</sup> 예심원은 구금하지 않은 피심자를 구류구속처분하기 위해서 체포영장발급신청서를 검사에게 송부하여 체포영장을 발급받아 구

141) 남한의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

류할 수 있다(동법 제181조). 피심자를 체포하여 구류구속처분 할 경우에는 피심자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피심자를 구류할 기관에는 구류구속처분결정서 등본을 송부한다(동법 제182조). 임신한 피심자는 산전 3개월부터 산후 7개월까지의 기간에는 구류구속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동법 제179조).

<표 3-7> 형사처리 중 구류 기간<sup>142)</sup>

구분	형벌	기본 기간	구류 기간 연장과 승인	재판소에서 추가 예심 환송 시	비고
수사	10일(검사의 승인)				
예심	로동교화형, 사형	2개월	- 1차 1개월(구 형소법 2개월) ·시(구역)·군 예심원, 도(직할시) 예심원은 도(직할시) 검찰소장의 승인 ·중앙예심원은 중앙검찰소장의 승인  - 2차 1개월(구 형소법 2개월) ·중앙검찰소장의 승인	20일연장	최장 4개월 * 구 형소 법은 최장 6개월
	로동단련형	10일	20일(검사의 승인)	7일 연장	최장 1개월
기소	로동교화형, 사형	10일			* 구 형소 법 15일
	로동단련형	3일			
제1심 재판	로동교화형	25일			* 구 형소 법 1개월
	로동단련형	15일			
항의, 항고	10일				
제2심 재판	로동교화형, 사형	25일			* 구 형소 법 1개월
비상 상소심, 재심	1개월				

142) 김수암,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 실태』, 83면 재정리.

그리고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형벌집행기간의 계산은 판결을 집행하는 날부터 시작하며, 피소자가 이미 구류되었을 경우는 구속된 날부터 형기를 계산한다.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 자가 형벌집행기관병원에 입원한 기간은 형벌집행기간으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425조).

<표 3-8> 구류의 보전처분 결정서 예문

구류의 보전처분 결정서	
<p>0000년 00월 00일 함경남도 00군 검찰소 예심원 000은 피심자 000의 사건을 보고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p> <p>이름 000 성별 남자                      생년월일 0000년 0월 0일                      난 곳 00도 00군 00리                      사는 곳 00도 00군 00리 0반                      범죄수행당시 직장 직위 00리 협동농장 농장원                      전과관계 없음</p> <p>피심자 000은 형법 제00조 0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00조, 제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p> <p>① 피심자 000에게 구류의 보전처분을 하고 이를 그에게 알려준다.                      ② 이 결정집행을 위하여 결정서 등본을 00군 보안서장에게 보낸다.</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예심원 000                     </div> <p>이것을 승인한다.</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검찰소 소장 000                     </div> <p>0000년 0월 0일 이 결정을 나에게 알려주었다.</p>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                         피심자 000                     </div>	

#### 4) 예심종결

예심원은 범죄사건의 전모와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충분하게 수집하여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예심을 종결하여야 한다(동법 제254조).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하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예심종결조서에는 피심자의 이름, 종결한 날자와 시간, 사건기록을 보인 정형, 제기된 의견의 처리정형 같은 것을 밝혀야 한다(동법 제257조). 그리고 예심을 종결하려는 예심원은 예심을 끝낸다는 것을 피심자에게 알려주고 범죄와 관련되는 기록을 보여주며 신청할 것이 없는가를 물어보아야 한다.<sup>143)</sup> 피심자의 신청이 정당할 경우에는 예심을 더 하며 부당할 경우에는 거부하여야 한다(동법 제255조). 예심의 종결수속은 검사의 참가 하에 한다(동법 제256조). 예심원은 예심을 종결한 날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검사에게 넘겨야 하고 이 경우 증거물첨부결정서를 사건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동법 제258조).

예심을 종결하는 경우는 예심종결처분으로 예심중지, 사건기각 등이 있다. 예심중지는 피심자, 피소자가 일시적인 정신병, 중병에 걸렸거나 도주하여 형사사건취급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며(동법 제43조), 사건기각은 14세미만이거나 저지른 행위가 범죄로 되지 않을 경우, 형사소추시효기간이 지났거나 특사로 형벌이 면제되었을 경우, 확정된 판결, 판정이 있는 행위일 경우, 예심기일 안에 피심자를 재판에 넘길만한 충분한 증거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 범죄자·피심자·피소자가 죽었을 경우, 정신병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를 저지른 다음 회복할 수 없는 정신병을 앓고 있을 경우 등은 형사사건의 기각을 결정할 수 있다(동법 제53조).

시·군·구역 보안서 예심원은 예심기간 중 확인심문으로 최종 범죄자료를 작성

143) 예심종결처분의 규정상 피심자는 사건기록 전체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제도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구현한 소송제도로 선전하고 있다.

하여 보안위원회 검토 또는 보안서 부서장과 보안서장의 비준과 검찰소 소장의 비준을 받아 재판소로 회부하게 된다.

### 3. 기소

기소의 임무는 예심을 종결한 사건기록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예심에서 범죄의 전모가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졌다고 인정될 경우 피심자를 재판소에 넘기는 것에 있다(동법 제261조).

예심원에서 사건기록을 접수한 검사는 10일 안으로 검토 처리해야 하고, 로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범죄의 사건기록은 3일 안으로 검토하여 처리해야 한다(동법 제262조). 그리고 기소를 위한 구류기간은 피심자는 10일, 로동단련형은 3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263조).

형소법 제264조는 범죄의 사건기록검토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 첫째, 범죄의 전모와 범죄사건의 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모든 사정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졌으며 그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가. 둘째, 예심을 이 법에 규정된 요구와 절차대로 하였는가. 셋째, 인정된 범죄에 대하여 형법조항을 옳게 적용했는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예심을 충분하고 옳게 진행하였을 경우 기소장을 작성하여 피심자를 재판소에 기소해야하는데, 기소장과 사건기록을 증거물과 함께 송부해야 한다(동법 제265조).

기소장 작성은 피심자를 재판소에 기소하려는 검사가 기소장을 작성하는데, 기소장에는 작성 일, 작성자의 직장, 직위, 이름, 피심자의 이름과 신분관계, 예심에서 조사 확증된 사실과 증거, 피심자의 형사책임을 확정하고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의의를 가질 수 있는 사정, 인정한 범죄에 해당하는 형법조항(동법 제266조) 등이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예심원이 기소전 절차의 핵심과정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예심이 불충분하여 기소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검사

는 서면으로 지적하여 해당 예심원에게 반송해야 한다(동법 제268조).

#### 4. 재판

##### 가. 재판소의 관할대상

재판을 통해 피심자에 대한 최종적인 범죄를 확정한다. 북한의 재판제도는 사회주의헌법, 재판소구성법,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 재판소 구성은 중앙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인민재판소와 특별재판소가 있다(헌법 제153조 제3조).

재판소의 관할 대상은 형사소송법 제126조에서 133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첫째, 인민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 및 중앙재판소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일반범죄사건을 재판한다.

둘째, 도(직할시)재판소는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 사형, 무기로동교화형으로 기소된 일반범죄사건을 제1심으로 재판한다. 도(직할시)안의 인민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은 제2심으로 재판한다. 필요에 따라 도(직할시)안의 인민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사건을 직접 재판하거나 다른 인민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

셋째, 특별재판소인 군사재판소는 군인, 인민보안원이 저지른 범죄사건, 군사기관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을 재판한다. 철도재판소는 철도운수부문의 종업원이 저지른 범죄사건과 철도운수사업을 침해한 범죄사건을 재판한다.

넷째, 중앙재판소는 도(직할시)재판소, 철도재판소의 제1심재판에 대한 상소, 항의사건을 제2심으로 재판한다. 필요에 따라 어느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제1심 사건이든지 직접 재판하거나 같은 급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재판소는 관할지역에서 일어난 범죄사건을 재판한다. 재판에 지장

이 없을 경우에는 범죄자가 사는 곳, 적발된 곳을 관할하는 재판소에서도 재판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같은 급의 여러 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사건의 재판은 그 사건 심리를 먼저 시작한 재판소에서 담당하나, 관할이 다른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피소자 또는 관할이 다른 여러 명의 피소자를 함께 재판하게 될 경우에는 일부가 상급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면 상급재판소, 특별재판소의 관할에 속하면 특별재판소에서 재판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른 재판소에서 넘겨받은 범죄사건은 다시 다른 재판소에 넘겨줄 수 없다. 넘겨받은 범죄사건이 다른 급 또는 다른 종류의 재판소관할에 속할 경우에는 상급재판소의 승인을 받아 해당 재판소에 그 사건을 넘겨주어야 한다.

## 나. 재판의 구분

### 1) 제1심 재판

#### 가) 재판소의 임무와 구성

제1심 재판은 법에 따라 재판관계자의 참가 하에 범죄사건을 심리하며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범죄와 범죄자를 정확히 확정하고 그것을 법률적으로 분석 평가한데 기초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70조). 형사재판 이외의 재판에서 확정된 사실은 형사재판에서 그대로 인정한다. 그러나 확정된 사실에 대한 범죄의 유무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에서 심리 확정한다(동법 제273조).

제1심 재판은 기본적으로 재판장인 판사와 인민참심원 2명으로 재판소가 구성된다. 특별한 경우에는 판사 3명으로 재판소를 구성하여 제1심 재판(동법 제274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 조항이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

북한 역시 사회주의헌법 제158조나 형사소송법 제271에 의거하여 재판을 공개하고, 재판의 독자성을 보장(사회주의헌법 제160조, 형사소송법 제172조)하고

있다. 반면에 법이 정한데 따라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있다(사회주의헌법 제158조)는 예외 조항도 두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71조에서는 “국가 또는 개인의 비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에는 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균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지재판제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 제 286 조(현지재판의 조직)에서는 “재판소는 균중을 각성시키고 범죄를 미리 막기 위하여 현지에서 재판심리를 조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가 범죄자의 행위를 폭로규탄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정일은 현지재판제도를 수백수천의 균중을 교양하고 각성시키는 준법교양형식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중요성을 다음의 인용문에서와 같이 역설하고 있다.

“현지공개재판은 하나를 쳐서 수백수천의 균중을 교양하고 각성시키는 좋은 준법교양형식의 하나입니다. 현지공개재판을 잘하면 재판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교훈을 줄수 있습니다. 사법검찰기관들에서는 현지공개재판을 교양적의의가 있게 잘 조직진행함으로써 사람들이 법규범과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위법현상들과의 투쟁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까.”<sup>144)</sup>

## 나) 재판심리

형사소송법 제270조에 따라 제1심 재판심리의 관계자는 판사(재판장), 인민참심원, 검사, 변호사, 피소자 이외에 재판서기가 참가하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274조). 재판심리시 “검사는 피소자의 범죄를 폭로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며 재판이 법의 요구에 맞게 진행되는가를 감시”(형사소송법 제278조)하여야 한다.

사회주의 헌법 제158조(피소자의 변호권을 보장한다)와 형사소송법 제108조

144) 김정일, “사법검찰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316면.

(피심자, 피소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조받을 권리를 가진다)에서는 피심자의 변호 권리를 법률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변호인의 선정은 피심자, 피소자가 형사 책임추궁결정을 받은 때부터 사실심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할 수 있다(동법 제 100조). 재판심리에서 변호인은 범죄사건의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고 피소자의 행위가 옳게 분석 평가되어 그의 법적권리가 정확히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동법 제270조).

1993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3호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12조에서 변호사는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밝히고 옳게 분석 평가하여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하며, 피심자, 피소자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피심자 구류기간

재판을 위한 피소자의 구류기간을 25일까지, 노동단련형의 경우에는 15일까지 각각 제한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82조). 재판정에서는 피소자를 구속하지 않는 것으로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283조)

제1심 재판소는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25일 안으로 재판심리를 끝내야 한다. 노동단련형을 줄 수 있는 피소자에 대한 재판심리는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끝내야 한다. 특별히 복잡한 범죄사건은 재판심리기간을 5일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287조).<sup>145)</sup>

#### 라) 재판준비와 재판심리

형사소송법은 제1심 재판을 재판준비와 재판심리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재판 준비는 사건기록을 접수한 재판소의 판사가 담당한다(형사소송법 제289조).

145) 종전에는 1심 재판에 대하여 사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으로 재판하도록 규정하였다(형사소송법 제189조).

재판준비에서 판사가 검토해야할 사건기록의 내용에는 ① 예심에서 범죄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되었는가. ② 기소에 근거가 있는가. ③ 인정한 범죄에 대하여 형법조항이 옳게 적용되었는가. ④ 근거없이 범죄의 공모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 ⑤ 이 법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를 정확히 지켰는가. ⑥ 피심자의 신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⑦ 피심자의 구속처분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있다(동법 제290조).

판사는 예심이 충분히 진행되어 재판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피심자를 재판심리에 넘기는 판정을 한다(동법 제292조). 재판심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예심이 충분하지 못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로 법에 규정된 절차를 심히 어겼을 경우, 본질적 의의를 가지는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범죄사건을 검사에게 돌려보내는 판정을 한다(동법 제293조). 재판소는 재판심리를 시작하기 3일 전에 피소자에게 기소장등본과 판정서등본을 송부해야하고(동법 제298조), 검사, 피소자, 변호인, 손해보상청구자에게 재판심리 날짜를 알려야 한다(동법 제299조).

제1심재판은 재판심리시작, 사실심리, 논고와 변론, 피소자의 마지막 말, 판결의 선고절차 순으로 한다(동법 제301조).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인민참심원과 합의하여 심리순서를 결정한다. 재판소는 사실심리에서 피소자 심문(동법 제308조), 증인심문(동법 제309), 재판심문 또는 대질심문(동법 제313), 감정의뢰와 감정인의 심문(동법 제317), 증거물과 증거문서의 검토(동법 제319조), 현장검증과 증거자료의 확인(동법 제321조), 새 증거의 수집(동법 제322조), 손해배상청구의 심리(동법 제323조) 등을 한다. 그리고 재판장은 검사, 변호인, 인민참심원에게 심리할 것이 더 없는가를 묻고 사실심리를 끝마친다는 것을 알린다(동법 제324조).

재판장은 사실심리가 끝나면 검사, 손해보상청구자, 변호인의 순서로 논고와 변론을 하게 한다(동법 제325조). 논고는 피소자의 범죄를 폭로규탄하고 그것이 유죄로 되는 근거를 과학적으로 논증하며 기소된 형법조항의 형벌을 적용할 것

을 제기한다는 의미이다(동법 제326조). 변론은 피소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과 목적, 위험성정도, 피소자의 개준성 정도를 근거 있게 밝히면서 형벌 약정시 참작하도록 하고 피소자의 행위가 무죄로 인정될 경우에는 무죄로 되는 근거를 정확히 밝힌다(동법 제327조).

그러나 사실심리 종결과정에서 피소자에 대한 교양에 책임이 있거나 범죄의 틈을 준 관계자를 사실심리에 참가시켰을 경우에는 그를 내세워 교훈을 찾게 한 다음 사실심리를 끝마친다는 것을 알리고(동법 제324조), 필요에 따라 재판에 참가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대표자에게도 말을 하게 할 수 있다고(동법 제325조) 하여 균중노선의 원칙(동법 제3조)이 반영하고 있다.

재판장은 피소자의 최종진술이 끝나면 재판심리가 끝났다는 것을 알리고 인민참심원과 함께 합의실에서 판결을 채택하기 위해서(동법 제331조), 기소된 범죄가 있었는가, 범죄를 피소자가 저질렀는가, 범죄의 표징을 갖추었는가, 피소자에게 어떤 형벌을 어느 정도 줄 것인가, 손해보상청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증거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구속처분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담보처분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등에 대한 협의를 한다(동법 제332조).

#### 마) 판결

재판소는 재판심리에서 충분히 검토 확인된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범죄사건이 정확히 밝혀졌을 경우 법의 요구에 맞게 판결을 내리는데(형사소송법 제340조), 판결의 채택은 재판심리를 한 판사와 인민참심원만이 참가한다(동법 제341조). 판결과 재판심리에서 하는 판정의 채택은 재판소 성원들이 다수가결의 방법으로 채택한다(동법 제342조). 재판심리절차에서는 인민대중에게 교훈을 주는 정치선전적, 사상교양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sup>146)</sup>

146)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193-194면; 김수암,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 실태』, 92면 재인용.

판결의 내용은 피소자에게 형벌을 적용하는 판결, 사회적 교양처분을 하는 판결인 유죄판결과 범죄가 없다는 무죄판결이 있다(동법 제343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이름으로 판결의 선고를 한다(동법 제347조).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판결서의 첫 부분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국호와 재판날짜, 재판소성원, 검사, 변호인, 재판서기 이름, 사건명, 재판심리의 공개 또는 비공개정형, 피소자의 이름과 신분관계, 손해보상청구자의 이름과 사는 곳, 범죄에 대한 재판소의 인정과 그에 대한 증거의 설명, 손해보상청구와 그에 대한 재판소의 인정 그 밖에 사건의 성질에 따라 반드시 지적하여야 할 문제를 밝힌다. 판결서의 다음 부분에는 피소자의 범죄 유무를 밝고 그에 적용하는 형법조항과 형벌 또는 사회적 교양처분을 적시하고 손해보상청구, 증거물, 재산담보처분, 구속문제 등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을 기술하며, 상소절차를 명기하도록 한다(동법 제 353 조). 재판소는 판결, 판정을 한 날부터 2일 안으로 검사, 피소자, 변호인, 손해보상청구자에게 판결서, 판정서 등본을 송부해야 한다(동법 제354조).

북한뉴스를 전문으로 제공하는 ‘데일리엔케이(Daily NK)’는 2005년 3월 1일 회령시 회령시장 인근, 3월 2일 회령시 유선동에서 진행된 공개재판의 판결문을 입수하여 공개하였다. 이 판결문에는 피고인들의 피의사실이 나타나 있는데,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는 행위 전반을 ‘인신매매’로 취급, 흉악범죄로 묘사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벌여 온 외화를 북한 내부의 화폐로 교환한 것까지 범죄행위로 취급하고 있다.<sup>147)</sup>

147) “북한 공개재판 판결문”, 데일리 NK(<http://www.dailynk.com>), 2005.3.18.

### <표 3-9> 북한의 공개재판 판결문

#### 회령시 유선동 공개재판(2005년 3월 2일 판결)

\* 판사의 목소리가 부정확한 부분은 '\*\*\*'로 표시

금일 경성군 경성읍 \*\*\* 한복남, 회령시 오산덕 협동농장 전운숙 이자들은 부패한 황금만능의 자본주의 사상에 깊이 오염되어 돈에 환장하여 작년 4월부터 수 회에 걸쳐 공모하여 합계 18명의 우리나라 여성을 유혹하여 외국의 인신매매 업자에게 돈을 받고 팔아 대대손손 용서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범했다.

이자들이 범한 범죄행위는 극단한 개인이기주의에 오염되어 사람을 동물이나 물건과 같이 팔아 \*\*\* 극악무도한 범죄행위이고 사람의 이익과 목숨의 권리가 최고로 철저히 보장되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아래서는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가장 최악의 범죄행위이다.

제국주의자와 반동의 반공화국 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분쇄하여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우리나라 인민의 장엄한 진군에 도전하는 반혁명적 범죄행위이다. 이자들이 범한 범죄행위는 과거 일제가 조선에 여성들에게 강요하였던 것과 같이 수치스럽고 여성들이 분노하는 \*\*\*\* 가장 용서할 수 없는 반혁명적 반인민적 행위로 적을 도와주는 이적행위이고 인민의 분노를 피할 길이 없다.

금일 우리나라 앞에 놓인 정세는 나라의 관문인 국경을 철저히 봉쇄하고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침투를 막고 비법월경을 비롯한 모든 비사회주의 현상과 법적 투쟁을 일층 강화하는 우리에게 강한 긴장을 요하고 있다. 또, 국경을 철저히 봉쇄하지 않으면 투쟁이 강화되지 않고 사회내부에 불법월경을 비롯한 비사회주의 범죄행위를 허용하는 것으로 되고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지킬 수 없고 최후로는 적에게 먹히는 노예로 될 것이다.

판결! 형법 290조2항, 233조, 246조, 104조에 의해서 심리한다.

피고 전운숙에게 노동교화형 10년에 처한다.

피고 한복남에게 사형을 처한다.

#### 2) 제2심 재판

제2심 재판의 임무는 사건기록과 상소, 항의 자료에 근거하여 제1심 재판소의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맞으며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였는가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잘못을 바로 잡는 것에 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심 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피소자, 변호인, 손해보상청구자는 상급재판소에 상소할 수 있으며 검사는 항의할 수 있다(동법 제357조). 상소를 하려는 자는 판결서, 판정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상소장을 제1심 재판소에 제출하고, 제1심 재판소는 상소기간이 지나면 곧 상소장을 사건기록과 함께 상급재판소에 송부해야 한다(동법 제 361 조). 그리고 상소, 항의가 제기된 판결, 판정은 집행을 중지해야 한다(동법 제360조).

항의하려는 검사는 판결서, 판정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안으로 항의서를 제1심 재판소에 제출하고, 제1심 재판소는 항의기간이 지나면 곧 항의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항의한 검사의 상급검찰소에 송부해야 한다. 그리고 항의서를 접수한 상급검찰소 검사는 10일 안으로 검토하고 같은 급의 재판소에 사건기록과 함께 보내거나 항의를 취소할 수 있다(동법 제 362 조). 그러나 중앙재판소 제1심 재판에서 채택한 판결·판정, 제2심 재판, 비상상소심, 재심에서 채택한 판결 등에 대해서는 상소나 항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359조)

제2심 재판소는 1심 재판과는 달리 판사 3명으로 구성되고(동법 제365조), 상소, 항의된 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25일 안으로 심리 해결하여야 한다(동법 제366조). 제2심 재판심리에는 검사가 참가하며, 변호인이 상소한 경우 변호인을 참가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검사, 변호인이 참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재판심리를 할 수 있다(동법 제367조)

제2심 재판소는 재판심리를 하기 전에 상소장을 사건기록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10일간 사건기록을 검토할 수 있다(동법 제 368 조). 그리고 제2심 재판소는 재판날짜를 재판하기 3일 전에 검사, 변호인에게 알려야 한다(동법 제 369 조).

제2심 재판심리에서는 상소장 또는 항의서에 지적된 부분의 내용심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예심 또는 제1심 재판에서 이 법의 요구와 절차를 심히 어겨 판결에 영향을 준 것이 없는가를 검토한다(동법 제 370 조). 재판장은 재판심리시작

을 알리고 제1심 재판소가 재판한 범죄사건의 내용과 판결, 판정, 그에 대한 상소 또는 항의 이유를 보고하고 검사, 변호인, 재판소 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한다(동법 제371조). 재판장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의견을 말하고 제2심 재판심리를 끝낸다는 것을 알린 다음 판정을 하기 위하여 재판소성원들과 합의실에서 협의한다(동법 제372조). 재판소 성원들은 판정채택을 위하여 상소 또는 항의에 근거가 있는가, 인정한 사실과 그에 적용한 형법조항이 맞는가, 형벌을 정확히 적용하였는가, 예심 또는 제1심재판심리에서 이 법의 요구와 절차를 정확히 지켰는가 등(동법 제373조)에 대하여 합의실에서 협의하여 판정을 하면 재판장은 재판정에서 그것을 낭독하게 된다(동법 제374조).

제2심 재판소는 제1심 판결, 판정을 지지하거나(동법 제375조), 제1심 재판소로 반송판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제2심 재판소는 재판을 끝낸 날부터 2일 안으로 판정서등본을 검사와 상소인에게 송부해야 한다(동법 제376조). 그리고 제1심 재판소에서 기각하여야 할 범죄사건을 기각하지 않았을 경우는 제2심 재판소에서 그 판결을 취소하고 범죄사건을 기각할 수 있다(동법 제378조). 제2심 재판소가 반송한 범죄사건을 접수한 제1심 재판소는 제2심 재판소의 판정에 따라야 한다(동법 제380조). 그리고 중앙재판소가 제1심인 경우에는 단심으로 종결한다.

북한의 상소제도는 우리와 달리 3급(인민재판소, 도·직할시재판소, 중앙재판소) 2심 제도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제2심 재판이 한차례 더 인정된다. 중앙재판소는 필요에 따라 제1심 사건을 직접 재판하거나 같은 급 또는 같은 종류의 다른 재판소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동법 제129조), 경우에 따라 상소제도가 형해화(形骸化)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북한에서 상소제도는 소송관계인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측면보다 하급재판소들의 판결·판정 또는 예심기관의 수사활동에 있어서 당의 사법정책이 정확하게 관철될 수 있도록 통일적인 지도와 통제를 보장하는 데에 더 큰 의의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48)</sup>

### 3) 비상상소심과 재심

#### 가) 비상상소심

북한의 형사소송법 제 384 -402조에는 비상상소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비상상소심은 확정된 판결, 판정이 법의 요구에 어긋났을 경우 그것을 바로잡는 것을 임무로 한다(동법 제384). 북한은 비상상소제도를 “법적 효력이 생긴 확정 판결 및 판정의 안정성과 법적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거기에 그대로 둘 수 없는 결함을 발견할 경우에 그것을 고쳐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의 통일성을 기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말씀, 그 구현인 우리 당 사업 정책이 통일적으로 정확하게 집행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sup>149)</sup>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비상상소심은 수령과 당의 정책에 맞는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의 통일성을 보장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상상소는 중앙재판소 소장이나 중앙검찰소 소장이 중앙재판소에 제기(동법 제389조)할 수 있고 제기기간은 제한이 없다(동법 제390조). 중앙재판소를 제외한 모든 재판소의 확정된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중앙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동법 제385조)가 비상상소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안으로 심리 해결하여야 한다(동법 제386조).

중앙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은 중앙재판소 판사회에서 심리 해결한다. 중앙재판소 판사회는 중앙재판소 소장, 부소장, 판사들로 구성한다. 중앙재판소 판사회는 성원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석하여야 성립되고, 판사회는 판정은 거수가결로 회의에 참석한 성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87조). 중앙재판소 판사회에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참가하고, 중앙재판소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의 비상상소심에는 중앙검찰소 검사가 참가한다(동법 제388조).

형벌집행이 끝난 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형벌이 낮다는 이유로 비상상소제기

148)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 368면.

149)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240면; 김수암,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 실태』, 95면 재인용.

신청을 한 경우 형사소추시효기간이 지난 범죄사건은 비상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동법 제 392 조). 중앙재판소는 비상상소심날짜를 재판하기 3일 전에 중앙검찰소에 알려야 하고(동법 제 397 조), 비상상소심에서는 비상상소제기사유에 근거하여 범죄와 그것을 증명한 증거가 맞는가, 피소자를 정확히 확정하였는가, 이 법에 규정된 요구와 절차를 어긴 것은 없는가, 형벌을 정확히 적용하였는가 같은 판결, 판정의 합법성, 근거성을 전면적으로 심리 해결해야 한다(동법 제 398 조). 비상상소심은 사건보고로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심리를 한 다음 중앙검찰소 소장 또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해당 판정을 한다(동법 제 399 조).

그리고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한 재판소의 판정은 확정기간이 없이 즉시 집행(동법 제 401 조)하고, 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한 재판소는 판정을 한 날부터 2일 안으로 비상상소제기를 신청 또는 청원한 자에게 판정서등본을 보내주어야 한다(동법 제402조).

## 나) 재심

북한형사소송법 제403조는 ‘새로운 범죄에 기초하여 확정된 판결, 판정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동법 제403조)을 재심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재심은 새로운 사실에 기초하여 드러난 개별적인 판결의 잘못을 고치는데 목적이 있다.

재심은 판결, 판정의 기초로 하였던 증거가 거짓이라는 것이 알려진 경우와 판결,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죄로서 재판할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 새로 알려진 경우에(동법 제409조)는 중앙검찰소 소장이 중앙재판소에 제기하고(동법 제407조), 재심에서는 재심제기의 사유로 되는 범죄를 전면적으로 심리 확정하면서 피소자를 정확히 확정하였는가, 형벌을 옳게 적용하였는가 하는 것을 심리해결(동법 제 414 조)하며, 중앙검찰소 검사가 참가(동법 제406조)하도록 하고 있다. 재심의 제기기간은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은 판결을 받은 자가 죽은 다음에도 할 수 있다(동법 제 408 조).

재심제기의 신청은 공민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검사에게 하고, 신청을 접수한 검사는 1개월 안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근거가 있을 경우 사건기록과 함께 조사자료를 중앙검찰소 소장에게 송부하며, 재심제기를 검사가 할 경우에도 앞항에 따른다(동법 제 410 조).

재심사건은 중앙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심리 해결(동법 제 404 조)하고, 중앙재판소는 재심사건기록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안으로 심리 해결해야 한다(동법 제405조). 중앙재판소는 재심의 제기가 정당할 경우 확정된 판결, 판정을 취소하고 범죄사건을 예심원에게 돌려보내어 다시 예심하게 하거나 직접 기각한다. 재심제기가 부당할 경우에는 거부판정을 한다. 이 경우 재심을 신청한 공민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48시간 안으로 알려주어야 한다(동법 제416조).

중앙재판소는 재심 날짜를 재판하기 3일 전에 중앙검찰소에 통지해야 하고(동법 제 413 조), 재심은 검사의 사건보고로부터 시작하여 필요한 심리를 한 다음 해당한 판정을 하게 된다(동법 제415조). 재심사건을 심리한 재판소의 판정은 확정기간이 없이 즉시 집행하고(동법 제417조), 재심사건을 심리한 재판소는 판정을 내린 날부터 2일 안으로 판정서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418조).

이와 같이 북한의 형사소송법상 재심제도는 피소자에 대한 비상구제절차가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판결, 사건기각판정에 대해서도 재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비상상소심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재판감독절차라고 할 수 있다.<sup>150)</sup>

150)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개관』, 378면.

## 제4장 북한의 범죄실상과 보안기관(경찰)의 대응책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는 국가의 강력한 통제와 엄중한 처벌 그리고 주민 간의 감시와 사적 소유물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자본주의 국가에 비하여 범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51)</sup> 북한체제 역시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같이 강력한 사회통제를 통해 비교적 안정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범죄의 유형과 빈발이 한정되거나 미약하여 범죄행위가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범죄행위가 목격되었다고 하더라도 통제된 체제로 인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은 ‘범죄 없는 사회주의 체제’이라는 이유로 범죄 발생사실을 부인하거나 범죄통계를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일어나고 있는 범죄 실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은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에 따른 영향과 1990년대의 극심한 경제난 등의 원인으로 다양한 범죄가 급증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한 탈북자들의 진술과 중국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절도와 강도 등의 경제범죄, 국가의 배급제와 관련된 공직자의 부정부패, 정치범죄 등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북한 당국은 다양화되고 급증하는 범죄양상에 대하여 반당·반혁명적 요소의 발호(반국가범죄), 간부계층의 부정부패 만연(권력형범죄),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물질만능풍조(경제범죄 또는 생계형범죄), 청소년 계층의 사상적 이완(청소년 범죄) 등을 ‘내부의 병폐현상’으로 규정하여<sup>152)</sup> 범죄와 사회일탈행동을 문제화하고 있다.

151) Savelsberg, J.J., “Crime, Inequality, and Justice in Eastern Europe : Anomie, Domination, and Revolutionary Change.” *Crime and Inequality*. John Hagen and Ruth D. Peterson(e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기광도, 『체제통합에 따른 사회변화와 범죄양상』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184면 재인용.

152) 권영경 외, 『북한이해 2000』, 365면.

## 제1절 북한의 범죄 유형

이 절에서는 연구방법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의 수기나 면 접자료, 국내 및 해외 언론기사, 선행연구 자료, 북한원전 등 직·간접적인 자료를 통하여 북한의 범죄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국내와 국가범죄로 대별한 다음, 국내범죄는 정치범죄, 절도범죄, 사회범죄, 권 력형범죄로, 국가범죄는 위조지폐와 가짜담배, 마약범죄, 테러범죄로 각각 세분 화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1. 국내 범죄

#### 가. 정치범죄

북한이 규정하는 정치범죄는 북한형법(제59-66조)<sup>153)</sup>에 규정된 국가전복음모 죄, 테러 죄, 반국가 선전·선동죄, 조국반역죄, 간첩죄, 파괴암해죄 등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를 의미한다. 그리고 김일성·김정일에 관한 각종 출판물 및 교시 비방과 비난, 초상화 등 상징물 훼손, 공산주의 체제의 비난 등도 반국가범죄에 해당되고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비방과 비난, 초상화 등 상징물 훼손을 7번·9번 사건이라고 한다. 7번 사건은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나 인민보안성에서 김일성 암살미수 사건이나 동상파괴와 모독 사건을 비롯하여 김일성과 관련된 범죄사건을 통칭하는 암호이다. 이 사건에는 김일성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 외 조부, 외조부 등 친척과 관련된 범죄사건도 포함되고 있다. 9번 사건은 김정일 후계체제 비난을 비롯하여 김정일과 관련된 일체의 범죄사건의 암호이다. 이 사 건에는 김정일의 생모 김정숙과 김정일의 처가와 관련된 범죄사건, 김정일이 제 시한 정책에 대한 비난과 모독 등이 포함된다.

반국가사범(事犯)에 대해서는 일반범죄와 달리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한다. 인민보안성에서 반국가범죄를 적발하여 체포하면 간단한 조사를

15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대중용)』, 786-787면.

마친 후 국가안전보위부로 이첩한다. 이들 사범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위부가 직접 수사를 한 후 재판소의 판결 없이 사형과 같은 중형에 처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집단 수용시키기도 한다.

북한은 반국가범죄자를 1970-1992년 동안 원산·청진·신의주·평산 등 다양한 지역에서 적어도 23명을 공개처형 하였다. 1990년 식량난이 악화되고 사회주의 이념이 약화됨에 따라 일탈행동이 급증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1995년 말부터 공개처형이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sup>154)</sup>

최근 <자유청년동지회> 활동 동영상의 공개되면서 북한 내 반체제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북한 반체제 활동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꾸준히 발생해왔고 최근 들어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난으로 체제 이완이 심화되고 탈북자를 통한 외부 정보의 유입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은 반체제 범죄가 증가하자 국가안전보위부를 직접 장악하고 주민은 물론 중앙행정기관까지 정보사찰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국가안전보위부는 17세 이상의 주민들에 대한 자료카드를 작성하여 감시하고 있다. 반체제 범죄자를 색출하면 비공개 재판을 통해 처형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발생했던 반체제 사건을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다.

### 1) 쿠데타 사건<sup>155)</sup>

북한 군부내 반체제 사건으로는 1992-93년도에 발생한 ‘푸른제 군사대학 출신 반역모의 사건’과 1995년 4월에 발생한 ‘6군단 쿠데타 모의사건’이 있다.<sup>156)</sup>

154) 권영경 외, 『북한이해 2000』, 366면.

155) “北 ‘6군단 쿠데타모의사건’ 아시나요?”

(<데일리NK>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100&num=1337>), 2005.01.22.

156) 당시 6군단은 청진에 사령부를 두고 함경북도 전체를 관할하였다. 6군단은 3개 보병사단과 4개

1999년 미 행정부 극비문서에 기록에 의하면 1990년대 중반 이후 김정일 정권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을 가했던 사건은 6군단 쿠데타 모의사건이었다. 함경북도 청진에 주둔했던 인민군 무력부 6군단에서 정치위원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모의하다 발각되어 장성급을 포함하여 군 간부 40여명이 처형되고, 3~4백명이 처벌된 것으로 전해졌다. 1999년도에 워싱턴 타임즈 빌 거츠 기자가 공개한 미 행정부 극비문서에도 쿠데타 시도 사실에 대한 다양한 증거를 제시되었다.

동 쿠데타 모의는 6군단 정치위원(소장에서 중장 계급)을 중심으로 예하 부대 대대급 지휘관까지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함경북도 도당 책임비서, 행정일꾼,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인민보안성) 부부장 이상 간부급이 대거 가담했다. 즉, 당시 함경북도 군, 당, 행정 책임자 대부분이 이 쿠데타 모의에 가담했다고 볼 수 있다. 6군단 쿠데타 모의가 이처럼 도(道) 전체로 확대되고 있었음에도 당시 6군단장이었던 김영춘(1994년 3월 6군단장 부임)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당시 정치위원들은 만경대 혁명학원 출신으로 김일성과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김영춘을 제외시켰기 때문이다. 사건에 연루되지 않은 김영춘은 쿠데타 진압을 도와 1995년 10월 인민군 총참모장에 올랐다.

동 쿠데타 모의에 필요한 비용은 대부분 외화벌이 사업을 통해 모은 달러를 사용했다. 국경지역 군부대는 중국과 무역이나 밀수를 통해 손쉽게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조직 확대를 위한 과도한 달러 유통이 단서가 되어 쿠데타 모의는 군 보위국의 수사망에 적발되었다. 이 사건 직후 군 당국은 6군단 내 24사단과 5군단 소속 34사단을 교체하고 나머지 군단을 함경남도 7군단과 교체한 후 24사단 병력 전원을 몇 년에 걸쳐 전역시켰다. 쿠데타 모의에 관련된 핵심 관계자는 전원 처형당하고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다. 당시 핵심 관련자는 친족뿐 아니라 사돈의 6촌까지 처벌당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쿠데타 계획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인민군 6군단 쿠데타기도 사건은 결국 실패했지만 군부가 무조건 김정일 충성

---

방사포 여단, 1개 포병사단을 전투부대로 구성되었다.

일변도가 아니라는 점과 북한 내에서도 조건이 성숙되면 반체제 조직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외에도 1999년 8월 24일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역의 도로공사에 동원되었던 제6군단 건설부대 가운데 식량부족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으로 200여명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한다. 이들 대부분은 체포되어 120명이 처형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년 10월 5일자 평양방송은 비열한 날조극이라 비난하며 이 사건 자체를 부인한 바 있다.

## 2) 반(反) 김정일 뼈라·벽보·구호사건

첫째, 김일성 유적지에 반(反)김정일 뼈라 뿌려졌던 사건이다. 2006년 2월 10일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반(反) 김정일 뼈라사건이 발생했다. 북한 내부 소식통(200.2.17)은 “김정일을 거꾸로 세우자”라고 쓰인 뼈라 수십 장이 온성군 소재 왕재산(해발 239m)에 뿌려져 보위부 등 관계당국이 수사에 나섰다”고 전하며, “왕재산은 김일성의 항일업적을 기리기 위한 동상과 사적지가 대대적으로 건설된 곳이어서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1970년대 김정일의 지도하에 건설된 ‘왕재산 혁명전적지’는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주민들에게 학습시키는 ‘대(大)노천 박물관’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57)</sup>

둘째, 반체제 조직들에 의한 김일성 비난 벽보 사건이다. 2002년 탈북한 강제혁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끝난 1989년 9월 1일 평양에서 “우리들의 투쟁”이란 명의로 ‘김일성 김정일체제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봉건왕조 체제라고 성토’라는 벽보를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이 벽보는 “지금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정신과 어긋나는 봉건통치 국가일뿐이다. 인민들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고 사회주의를 건설할 것을 강요하면서 김일성과 간부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다. 우리는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원한다”는

157) 한영진 기자(평양출신, 2002년 입국)·김영진, “김일성 유적지서 反김정일 뼈라 뿌려져”(데일리NK: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4500&num=18788>), 2006.2.17.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국가안전보위부는 이 사건에 연루된 12명을 체포하여 처형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외국어대학, 평양상업대학, 평양건설건재대학 등 최고의 엘리트 대학의 상급학년(3학년 이상) 학생들이었다고 한다.<sup>158)</sup>

셋째, 김정일을 비난하는 구호가 발견된 사건이다. 데일리 NK는 함흥출신 탈북자 권상호(가명, 25세)와의 인터뷰(2006.2.2)를 통해 “2003년 4월 김일성 생일(4·15)을 앞두고 함흥 대극장 건물벽에 김정일을 비난하는 구호가 발견되어 보위부가 대대적인 색출에 돌입한 사건이 있었다”며, 그 구호 내용은 ‘김정일이 조선을 다 망쳐 놨다’, ‘함흥시를 나진처럼 개방하라’, ‘개혁개방만이 살길이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했다.<sup>159)</sup>

### 3) 반체제 활동

‘데일리 NK’는 북한의 반체제 조직 활동이 함경도, 양강도, 자강도 등 국경 접경지대에 집중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6.25전쟁 이후 1970년대까지 박헌영, 이승엽 등 남로당 출신 제거, 소련과의 연안과 대숙청(8월 종파사건), 갑산과 숙청, 5.25 교시에 따른 지식인 숙청 등 대규모 계급투쟁을 전개하면서, 이른바 ‘반당종파분자’들을 함경도 등 외곽지역으로 소개(疏開)해왔다. 지주와 자본가, 기독교인과 그 가족 등 계급투쟁 피해자들인 소위 ‘적대계층’ 주민들도 함경도, 양강도 등지로 유배되었다. 때문에 함경도, 양강도, 자강도 등지는 전통적으로 계급투쟁의 피해자들이 몰려있으며 이 지역 주민들은 뿌리 깊은 반체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

데일리 NK는 1994~97년 3백만명 이상이 굶어죽는 대아사 기간을 거치면서, 북한 내부에 전(全)주민이 식량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대규모 유민(流民)현상이

158) 강제혁 기자(함흥출신, 2004년 입국), “평양 반체제조직 ‘우리들의 투쟁’ 최후”(데일리NK: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300&num=35768>), 2007.1.17.

159) 한영진 기자(평양출신, 2002년 입국), “함흥 대극장 김정일 비난 구호사건 있었다”(데일리NK: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6000&num=18152>), 2006.2.2.

발생했고, 20~30만명 이상이 중국으로 탈북했던 것으로 주장했다. 이들이 북-중을 넘나들며 중국과 남한 등의 외부정보를 내부에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지역에 반체제 조직이 먼저 생겨나게 되었다. 이밖에 신의주, 의주, 창성군, 벽동군 등 중국 인접의 평안북도 지역도 외부정보가 유입되기 쉽고, 전통적인 ‘반골 지방’으로 꼽히고 있어 지하 반체제 활동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탈북사태가 잇따르면서 북한 전역에 외부정보가 유입되고 있어 잠재적 반체제 활동지역까지 포함하면 평양과 평남지역, 강원도 등을 제외한 전역이 반체제 활동의 잠재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sup>160)</sup>

1997년 망명한 김덕홍(전 북한 여광무역 총사장)은 “북한내 2~3명씩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반체제 단체들이 2004년 6월부터 북한 전역에서 반 김정일 전단을 살포하는 등 공개활동을 시작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기자들과 인터넷 화상 회견(2004.8.4)을 갖고 “이들이 북한내 210개 군 소재지에 ‘룡천역 폭발사건은 김정일 자작극’이라는 제목의 전단을 뿌렸다”면서 “북한 당국은 6월말부터 전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국경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지하조직들이 자생적 단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변 국가들에 의해 조직화됐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sup>161)</sup>

#### 나. 절도범죄<sup>162)</sup>

북한체제가 비교적 안정화되어 있을 경우는 경제범죄가 발생했다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제위기가 더욱 악화되면서 주민들은 부족한 식량과 생필품 등을 자급자족해야 하는 환경에 놓이게 되었고,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절도행위가 만연했던 것이다.<sup>163)</sup> 이러한 현상에서 국가에 의한

160) The Daily NK 특별취재팀, “반체제 활동, 함경도 등 국경지역 집중”(테일리NK: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100&num=1255>), 2005.1.17.

161) 김덕홍, “北반체제 단체들 공개활동”, <경향신문>, 2004.8.5.

162) 고성호, “북한주민의 범죄와 이탈”(정영철 외,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변화』, 서울: 한국방송공사, 2005.12), 124-146면 참조.

163) 1990년 중반 식량난 이후 중앙배급제도가 무너지면서 북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산나물을 캐거나 조개를 잡는 등의 원시적 생산수단에 의존하고, 압록강변의 신의주 등 국경지역 주민들은

배급체제가 위기에 봉착되었다는 사실을 시사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 발생하는 절도범죄 대상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나 개인 재산으로 대별할 수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상 국가재산에 대한 절도가 주된 대상으로 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진술에 의하면 국가재산에 대한 절도 품목은 양곡창고와 생필품 보급소, 공장의 부품과 자재, 농작물, 전화선과 전기선, 문화재 등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양곡창고를 대상으로 한 절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청년들 3-4명이 무리를 지어 달빛이 없는 밤을 택해서 습격한다. 가장 흔한 절도는 공장의 부품을 빼내어 파는 경우로 심지어 공장 설비 조사원까지 공장부품을 공공연하게 빼낸다고 한다.<sup>164)</sup>

농민의 경우에는 텃밭을 이용하여 어느 정도의 농산물을 생산하지만 부족한 생필품은 다양한 수법 즉, 절도행위를 통해 확보한다. 예를 들면 벼가마 숨기기, 고구마 덜 캐기, 계란과 옥수수 훔치기 등의 양상으로 농산물을 절도하고, 협동기업의 노동자들은 의식주 등의 생필품 부족으로 직장에서의 생산물 빼돌리기 등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up>165)</sup>

개인재산을 대상으로 한 절도행위도 빈발하게 나타나는데, 주로 장마당이나 역 그리고 기차 등에서 상인이나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장마당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은 거의 모두 절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장마당은 평양·모란봉·평천·칠곡·송신·서평양·북새거리 장마당 등이 있으며, 이런 장마당을 중심으로 500여명의 장사꾼들이 몰려다니며 쌀을 비롯한 두부, 콩나물 등 가정에서 생산

밀거래거나 암시장 등의 방법을 찾게 되었다. 암시장에서는 가정용품을 비롯한 위조달러, 국경선의 물물 교환 등이 거래되었다. 이러한 비공식적인 거래의 급증은 다급한 사회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로 개인들의 암시장이 합법화되었으나, 물건 조달방법이 거의 불법적이기 때문에 범죄행위는 지속될 수밖에 없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중 국경지역을 통한 밀거래가 급증했는데, 북한에서 중국으로 반출되는 것은 약초, 산나물, 조개, 오징어 등 일차상품도 있으나, 대체로 부피가 작으면서 가격이 비싼 구리(전기선·전화선), 공장부품, 도굴품 등 이차상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중국에서 반입되는 물품은 곡물(쌀, 옥수수 등)과 의류(신발, 옷 등), 생활용품(소금, 치약 등), 기호품(안경, 필름 등)이 주종이다.(위의 책, 131-132면)

164) 위의 책, 127-128면.

165) 기광도, 『체제통합에 따른 사회변화와 범죄양상』, 187면.

한 식품과 쌀, 옥수수 가루 등 곡물, 운동화와 옷 등 의복류, 심지어는 공장에서 빼내온 자재나 부품 등이 거래되고 있다.<sup>166)</sup> 최근 식량가격은 2006년 10월 들면서 햇곡식 때문에 약간 떨어졌으나 큰 차이는 아니다. 지난해 10월 초 현재 쌀, 옥수수, 국수, 속도전 가루 등의 식량 가격이 9월에 비해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술, 달걀, 식당에서 파는 밥, 국수 등의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다. 술(농태기) 한 병에 250-300원 하던 가격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있고, 달걀 한 알에 300-330원, 식당에서는 달걀 한 알에 350-400원선에 팔린다. 밥과 국수는 600-800원 하다 요즘 1,000-1,200원까지 뛰어올랐다. 주민들은 앞으로도 식량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해 식량을 모으는 데 주력하고 있다.

<표 4-1> 북한의 전국 주요도시 물가 동향(2006년 10월 초순)<sup>167)</sup>

(단위: kg/북한 원)

품목	신의주	남포	평성	평양	사리원	해주	원산	청진	함흥
북한쌀	850-900	950	950	950	800	890	890	1,050	1,000
수입쌀	900	800	800	800	800	720	850	1,000	950
한국쌀	1,000	1,000	1,000	1,000	900	800	950	1,100	1,050
안남미	600	550	550	550	600	550	600	650	650
참쌀	1,300	1,200	1,200	1,200	1,250	1,100	1,200	1,400	1,350
옥수수	470	450	430	430	400	500	450	500	470
옥수수쌀	500	490	460	450	430	520	480	550	510
속도전가루	600	600	600	600	580	650	600	650	620
밀가루	850-900	850	850	850	900	900	900	900	900
옥수수국수	500	500							

166) 고성호, “북한주민의 범죄와 이탈”, 36면 재정리.

167) 사단법인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외화별이 회사 일대 검거 선풍”( <오늘의 북한소식 제43호>, 2006.11.1), 6면.

기차역 등에서는 ‘꽃제비’들이 여행객을 대상으로 절도행위를 하고 있다. 꽃제비들은 여행객들이 방심하는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도한다. 3-4명으로 구성된 전문적인 절도단이 활동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물건 주인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절도행각을 자행한다. 이 때문에 상인이나 물건 주인들은 절도에 대비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상인들은 조를 편성하여 감시하거나, 물건을 감싸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며,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물건을 보호하기 위해서 친분이 있는 사람끼리 조를 편성하여 기차를 타기도 하고, 기차 내에서는 물건을 안거나 끈으로 자신의 몸에 묶는 방법을 사용한다.

최근에는 자동차 충전지가 주요 절도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은 전기부족으로 자동차 충전지를 이용하여 조명이나 기타 필요 전기를 이용하고 있다. 충전지 한 개당 보통 10만원-15만원, 최대 20만원까지 거래되기 때문에 충전지 절도에 성공만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다수 주민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절도를 하게 된다. 최근 인민보안서는 차 부속품 절도뿐만 아니라 장물을 매입한 사람들까지도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경고한 바 있다. 사흘에 한번 꼴로 이런 내용의 대민 강연을 하고 있으나, 절도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일반 전기 사정이 풀리기 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큰 이익이 생기는 데 흠칠 능력만 된다면 누구라도 훔쳐가지 않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sup>168)</sup>

그럼에도 2000년대에 들어 북한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되자 절도범죄가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절도범죄가 감소한 원인으로는 국가재산에 대한 감시가 과거보다 한층 강화되었고, 상인들도 장사를 조직적으로 하면서 물건관리에 대한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168) 사단법인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자동차 충전지 절도사건 빈발”(〈오늘의 북한소식 제62호〉, 2007.3.7), 3면.

## 다. 사회범죄

북한사회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을 때에는 청소년들의 패싸움, 성인들의 취중(醉中) 행패 등이 일부 있었으나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를 지나면서 사회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중반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자 다양한 유형의 사회범죄가 급증하였다. 사회범죄는 대인범죄와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하는 범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 대인범죄

북한의 1990년대 중반은 대인범죄가 급증했던 시기였다. 대인범죄는 북한의 범죄 분류 중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 즉, 국민의 생명·건강·인격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되는데, 살인죄, 상해·폭행죄, 유괴죄, 명예훼손죄, 강간죄 그리고 미성년자의 성범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sup>169)</sup> 이 항목에서는 성범죄, 청소년범죄, 마약범죄, 도박과 미신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가) 성범죄

북한은 19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성매매 사건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의 비교적 ‘깨끗한 사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sup>170)</sup>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경제위기의 변혁기를 거치면서 식량, 생필품, 의류 등을 구입할 목적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성들의 성의식이 변화됨에 따라 성범죄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시 부화(간통)사건이 더욱 만연하게 되는 또 다른 요인은 1980년대부터 부화사건으로 해직된 자들이 복직되고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간통이나 강간 등 치정사건은 살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169) 고성호, “북한주민의 범죄와 이탈”, 134면.

170)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의 결혼을 성이 도구화된 계약관계라 비판하면서, 북한은 매매춘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고 선전하여 왔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진술에 의하면 매매춘 행위는 주로 역주변이나 장마당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장마당의 경우 얼굴에 화장을 질게 한 젊은 여성들이 장사꾼을 대상으로 매춘을 공공연히 자행한다. 이러한 매춘행위는 1990년대 중반에는 개인적으로 이루어졌으나, 2000년대를 들어서면서 조직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역 주변의 매춘은 장마당에서의 매춘행위와 유사하지만, ‘대기숙박업’을 하면서 매춘을 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기숙박업이란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대부분 상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비합법적인 업종이다. 대기숙박업을 하는 주민들은 부정기적으로 운행되는 열차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편의 제공을 제의하면서 매매춘을 한다.<sup>171)</sup> ‘고난의 행군’의 저자 권혁은 역전에서 자행되는 매매춘의 실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해주역에도 매음하는 여자들이 많은데, 주로 외지에서 온 여자들이다. 그들은 장사꾼 남자들이나 군인, 출장원 남자들을 상대한다. 그들은 해주 역전 앞에 집을 잡고 숙박할 손님을 데리러 나온 것처럼 하고는 출장원이나 군인 등 대상자들을 유혹한다. 그들은 대상자들을 자기가 거쳐하는 집으로 데리고 가서 매음을 하고, 그 대가로 그 집을 먹여 살린다. 그렇지 못한 여자들은 역전 앞 공원의 한적한 곳 아니면 아파트 복도나 창고 뒤에서 매음을 한다”<sup>172)</sup>

강간이나 강제 성추행 등은 권력기관의 간부들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인민군과 농촌 처녀들간의 간음·강간사건이 빈발하고 있는데, 이는 농촌처녀들이 군관과 결혼해 도시로 갈 수 있는 희망에서이다. 이러한 요인은 1990년대 들어 농촌지역 젊은이들의 이농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북한에서의 성의 도구화는 매춘의 경우보다 당원이나 승진을 하기 위해서 당 간부 및 기업소 간부와 여성간의 부화관계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북한 정권수립부터 지금까지 입당을 위한 성의 제공은 수많은 문제를 야기하면서 지속되어 왔

171) 고성호, “북한주민의 범죄와 이탈”, 138-139면.

172) 권혁, “9. 해주”(『고난의 행군』, 정토출판사, 1999), 98면; 박원홍, “북한주민의 이탈현상과 부조리 실태 연구”, 32면 재인용.

다.<sup>173)</sup>

### 나) 청소년범죄

청소년범죄는 모방심리를 통하여 또래 집단간에 급속히 확산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1989년 개최된 평양축전 이후 자유분방한 자본주의 문화가 청소년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어 그들의 의식과 행동양식을 크게 변화시켜 범죄행위를 급증시키는 원인이 되었다.

북한의 각종 범죄는 대부분 30세 이하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범죄자는 전체범죄자의 80%에 이르고 있으며, 22-25세의 청년 범죄자들이 50%를 차지한다. 청소년 범죄는 조직화 양상을 보여 원산이나 함흥, 남포 등의 항구 도시에는 조직원이 50-60명에 달하는 폭력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범죄유형은 소매치기, 빈집털이, 상점털이 등 절도와 폭력, 패싸움, 강도, 강간, 살인 등 성인형 범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sup>174)</sup> 그리고 청소년들 사이에는 자본주의형 생활양식 복장, 머리모양 등에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 청바지와 바지치마, 풍대바지(쫄바지), 외국어가 새겨진 티셔츠 등을 입거나, 장발 등 특이한 머리모양을 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범죄를 유발시키는 주된 요인은 출신성분에 의한 정치사회적 차별대우에 따른 사회적 진출의 좌절, 학교생활의 인격형성의 미비, 과도한 노력동원과 사상학습, 경제난에 따른 가정 붕괴 등에 있다. 권혁의 증언은 북한 청소년들의 범죄 실상을 잘 대변하고 있다.

“북한의 14-15세 청소년들은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아이들이 많다. 그들은 공부는 뒤에 놓고 싸움부터 배우려한다. 왜야하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가정성분과 뒷 힘이 없으면 세력이 센 집 아이들에게 밀리고 마니 그런 사정을 잘 아는 만큼 자연히 공부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함흥시 동흥산구역에 있는 반룡산과 성천강 독, 학교

173) 위의 글, 31면.

174) 내외통신사, <내외통신 790호>, 1992.4.9.

운동장, 주변 야산에 가면 싸움 기술을 익히느라고 훈련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의 패싸움도 자주 일어난다. 전에는 무리 지어 돌이나 몽둥이 같은 흉기로 싸움을 했지만 지금 아이들은 흉기 쥐는 것을 한 수 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손과 발로 기술싸움을 한다. 겨루어 보아서 상대방이 자기보다 세면 순순히 손을 든다”<sup>175)</sup>

북한의 집단주의 가치관이 약화되면서 정치사상교육에 대한 비판의식이 높아지고, 힘든 노동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북한당국은 ‘청년동맹’ 조직 이탈자가 급증하자, 조직이탈자를 대상으로 ‘청년돌격대’를 조직하고 건설 현장에 투입하는가 하면 ‘조직사상카드’, ‘조직생활 유리자 도표’ 등을 작성하여 집중관리하고 있다. <청년전위>(1998.3.3)는 대학생들이 “초급청년동맹 생활총화에 빠지고도 개별총화를 하지 않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상교양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아침독보에 참여하지 않는 현상이 잦다”며 청소년들의 사상 이완을 비판하였다.<sup>176)</sup>

#### 다) 도박과 미신

북한 주민들은 1990년대 경제위기 속에서 돈과 물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물질만능 사상에 젖어든 북한 주민들은 돈을 쉽게 벌수 있는 수단으로 쉽게 도박에 빠지게 되었다. 도박의 방법으로 카드와 화투를 사용하는데, 카드는 ‘주패’라고 하여 일상화된 오락이다. 화투는 1970년대 금지되었다가 1980년대 후반 중국의 조선족을 통해 들어오기 시작했다. 도박에 주로 사용하는 수단은 카드로 알려졌다.

북한은 종교나 미신을 엄격히 통제하여 왔다. 종교행사는 일부 평양에서 허용되고 있으며, 종교인들은 당의 허락 하에 종교행사에 참석한다.<sup>177)</sup> 지방에서는

175) 권혁, “24 함흥2월”(『고난의 행군』, 정토출판사, 1999), 253면; 박원홍, “북한주민의 이탈현상과 부조리 실태 연구”, 67면 재인용.

176) 권영경 외, 『북한이해 2000』, 371-372면.

177) 북한 종교단체 주도자들은 종교인이 아니라 정치인이다. 1990년 4월 실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687명) 가운데 종교단체 대표 6명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기독교연맹’ 위원장 강영섭과 ‘조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미신을 믿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간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을수록 미신에 대한 의존도 높아지게 된다. 미신은 암시, 카타르시스, 설득, 카운셀링, 위안 등을 통해 인간의 갈등과 불안을 해소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북한은 지속된 자연재해로 인한 극심한 식량난과 북·미간 갈등으로 인한 체제위기가 고조되자 주민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미신에 대한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점쟁이들은 대부분이 할머니들이다, 점을 보는 이유로는 운세, 건강, 장사와 관련된 것들이다. 몸이 아픈 경우 점쟁이를 찾아가 치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장사꾼들은 장사하기 좋은 시기를 묻는다. 북한사람들은 ‘허가받은’ 점쟁이와 그렇지 못한 점쟁이를 구분하고 있다. 허가받은 점쟁이는 당간부나 권력자들의 점을 맞춘 적이 있는 점쟁이들이다. 점치는 행위를 단속하도록 지시가 내려오지만, 당간부의 운세를 맞춘 점쟁이들은 신통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하지 않는다. 복채도 다른 점쟁이들보다 비싸다. 그러나 ‘허가받지 않은’ 점쟁이들은 복채도 쌀 뿐 아니라, 단속대상이 되기도 한다. 평양에서는 미신을 믿으면 ‘추방되기 때문에’ 미신을 믿지 않지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미신행위는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sup>178)</sup>

## 라) 마약범죄

최근 북한에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마약 복용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은 2006년 6월 8일 소식지에서 “마약을 사용하는 20~30대 남성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일단 호기심에서 마약을 접촉한 이들이 생활난으로 인한 고통과 마음의 공허감으로 마약을 끊지 못한 채 점점 중독이 된다”고 소개하였다. 이 단체는 북·중 국

선불교도연맹’ 위원장 박태호는 최고인민회의 통일정책위원회 위원인 동시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위원이었으며, ‘조선천주교인협회’ 위원장 장재철 역시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회 위원이었다.

이들은 당의 지시를 따르는 정치인들로서 신앙적 종교 활동은 많은 제약을 받게 된다.

178) 고성호, “북한주민의 범죄와 이탈”, 142면.

경지역인 함경북도의 경우, 한창 일할 나이인 청장년층의 5% 정도가<sup>179)</sup> 마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마약복용은 범죄로 이어지고 있으며 2006년 초 평안북도 신의주와 함경북도 회령 등지에서 발생한 절도사건 등의 범인들은 모두 마약복용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였다.<sup>180)</sup>

북한 사회 마약복용의 심각성은 단순히 변방지역 뿐 아니라 평양 등 중심지와 직위 고하를 불문하고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마약이 주민들 사이에서 ‘각종 병에 특효가 있고, 적당히 사용하면 장수한다’, ‘알코올 의존증 환자도 완치된다’, ‘피로가 가시고 힘이 솟는다’ 등 고급 기호품이나 만병통치약처럼 인식되는 실정에 있다.<sup>181)</sup> 이에 대해 ‘좋은벗들’은 “당간부 집안 등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난 십대 청소년들의 마약사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부모들이 자신의 직위나 재산을 이용해 직접 마약을 거래 또는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약 복용을 단속해야 할 보안원(경찰)이나 검사까지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해 마약밀매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sup>182)</sup>

이처럼 내부적으로 마약복용이 확산되자 김정일은 “그 어느 특수단위를 막론하고 아편 재배 및 마약 밀매를 금지하라”(2002.3)고 지시했고, 인민보안성은 마약의 거래·제조·수출 등에 연루된 자에 대해 최고 사형으로 다스릴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고령(2006.3.1)을 발표했다. 이러한 김정일의 교시와 강한 처벌 방침에도 불구하고 마약 거래와 복용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식량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각지의 제약공장에서는 종업원들에게 쌀을 공급할 방법이 없자 위법인 줄 알면서도 필로폰 등을 제조해 시장에 내다 팔고 그 돈으로 식량을 구입해 종업원들에게 나눠주면서 더욱 확산되고 있다. 대북소식통은 “마약을 국제사회에 밀매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 국내시장을 휩쓸고 있어 문제”라며 “외화벌이 차원에서 시작했던 마약밀매가 이제는 북한 내부를 잠먹어

179) 북한이탈주민들은 20, 30대 젊은 남자들의 5% 이상이 마약 사용자라는 충격적인 증언을 하기도 한다.(주성하, “히로뽕에 찌든 북한... 20, 30대男 5%이상 투약”, <동아일보>, 2006.9.30)

180) 장용훈, “北사회 마약으로 신음”, <연합뉴스>, 2006.6.8.

181) 주성하, <동아일보>, 2006.9.30.

182) 장용훈, <연합뉴스>, 2006.6.8.

전국이 마약중독에 걸린 상황”이라 분석하였다.<sup>183)</sup>

다음의 보도 기사는 북한의 마약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2006년 9월 28일 북한 함북 회령시에서 마약유통에 관여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군중재판이 열렸다. 몇 달 동안 진행된 국가 마약 집중단속 총화사업의 결과다. 도와 각 시, 군 노동당 책임비서, 보위부장, 안전부장들이 참가한 가운데 범죄자 200여명의 죄목이 열거되고,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결정이 발표됐다. 개인별 판결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처형당하는 사람들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여명 중 절반 이상은 당, 보위부, 안전부 등의 간부였다. 단순 마약 사용자는 셀 수 없이 많아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회령은 인구 10만 명의 국경 소도시로 중국을 드나드는 밀수업자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 작은 도시에서 마약 유통에 관여한 사람이 200명 이상이라는 점은 충격적이다. 재판에 참가한 주민들은 “운 없는 놈들만 잡혔다”고 수군댔다. 실체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얘기도 있다. / 북한에서 유통되는 마약은 히로뽕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 얼음처럼 생겨 북한에서는 ‘아이스’ 또는 ‘얼음’이라고 부른다. 북한의 주요 히로뽕 제조지는 함남 함흥시 일대로 추정된다. 이곳의 거래가격이 가장 싸다. 함흥에서 kg당 8000달러에 거래되는 히로뽕은 함북 청진시 쪽에서는 1만 달러, 중국에는 1만 5000~1만8000달러에 팔리고 있다. / 북한 주민들은 히로뽕을 저가인 ‘L체’와 고가인 ‘D체’로 나눈다. 중국산 마황초에서 추출한 식물성 D체를 최고급 마약으로 꼽는다. 히로뽕 주원료인 염산에페트린은 중국에서 밀수해 온다. 북한 주민들은 히로뽕을 연기로 마신다. 히로뽕에 물을 묻혀 은박지에 싸 다음 가열해 이때 나오는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것을 의미한다. / 북한에서 마약 유통량이 급증한 이유는 과거 국가에서 독점했던 제조 기술이 민간으로 새나갔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국제기구들은 북한이 2002년 3월경부터 국가 차원의 마약 제조를 중단했다고 보고 있다. 대량의 히로뽕이 개인들에 의해 중국으로 밀수되고, 다시 한국과 일본 미국 등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sup>184)</sup>

183) 위의 글.

184) 주성하, <동아일보>, 2006.9.30.

## 2) 문화를 침해하는 범죄

사회범죄 중에서 사회주의 문화를 침해한 범죄는 대부분이 신종범죄에 해당한다. 북한 당국이 ‘황색바람(자본주의 문화사상)’라고 경계하는 ‘퇴폐문화의 반입·유포죄’가 대표적 사례이다.<sup>185)</sup> 1990년대 들어서 북한사회에 서구의 ‘자본주의 사조와 문물’이<sup>186)</sup> 유입되기 시작했다. 중국조선족 보따리 장사, 식량구입을 위한 월경자, 국경 밀무역꾼, 일정기간 해외에 체류했던 외교관과 무역관, 해외유학생, 각급 기관의 외화벌이 일꾼 등에 의해서 해외문물이 묵시적으로 유입됨으로써 주민들 사이에 정치사상성과 혁명성 약화는 물론, 비사회주의적 행위와 체제 비판적 행위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국경지역에서부터 불어온 ‘황색바람’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보다 더 빠르게 확산되고 심화되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87)</sup> 이러한 ‘퇴폐문화’의 심각성에 대해 김정일은 1990년 2월 담화를 통하여 ‘퇴폐가요의 침습방지’를<sup>188)</sup> 지시했다.<sup>189)</sup>

남한에서 유입되어 북한주민들이 애창하는 대표적인 가요로는 ‘그때 그 사람’, ‘동백아가씨’, ‘사랑의 미로’ 등이 있다. 2001년에는 ‘두만강’, ‘홍도야 울지마라’ 등이 ‘계몽기 가요’라는 미명하에 해금하였는데, 이는 북한주민들이 남한 가요를 애창하는 현실 속에서 물리적 단속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연속극을 보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남한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겨울연가’, ‘가을동화’, ‘목욕탕집 남자들’, ‘불멸의 이순신’ 등이 주민들이 많이 본 대표적 연속극이다. 이들 연속극은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밀수

185) 1999년 6월 1일 당 기관지 <로동신문>과 당 이론잡지인 <근로자>의 공동논설로 발표한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배격하자”에서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나라들에 있어서 원자탄보다 더 위험한 것이 제국주의자들이 퍼트리는 황색바람”이므로, “비록 사소한 것이라도 비사회주의적 현상, 자본주의적 요소는 절대로 허용하지 말고 그 싹부터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북한이 개혁이나 개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186) 당시 북한사회에 반영된 대표적인 자본주의 사상 침습으로 음성적 시장경제의 활성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의 팽배, 집단주의 정신 약화, 사회적 일탈행위 급증, 정권에 대한 불신 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187) 김윤영, “북한소설의 갈등양상 연구”(수원대 박사학위논문, 2003), 136면.

188) 김정일, “음악 창작과 보급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음악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과 한담화 1990년 12월 27일”(『김정일선집(10)』,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446쪽.

189) 김윤영, “북한소설의 갈등양상 연구”, 136면.

된 테이프를 보며, 젊은 사람들은 1-2편 가량의 남한 드라마를 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라고 한다. 단속을 해야 할 간부들이 역시 남한의 연속극을 보고 허위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한의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는 인구도 상당히 늘었다. 라디오 방송은 동해안 지역 특히 함경북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이 청취한다.<sup>190)</sup>

북한의 영화 역시 예전의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남한의 카페풍경과 대중가요가 삽입되고 있다.<sup>191)</sup> 북한의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sup>192)</sup>에는 조명이 휘황한 남한의 카페풍경과 그 카페에서 노래 부르는 여가수와 남한의 대중가요들이 영화 속에 삽입되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상투적인 북한체제 찬양물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영화에 삽입된 남한의 대중가요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북한의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영화에 삽입되었던 가요 ‘그때 그 사람’, ‘낙화유수’, ‘홍도야 울지마라’ 등이 인기리에 애창되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한국 영화 열풍이 북한의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경연선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CD 녹화물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는 상황과 대

190) 고성호, “북한주민의 범죄와 이탈”, 136-137면.

191) 조명이 휘황한 남한의 카페풍경에서 노래 부르는 여가수와 남한의 대중가요들이 영화 속에 삽입되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상투적인 북한체제 찬양물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누렸다. 이 영화에 삽입된 남한의 대중가요 <그때 그 사람>, <낙화유수>, <홍도야 울지마라>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애창되었다.

192) 1992년부터 창작되기 시작한 다부작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은 2003년 6월까지 총 62부가 제작되었다. 영화의 소재(월북자, 친북자, 재일교포, 남한 공작원 등)와 작품 배경(미국, 일본 그리고 남한 등의 자본주의 국가 등)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이전의 영화작품과 차이를 보였다. 영화의 주요 메시지는 노동계급 출신들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다양한 성분의 인물들이 사회 각처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으며, 소재 역시 결혼문제, 가족문제 등 일상적인 삶의 문제들을 비중 있게 다루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북한의 문예작품의 소재, 배경, 등장인물 등에서 다양성이 나타나게 된 요인은 1980년대 ‘숨은 영웅 형상문학’에 비롯되었다. 이러한 영향은 1990년대 문예작품에 소재의 다양화로 나타났다. 특히 <로동계급편>은 <민족과 운명> 중 25-33부에 해당하는 작품으로 북한을 배경으로 ‘씻물 철학’을 종자로 삼고, 천리마운동을 소재로 사회주의적 생산 독려를 주제로 삼고 있다. 이 작품이 제작된 1995년은 김일성 사후로서 김정일 체제의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했던 시점이다. 때문에 주민들의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가중되는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산활동을 독려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과 1995년 이후 정치적으로 강조된 ‘고난의 행군정신’이나 ‘붉은 기’의 대두 등은 <로동계급편>의 제작방향에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조적이다. 아무리 단속해도 틈새를 이용해 빠른 속도로 불법 CD물이 주민들에게 유통되고 있다. 주민들은 불법도강으로 중국을 오가는 장사꾼들에게 각종 CD를 사서 문 걸어 잠그고 문방지에 천을 치고 몰래 본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10대 청소년들 역시 남한 드라마나 영화에 열광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영화는 ‘친구’, ‘장군의 아들’, ‘조폭 마누라’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조폭 마누라’는 학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데, 영화를 본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 되면 운동장에 모여 흥내 내느라 때리고 맞고 야단법석을 피운다. 그러다 다음 수업시간에 지각하거나 급우들이 부상당하는 일이 속출하자 학교 문제로 되고 있다, 그러나 적(敵)의 녹화물을 보는 행위는 민족의 반역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건화 했다가 연대책임을 물어 상급당의 비판 등이 뒤따라 피해가 막심해지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리고 체포되는 학생과 학부모도 괴롭지만, 잡아가는 사람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후에 피해 가족으로부터 보복을 받을 수도 있기에 가급적 모른 척 한다는 것이다. 다만 학교에선 아이들에게 예들려서 위험하니 하지 말라고 경고할 뿐이다.<sup>193)</sup>

#### 라. 권력형 범죄

권력형 범죄는 북한사회의 간부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범죄라 할 수 있다. 권력형 범죄에는 뇌물수수나 부하직원과의 성관계, 물자유용, 사례금 착복 등이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돈 없이 되는 일도 없고, 돈 가지고 안되는 일도 없다’라 할 만큼 뇌물수수가 만연된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여행허가증 발급, 상급학교 진학, 직장 재배치와 진급, 주택배정, 건강진단서 등 이권행위는 물론, 암시장 거래, 무단이동, 교통법규 위반 등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뇌물수수가 이루어진다.<sup>194)</sup>

일부 보위부원이나 보안원들은 각종 단속을 빌미로 뇌물을 수수하고 심지어는

193) 사단법인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술한 단속에도 한국 영화 열풍 확산”(〈오늘의 북한소식〉, 2007.2.28), 4면.

194) 권영경 외, 『북한이해 2000』, 369면.

범죄자들과 결탁하여 공생관계를 유지하거나, 당·보위부·보안성·군 간부들이 국경 밀무역에 은밀히 개입하기도 한다. 군인들이 생필품이나 농작물을 훔쳐가는 일도 흔히 발생한다. 일부 권력층에서는 국가재산이나 배급물자를 유용하며, 고립대금업을 통하여 부를 형성하고 있다.

대학입학, 직장배치, 밀무역, 주택배정 등과 관련한 뇌물수수 범죄와 사례금 착복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sup>195)</sup>

첫째,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뇌물수수 관행이다.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뇌물을 주는 경우가 빈발해 졌다. 과거 북한에서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직통생’ 또는 ‘직발생’이라는 은어로 부를 만큼 특혜로 여겨왔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해당되지만, 일반적으로 성적과 출신성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가에서 부여하는 특혜였다. 그러나 1990년 후반에는 일부 학부모들이 시행정경제위원회(현 인민위원회)의 모집과에 직접 찾아가서 뇌물을 주고 대학에 입학시킨다. 처음에는 술 한 병, 담배 한 보루 등 ‘소박한’ 뇌물이었지만 뇌물을 주려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뇌물의 액수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둘째, 좋은 직장에 배치받기 위한 뇌물상납 관행이다. 직장배치와 관련한 뇌물상납은 1980년대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보위부나 보안성 등 권력기관을 선호했고, 당원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시기였다. 1990년대 식량난이 극심해지자 뇌물관행도 노골화되고 뇌물액수가 늘어났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선호하는 직장은 ‘힘 있는 기관’에 들어가기 보다는 대외무역일꾼, 외향선원, 요리사, 판매원 등 물자나 돈을 만질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하며, 여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권력자에게 뇌물을 상납하게 되었다.

셋째, 국경지역에서 밀무역을 위기 위한 뇌물상납 관행이다. 조·중 국경지역에서 밀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상납해야 한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1-2회 걸쳐 뇌물을 상납하면 거의 해결되었으나, 2000년이 되면서 월경자 단속 강화,

195) 고성호, “북한주민의 범죄와 이탈”, 144-146면 재정리.

감시초소 증가, 내륙지역에 초소 신설 등으로 밀무역을 하기가 어려워지자, 뇌물 상납 횟수와 금액이 증가하게 되었다. 국경을 5-6차례 넘나들었던 한 탈북자는 과거 국경을 한번 통과하는데 10-20달러 정도 밖에 들지 않았으나, 2000년이 되면서 ‘한번에 40-50달러를 줘야 하고 5번만 줘도 200달러는 들어간다’고 불평하면서, ‘이제는 1,000달러는 줘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넷째, 주택배정 및 교환과 관련된 뇌물상납 관행이다. 북한에서 주택은 원칙적으로 국가소유로 주민들은 사용권만 가지고 있다. 주택 사용권은 당국에서 배정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보다 좋은 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 담당자에게 뇌물을 상납한다. 식량, 의복, 신발, 치약 등 배급용 생필품이 상당부분 착복대상이 되고 있다. 식량의 경우 창고에 배급할 쌀이 있지만 주민들이 떠돌이 생활을 하고 행방불명이 되기 때문에 이들 몫을 배급 담당자들이 챙기는 방식이다.

다섯째, 사례금을 착복하는 범죄도 발생한다. 2004년 개정된 형법 제274조에서는 공무원이 거래과정에 받았거나 생긴 대량의 사례금 또는 이득금을 국가기관에 바치지 않는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새로 신설하였다. 북한은 외부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나 기타 물질적 사례에 대해서는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신고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례금은 신고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의 권력형 비리로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간접 확인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일부 준비되지 못한 간부들이 사상적으로 변질되어 인민들로부터 유리되고 특수계층화되고 있다”거나, “간부들의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현상은 당이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잃게 되는 해독성과 위험성”이 있음을 경고한 것은 권력형 범죄가 감출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현상이다.<sup>196)</sup> 뿐만 아니라 단속을 해야 할 보안원에 의한 권력형 범죄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보안원들은 주민의 사회일탈범죄 행위를 단속해야 하지만 그들 또한 남한 TV를

196) 권영경 외, 『북한이해 2000』, 369-370면.

시청하고, 사주팔자나 점을 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보안원들은 장마당에서 유통되는 중국, 일본, 한국, 미국산 물품을 압수한 후 가족이나 친척을 통해 장마당에 재유통하는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인민보안성, 국가안정보위부 등 사회안전기관에 의한 주민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이에 불만을 가진 일부 주민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sup>197)</sup>

## 2. 국가 범죄

북한은 마약이나 위조 달러, 가짜 담배 등을 제조해 해외에 유통시키고 있어 국제적인 지탄을 받아 왔다. 2006년 미 의회조사국(CRS)이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북한실무팀장의 리포트 등의 최근 자료들을 보면 북한의 범죄 행각을 바라보는 미국의 인식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2006년 ‘주간동아’가 위 두 보고서의 주요 부분을 발췌한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할 것이다.<sup>198)</sup>

### 가. 위조지폐

최근 북한의 위조지폐 문제가 국제 외교의 현안으로 비화되고 있다. 북한은 미국 달러를 비롯한 외국 화폐 위조와 유통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제법에서는 타 국가의 위조지폐 제조를 경제적 전쟁행위로 여기고 있다.

북한에서 제조한 위조지폐는 1989년 마닐라(필리핀)에서 한 은행원에 의해서 처음 발견되었다. 그 후 북한 외교관이 베오그라드(구 유고) 위조지폐를 전달하려다 적발되었다. 1994년에는 북한 무역회사 관계자들이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마카오 은행에 25만 달러의 위조지폐를 예치하려다 체포됨으로써 국제사회에 노출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2005년 북한 당국이 조직적으로 달러를 위조하고 외국금융기관을 통해 세탁·유통시켰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시 말해

197)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65면.

198) 정원경, “북한은 국제범죄 종합 백화점”(『주간동아』 546호, 서울: 동아일보사, 2006.8.1), 18-20면.

2005년 9월 미국이 마카오에 있는 방코델타아시아 은행(BDA)을 북한의 돈세탁 혐의로 '돈세탁 우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2006년 1월 16일부터 다니엘 그레저 미재무부 부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금융범죄단속반을 현지은행에 직접 보내 사실관계를 조사, 확인하고 중국당국과 서로의 조사 결과를 비교 협의함으로써 공식 입증되었다. 미국이 압수한 북한의 위조지폐는 100달러 위조지폐로 4,500만 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up>199)</sup>

최근 미 법무부는 선 갈란드를 비롯한 아일랜드공화국군(IRA) 관계자 몇 명을 위조달러를 제조한 범죄조직 연관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첩보기관은 'C-14342'로 이름 붙인 이들 '슈퍼노트'가 북한 정권의 비호 아래 제조되어 북한 외교관이 전 세계에서 유통을 맡고 있다고 밝혔다. 'Royal Charm Smoking Dragon' 작전은 북한에서 제작된 수백만 달러의 위조달러가 아시아인 중개상을 통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이 배후에는 북한 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위조달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비용은 달러당 40센트 이하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기존의 위조달러 제작비보다 훨씬 적은 것인데, 그럼에도 위폐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했다. 북한산 위조달러는 북한 지역이 아닌 중국 북부의 항구에서 수출되며 장난감 등의 화물로 위장되어 검색대를 통과한다.<sup>200)</sup>

현재까지 북한이 위조한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는 19종이며 최근 위조한 것은 진품과 거의 같게 고도로 정교하게 위조되어 육안으로는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이다. 우리나라 화폐 전문가들도 초정밀 위조 100달러 지폐인 '슈퍼노트'는 진짜 화폐와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경악하고 있다. 이러한 슈퍼노트의 재질은 진품과 90%이상 흡사할 뿐만 아니라, 스위스제 특수잉크를 사용하고 있다. 결국 초정밀 위조달러인 슈퍼노트 제조기술의 정교성은 초수준급이어서 웬만해서는 국내 감별기도 식별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설이다.<sup>201)</sup>

199) 김종일, "범죄의 늪에 빠진 북한정권", 85면.

200) 정원경, "북한은 국제범죄 종합 백화점", 18-20면.

201) 김종일, "범죄의 늪에 빠진 북한정권", 86-87면.

미당국의 북한산 위폐 문제제기에 대하여 북한 외무성대변인은 2006년 2월 28자 ‘조선중앙통신’ 기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최근 미행정부의 공식인물들은 우리에게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와 관련하여 우리가 실지행동으로 ‘불법 활동’을 모두 중지해야 한다느니, ‘화폐위조에 리용한 동판’을 내놓아야 한다느니, 제재는 핵무기개발을 ‘분쇄’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느니 하는 억지주장”이라 강변하면서 “우리는 위조화폐 제조와 유통의 피해자로 되고 있다”고 주장한데<sup>202)</sup> 이어서, ‘로동신문’(2006.4.19)은 “공화국을 반대하는 온갖 모략책동을 철저히 계산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인민보안성(경찰) 대변인의 담화를 게재(掲載)하였다. 이 대변인은 담화에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반공화국 적대세력들이 우리공화국을 ‘인권’, ‘마약’, ‘위조화폐’ 등에 걸어 ‘범죄국가’, ‘불법국가’로 몰아붙이기 위한 선전모략공세를 계단식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표 4-2〉 북한의 위조지폐 주요 적발사례<sup>203)</sup>

년·월	주요 내용
1994.6	· 마카오 북한 조광무역이 현지 방코텔타 은행에 입금한 미화 중 25만여불이 초정밀 위폐로 판명되어 관련자가 구속
1996.3	· 북한에 체류 중이던 요도호 납치범 일본적군과 ‘다나카 요시미’가 북한 외교관과 함께 동남아(태국)에서 300불 유통협의로 체포
1996.3	· 모스크바 주재 북한공관원이 북한인 3명과 함께 위폐 80만불을 환전타 적발되어 추방
1996.12	· 몽골주재 북한 3등서기관 및 몽·북 합작회사 대표가 위폐 11만여불을 환전타 적발되어 추방
1996.12	· 루마니아 주재 북한 무역참사가 위폐 5만불 환전타 적발, 추방
1998. 4	· 김정일 비자금 담당서기 길재경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위폐 3만불을 환전타 적발되어 추방

202) 조선외무성 대변인, “우리는 위조화폐의 피해자로 되고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2006.2.28.

203) “북한의 달러위조 범죄”(koreascope: <http://www.koreascope.org/tt/northkoreatoday/entry/북한의-달러위조-범죄>), 2006.8.1.

특히 북한의 인민보안성(경찰) 926국에서는 화폐제작 및 위폐를 제작한 후 해외에서 진폐로 교환하여 당 자금을 확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26국은 인민보안성 소속이나 당중앙위원회의 지시를 받고 있으며, 대외적으로 주요 상표를 인쇄 제작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있다. 산하 ‘2월 은빛회사’는 해외에서 화폐 제작에 필요한 제지 및 시약 구입과 ‘62호 공장’에서 제작한 위조화폐 교환을 담당하고 있다. 926국은 ‘2월 은빛회사’(사장 김정덕)와 ‘평양 상표인쇄공장’(일명 62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나. 가짜담배

북한의 중요한 돈벌이 중 하나가 위조담배 생산·판매이다. 북한은 함경북도 나진, 평양 일대에 연간 20억갑 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춘 대규모 위조 담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위조담배 생산 대상은 주로 필립 모리스, 로틸러드(Lorillard), 재팬 타바코 등 세계적 브랜드들이다. 특히 미국의 ‘말보로(필립모리스사)’ 담배를 위조하여 수년간 뉴욕·오클라호마시타·시애틀 등 미국 내 1,300여개 지역에서 위조담배를 판매하다 적발되었으며,<sup>204)</sup> 2006년 1월 27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가 2005년 캘리포니아에서 아시아계 밀수범들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10억갑 이상의 북한산 위조담배를 압수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북한산 위조담배가 발견된 지역은 미국에서만 워싱턴·오리건·캘리포니아·뉴욕·버지니아·플로리다 등 23개주에 달한다고 주장했다.<sup>205)</sup>

위조담배들은 주로 나진이나 남포항에서 선적되어 남한, 중국 그리고 세계로 팔려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40피트 크기의 컨테이너를 꽉 채운 위조담배의 가격은 7만 달러 정도이다. 이 위조담배들의 소매가격을 모두 합하면 300만~400만 달러에 이른다. 1995년 대만으로 향하던 20컨테이너 분량의 북한산 위조 담배가 적발된 적이 있는데, 그 담배들의 가격은 10억 달러에 이른다.<sup>206)</sup>

204) 송의달, “북 나진에 세계최대 위조담배 공장”, <조선일보>, 2006년 1월 29일.

205) 정원경, “북한은 국제범죄 종합 백화점”, 18-20면.

북한이 위조담배 유통으로 벌이 들이는 수익금은 연간 8천만 내지 1억6천만 달러에 이르며, 이 금액은 북한의 합법적 총수출 금액의 8-16%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한다.<sup>207)</sup> 특히 나진 일대에 위치한 위조담배 공장들은 중국과 대만계 범죄 조직들이 소유하거나 이들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어, 북한과 국제범죄 조직간의 연계가 한층 악화되고 있다. 미국정부의 한 당국자는 “더 위험한 것은 위조 담배의 공급루트가 일정하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전략물자와 무기를 수출하는 대신 고급 기술을 수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산 위조담배는 미국의 각 주의 납세 인지(tax stamp)와 흡연 경고문까지 새겨 놓을 정도로 품질이 양호한 편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다.<sup>208)</sup>

#### 다. 마약범죄

북한은 1970년대 말부터 정권차원에서 외화벌이 수단으로 함경도를 비롯하여 양강도·황해도 등 산간지대에서 비밀리에 양귀비를 재배하여 마약을 생산·밀매해 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209)</sup> 1980년대 말부터는 동구권의 붕괴와 식량난 등으로 인해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자 영변·평양·개성 등지까지 양귀비 재배면적을 대폭 확대 하는 등 마약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김정일이 1992년 8월 양귀비 재배사업을 ‘백도라지 사업’으로, 또 100만 달러 이상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백도라지 영웅’ 칭호를 부여하면서 ‘외화획득을 위해 아편을 대대적으로 수출하라’고 지시하자, 내각·국가보위부·인민보안성·인민무력성 등 국가기관이 총 동원되어 양귀비 재배를 관리·독려하여 양귀비 재배면적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아편생산량도 급증하였다. 최근에는 일본 야쿠자·러시아 마피아 등 국제범죄조직과 연계하는 한편, 중국 북경의 신흥 폭력조직에게 자금을 지원, 육성하여 마약밀매 하부조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206) 위의 글, 18-20면.

207) 송의달, <조선일보>, 2006년 1월 29일.

208) 위의 글.

209)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1970년대부터 아편 장사를 시작했던 것으로 분석하였다.(정원경, “북한은 국제범죄 종합 백화점”, 18-20면)

있다.

북한은 마약·아편을 ‘중앙당 39호실’ 주관하에 산하 무역회사인 대성총국·장생·매봉·단풍상사 등 무역상사와 해외공관을 통해 합법적인 교역물품·의약품 등으로 위장하여 공공연히 밀수출하고 있다. 이외에도 외교관의 외교특권을 이용하여 외교관들이 마약을 직접 운반하거나 외교 행낭편으로 각국의 북한공관으로 보내 현지에서 공급하는 방법까지 동원되고 있다.<sup>210)</sup>

2006년 1월 27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의 주요 수입원은 마약 암거래로, 주된 거래처는 중국과 일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와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북한실무팀장의 리포트 등에 의하면 대만, 필리핀, 일본 등지의 필로폰 시장이 급성장했다. 2002년에 일본에서 유통된 필로폰의 3분의1 정도가 북한에서 들어왔다는 것이 일본 당국의 조사 결과다. 한국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매년 10-15t의 고순도 필로폰을 수출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의 마약장사 수익이 최근 몇 년 동안 1억 달러 수준에서 5억 달러까지 급상승했다고 보도했다. 이런 돈은 북한의 미사일, 핵무기 개발 비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은 삼합회 등 국제범죄 조직을 통해 러시아, 중국, 남한, 일본 등에 수출하여 수익금을 국제범죄 조직과 50대 50으로 나누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3년 4월의 북한 국적 배인 봉수호가 북한산이 아닌 헤로인을 운반하다 적발된 사건은 북한이 국제범죄 조직과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미국 부시 대통령은 2004년 연두기자회견에서 북한을 국제사회에 마약을 유통시키는 주요 국가로 지적하면서, “우리는 동아시아의 헤로인, 필로폰 거래와 생산에 북한이 깊이 관여돼 있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미국은 북한의 마약 수출을 중단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03년 5월 미 상원에 제출된 국무부 자료는 1976년 이래 마약거래 혐의로 세계 20

210) “북한의 마약밀매”(koreascope: <http://www.koreascope.org/tt/northkoreatoday/search/국제범죄>), 2006.8.16.

여개국에서 최소한 50명의 북한인이 체포됐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일본에서 필로폰 거래 혐의로 검거되는 북한인이 늘고 있는 추세다. 또 미 국무부의 2005년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INCSR)에 따르면, 북한 외교관들은 자국 정부의 비호 아래 수십 년 동안 마약관련 범죄행위를 저질러왔다. 대만, 일본 등에 밀수된 헤로인, 필로폰의 대부분은 북한에서 들어오며 북한은 마약을 팔고 받은 돈을 마카오은행을 통해 돈세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up>211)</sup>

2007년 3월 17일자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에 원산(元山), 청진(淸津), 남포(南浦) 등 적어도 3곳에 각성제 공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sup>212)</sup> 이 신문에 따르면 요시무라 히로토(吉村博人) 경찰청 차장은 최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유엔마약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운데 원산과 청진 등 2곳은 과거 일본의 한반도 강점기에 일본의 제약공장이 있던 곳이어서, 그 공장을 각성제 제조에 이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측이 이례적으로 북한의 각성제 제조 문제를 회의에 보고하고 외부에도 공개한 것은 유엔마약조약 가입을 추진하는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경찰청은 1997년부터 지난해 5월에 걸쳐 북한의 각성제 밀수 사건이 모두 7건에 1천 500kg이 적발이 되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를 근거로 2006년 7월 “북한 정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 근거로 북한 공작기관의 공작선을 운반수단으로 사용한 점, 체포된 범인이 북한의 지시를 받았음을 암시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제시했다.<sup>213)</sup>

211) 정원경, “북한은 국제범죄 종합 백화점”, 18-20면.

212) 일본 경찰당국은 그동안 압수된 밀수 각성제의 성분 조사 결과 3가지로 분류하고, 체포된 용의자의 진술, 정보위성 데이터, 각성제 운반 공작선 및 화물선의 경로 등을 분석한 결과 북한 동부 원산과 북동부 청진에 공장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또 평양 근교인 남포도 각성제 밀수선 출항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지역에도 공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지역 외에도 중국과의 국경에 가까운 압록강가에도 각성제 공장이 있다는 ‘정보’가 입수돼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다.(최이락, “북한에 각성제 공장 최소 3곳 <요미우리>”, <도쿄=연합뉴스>, 2007.3.17)

213) 위의 글.

<표 4-3> 북한의 국제마약거래 주요 적발사례<sup>214)</sup>

년. 월	주요 내용
1995.7	· 북한 사회안전성요원, 중국 연길에서 헤로인 500g을 밀반입타 적발
1996.11	· 북한 임업성 직원, 아편 22kg을 기차편으로 러시아 핫산에 밀반입 기도타 적발
1997.5	· 북한인 국경 무역상, 중국 단둥에서 필로폰 900g을 밀매타 적발
1997.7	· 북한인 벌목공,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아편 5kg을 밀매기도타 적발
1998.1	· 멕시코주재 북한 대사관원 2명이 코카인 35kg을 러시아로 밀반입 기도타 적발
1998.7	· 시리아주재 북한 외교관 2명, 아프리카 카이로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50만정을 밀반입 기도타 적발
2003	· 2003년 호주에서 북한선박 봉수호 선원들이 다량의 헤로인을 호주 해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공범들에게 넘기려다 호주 당국에 적발(“미국 국무부 ‘2006 마약 통제 전략보고서’, 북한의 불법활동 증거 있어”, <자유아시아방송: <a href="http://www.rfa.org/korean">http://www.rfa.org/korean</a> >, 2006.03.02)

**라. 테러범죄**

북한은 해방 이후 현재까지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sup>215)</sup>을 위해서, 대남책동의 일환으로 요인암살과 납치, 국가중요시설 및 항공기 폭파, 해상 테러 등 테러행위를 끊임없이 획책하여 왔다. 북한의 주요 테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휴전이후 자행한 요인암살기도로는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습격 (7명 사망)과 울진·삼척 무장공비 습격 (20여명 사망), 1970년 6월 6일 요인 암살목적의 국립묘지 현충문 폭파, 1974년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대통령 암살 기도(영부인 및 합창단 사망), 1983년 10월 19일 미얀마 아웅산 묘소 테러 폭

214) “북한의 마약밀매”(http://www.koreascope.org/tt/northkoreatoday/search/국제범죄), 2006.8.16.  
 215) 통일부,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1980.10.13 조선노동당 제 6차대회 개정)(『2000 북한개요』, 서울: 통일부 정보분석국, 1999), 629-630면.

파(17명 사망) 등이 있다.

둘째, 북한의 대남 테러행위는 암살요인 기도에 그치지 않고 민간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자행되었다. 1958년 승무원과 승객 32명을 태운 국내선(부산→서울) 민항기 납치, 1969년 12월 강릉에서 서울로 오던 민항기 납치 후 납북사건,<sup>216)</sup> 1988년 11월 29일 아부다비를 출발해 방콕을 거쳐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858기 공중 폭파 사건 등이 있다.

셋째, 민간인 납치 및 어선 납북행위이다. 북한은 한국인과 외국인을 납치하여 테러리즘 수출과 공산주의 혁명 수출의 전위대로 이용하고 있다. 북한은 1978년의 영화배우 최은희와 영화감독 신상옥 부부 납치, 음악가인 윤정희·백건우 부부 납치 미수, 1995년 7월 중국 연길시에서의 순복음교회 안승운목사 납치 등을 자행했다. 대한항공 폭파범 김현희에게 일본어를 가르쳤던 일본 여인 납치, 그 밖에 세계 각처에서 간첩교육에 필요한 외국인을 다수 납치하여 억류하고 있다.<sup>217)</sup> 북한은 1958년 이후 1990년 초까지 백령도 공해상에서 어선 수원 32호 납치와 해왕호 납치 등을 비롯하여 거의 매년 동해와 서해에서 어로중인 한국어 선과 선원을 납치하여 인질로 억류하거나 철저한 세뇌교육과 협박을 통해 간첩 임무를 부여해 납파하기도 했다.<sup>218)</sup>

넷째, 북한의 국제테러 지원에 대한 사례도 다양하다. 1969-1971년 북한으로부터 훈련 및 자금을 지원 받은 게릴라들이 브룬디 및 르완다 정부요인의 암살

216) 항공기와 함께 납치된 51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 39명만이 납북 66일만에 송환되었고, 나머지 12명과 기체는 지금까지 북한에 억류되고 있다.

217) 미국의 아시아감시위원회와 미네소타 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가 1988년에 펴낸 『북한의 인권』에 의하면 1970년대 초 5명의 레바논 여인이 평양에 끌려가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납치되어온 여인들과 함께 간첩교육을 받았다고 밝혔다. 1978년 홍콩에서 납치된 최은희, 신상옥 부부도 평양초대소에서 마카오로부터 끌려온 중국인과 요르단 여인을 만났다고 폭로했다. 북한은 일본인에 대한 납치공작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는데, 최근 일본경찰청이 밝힌 바에 의하면, 북한에 의해 자행된 일본인 납치사건은 7건에 10명으로, 이 가운데 KAL기 폭파범 김현희에게 일어를 가르쳤던 '다구찌 야에코'(78년 피납)와 최근 일본 중의원에서 폭로된 '요코다 메구미(니이가다현 거주, 1977년 피납당시 13세 중학생)' 납치, 그리고 현재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된 '테라코에 다케시(63년 피납당시 13세 중학생)' 납치 등이 대표적이다.("북한의 납치범죄", <코리아스코프> <http://www.koreascope.org/tt/northkoreatoday/search/북한의%20납치>, 2006.8.16)

218) 여환명, "북한의 대남테러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한남대 석사학위논문, 2003), 58면.

을 기도하다 적발된 바 있고, 198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국제테러 단원 80여명을 체포했는데 이중 24명이 북한요원으로 확인되기도 했었다. 북한은 지금도 일본 항공기 요도호 납치범과 가족 등 테러범을 보호하고 있고, 최근에도 아프리카 일부 친북국가에 군사고문단을 상주시켜 군사·테러훈련을 지원하는 등 국제테러 지원활동을 늦추지 않고 있다.<sup>219)</sup>

<표 4-4> 북한의 주요 테러 및 국지도발 횟수 및 피해<sup>220)</sup>

테러 및 국지도발	간첩/무장 공비 침투	해상경계 침 투	정전협정 위 반	어선피격·나포/납북	항공기 납북/폭파
횟수 및 피해	4천 5백여명	6천여회	9만여건	4천여회(나포 38척/ 납북 350여명)	4회(납북 3회, 폭파 1회)

북한의 테러공작은 1974년부터 김정일이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노동당 산하 4개부서(사회문화부, 통일전선부, 대외정보조사부, 작전부)와 인민무력부 경찰국이 경쟁적으로 공작을 수행하고 있다. 미(美)국무부는 1997년 4월 30일 발표한 국제테러분석 보고서에서 북한, 이란, 이라크 등 7개국을 ‘국제테러지원국’으로 분류했는데 북한은 1988년 이래 지속적으로 이 리스트에 올라있다.

북한은 한국의 공산화와 민주주의 국가 파괴를 위한 테러를 혁명적 행위로 미화하고 있는데 1975년 10월 출간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이론』에 “결정적 투쟁은 오직 폭력적 방법에 의해서만 승리할 수 있다”고<sup>221)</sup> 규정하고 있다.<sup>222)</sup>

219) “북한의 테러범죄”(〈코리아스코프; <http://www.koreascope.org/tt/northkoreatoday/search/북한%20테러>), 2006.8.16; 북한은 또한 서해나 동해의 휴전선 부근에서 어로작업 중이던 어부 3,662명과 해군 20명 등 총 3,682명을 납치했다. 1987년 1월 ‘동진호’가 백령도 부근에서 조업 중 북한 무장경비정에 의해 납치되었으며, 선장 김순근씨와 어로장 최종석씨 등 선원 12명은 지금까지도 억류되어 있다.

220) 육군대학, 『적진술(보충교재)』 (서울: 육군대학, 2002.1), 371면.

221)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122면.

222) “북한의 테러범죄”(http://www.koreascope.org/tt/northkoreatoday/search/북한%20테러), 2006.8.16.

국가정보원은 2006년 1월 31일 ‘지난 87년 미국 유학중 납북된 것으로 알려진 이재환(전 민정당 이영욱의원 아들)씨를 비롯해 납치 및 월북자 22명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 중에 있으며, 함남 요덕, 함북 회령 등 산간오지의 정치범 수용소에 20여만명을 재판절차 없이 집단 수용하고 있다’고 했다.<sup>223)</sup>

<표 4-5> 북한의 주요 대남테러 및 도발사례<sup>224)</sup>

일자	내 용	일자	내 용
1960.12.15	·여객선 경주호 납북기도 사건	1983.10.9	·버마 아웅산 폭파사건
1961.1	·반정부·반미공작 간첩사건	1983.12.3	·다대포 간첩 침투사건
1968.1.21	·청와대 기습미수	1984.9.24	·대구무장간첩 침투사건
1968.1.23	·푸에블로호 납북	1986.9.16	·김포공항 폭파사건
1971.1.23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1987.11.29	·KAL 858기 폭파사건
1974.8.15	·KAL기 납북 미수사건	1992.5.22	·김낙중·황인호 침투·복귀
1974.4.2	·1사단 무장공비 침투	1995.10.17	·1사단 무장간첩 침투사건
1976.8.18	·관문점 도끼만행 사건	1995.10.24	·부여 무장공비 침투사건
1977.7.14	·미 헬기 격추사건	1996.9.18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1974.11-1 1978.10	·땅굴 3개 발견	1998.9	·양양 잠수함 침투사건

이외에도 북한 당국에 의한 국제 불법밀거래 행위는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0년대 초, 북한 외교관 다섯 명이 코뿔소 뿔을 밀수출한 혐의로 아프리카에서 추방된 바 있다. 이 뿔들은 루자카에서 아디스아바바를 거쳐 북예멘으로 운반한 후, 북예멘에서 영사 채널을 통해 중국 광저우로 운송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들은 마카오, 홍콩 등지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북한 외교관들은 1998년에도 576kg의 상아를 프랑스로 수출한데 이어 1999년 케냐에서 689kg의 상아를 밀수해서 모스크바에 537kg를 수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북한실무팀장은 ‘밀수 행각에 대해서는 최근 자료가 없지만 북한이 이 같은 행동을 그만뒀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예상

223) “북한의 납치범죄”(http://www.koreascope.org/tt/northkoreatoday/search/북한의%20납치), 2006.8.16.

224) 육군대학, 『적전술(보충교재)』, 372면.

했다.<sup>225)</sup>

## 제2절 보안기관의 범죄대책과 주민통제

북한경찰(인민보안성)은 경제난과 더불어 사회전반에 만연되고 있는 각종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포고령과 각종 단속지시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6자회담과 관련하여 국제범죄 국가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 마약, 위조지폐 등과 관련하여 당국차원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 1. 보안기관의 범죄대책

#### 가. 포고령 선포와 지시

##### 1) 양곡 절도·상행위 금지 포고령

북한은 1990년 중반의 연이은 자연재해로 극심한 식량난이 지속되자, 주민들은 생존수단으로 식량 절도행위가 급증했다. 북한의 식량난은 1995년 유엔 인도사무국(UNDHA)에 식량 원조를 요청함으로써 외부세계에 알려졌다.<sup>226)</sup>

북한은 식량약탈 행위가 만연하게 되자, 1995년 12월에 전국에 “양곡 및 가축 강탈자를 즉결 처형하라”는 포고령을 내리고, 쌀 강도, 절취범, 밀수범 등 70-80명을 ‘사회 불량자’로 분류하여 공터와 강변에 수천 명의 주민들을 모아 놓고 ‘인민재판식 처형(총살)’을 했다. 북한의 식량난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웅변적으로 말해 주고 있다.<sup>227)</sup>

225) 정원경, “북한은 국제범죄 종합 백화점”, 18-20면.

226) 1995년 12월 평안도와 황해도 수해지역을 방문한 유엔식량 농업기구(FHO)와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곡물과 식량 공급 평가단은 곡물 부족량이 최소한 1백20만 톤에 달하며, 약 2백 10만명의 어린이와 50만명의 임산부들이 기아에 직면했다고 보고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그 이듬해 춘궁기에 상당수의 북한 어린이들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사망할 것이며, 즉각적으로 식량 원조를 하지 않을 경우, 5세 이하의 어린이 20% 정도가 숨질 위험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1997년 8월 5일 사회안전부(현 인민보안성)는 “남알을 훔치고 팔며 허실하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할데 대하여”라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 포고령은 ‘남알을 훔치는 행위를 절대하지 말라’, ‘량곡을 가지고 장사하는 행위를 절대하지 말라’, ‘량곡 탐오(貪汚) 략취, 허실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마라’ 등의 선포를 통해서 곡식 절도, 양곡거래, 양곡약취와 허실행위 등에 대해서는 직위, 공로, 소속에 관계없이 현행범으로 단속 체포하여 법에 따라 최고 총살형에 처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포고령 전문은 다음과 같다.

#### <표 4-6> 사회안전부(현 인민보안성) 포고령

##### 량곡을 훔치고 팔며 허실하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함에 대하여

량곡은 인민들의 첫째가는 생활수단이며 가장 중요한 전략물자이다.

올해에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영농전투를 힘있게 벌림으로써 긴장한 식량문제를 풀고 <고난의 행군>을 승리적으로 결속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극단한 개인리기주의에 사로잡혀 제살궁리만 하면서 군민이 피땀흘려 지어놓은 귀중한 남알을 훔치거나 허실하여 량곡을 가지고 상적행위를 감행하고있다.

이것은 나라의 쌀독을 침해하는 반국가적범죄행위이며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립압살하려는 적들을 도와주는 역적행위로서 준엄한 징벌을 받아야 한다.

사회안전부는 공화국정부의 위임에 따라 남알을 훔치거나 팔며 허실하는 행위를 철저히 없애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 1. 남알을 훔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 칭자

남알을 포전과 무지, 량곡장, 창고(창자)에서 훔치는 자는 엄격히 처벌하며 전량을 변상시킨다. 특히 업중한 자는 총살한다. 량곡을 경비원이 훔치거나 경비원과 공모하여 훔친자는 엄중히 처벌한다. 포전과 남알무지, 탈곡장, 창고(창자)들에 대한 자체 경비조직과 경비근무수행을 무책임하게 하여 량곡을 침해당하게 한자들도 법적으로 처벌하며 량곡을 경비원이 훔치거나 경비원과 공모하여 훔친자는 더 엄중히 처벌한다. 량곡을 훔치다가 피해당한자는 상소할수 없다.

##### 2. 량곡을 가지고 장사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말라!

227) 최덕성, “통일보다 더 시급할 일”(http://blog.daum.net/gajach/3044538?nil\_profile=blog), 2005.8.10.

부정축재를 목적으로 많은 량곡을 가지고 장사행위를 한자는 총살에 이르기까지 엄중히 처벌한다. 국영 및 협동 농장들과 부업자들에서 량곡을 훔쳐다 농민시장과 공공장소, 뒤골목에서 팔고 사거나 물건과 바꾼자는 법적으로 처벌하며 거래된 낱알과 돈 물건은 회수한다. 량곡을 가지고 고리대행위를 한자도 엄격히 처벌하며 고리대로 주고 받은 량곡과 물자 돈은 전량 몰수한다.

3. 량곡을 탐오 략취, 허실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

량을 생산량에서 루락시킨자와 《사업》, 《지원》, 《손님접대》, 《물물교환》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비법처리하도록 조직한자와 집행한자, 직권을 악용하여 때먹은자, 공모 결탁하여 탐오랑비한자들은 총살에 이르기까지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하며 루락시켰거나 탐오략취한 량곡전량은 몰수 또는 변상시킨다. 협동농장, 작업반, 분조, 농장원들과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와 주민들 사이에 서로 비료, 농약, 농기계, 기름, 부속품, 집짐승 등을 양곡과 바꿈질하는자는 법적으로 엄격히 처벌하고 거래된 량곡과 물자는 몰수하며 가을에 량곡을 받기로 한 것은 일체 무효로 한다. 가을걷이와 탈곡, 보관관리를 무책임하게 하여 량곡을 류실 부패, 변질시킨 책임있는자도 법적으로 처벌한다.

4. 모든 공민들은 숭고한 애국, 애족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량곡을 훔치거나 량곡장사를 하며 탐오략취, 허실하는자들을 예리하게 살피고 제때에 신고하라.

5. 이 포고를 어긴자는 직위, 공로, 소속에 관계없이 현행범으로 단속체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부

1997년 8월 5일(밀줄 필자)

## 2) 전력선·통신선·마약 범죄와 관련한 포고령<sup>228)</sup>

북한은 내부적으로 마약 복용자가 급증하자 인민보안성은 2006년 3월 1일 마약의 거래·제조·수출 등에 연루된 자에 대해 최고 사형으로 다스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 포고령은 통신선과 전력선을 훔치는 행위도 엄벌에 처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대북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이 입수(2006.3.18)한 인민보안성 포고령은 “마약을 비법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마약에 대한 보급, 취급, 이용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이 포고를 어기는 엄중행위를 한 자는 직위와 공로, 소속에 관계없이 사형에 처하고, (비법)행위를 조직한 자, 집행한자는 사형에 이르기까지 엄벌에 처하고 가족은 추방한다”고 밝혔다.

228) 장용훈, “北 포고령 ‘마약 생산·수출·거래 최고 사형’”, <연합뉴스>, 2006.3.18.

이 포고령은 “전력선, 통신선을 끊거나 비법적인 마약거래 행위를 하는 것은 경제발전과 국방력 강화에 저해를 주고 우리 인민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는 반국가적 파괴암해 행위”라고 규정하여 마약의 불법 거래와 사용, 재배 및 제조 행위의 근절을 촉구하면서, “비법적인 마약거래 행위를 한 자는 자백하라”며 “이 포고가 발표된 후 10일 안으로 자백한 자는 관대히 용서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모자와 방조자에 대해서도 엄중 처벌입장을 표명하고 “이 포고를 어기는 행위를 한 자가 속해 있는 기관·기업소·단체의 책임 있는 일꾼과 보호자도 해당한 책임을 진다”며 “(비법) 행위에 이용된 운수수단과 기재, 돈과 물자는 소속에 관계없이 무조건 몰수한다”고 밝혔다. 포고령은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당부하면서 “신고를 제때 하지 않거나 방해하고 신고자에게 복수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은 지난 2006년 3월 7일 한겨레신문과 뉴욕에서 인터뷰를 가진 뒤 “지난 1일 우리 인민보안성은 마약거래 관계자들을 사형까지 처한다는 포고령을 공포했으며 앞으로 이런 입법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며 “만약 개별적인 자들이 불법 행위에 가담한다는 자료가 확인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표 4-7> 인민보안성 포고문

##### 전력선, 통신선을 끊거나 마약거래 행위 하는 자들을 엄벌에 처함에 대하여

전력선, 통신선을 끊거나 비법적인 마약거래 행위를 하는 것은 경제발전과 국방력 강화에 저해를 주고 우리 인민의 혁명의식을 마비시켜 혁명의 수뇌부 두리에 일심단결된 정치사상적 진지를 허물어 버리려는 반국가적 파괴암해 행위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보안성은 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포고한다.

1. 전력선, 통신선(까벨 포함)을 끊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전력선, 통신선을 끊어가거나 훔쳐 팔아먹는 행위를 일체 하지 말라.  
유색금속을 몰래 팔고사거나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 행위를 일체 하지 말라.

기관, 기업소, 단체, 국민들은 전력선, 통신선을 비롯한 유색금속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가공품을 만들어 팔거나 리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전력, 통신부분의 일꾼들은 전력, 통신시설과 설비들에 대한 관리와 순찰, 경비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지 말라.

2. 마약을 비법적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

마약을 팔고사거나 비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마약원료를 비법적으로 재배하거나 마약을 제조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마약을 비법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마약에 대한 보관, 취급, 리용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지 말라.

3. 전력선, 통신선을 끊거나 비법적인 마약거래 행위를 예리하게 살피고 제 때에 법기관에 신고하라.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거나 방해하며 신고자에게 복수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

4. 전력선, 통신선을 끊거나 비법적인 마약거래 행위를 한자는 자백하라.

이 포고가 발표된 후 10일안으로 자백한자는 관대히 용서한다.

5. 이 포고를 어기는 엄중행위를 한 자는 직위와 공로, 소속에 관계없이 사형에 처한다.

이 포고를 어기는 행위를 조직한 자, 집행한 자는 사형에 이르기까지 엄벌에 처하며 가족은 추방한다.

이 포고를 어기는 행위에 공모한 자, 방조자도 엄중히 처벌한다.

이 포고를 어기는 행위를 한자가 속해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꾼과 보호자도 해당한 책임을 진다

이 포고를 어기는 행위에 리용된 운수수단과 기재 돈과 물자는 소속에 관계없이 무조건 몰수한다.

이 포고집행을 방해하거나 반항하는 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6. 이 포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 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무력, 특수기관 포함)와 국민들에게 적용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보안성 주체 95(2006)년 3월 1일

이와 같이 북한 인민보안성이 2006년 3월 1일 마약의 생산·수출·거래에 최고 사형까지 처하도록 한 포고령은 ‘불법의 온상’으로 비치는 대외 이미지를 바꿔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당국이 포고령에서 마약과 관련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당사자는 물론 소속 기관·기업소·단체의 책임자에까지 연

대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은 마약에 북한 당국이 개입하지 않았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이 부족한 북한에서는 각종 통증을 막는 진통제로 마약을 구입해 사용하며 심한 경우 마약중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사회상을 반영하듯 김정일은 2002년 어떤 단위를 막론하고 아편 재배 및 마약 밀매를 금지하라고 지시한데 이어서, 2004년 개정형법을 통해 마약사용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마약 제조 및 밀수, 밀매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다. 결국 김정일의 지시와 형벌을 강화했으나 마약이 근절되지 않자 포고령을 통해서 ‘사형’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이번 포고령은 대내용과 대외용일 수 있다”며 “어떤 성격이든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sup>229)</sup>

그리고 2006년 6월에는 유엔 산하 국제마약통제위원회 관계자들의 방북을 초청한데 이어서, 2007년 3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국제마약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 대표단은 마약과 관련한 3개 국제조약에<sup>230)</sup> 가맹하려는 의향을 표명하였다. 유엔회원국 중 유일하게 이들 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북한은 조만간 유엔에 비준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북핵 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이 진전되는 가운데 미국 등이 비판해 온 마약문제에 대한 대응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대표단은 조약 가입을 위해 그동안 국내법 정비, 마약관리위원회 설치 등의 준비 작업을 해왔다고 설명하며 2007년 2월 3개 국제 마약조약 가맹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다. <sup>231)</sup>

229) 위의 글.

230) 3개 조약은 ‘마약에 관한 단일조약’, ‘향정신약품에 관한 조약’, ‘마약 및 향정신약품의 부정거래 방지에 관한 국제연합조약’ 등이다.

231) “북한, 3개 국제마약조약 비준 추진”, <빈 교도=연합뉴스>, 2007.3.16.

### 3) 밀수행위 단속지시<sup>232)</sup>

2004년 말 김정일은 조·중 국경 지역의 기관들에게 ‘밀수 근절’을 지시했다. 2004년 북한의 반체제 인사로 평가되는 김만철씨(가명)는 ‘비밀문서’를 대량으로 탈취하여 탈북했다. 2004년 10월 25일 <자유아시아방송>이 발표한 이 문서들은 ‘내각 지시’ 문건이 5통, ‘대내 한정’ 문건이 2통으로, 총 분량은 40페이지가 넘는다.

이 중에서 북한의 밀수사정을 엿볼 수 있는 2통의 내부분건이 있는데, 하나는 “밀수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리자(국경연선)”라는 제목의 <정치사업 자료>(조선노동당 함경북도위원회, 2003년 11월)이며, 다른 하나는 “이색적인 록화물과 출판선전물들을 리용 류포시키는 현상과 강하게 투쟁하자”는 제목의 <국경연선 주민정치사업 자료>(조선노동당 출판사, 2003년 11월)이다. 두 문건 모두 일련번호가 있고, 표지 상단에는 ‘제강(지시내용)을 침투시키고 나서 회수, 보관할 것’이라는 설명이, 표지 우측에는 ‘대내 한정’이라는 표기가 있다.

<정치사업 자료>에서는 “밀수행위는 나라의 안전과 인민의 이익을 해치는 엄중한 범죄 행위이다”라면서,<sup>233)</sup> “국경연선에 있어서의 밀수 행위가 성행하면, 국경 질서가 문란해지고 그 틈을 이용해 상인과 결탁한 불순 적대분자가 준동하게 된다”, “남조선 괴뢰의 정보원 놈들이 교활한 방법으로 주민에게 밀수 행위를 부추겨 중요한 비밀 자료와 전략 물자와 같은 국가 통제품을 훔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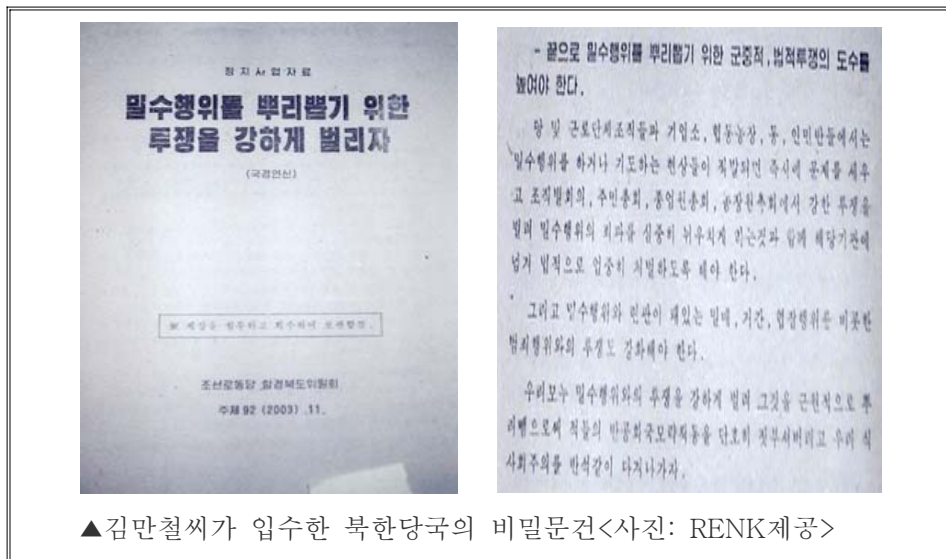
<국경연선 주민정치사업 자료>에서는 전자제품의 대량 유입에 대해서 “지금, 적들은 국경을 통해서 우리의 내부에 운반이 편리한 CD녹화기와 CD영상물을 대량으로 가지고 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CD영상물의 내용이 “자본주의 국가의 화면 음악(노래방의 반주영상)이나 외국영화뿐만 아니라

232) 이영화(일본 간사이대 교수), “北 개척 밀수망, 거꾸로 김정일 달친다”(테일리NK, 2005.4.20).

233) 북한당국이 생각하는 ‘밀수’와 우리들이 생각하는 ‘밀수’는 개념부터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김정일은 다른 나라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해치건 말건, 자신에게 달리를 안겨주는 일이라면 그것을 ‘밀수’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것은 ‘혁명위업’ 달성을 위한 정당한 공작 활동이다. 오로지 자신의 체제유지에 해가 되는 행위만을 ‘밀수’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영화를 왜곡 번역한 것이 적지 않다”고 언급한 점이다. 최근에는 ‘CD녹화기와 CD영상물’이 급속히 퍼지고 있는데, 부유층 사이에 한국제 캠코더와 디지털 카메라가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덕분에 ‘이색적 녹화물을 매매하거나 가지고 다니며,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보는 현상’이 주민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표 4-8> 밀수단속 지시 문건



▲김만철씨가 입수한 북한당국의 비밀문건<사진: RENK 제공>

또 다른 <정치사업 자료>에서는 ‘휴대전화의 일제 단속’에 대한 지침을 지시하고 있다. 이 문건에서는 “밀수 행위를 막기 위해 비합법적인 휴대용 전화기의 사용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일부 주민은 휴대용 전화기를 가지고 고층 건물이나 산꼭대기 등 통화 조건이 유리한 곳에 잠복해, 주변 나라의 사람들과 비합법적으로 채휴를 가지며 밀수 행위를 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 속에는 휴대용 전화기로 주변 나라의 상인과 연락을 대신해주고 통화료를 받아 챙기는 한심스러운 현상도 있다. 국경연선 지역에서 비합법적인 휴대용 전화기 사용을 엄격하

게 통제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 4) 자본주의 침습 차단 지시

북한은 청소년들 사이에 자본주의 문화가 확산되자 이를 ‘얼빠진 사고방식’ 또는 ‘썩어빠진 부르조아적 유행’ 등으로 비판하고 있다. 김정일은 ‘자본주의적 풍조’를 경계하여 ‘군대문화 따라 배우기운동’, 모기장 교육 강화<sup>234)</sup> 등을 통해 ‘자유화바람’을 차단하여<sup>235)</sup> 사상이탈을 방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청년학생들에 대한 “교양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적들의 자유화바람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야”하고<sup>236)</sup>, ‘자유화 바람’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당의 총 로선의 정당성’을 똑똑히 인식시켜야할 것을 강조하였다.<sup>237)</sup>

북한 조선노동당은 2002년 16절지 16쪽 분량의 1시간 30분짜리 간부용 “자본주의사상문화적침투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리데 대하여”라는 ‘학습제강’을 하달하여 자본주의 사상 침습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문건은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자본주의 사상의 침습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계급적원썬들의 반사회주의적책동을 짓부시고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풍요한 담보는 사람들을 사회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있

234) “모기는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며 무서운 병을 퍼뜨려 앓게 하는 아주 유해로운 곤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사상에도 모기와 같이 나쁜 것이 있습니다. 수정주의가 바로 모기와 같이 나쁜 사상입니다. 수정주의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자주, 자본가 계급의 이익에 맞게 뜯어 고쳐 놓은 반동사상입니다. 수정주의의 교활성은 자주, 자본가 계급의 반동사상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변장시킨 것입니다. ... 우리는 모기와 같은 수정주의를 막아내는 ‘모기장’을 빈틈없이 쳐서 수정주의의 사소한 요소도 스며들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수정주의를 막아내는 우리의 ‘모기장’은 경애한 대원수님과 위대한 원수님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적규율과 조직생활을 강화하는 것이 양풍을 반대하고 검박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경애한 대원수님과 위대한 원수님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면 수정주의가 달려들지 못합니다.”(북한 고등중학교 3학년 교과서 『공산주의도덕』 17과 요약; 전영선, 『북한의 문학예술 운영체계와 문예이론』, 서울: 도서출판 역락, 2002, 271-272면 재인용)

235) 김정일, “당사업을 강화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1월 1일”, (『김정일 선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265~266면.

236) 위의 책, 266면.

237) 위의 책, 288면.

다”며<sup>238)</sup> “높은 정치적, 계급적각성을 가지고 자본주의사상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반대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239)</sup> 이같이 북한당국은 최근 체제 내의 자본주의 사상의 침습을 막기 위해서 ‘당적인 공세’를 벌여야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혁명 건설’에서 자본주의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타도해야할 적대적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이다.<sup>240)</sup>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철저히 고수하고 견지하여온 우리 식대로 혁명과 건설을 철두철미 진행하여야 한다. 지금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우리 나라를 압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상문화적공세를 들이대는데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그 어떤 고립, 봉쇄, 압력에도 끄떡하지 않고 자기가 택한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우리 나라를 더는 굴복시킬수 없게 되자 지금 원수들은 반동적인 부르주아사상문화를 침습시켜 우리 내부를 와해시키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다. 제국주의반동들이 불어대는 황색바람은 특히 문학예술분야에 더욱 교활하고 악착하게 덤벼들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적들의 반혁명적공세에 혁명적 공세로 맞서야 하며 적들의 비렬한 책동을 분쇄하여야 한다.<sup>241)</sup>

위의 인용문에서는 부르주아 사상문화의 침습을 경계하면서, 사회주의 전진을 위해서 자본주의 사상문화는 분쇄해야할 대상이 되고 있다. <조선문학> 2000년 8월호의 ‘토막상식’란에서 ‘트로이 목마’, ‘노아의 홍수’와 같은 내용을 통하여 ‘제국주의 사상문화’의 침투를 경계하는 등 ‘반제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 5) 위조지폐 방지지시<sup>242)</sup>

1990년대 식량난 이후 북한 사회에 마약문제와 함께 각종 위폐가 확산되어

238) 학습재강 “자본주의사상문화적침투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리데 대하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2), 16절지 16쪽 분량의 1시간 30분짜리 간부용 학습지침서이다.

239) 위의 글, 10쪽.

240) 김윤영, “북한소설의 갈등양상 연구”, 94면.

241) 최길상, “우리 식대로 창작하는것은 주체문학의 위력을 강화하는 근본담보”(『조선문학』 1998.1호,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8), 44쪽.

242) 문성규, “北노동당 중앙위, 위폐유통 단속 지시”, <연합뉴스>, 2006.5.3.

시장을 교란시키자, 개정형법(2004)은 ‘화폐위조죄(제99조)’를 신설하여 화폐위조에 가담하면 중신형과 극형까지 처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한편,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각 지방 당 조직에 하달한 문건을 통해 “가짜돈(위폐)을 없애기 위한 대책을 세울 것”(2006.3.26)을 지시했다.<sup>243)</sup>

“공화국 화폐와 공화국 은행에서 바꿀 수 있는 외국화폐를 위조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 또는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북한 형법 제 99 조 화폐위조죄). / 위조된 화폐라는 것을 알면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북한 형법 제 100 조 위조화폐사용죄). / 국가유가증권, 공화국은행에서 바꿀수 있는 외국화폐를 위조하였거나 위조한 것인 줄 알면서 써먹은 자는 7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형사소송법 제66조 화폐).

노동당 중앙위는 북한의 주요 정책과 노선을 결정하는 최고 권력기구이다. 이번 위폐 단속 지시는 인민보안성(경찰청)이 “마약을 비법(불법)적으로 생산하거나 수출하는 등 마약에 대한 보급, 취급, 이용 질서를 어기는 엄중 행위자에 대해서는 직위와 공로, 소속에 관계없이 사형에 처하라”고 지시한 포고령(2006.3.1) 발표에 이어 나온 조치여서 주목되고 있다. 북한 당국의 마약과 위폐 문제에 대한 조치가 사실이라면 이는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압박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보이며, 향후 6자회담 등에서 북측의 발언권 확보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풀이할 수 있다.

## 6) 외화벌이 검거 지시

함경북도 국경연선지역에는 불법 외화벌이 회사에 대한 단속과 검거 열풍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2007년 2월 당 중앙위원회 조직부의 지시에 따라

243) 사단법인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오늘의 북한소식 19호>, 2006.5.3.

이 지역 외화벌이 회사들이 전격 해산된 데 이어 불법 행위가 드러난 회사 일꾼들에 대한 처벌이 잇따르고 있다. 당국은 약 220여 명의 주요 일꾼들을 연행해 자금의혹 및 정보유출 등의 문제를 집중 수사했다. 대부분의 무역회사들이 회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얼음(히로빙) 판매에 뛰어들어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성해왔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무사히 비껴간 곳이 거의 없다고 한다. 그 결과 60여명이 구속 수감되어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며, 이 중 10여 명이 간첩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평양으로 압송되었다. 평양 압송자들은 대부분 중국 회사와 거래하면서 중국 공안 당국에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sup>244)</sup>

#### 7) 물품 판매금지 지시<sup>245)</sup>

북한은 2006년 10월 11일부터 군복과 모자, 허리띠, 견장, 군화, 통신선 등 군용 물품의 판매와 민간인 사용을 금지시켰다. 이는 군용물품의 사회 누수 현상을 막고 부족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방침으로 보인다. 이 외에 각 기업소나 공장에서 뜯어온 생산용 기계설비나 자재, 원료 등도 거래가 금지되었다. 가정 살림살이로는 가구, 침대, 침대시트, 소파를 비롯해 냉장고, TV, 녹음기, 비디오, 컴퓨터용 CD, 선풍기, 가스통 등이 금지 물품에 올랐다. 식료품으로는 수입산 과일류, 수입산 과자(껌), 돼지고기, 밀주, 맥주 등이 거래 금지 품목이고, 중고 자전거, 수입산 그림, 꽃, 대형 거울 등도 거래가 금지되었다. 여기에 암암리에 거래되던 남한과 미국산 상품들도 다시 한 번 거래 금지 품목으로 못 박았다. 특이한 점은 여성들의 피임도와 피임약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점이다. 피임도와 피임약은 출산 장려정책에 어긋나기 때문에 거래를 중단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내려진 일부 품목의 시장 거래 금지는 기존에도 여러 차례 내려졌다.

244) 사단법인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외화벌이 회사 일대 검거 선풍”(〈오늘의 북한소식 제62호〉, 2007.3.7), 3-4면.

245) 사단법인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10월부터 시장 판매 금지 물품 공고”(〈오늘의 북한소식 44호〉, 2006년 12월), 2007.2.12.

북한 당국이 위 물품들의 시장 거래를 금지시킨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격이나 질, 종류 면에서 시장 판매 물품이 월등히 앞서 국영상점의 판매율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소파, 침대, 가구들이나 중고 자전거 등을 국영상점이 아니라 개인에게 사면 자체 주문 제작할 수도 있고, 중고 물품이라도 정비가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종류가 많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고 배달도 가능하다. 국영상점에 가서 질 나쁜 상품을 비싼 가격에 사들일 이유가 없다. 당국에서는 교육지책으로 번번이 시장 판매를 금지시킨다는 방침을 반복적으로 내리고 있지만 실효성은 거의 없다. 시장에 물건을 내놓고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소파 판매합니다’나 ‘중고 자전거 판매’라는 종이쪽지를 몰래 보여주며 구매자를 직접 찾아 개인 집으로 데려가 거래를 하기 때문에 단속에 잘 걸려들지 않는다. 수요자들 역시 안내자에게 은밀히 접근하여 약간의 수수료를 주고 개인 판매자를 찾아가는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 나. 범죄통제 제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체제모순과 더불어 외부세계와의 접촉의 증가에 따라 각종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북한은 각종 범죄가 만연하자 범죄억제 대책으로 1992년부터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시·군별로 ‘현지공개재판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과거에는 반체제 범죄자, 살인, 강도 등 중범죄자에게만 시행하던 공개처형제도를 절도 누범(累犯)자나 경미한 범죄자까지 그 대상으로 하여 평양을 비롯한 북한 전역에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체제유지 및 범죄단속을 위하여 비사회주의그룹, 6·4그룹, 유동그룹 등 한시적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당국은 증가하는 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주민통제가 목적인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소년단 등 각종 사회단체<sup>246)</sup> 등을 통

246) 북한의 사회단체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 1비서 김경호),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위원장 염순길),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위원장 강창욱),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위원장 박

한 사상교양 등 집단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주민들의 각종 사회일탈 행동을 통제하고 있다. 최근에는 김부자 초상화·동상 등 우상물에 대한 훼손 및 파괴사건이 확산되자, 김정일은 ‘적대분자 책동에 강력 대응’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안전보위부에 반체제사건 즉결처분권이 부여되어 집중단속하게 되고, 기존 주민감시체제를 보강한 ‘3인통제방’을 통해 간부들에 대한 비리사찰과 주민들에 대한 동향을 감시는 등 주민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3인방통제란 주민 3명중 1명을 감시원으로 임명하여 주민동향을 감시·보고하는 체제를 말하며, 1998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행정관료의 비위적발을 위한 국가검열성과 주민의 사상지도를 담당하는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주민의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인민반 등을 조직하여 각종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통제하고 있다.

### 1) 규찰대(인민순찰대)

북한은 1990년대 들어 식량난 악화로 주민들의 사회범죄가 급증하자, 인민보안성 산하에 주민통제 보조기구로서 ‘규찰대’를 조직·운영하였다. 규찰대를 조직하게 된 배경은 주민들이 식량구입을 위한 타 지역의 수시 왕래로 유동인구 증가와 주민들간의 접촉 등이 빈번해지자 인민보안성은 “자본주의사상 유입 등 각종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나 활동할 우려가 많다”고 판단하여 주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다.

규찰대는 전국적으로 모든 리 및 1급 기업소 단위에 두고 있는데, 공장·기업소 근무자 등 특수부대 출신의 30대 제대군인(당원)을 10여명씩 선발하여 규찰대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들은 원소속 직장에 매일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여 정액 생활비를 지급받고, 배급이나 노임자급 등에서 우대를 해주고 있다. 군 보안서 감찰과 지도원이 이들을 관리한다.

---

순회), 조선적십자회(위원장 장재언), 조선기자동맹중앙위원회(위원장 김성국), 조선자연보호연맹 중앙위원회(위원장 박송남), 조선민주법률가협회(위원장 허명규), 조선중앙변호사협회(위원장 이동석), 조선학생위원회(위원장 엄정철) 등이 있다.

규찰대원으로 선발되면 증명서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해당구역 내에서 2명씩 조를 이루어 비법적 장사행위 적발, 거동수상자 검문, 휴대물품 수색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야간에는 해당 보안소에서 실탄이 5발씩 장전된 총을 지급받아 순찰을 실시한다. 순찰시 적발된 사람들은 보안서에 이관하고 보안서는 군(君)노동 단련대로 이송하여 일정기간 처벌을 받도록 한다.<sup>247)</sup>

그러나 규찰대원은 ‘사회질서 유지’라는 당국의 취지와는 달리 단속을 빙자하여 각종 횡포, 뇌물수수, 보안원들에게 정기적인 뇌물상납 등의 또 다른 범죄의 온상이 되자, 1994년부터 이를 중단한 후 규찰대 대신 인민순찰대를 신설하여 성분이 좋은 자만을 선발하여 각종 범죄행위를 단속하고 있다.<sup>248)</sup>

최근에는 대학생 규찰대들을 조직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서 단속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2006년 10월에 떨어진 장군님 방침 관철’이라면서, 옷에 초상 휘장을 달지 않은 자, 머리를 짧게 자른 자, 찢바지를 입거나 귀걸이를 한 여성들을 자본주의 바람을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단속하고 있다. 북한 당국에서는 옷차림이나 머리모양 등 용모에서부터 자본주의 사상 문화적 침투 현상이 시작된다고 보고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 나팔바지를 입거나 귀걸이를 하는 등 이른바 ‘튀는’ 행색을 하고 다니는 여성들은 자기도 모르게 보위부 미행국으로부터 미행을 당하기도 한다. 그 여성이 어떻게 그 옷을 입게 되었고 어떤 경로로 얻게 되었는지, 어떤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등을 소상히 조사해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런 식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는 용모가 사회주의식이 아닌 사람들이 몇 %인지, 어떤 자본주의 바람이 들어와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통계를 내 지역별로 비교하거나 단속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sup>249)</sup>

## 2) 보안위원회

북한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자의 재판회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안위

247)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63면.

248) 김용기, 『북한실상종합』 (서울: 내외통신사, 1996), 137면.

249) 사단법인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외화벌이 회사 일대 검거 선풍”, 3-4면.

위원회'를 리·군단위로 개최한다. 예를 들면 '리보안위원회'는 보안소장(위원장), 리 세포비서, 보안소 리담당지도원을 위원으로 구성된 후, 범죄혐의자를 군보안서로 이관할 것인지 아니면 리보안소 자체에서 처리할 대상인지를 결정한다. 그리고 '군보안위원회'에서는 군당책임비서(위원장), 군보안서장,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보안서 감찰과장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해장범죄자를 군재판소에 회부하여 재판을 받도록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보안위원회'에서는 '특별분류'로 분류된 대상에 대해서는 면죄 및 감형의 혜택을 주고 있다. '1부류'는 비행사·대남사업담당자와 그 가족, 4촌 이내 친척이며, '2부류'는 김일성부자 가계연고자와 그 가족, 4촌 이내 친척이고, '3부류'는 중앙당인민위원회 위원, 보위부·보안성·당기관 간부와 그 가족, 4촌 이내의 친척이며, '4부류'는 북송교포와 그 가족, 4촌 이내 친척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특별분류 대상자 중 초범일 경우에는 '보안위원회'에서 대부분 면죄와 감형의 결정을 내려 혜택을 주지만, 재범일 경우에는 2·3·4부류는 법적인 처벌을 한다. 그러나 1부류 대상자들은 반감을 가질 경우 국가적으로 중대한 손실을 끼칠 우려가 많다하여 재범일 경우에도 처벌을 지양하고 있는 실정이다.<sup>250)</sup>

### 3) 현지공개재판

북한은 정권수립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국가적·반사회적 범죄에 대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공개재판(인민재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992년부터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도 시·군 단위별로 '현지공개재판'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지공개재판' 제도는 강도, 절도, 사기범 등 '비사회주의' 범죄자를 대상으로 시·군 보안서 보안원만 배석한 가운데, 보안서장이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형벌을 선고하게 된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진술에 의하면 1990년대 중반 극심한 식량난으로 각종 범죄가 급증하자 반체제범죄나 살인·강간 등 중범죄자, 식량절

250)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64-65면.

도범 등 경제사범에 이르기까지 공개처형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 이루어지는 공개처형은 이른바 군중노선의 한 ‘교양방법’으로 자행되고 있다. 한마디로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어 ‘말 잘 듣는 인민’으로 만들기 위한 교양방법인 것이다. 데일리 NK에 의하면 1995년 10월 평양시 용성구역 마람동에서는 조선혁명박물관 해설 강사(講士) 두 명이 차고 있던 ‘김일성 시계’ 등 귀중품을 여러 명으로부터 강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실을 당시 박물관장 황순희가 김정일 관저에 찾아가서 알렸다. 사건 내막을 들은 김정일은 “이제는 평양에서도 총소리를 울려야겠다”며 공개처형을 직접 명령했다고 한다.<sup>251)</sup>

2007년 2월 7일 함경북도 회령시는 탄광문화회관에서 인신매매범들을 군중 앞에서 공개 재판했다. 인신매매 횡수가 많은 4명은 교화형 15년, 나머지 10명은 노동단련대 5년형의 판결을 내렸다. 그 가족들은 산골 지역으로 추방되었다. 공개 재판을 지켜보던 한 주민은 이번 재판이 그동안 해 온 재판과 별 다를 바 없이 일벌백계식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불법 도강자, 도강 시도자, 전과자 등에 대한 사전 경고라는 것이다. 어떤 주민은 혹시 탈북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뜨끔했을 거라며, 이번 재판은 사실상 그런 사람들을 겨냥한 게 아니겠느냐는 견해를 보였다.<sup>252)</sup>

#### 4) 교방검열

북한은 식량난 이후 강도와 절도, 청소년 비행, 성범죄, 공공시설물 파괴, 장사행위 등이 빈번히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확산되자, 이를 방지하고자 ‘교방검열’을 통해 내부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교방검열이란 임의의 2개 지역을 선정하여 서로 상대 지역을 검열하는 방법이

251) 한영진 기자(평양출신 2002년 입국), “김정일, 공개총살 ‘3중효과’ 노린다”(데일리NK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100&num=353>), 2005.3.21.

252) 사단법인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회령시, 인신매매범 공개재판 실시”(〈오늘의 북한소식〉 제60호, 2007.2.21), 3면.

다. 북한은 1990년 중반 이후 불법·탈법 사례가 만연하자 인민보안성을 동원해 단속과 검열을 실시했다. 해당 인민보안서가 ‘비사회주의현상’을 적발하고자 자체 검열에 나섰지만 안면과 정실, 뇌물 등 ‘신중 지역주의’가 작용해 사건 자체가 축소되거나 흐지부지되는 사례가 빈발하여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인민보안성은 엄격하고 공정한 검열을 위해 이해관계가 작용할 소지가 없는 임의 2개 지역을 지정해 해당 지역 인민보안서 요원 6-7명을 교차 투입함으로써 일정한 검열성과를 거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진술에 의하면 인민보안성의 교방검열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장사꾼들로 주민들은 “배급도 주지 않은 상황에서 그나마 장사를 통해 목숨을 부지해 왔는데 장사마저 못하게 하면 굶어죽으라는 소리냐”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교방검열은 1970년대 초 처음 등장하여 그동안 필요할 때마다 간헐적으로 실시하여 왔는데, 사회기강이 문란해지자 당국이 이 제도를 활용해 단속을 강화한 것이다.<sup>253)</sup>

##### 5) 수사 그루빠(소조)<sup>254)</sup>

인민보안성에서는 주요사건 발생시 해당 시·군 보안서에서 최초 ‘수사그루빠’를 조직 운영한다. ‘수사그루빠’ 요원은 감찰지도원, 수사지도원, 호안과 지도원(화재발생시)으로 구성된다. 즉, 각 부서에서 전문요원을 소집하여 통합·운영하는 합동수사본부라 할 수 있다.

최초 조직된 ‘수사그루빠’가 사건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상급부서에서 다시 조직한다. 새로 조직된 ‘수사그루빠’는 최초 수사 요원 중 필수요원 1-2명만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도내 최정예 수사요원을 선발하여 구성한다. ‘수사그루빠’가 조직 운영되는 경우는 살인, 은행습격, 중요 대상물 방화, 시·군 보안서부장급 이상의 간부 테러, 수감 중 탈주 사건 등에 해당된다.

253) 김광인, “내부단속 강화 ‘교방검열’ 실시”, <조선일보>, 2002.4.17.

254) 김용기, 『북한실상종합』, 133면.

‘수사그루빠’는 비상설기구로서 사건발생 당시만 시·군별로 구성하여 해당 시·군 보안서에 수사본부를 설치 운용한다. 그루빠에 동원되었을 경우에는 소속기관 업무는 수행하지 않고 수사 해결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있다.

시·군급 이상 보안서별로 ‘수사그루빠’를 조직 편성할 때마다 호수(號數)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시·군 보안서 관할내의 대규모 사건 발생 빈도를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15호 ‘수사그루빠’는 15번째 ‘수사그루빠’를 조직했음을 의미한다.

#### 6) 한시적 그루빠<sup>255)</sup>

북한은 상설 공안기구 이외 수시로 관련 기관 합동으로 6·4그루빠, 비사회주의 그루빠, 유동그루빠 등의 주민통제 조직을 구성하고 있다. 이들 한시적 조직들은 뚜렷한 업무영역이 있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주민들의 사상일탈 방지에 집중하고 있다.

첫째, 반범죄그루빠(일명 6.4그루빠)는 김정일의 지시(1992.6.4)에 따라 조직되어 무직업자, 직장무단이탈자, 군무탈영자, 마약, 도박, 밀수, 매춘, 미신, 패싸움 등을 없애고 사회주의 기치를 고수하기 위한 일대 검거활동을 수행하였다. 이 소조는 비상설 조직으로 15-25명으로 편성하여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주민들을 단속·통제하였다. 검거된 범죄자는 즉석에서 단속조서를 작성하고 재판에 회부하여 교화소에 수용하거나 재판없이 노동교양소에 보내기도 한다.

이 소조의 활동이 본격화되자 각 도·시·군에서 범죄자들을 타격하고 혁명적 질서를 세운다는 명분하에 무자비한 단속을 감행하자 주민들의 원성이 극에 이르렀다. 특히 1994년 6월 중순경 평안북도 양덕군에서 단속시 무죄를 항변하던 주민을 폭행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들의 인권유린에 대해 김정일에게 제의서를 올려 ‘6·4그루빠’를 해산하였다.

그러나 북한지원단체인 ‘좋은벗들’은 6·4그루빠가 2004년 7월 10일부터 국경변에서 활동을 재개하여 혜산시 시당 책임비서가 문책되었다고 주장했다.<sup>256)</sup>

255) 위의 책, 135-137면 참조.

둘째, ‘최근 북한에서는 외화벌이 사업체 및 일반주민의 불법상행위가 급증하게 되자, 이러한 경제사범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서 ‘유동(流動) 그루빠’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소조는 사회통제기구의 일종으로 일명 ‘이동단속반’이라고도 한다.

북한은 최근 전국 보안서 단위까지 보안원(대위급)과 인민보안성 정치대학 졸업예정자(소위급) 2명을 1개조로 편성한 ‘유동 그루빠’를 운영하고 있다. 이 소조의 조직원들은 필요시 담당구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든 돌아다니며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신분증 이외 무기휴대증까지 발급받아 항상 권총을 휴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셋째, 북한은 1980년대 후반 구소련, 동구권 붕괴이후 외부의 자유사조 유입의 급증으로 주민들간에 새로운 유형의 사회일탈 현상이 빈발하자, 김정일은 1992년초 “비사회주의 반대투쟁운동”을 지시하였다. 이 지시에 의해 인민보안성(당시 사회안전부) 주관하에 보위부, 검찰 등과 합동으로 ‘비사회주의 그루빠’를 전국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하였다.

지방도시의 경우 총책임자는 도당책임비서, 행정책임자는 도 안전국장(현 보안국), 정치책임자는 도당행정부장, 집행요원은 도 안전국 감찰처장과 도검찰소 검사로 구성되며 통상 10명이 1개조로 구성되어 자신의 출신지역이 아닌 타 지역을 상호 교체하여 검열하도록 하였다.

검열 대상인 ‘비사회주의’ 행위에는 도박, 사기, 매춘 등의 일반범죄와 고리대금 등 불법 영리활동을 비롯하여 관상, 사주, 궁합 등의 미신행위나 서구식의 복장과 머리모양, 한국가요 선호 등의 풍속범죄 등이 주요 단속대상이 되었다. 최근에는 간부들의 뇌물수수, 월권행위, 인사청탁 등의 비리와 일반주민들의 무단결근, 근무태만 등에 대한 검열도 강화하고 있다.

넷째, 북한은 최근 마약범죄 단속을 위한 그루빠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마약 금지 포고령(2006.3.1)을 내린 후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가운데 2006

256) 사단법인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7월의 비사그루빠 활동”, <오늘의 북한소식 제1호>, 2006.09.16.

년 10월 13일부터 마약 현행범을 체포하기 위해 은밀히 그루빠를 조직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마약 현행범 수사 그루빠는 얼음(히로뽕), 아편 등을 비롯한 각종 마약 거래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전국 각 보안서와 검찰소 등에서 조직되었다. 지난해 10월 한 달간 전국을 시찰한 결과 마약의 밀수 밀매가 검찰, 안전보위부, 보안서 부분에서 비리가 나타나 연루자들을 출당, 철직 및 관련법에 따라 처벌했다. 평양시를 비롯해 함경남북도와 평안남북도에서 이 같은 처벌을 받은 수가 150여 명 이상에 이른다. 이들은 마약 호송 거래, 밀매자 보호 및 도강 등을 도와주며 최소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 이상씩 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sup>257)</sup>

## 7) 기타

북한은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국가검열성, 인민반 등을 통하여 주민을 감시 통제하고 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해당 당책임비서, 인민위원회 위원장, 인민보안서장 등 지도간부 5-6명으로 구성되며, 주요 권한과 임무는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 및 경제사범에 대한 징계와 처벌방침 결정, 각종 규정 및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상의 분규 및 오류에 대한 유권해석을 한다.

국가검열성은 내각 산하부서로 국가행정기구의 사상, 업무의 검열사업을 수행하며, 행정관료들의 반국가적, 반혁명적 행위를 적발하거나 위법행위를 적발한다. 국가검열성은 1972년 헌법 개정으로 중앙인민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국가검열위원회로 되었으나, 1998년 헌법 개정으로 중앙인민위원회가 폐지되면서 다시 국가검열성으로 환원되었다.

인민반은 동·리·읍·노동자구 인민위원회의 통제하에 반원의 생활지도와 사상동향 파악 및 반내 외부 방문자 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최말단 조직이다. 인민반에서는 월 2회 생활총화를 하고 양육문제, 노력동원, 청소동원, 공공질서 유지, 사건사고 전파 등 각종 문제를 토론하고 자아비판도 하고 있다. 인민반은 기

257) 사단법인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마약 거래 단속 강화”, <오늘의 북한소식 제57호>, 2007.3.16.

본적으로 체제유지를 위한 주민통제에 주목적이 있지만 부수적으로 일상생활을 통제함으로써 범죄예방을 도모하기도 한다.

## 2. 보안기관의 범죄자 수용시설과 주민통제

### 가. 범죄자의 수용 시설

인민보안성(경찰)에서 체포한 일반형사범이나 비사회주의 범죄자 중 중범죄자는 재판을 통해 교화소에 수용하고, 비상습 단순절도범과 경제사범 등 경범죄자는 담당지역 인민보안서의 결정과 해당 검찰소의 확인만으로 노동교양소에 수용한다. 노동교양소 수용자는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비록 개인 문건에 수용사실이 기록되지만 출소 이전의 직책으로 복귀가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무임승차, 근무태만자 등 각종 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단속 현장에서 즉시 강제노동집결소로 이송하여 강제노동에 종사시킨다.

이외 국가안전보위부에서는 정치범에 대해 ‘특별독재대상구역’이라고 불리는 관리소에 수감한다. 최근에는 일반 형사범 중에서도 상습범이나 경제범에 한해서는 관리소로 보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1) 피의자 수용시설<sup>258)</sup>

인민보안성은 일반 형사범과 ‘비사회주의자’를 구속한 후 시·군 인민보안서 내 구류장에 수용하여 수사를 하게 된다. 정치범에 대해서는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별도 수사를 한다. 피의자의 범죄사실 유무를 규명하기 위한 수용시설로는 예심기관의 시·군·구역 인민보안서 구류장과 도(직할시) 인민보안국의 집결소가 있다.

258) 김윤영, 『북한의 인민보안성(경찰)에 관한 연구』, 84-85면.

### 가) 대기실

북한의 인민보안서는 한국경찰서 형사과 대기실과 같은 기능의 대기실을 운영하고 있다. 대기실은 미해명자(피의자)를 체포하여 이들을 조사하면서 대기시키는 장소이다. 체포한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 정도이다(형사소송법 제 144 조).

대기실은 조사실로부터 가까이 있으며, 통상 약 5m(가로)×3m(세로) 크기의 콘크리트 바닥에 나무로 된 장의자(긴의자)와 1인용 나무의자가 5-6개 정도, 출입문 쪽은 철창으로 되어 있으며, 2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사기간 중 대기실에서 대기하는 자들은 일과 시간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흡연을 금지시키고 바닥이나 장의자, 책상 등에서 취침을 하게한다. 용변 시에는 수사지도원의 호송하에 팔목에 족쇄(수갑)를 채운 상태로 용변을 보게 한다.

### 나) 구류장

북한의 인민보안서는 수사와 예심과정에서 인신을 수감하는 구류장(약 가로 4.5m×세로 6m×높이4m, 남한의 유치장)을 운영하며 수사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구류장은 심문 중인 피소자와 확정판결을 받은 피의자를 교화소에 보내기 전에 임시 수용하는 시설이다.

구류장은 형사소송법<sup>259)</sup> 제143조<sup>260)</sup>에 의한 현행법 및 준현행법 또는 형사

25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은 1992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호로 채택되어 2004년 5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6호로 수정 보충되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대중용)』, 841면부터 참조할 것)

260) 북한 형소법 “제 143 조(검사의 승인없이 범죄혐의자 및 범죄자를 체포, 수색, 압수할 수 있는 사유) 수사원이 검사의 승인없이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체포하고 그의 몸이나 거처를 수색하며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자가 범죄에 착수하였거나 범죄를 저지르다가 또는 저지른 즉시에 발견되었을 경우 2. 피해자 또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본 사람이 범죄자라고 하면서 붙잡았거나 가리킨 경우 3. 범죄혐의자의 몸 또는 거처에서 범죄를 저지른 흔적이

소송법 제184조<sup>261)</sup>에 의한 구속 처분자와 1차 수사한 현행범 또는 범죄 미해명자 등을 길게는 90일까지 수용(예심기간 중에도 구류장에서 생활)하게 된다.<sup>262)</sup>

구류장은 보통 해당 인민보안서 내 별도의 단층건물에 위치하고 감방은 10-20여개로 파악되고 있다. 구류장에는 독방, 사형수 감방, 사형대기감방, 공동화장실, 세면대, 일광욕장 등이 설비되어 있다. 구류장은 철창으로 되어있으며 보안원이 2교대로 근무한다. 특히 각 군(구역) 인민보안서 구류장에는 국가안전보위부용 감방 1개씩을 배정하고 있다. 이 감방을 통상 ‘3호 감방’으로 호칭하며 수감자를 ‘보위부 대상’이라 한다.

#### 다) 집결소

인민보안국 감찰처는 집결소(集結所)를 운영한다. 집결소는 각 시·군·구역 인민보안서에서 적발한 여행증명서 미소지자, 여행기간 초과자, 불법여행자와 주거지가 불분명한 자 등 우범자나 경범죄자를 수용한다. 수용기간은 대상에 따라 2-3일에서 6개월이다. 또한 직장에서의 무단결근, 총화학습에 빠지는 등 도덕적 해이 사건, 의사나 운전기사 등의 업무 수행 중 과실치사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로 교화소로 보내기에는 죄질이 경미하고 노동단련대로 보내기에는 죄질이 무거운 경우가 해당된다.

집결소에 수용된 인원들은 주간에 채석장, 농장 등의 작업장에 동원되며 신분 확인 등을 거쳐 신분확인이 되지 않는 자는 다시 인민보안서 구류장으로 이송된다.

나타났을 경우 4. 범죄혐의자, 범죄자가 자살 또는 도망치려 하거나 뒤쫓기우고 있을 경우 5. 범죄혐의자, 범죄자로서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등이다.

261) 북한 형사소송법 제 184 조(구속처분의 종류)는 ‘구류구속처분’, ‘자택구속처분’, ‘지역구속처분’으로 구분하고 있다.

262) 북한 형사소송법 제187조(구류의 기간)는 “예심을 위하여 피심자를 구류하는 기간은 2개월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어서, 제 188조(구류기간의 연장)에서는 “이 법 제151조 1항에 규정된 기간에 예심을 끝낼 수 없는 복잡한 범죄사건은 시(구역), 군예심원과 도(직할시) 예심원은 도(직할시)감찰소장, 중앙예심원은 중앙감찰소의 승인을 받아 피심자의 구류기간을 1개월 늘일 수 있다”라 명시하고 있다.

## 2) 관리소<sup>263)</sup>

북한은 1958년 12월부터 정치범을 반혁명분자로 낙인찍어 투옥·처형하거나 산간오지로 추방해오다가, 1966년 4월부터는 적대계층을 특정지역에 집단수용하기 시작했다. 정치범수용소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북한 당국은 주로 '00호 관리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주민들은 통제구역, 완전통제구역, 특별통제구역, 이주구역, 정치범집단수용소, 유배소, 종파굴 등으로 부른다. 북한은 정치범수용소를 각 관리소마다 체제유지에 위해(危害)하다고 판단되는 죄목의 규정문서 번호나 지역 고유번호를 붙여서 '00호 관리소'<sup>264)</sup>로 부른다.<sup>265)</sup>

인민보안성에서 관리하는 관리소는 정치범 가족들과 주로 상습범, 거액 경제사범 등 비정치범들이 수용대상이 된다. 인민보안성 제18호 관리소는 인민보안성 교화국에서 관리하는 관리소 중 하나로 평안남도 북창군 득장구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 수감 중인 자들은 6.25 당시 남한을 위해 일한 사람들의 자손 및 장본인, 지주 및 당국에서 청산계급으로 분류된 본인과 그들의 2-3대 자손, 중견 간부 중 패싸움 등으로 수감된 자, 귀순자 및 망명자 가족 및 일가친척들, 중앙당 고위급 간부 등 경제사범으로 수감된 자들이다. 이들은 일반적인 혁명화 작업반으로 보내질 경우 국가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어 제18호 관리소에서 혁명화 작업반 형태로 별도 관리하고 있다. 이들 수감자들은 석탄생산에 동원되는데 수감자는 노약자를 제외하고 약 3만 5천명으로 추정된다.<sup>266)</sup>

국가안전보위부 관리의 정치범수용소는 <표 4-9>에서와 같이 중앙당 조직지도부 지도 아래 국가안전보위부 7국의 지휘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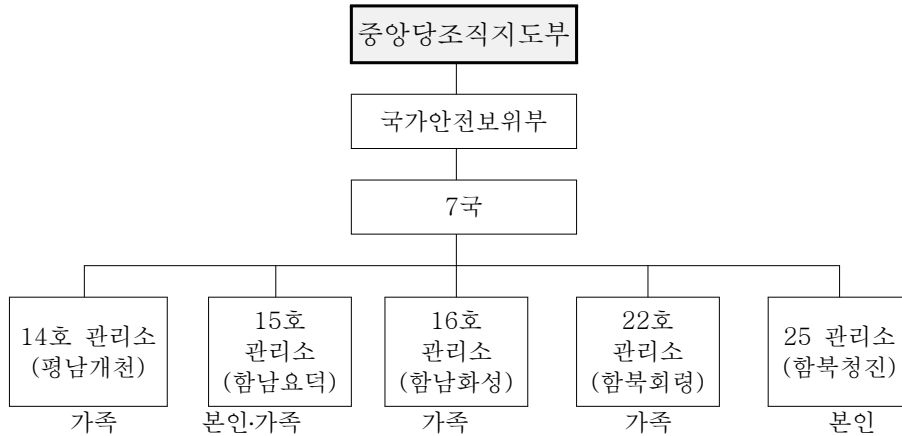
263) 김윤영, 『북한의 인민보안성(경찰)에 관한 연구』, 91-95면 재정리.

264) 북한당국은 정치범수용소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인민경비대 제000부대'라는 위장 명칭을 사용한다.

265) 이금순 외, 『북한인권백서 2004』 (서울: 통일연구원, 2004), 271면.

266) 위의 책, 62면.

<표 4-9> 정치범수용소 관리현황



\* 자료: 임순희 외, 『북한인권백서 2006』 (서울: 통일연구원, 2006), 221면.

정치범수용소는 국가안전보위부원으로 구성된 관리조직에 의해 운영된다.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운영하는 정치범수용소는 완전통제구역이다. 예외적으로 함남 요덕 15호 정치범수용소에서는 서립천 지구에 혁명화구역<sup>267)</sup>을 운영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정치범수용소를 혁명화구역과 완전통제구역으로 구분하는데,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은 출소 여부와 인권침해 정도에서 차이를 보인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의 규모는 대략 51-250km<sup>2</sup>이며, 각각의 수용인원은 5천-5만명 정도, 북한 전역의 정치범수용소에 약 20만 명이 수용된 것으로<sup>268)</sup> 추정된다.<sup>269)</sup> 북한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국경인접과 비밀탄로 우려 등

267) 15호 요덕 정치범수용소는 혁명화구역과 완전통제구역이 있다. 1987년 이전까지 구읍리, 립석리, 대숙리는 혁명화구역이었고, 룡평리, 평전리는 완전통제구역이었다. 1987년 이후 혁명화구역이 축소되기 시작했고, 2000년 이후에는 구읍 지구의 서립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완전통제구역으로 편제되었다.(위의 책, 233면).

268) 1998년 아시아감시위원회와 미네소타 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12개 정치범수용소에 약 15만 명의 정치범이 수감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전직 국가보위부의 관리였던 탈북자 윤대일은 20만 명이라는 숫자가 최하한선일 것이라고 증언했다.(임순희 외, 『북한인권백서 2006』, 217면). 그러나 북한은 1995년 4월 국제사면위원회 조사단 방북시 전체수감자 800-1,000 중 정치범은 240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통일연구원은 11호, 12호, 13호, 26호, 27호 등 5군데가 폐쇄되었고, 14호, 15호, 16호, 22호, 25호 등 5개소에 약 20여만명이 수용되었다고 주장했다.

269) 데이빗 호크/이재광 역, 『감춰진 수용소』 (서울: 시대정신, 2003), 62면.

의 이유로 11호(함북 경성), 12호(함북 온성), 13호(함북 운성), 26호(평양 승호), 27호(평북 천마) 정치범수용소를 통합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정치범 수용소는 <표 4-10>의 14호, 15호, 16호, 22호, 25호 등 5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4-10> 정치범수용소 현황

명칭	14호	15호	16호	22호	25호
위 치	평남 개천군 보봉리	함남 요덕군	함남 화성군 고창리	함북 회령시	함북 청진시 수성동
공식명칭		조선인민경비대 2915부대		조선인민경비대 2209부대	
면 적	약 280km <sup>2</sup>	약 460km <sup>2</sup>		약 650km <sup>2</sup>	
수용인원	약 1만 5천명	약 5만명	약 1만명	약 5만명	약 3천명
수용자 구분	가족, 남녀분산	본인, 가족	가족	가족	본인
설립시기	1959년 최용건 건의로 설립			1974년 설립	
수감자 특성	5,60년대 김일성 체제에 반대한 당, 정, 군의 고위관료와 그 가족, 친지들이 주로 수감됨.	혁명화구역은 재일교포 가족들과 경미한 정치범이 수감됨. 완전통제구역은 지주, 자본가, 친일파, 월남자 가족 등이 수감됨.	김동규 전 국가부주석 등 7·80년대 초 김정일후계체제 형성과정에서 숙청되어 반당, 반혁명분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수감됨.	일제시대 지주, 순사, 자본가, 기생, 종교인, 월남자 가족, 종파분자 가족, 유일체제 반대자 가족, 치안대 가담자 가족들이 수감됨.	종교인, 간첩, 종파분자 등 형벌이 무거운 정치범들이 수감됨.
기 타	1990년 수감자 폭동으로 1천5백명의 정치범이 사살되고 수감자 통제가 강화됨.	혁명화구역 운영, 귀국자 마을에 일본인 처 15명이 수감되어 10여 명이 사망함.	국가주권 전복 음모자 등 정권에 가장 위협한 최고위층이 수감됨.	25-45세 수감자가 70%를 차지하고 남녀 비율 4:6 정도임.	갈매기표, 자전거, 무동력냉장고, 재봉틀, 난방용라디에터 등 생산, 품질이 우수함.

\* 자료: 김현 외, 『2006 북한인권백서』, 236면.

### 가) 혁명화구역

북한 당국은 죄질이 경미한 정치범들을 일정기간 수용소에서 수감하여 육체노동을 통해 혁명화 교육 후 사회에 복귀시켜 김일성, 김정일 체제에 순응하도록 한다. 혁명화구역은 유학생, 외교관 등 해외 파견자들 중 사상변질자, 불법도강 및 탈북미수자, 북송교포 가족 등 상대적으로 죄질이 경미한 정치범들이 수감된다.<sup>270)</sup>

2000년 6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수감생활을 한 김은철은 15호 요덕수용소 수용자 중 30%는 탈북자들이었고, 나머지는 반김정일 죄목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반김정일 죄목으로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양덕군 인민위원장(군수급) 김종복, 체신성 부상(차관급) 심철호, 인민무력부에서 연료 담당을 하던 김동호 국장, 조선로동당 35호실(국제공작 담당 부서) 과장급 1명과 직원 2명 등이 있었다고 증언했다.<sup>271)</sup>

혁명화구역은 가족을 수감하는 ‘가족구역’과 독신자들을 수감하는 ‘독신자구역’으로 구분한다. 혁명화구역에 수감되는 정치사상범은 일정기간(1년 내지 10년) 경과 후 심사결과에 따라 출소가 가능하다. 혁명화구역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수감기간이 연장되거나 완전통제구역으로 이감한다. 혁명구역에서 출소식은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을 계기로 국가안전보위부 국장급이 참가한 가운데 명단 발표와 공민증 수요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석방된 정치범들은 수용소 내의 생활실상을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서약내용을 위반하면 재수감된다. 이들은 출소된다고 해도 적대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하층 생활을 하게 되며, 국가안전보위부의 최우선 감시대상이 되고 직업여행 등 모든 부문에서 제약을 받는다. 그리고 이들이 출소 후 일반 형사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이 10년 가중된다.<sup>272)</sup>

270) 위의 책, 232-233면.

271) <조선일보>, 2006.8.18.

272) 임순희 외, 『북한인권백서 2006』, 219면.

### 나) 완전통제구역<sup>273)</sup>

완전통제구역은 ‘완전타도대상’으로 분류된 정치범들을 영구 격리하기 때문에 한번 수감되면 영원히 사회로 복귀할 수 없는 종신 수용소이다. 완전통제구역에 수용된 정치범들은 무기 노동교화형을 받고 수감되기 때문에 죽어서도 사회로 나올 수 없다. 완전통제구역에서는 정치범들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하고, 4-5중으로 경비를 한다.

완전통제구역에 수감된 정치범들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평생 동안 광산, 벌목장 등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한다. 또한 완전통제구역은 혁명화구역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적은 식량을 배급받으면서, 가혹한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74)</sup>

완전통제구역에 수감된 정치범들은 혁명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김일성과 김정일 사진도 없고 별도의 사상교육도 진행하지 않으며, 다만 채광과 영농기술 등 생산에 필요한 지식만을 교육시킨다. 완전통제구역에는 북한이 계급의 적으로 규정한 지주, 자본가 등 착취계급, 친일파, 성분불량자, 종교인 등 계급투쟁 대상자들과 가족들이 주로 수감되었다. 또한 국내파, 소련파, 연안파 등 김일성과의 정치투쟁과정에서 숙청된 정치세력과 가족들을 비롯하여 1960년대 이후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확립과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서 반김일성·반김정일 세력과 그 가족들이 수감되었다.

### 3) 교화소

인민보안성 교화국에서는 교화사업을 직접 관할하며 북한전역에 교화소, 노동 교양소, 관리소를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화소는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일반 형사범을 수감하여 노동과 교양을 통해 공산주의적 인

273) 김현 외, 『2006 북한인권백서』, 234-235면.

274) 이금순 외, 『북한인권백서 2004』, 189면.

간으로 개조하는 교정시설이다. 교화소는 감방 생활만 하는 순수 교화소와 노동력을 병행하는 노동교화소로 구분된다. 현재 북한의 교화소는 평안남도 개천(제1 교화소), 함경남도 덕성(경제사범 수용소), 평양시 보통강구역(제8교화소), 평안북도 신의주(여성전용), 황해북도 사리원, 강원도 천내, 강원도 원산, 평안북도 천마, 함경북도 정평, 양강도 김책시<sup>275)</sup> 등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276)</sup>

북한당국은 교화소 수감자중 모범생활자, 심신이 아주 허약한 자 등 소수인원을 김정일(4.15)과 김정일(2.16) 생일, 당창건일, 공화국창건일 등을 기하여 가석방하기도 한다. 각 구역 인민보안서에서는 가석방자들을 형기가 만료될 때까지 엄격히 통제·관리하고 있다. 가석방자는 형기가 만료되는 시기까지 공민권이 박탈된 상태로 거주지에서 4km이상 이동시에는 보안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담당 보안원이 수시로 집을 방문하여 생활 실태를 파악하며 인민반장과 주민을 통해 감시한다. 또 월 2회 가석방자가 보안소에 가서 문서나 구두로 직접 생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생활보고란 가석방된 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일일생활 결과(24시간 활동내용, 자아비판 내용)를 문서에 기록하여 보고하는 것으로서 거주지 인근 주민들의 동향 내용까지 포함한다.<sup>277)</sup>

#### 4) 노동교양소<sup>278)</sup>

노동교양소는 1987년 형법 개정전까지는 교화노동형을 선고받은 자를 수용하는 시설이었으나, 1987년 형법 개정으로 교화노동형이 폐지됨에 따라 단순절도범 등 경범죄자를 수용하고 있다. 현재 파악된 북한전역의 노동교양소는 11호 교양소(평남 증산, 여성전용), 22호 교양소(함남 신흥), 33호 교양소(평남 숙천, 미성년자 전용), 55호 교양소(평양 형제산 구역), 66호 교양소(평북 동림), 77호 교양소(함북 단천), 88호 교양소(강원 원산) 등이 있다.<sup>279)</sup>

275) 이 교화소는 2003년 들어 설치한 것으로 3회 이상 탈북 전력자를 수용하고 있다.

276) 김윤영, 『북한의 인민보안성(경찰)에 관한 연구』, 102면

277) 김용기, 『북한실상 종합자료집』, 162-163면.

278) 위의 책, 163-166면.

인민보안서는 체포한 일반 형사범이나 밀주제조자, 암거래꾼 등 이른바 ‘비사회주의 범죄자’ 중 중범죄자는 재판을 통해 교화소에 수용하나 경범죄자는 노동교양소에 수용한다. 즉, 비상습 단순 절도범이나 경제사범 등 경범죄자는 담당지역 보안서의 결정과 해당 보안서 관할 검찰소의 확인만으로 노동교양소에 수용할 수 있다. 노동교양소는 교화소와 달리 전과자로 처리되지 않는다. 경범죄자에 대해서는 전과자의 양상을 막기 위해 가급적 노동교양소에 수용하여 노동을 통해 낡은 사상이나 조직생활 태도를 개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노동교양소는 각과별로 독립시설에서 생활하도록 되어 있다. 대체로 아파트(1-3층)식 건물로 되어 있으며, 높이 2.5m 시멘트 담장위에 가시형 철조망(60-70cm)이 설치되어 있다. 인민보안성에서는 노동교양소 수용자에 대한 통제를 위해 기본조직인 과장직에 소좌를 임명하고 1개반에 권총과 자동보총으로 무장한 2명의 보안원을 배치하는 한편, 수용자 중에서 반장 및 조장을 선발하여 자체 통제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과 단위별로 숙소보초, 내부감시자, 변소감시자, 식당감시자 등 25-30여명의 감시자들 둔다.<sup>280)</sup>

노동교양소의 수용기간은 1년이었으나 1989년 평양축전 이후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경제범죄자의 급증으로 범죄자 수용의 한계에 이르자 1992년 한때 수용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가하면 ‘배려 출소제’를 도입하여 조기 출소시키는 등 교양보다 단순 처벌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교양소는 과(課)-반(班)-조(組) 단위로 조직되어 있다. 과(300-500명)는 소년과(만 17세 미만)·여자과·탄광과·축산과 등으로 구분되고, 반(30-50명)은 과의 하부 단위로서 1개 과당 10개 반으로 구성된다. 조(10명)는 반의 하부 단위로서 1개 반당 3-5개조로 구성된다. 1개 노동교양소의 적정 수용인원은 보통 10개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5천여명 정도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생활난과

279) 노동수용소에서는 수용자를 동원하여 농장, 과수원, 탄광, 목장 등을 운영하면서 노동을 통한 사상개조보다는 생산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중노동이 강요되고 있어서 노동교양소의 각 부문별 단위생산량은 일반사회의 해당 부문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280)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60-61면.

관련하여 범죄자의 급증과 당국의 ‘비사회주의타파 그루빠’ 활동을 통한 ‘비사회주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6-7천명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 5) 강제노동집결소<sup>281)</sup>

북한은 광산에만 강제노동집결소를 두었으나, 1992년부터 군 및 연합기업소 단위마다 설치하여 경범죄자들을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1990년대 사회변혁기 과정에서 절도, 폭력, 부화사건 등 각종 범죄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강제노동집결소는 인민보안서 소속으로 ‘육체적 부담을 가하여 교화를 시킨다’는 방침에 따라 설치된 것이다.

강제노동집결소의 중대장은 보안서 감찰과 지도원, 소대장은 힘이 세고 사상이 투철한 공장·기업소 사로청지도원이 담당한다. 집결소의 정치지도원은 군 사로청 위원으로 편성된다.

강제노동집결소 수용자들은 교양소에 수용하기에는 범죄가 미미한 경범죄자들로서 개인별 문건에는 범죄기록이 기입되지 않은 채 15일에서 6개월 정도 수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일 10점을 기본점수로 준 후 점수를 삭감하는 방법으로 기상부터 취침까지의 모든 행동을 감시받는다. 2개월 수용자의 경우 600점을 받아야 출소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들은 광산이나 농촌 등 일손이 필요한 지역마다 돌아가며 무보수 강제노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 나. 주민통제 사업<sup>282)</sup>

인민보안성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주민을 통제하는 업무이다. 북한 주민동향에 대한 내부문서에 의하면 인민보안성을 포함하는 공안기관들이 주민들의 동향을 제의서, 보고문건, 모사보고문건 등의 형식으로 김정일에게 보고하여왔

281) 김용기, 『북한실상 종합자료집』, 166-167면.

282) 김윤영, 『북한의 인민보안성(경찰)에 관한 연구』, 96-103면 재정리.

다.<sup>283)</sup> 인민보안성은 주민통제를 위해서 정치사업, 주민요해 사업, 주민성분조사 사업, 교화사업, 주소안내 등의 특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민보안성 교화국에서 담당하는 교화소, 노동교양소, 관리소의 교화사업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 1) 정치사상 사업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김일성·김정일로 이어지는 세습체제를 정당화하고 유지시키기 위해 당의 엄격한 통제 하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치사상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인민보안원 역시 사회주의 경찰의 특징인 정치사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주의권에서 말하는 정치사업이란 공산혁명의 목적과 의의, 그 수행방법과 전망 등을 당원과 군중들에게 인식시켜 이른바 혁명과업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동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북한은 정치사업을 “간부들과 당원들과 군중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무장시켜 당과 수령의 두리에 묶어세우며 그들을 당 정책 관철에로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이라고 규정하여 ‘당의 최우선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즉, 정치사업이란 주민들을 수령(김정일)과 당의 노선에 복종하고 순응토록 하는 의식화 사업이다.<sup>284)</sup>

인민보안성 내 정치국은 독립부서로 정치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정치사사업은 인민보안국과 인민보안서의 정치부에서 담당한다. 김정일은 북한 경찰의 정치사상교육이 잘 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민보안성 정치국의 역할에 달려 있다면서 정치국 임무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사회안전일군들에 대한 교양사업이 잘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사회안전성 정치국의 역할에 달려있습니다. 사회안전일군들에 대한 정치교양사업은 도당위원

283) <조선일보>, 2003.2.17.

284)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53면.

회와 군당위원회를 비롯한 지방당조직들이 하지 않고 사회안전성 정치국에서 통일적으로 맡아하고있는것 만큼 사회안전성 정치국의 임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안전성 정치국은 자기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사상교양사업에 대한 지도를 잘하여야 합니다. 정치국 책임일군들은 사회안전일군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선전선동부나 아래일군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정치국적인 사업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정치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장악하고 대책을 세우며 그 집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총화하고 재포지하는 방법으로 정치교양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합니다.”<sup>285)</sup>

인민보안성은 “정치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는것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언제나 확고히 견지하여야 할 기본원칙”<sup>286)</sup>으로 규정하면서, “사회안전일군(인민보안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sup>287)</sup>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북한 경찰의 ‘정치사상사업의 기본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데 있으며, “당과 수령을 정치적으로 옹호보위<sup>288)</sup>”하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있다.

결국 북한의 정치사상사업은 당 정책의 선전·선동과 유일사상체계 확립, 수령 결사옹호·보위, 조선혁명(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전통과 공산주의 교양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인민보안성 산하 단위별로 매주 월요일 생활총화, 화요일 정치학습, 수요일 강연 및 학습, 목요일 강연회, 토요일 생활총화 등이 운영되고 있다.<sup>289)</sup>

285) 김정일, “사회안전일군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사회 안전성 정치국 일군들과 한 담화 1970년 3월 29일”(『김정일선집(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74면.

286) 위의 책, 61면.

287) 위의 책, 63면.

288) 위의 책, 63면.

289) 김학범, “통일후 경찰통합을 위한 남북한 경찰조직기구와 기능에 관한 연구”, 103면.

## 2) 주민요해사업

인민보안성의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주민요해사업(住民了解事業)<sup>290</sup>을 담당하는 일이다. 주민요해사업이란 17세 이상 모든 ‘공민’의 계급적 토대, 출생, 학력, 정당, 종교, 상벌관계 등 사회정치활동 경위, 가족친척관계 등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사업으로 통상 주민등록사업이라 한다.

주민요해사업은 인민보안성 주민등록국에서 지도·감독하며, 직할시·도의 경우 해당 인민보안국 주민등록처, 시(구역)·군 인민보안서의 경우 주민등록과에서 담당한다. 인민보안서의 경우 주민등록과는 과장(소좌-대위), 지도원(대위-중위) 3-4명, 주민등록원 5-8명(보안원이 아니라 상주 또는 파견노동자임)으로 편성되어 있다.

주민요해사업은 크게 주민등록과 공민등록 관리업무를 구분되는데, 주민등록 업무는 주민성분 분류조사, 공민증 대상 주민등록문건관리 유지, 주민 거주지 변동사항 기록관리 등이며, 공민등록 업무는 공민증 발급, 주민거주지 변동사항 파악 후 주민등록 담당에 이관, 출생·사망신고 처리 등이다.

## 3) 주민성분 조사사업

북한은 1956년 8월중파사건 이후 전주민을 대상으로 성분조사 사업을 실시했다. 성분조사 사업은 전주민들의 사상성향을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북한은 1958년 전체 주민에 대한 성분을 조사하고, 출신성분에 따라 주민을 분류하는 계급정책을 공식적으로 수립했다. 이에 따라 1958년부터 1960년 말까지 ‘중앙당 집중지도사업’, 1964년 4월부터 1967년 3월까지 ‘주민 재등록사업’, 그리고 1967년 4월부터 1970년 6월 사이에 ‘3계층 51개 부류 구분사업’을 실시함으로써 북한식 계층 구조의 골간을 완성하였다.

290) 주민요해사업이란 북한주민의 계급적 토대, 출생, 학력, 사회활동 사항, 친인척 관계 등을 파악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즉, 북한주민의 성분을 분류하여 철저하게 통제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 이후에도 ‘주민요해사업’, ‘주민증 검열 사업’,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 등에 대한 요해사업’, ‘북송재일교포 요해사업’, ‘주민증 갱신사업’ 등 필요시마다 꾸준히 성분 조사를 실시하였다.<sup>291)</sup> 북한에서 실시된 출신성분 구분 작업과 그 내용을 연대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4-11>과 같다.

<표 4-11> 주민성분 조사사업

구 분	시 기	내 용
중앙당집중 지도사업	1958.12-1960.12	불순분자 색출 차단 및 산간벽지 강제이주
주민재등록사업	1966.4-1967.3	100만 노동적위대의 무장을 위한 주민성분 분류(직계3대 처가 외가 6촌까지 내사)
3계층 51개 부류 구분사업	1967.4-1970.6	주민재등록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주민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세분하여 51개 부류로 재분류
주민요해사업	1972.2-1974	남북대화 관련, 주민동태 조사 파악, 전주민을 믿을 수 있는 자, 반신반의자, 변절자로 구분
공민증 검열사업	1980.1-1980.12	김정일 지시로 공민증 대조 갱신으로 불순분자 색출과 통제기능 강화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 등에 대한 요해사업	1980.4-1980.10	월북자 등 외부에서 입북한 자들을 13계층으로 구분, 감시 자료를 체계화
북송재일교포 요해사업	1981.1-1981.4	북송교포들에 대한 동향감시 자료를 세분하여 동향감시 자료를 과학화
공민증 갱신사업	1983.11-1984.3	공민증 갱신 및 주민문건 정비
주민재등록 사업	1989.10-1990.12	주민등록부 재조사 정리, 이산가족 개인 신상카드 작성
공민증 갱신작업	1998.2-1998.10	수첩형태에서 양면 비닐코팅 카드형으로 교체

북한주민들은 대개 자신들이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를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권리가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절차도 없다.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만이 주민들의 소속 부류를 알고 있으며, 인민보안성은 주민들의 부류를 필요에 따라 조정한다.<sup>292)</sup>

291)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북한이해 2000』 (서울: 통일교육원, 2000), 344-345면.

북한은 <표 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민등록재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을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이라는 3계층 51개 부류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 4-12> 3계층 51개 부류 분류표

3계층	비율	51개 부류	대 우
핵심계층	28%	노동자, 고농(머슴), 빈농, 사무원, 노동당원, 혁명유가족, 애국열사 유가족, 8·15이후 양성된 인텔리, 전사자 가족, 후방가족, 영예군인 등	-당·정·군 간부로 등용 -타 계층과 분리 특혜조치(진학, 승진, 배급, 거주, 진료)
동요계층	45%	중·소상인, 수공업인, 소공장주, 하층接客업자, 중산층接客업자, 월남자 가족(1), 중농, 민족자본가, 월남자가족(2·3부류), 중국귀환인, 일본귀환인, 8·15이전 양성된 인텔리, 안일 부화방탕한 자, 접대부 및 미신송배자, 유학자 및 지방유지, 경제사범 등	-각종 하급간부 및 기술자로 진출 -충성심에 따라 극소수를 핵심계층으로 승격
적대계층	27%	8·15이후 전락노동자, 부농, 지주, 친일·친미주의자, 반동 관료배, 천도교 청우당원, 입북자, 기독교신자, 불교신자, 천주교신자, 출당자, 철직자, 직기관 복무자, 체포 투옥자 가족, 간첩관계자, 반당 반혁명 종파분자, 처단자 가족, 출소자, 정치범, 민주당원, 자본가, 월남자 가족(제1부류) 등	-유해 중노동에 종사 -입학 진학 입당 봉쇄 및 탄압 -체제·감시·포섭 대상으로 분류 ·체제 : 강제이주 격리수용 ·감시 : 항시 동태감시 ·포섭 : 집중적 교양 -극소수 동요계층으로 재분류(자녀)

\* 자료: 통일부, 『2000북한개요』, 1999, 420면;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2000, 346면.  
\* 북한의 1970년 당시 주민등록재사업 결과를 토대로 분류한 것임.

그러나 북한은 1990년대 공산권의 붕괴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주민들의 탈북현상이 증가되자 주민들의 동요방지, 체제불안 극복, 원활한 경제생산 활동 등을 통해 주민들의 마음을 회유하고자 했다. 이러한 사실은 김일성방송대학 강좌프로인 “김일성 혁명력사”시간(1994.11.5)에서도 밝혀지고 있다. 여기서 북한

292) 위의 책, 348면.

은 3계층을 ‘핵심군중, 기본군중, 복잡한 군중’등으로 새롭게 명명하고 3계층에 어떠한 주민들이 속하는지를 열거하면서 특히 ‘순결한 사람만을 가지고 혁명할 수는 없고, 조국통일투쟁의 승패는 많은 군중을 쟁취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이유로 ‘복잡한 군중’을 포섭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북한은 1984년 갱신하여 사용해온 ‘공민증’을 1988년 2월 이후 양면으로 된 새로운 공민증으로 교체하였다. 기존 공민증은 17세 이상 전주민이 필수적으로 상시 휴대해야 하는 기본 신분증명서(수첩형 12면)로 인적사항, 직업, 거주·퇴거, 결혼 및 가족관계와 전과 등이 기재되어 있다. 공민증 없이는 외출과 여행이 불가능하며 분실·미소지시 벌금부과 등의 제재를 당한다. 1998년 갱신한 공민증은 종전의 수첩모양에서 양면형으로 축소되었고, 직업, 가족관계, 거주, 퇴거를 삭제한 대신 주체연호와 혈액형란이 새로 추가되었다. 공민증 갱신은 사회분위기 쇄신의 하나이자 식량난 등으로 장기간 거주지를 무단이탈하는 자가 급증하고, 공민증 위조와 변조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정확한 인구실태 파악과 효율적인 주민통제 및 위조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휴대·발급을 편리 간소화하고 신분검열시 신속한 파악이 가능케 함과 동시에 전쟁 등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sup>293)</sup>

북한은 1990년대부터 주민들을 기본군중, 복잡군중, 적대계급 잔여분자 등으로 <표 4-13>에서와 같이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표 4-13> 북한의 신주민 성분분류**

계층	부류	평가
기본군중	혁명가·혁명가 가족·혁명유가족, 영예군인·영예전사자, 접견자, 영웅·공로자, 체대군인, 전사자가족·피살자가족, 사회주의애국희생자가족	기본계급출신으로 혁명의 매단계마다 수령님과 지도자동지를 위하여 한목숨 바쳐왔으며 앞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에

293)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기구 고찰』, 59면.

		따라 끝까지 견결히 싸워나가는 계층
복잡군중	인민군대 입대 기피자·인민군대 대열도주자, 귀환군인·귀환시민, 반동단체 가담자·일제복무기관 복무자, 10자대, 금강학원 관계자, 정치범 교화출소자, 종교인, 월남자 가족, 체포된 자 가족, 포로 후 돌아오지 않는 자 가족, 해외도주자 가족, 지주가족·부농가족·농촌10장 가족, 예속자분가로 제국주의를 등에 업고 착취한 자, 친일 친미 악질 종교인 가족, 종파분자 가족, 종파연류자 가족, 간첩가족	계급적 토대, 사회정치생활 경위, 가정주위 환경에서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있는 계층
적대계급 잔여분자	지주, 부농·농촌 10장, 예속자분가, 친일파, 친미파, 악질종교인, 종파분자, 종파연류자, 간첩	전복된 착취계급의 잔여분자들과 일제·미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민족반역자

\* 자료: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58면.

## 제5장 남북한 통일대비 범죄전망과 치안대책

### 제1절 독일통일의 범죄양상과 치안대책

#### 1. 독일통일 후의 범죄 실태와 유형

##### 가. 독일통일의 치안환경 변화

1980년대 소련의 개혁과 개방 그리고 동유럽의 자유화운동은 1989년 11월 동독내의 자유화운동과 동독주민들의 서독으로 탈출을 야기하였고, 1990년 10월 3일 동독지역은 서독의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새로운 연방으로 정식 가입되어 통일되었다.

독일은 동서독의 체제통합 과정에서 많은 사회변화와 함께 다양한 사회문제를 경험하였다. 통일 이후 서독은 막대한 통일비용의 지출로 인한 경기침체와 대량 실업, 이주민에 따른 고용 및 주택문제가 야기되었다.

통일 이후 동독에서 서독으로의 순이주자는 약 126만명 정도였으며, 그 과정에서 서독의 실업자는 180만명 정도에서 300만명으로, 실업률은 6.3%에서 11%로 각각 증가했다. 경제성장률 역시 5%정도에서 2%정도로 하락했다. 경기침체와 이주자 및 실업자의 증가로 인하여 도시문제, 주택문제, 빈곤문제, 폭력 및 범죄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가 유발되었다. 반면에 정치적으로 완전한 민족주권의 회복과 경제적으로 분단비용의 제거, 시장의 확대와 노동력의 확보라는 이득을 얻기도 했다.

동독지역은 사회해체, 주민의 대량이주,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유지했던 완전고용제도와 사회보장제도를 비롯한 국가보조금의 폐지로 인해 많은 실업자가 양산되었다. 실업자는 통일 직후인 1990년 91만명에서 1997년에는 136만으로, 실업률도 10.3%에서 19.5%로 급증하였다. 또한 사회해체 및 국가통제력의 약화로 인하여 무질서, 개인적 불만 및 긴장이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범죄 및 각종

사회일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sup>294)</sup>

### 나. 통일 후의 범죄 실태

사회주의 국가는 강력한 국가통제력에 의해 자본주의에 비해 낮은 범죄율을 보여 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나 1980년 말 이후 사회주의 국가들이 자본주의 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중의 하나가 범죄율이 급증한 것이다. 러시아의 마피아를 비롯하여 중국, 베트남 등이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던 국가들은 늘어나는 범죄율에 대처하고자 고심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독일은 ‘주설치법’에 의거 동독 지역에 브란덴부르크, 메클렌부르크-포어폼메른, 작센, 작센-안할트, 튀링겐 주 등 5개의 신연방주가 설치되었다. 독일 통일(1990.10.3) 후 신연방주 5개주들이 직면한 문제는 대규모의 실업율과 환경오염 그리고 범죄문제였다. 독일통일 이후 신설된 5개주의 치안상황은 크게 악화되었으며, 사회불안이 증대되었다.<sup>295)</sup> 특히 동부지역 국경개방에 편승하여 동유럽 시민들이 노동조건이 비교적 양호한 서부유럽 국가들로 대거 입국하는 가운데, 조직범죄단까지 횡행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인신매매, 마약거래, 총기범죄, 납치·협박 등을 일삼고 있는 등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범죄의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sup>296)</sup>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의 사회적 불안이 높아지면서 사기, 부동산 및 외화투기, 은행강도, 신 파시스트,<sup>297)</sup> 백색지상주의 단체, 외국인 기피증, 매춘, 마약,

294) 기광도, 『체제통합에 따른 사회변화와 범죄양상』, 12-13면 재정리.

295) 통일 전 범죄해결율이 47%에서 통일 후 37%로 저하된 바 있다. 1995년에는 다시 44%로 향상되었다.(임준태, “동서독 통일후 동독경찰의 민주화 과정”, 『한국경찰학회보』 제3호, 서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2000, 229면)

296) 임준태, “경찰의 효율적인 범죄예방전략 -독일경찰의 사례를 중심으로-”(『한국경찰학회보』 제4호, 서울: 한국경찰학회, 2002.8), 81면.

297) 독일 연방범죄수사국의 통계에 따르면 2005년 극우파 관련 폭력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독일 전역에서 958건의 극우파 관련 폭력범죄가 발생해 전년(776건)보다 23%나 증가했다. 또 극우파 관련 전체 범죄건수도 지난해 1만5천361건을 기록, 2004년보다 27% 증가했다. 독일 당국은 네오나치의 숫자가 지난 한 해 동안 3천800명에서 4천100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자살, 교통사고 등이 통일 직후인 1991년부터 1993까지는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독 지역의 경우 1991년에는 3,732건에서 1993년에는 9,747건으로 3배정도 증가하였고, 이후부터는 일정수준을 유지하여 1996년에는 9,827건에 이르고 있다. 서독지역의 경우에는 통일전인 1981년에는 6,603건에서 통일직후인 1991년에는 7,921건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통일 이후 뚜렷한 증가는 없었고 1996년에는 7,768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전체범죄는 동독지역이 서독지역보다 1.26배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298)</sup>

<표 5-1> 독일경찰의 일반현황과 범죄발생 건수

인구	면적	연방 및 주경찰관	전체공무원	범죄발생건수
82,163,500명	357,000km <sup>2</sup>	279,089명	4,908,883명 (여성 50.8%)	6,264,723건
2000.12.31 현재	남한면적의 3.6배	2000.12.31 현재 교통 및 반국가사범 제외	2000.6.30 현재	2000.6.30 현재

\* 출처: 임준태, “경찰의 효율적인 범죄예방전략 -독일경찰의 사례를 중심으로-”, 80면.

독일통일 이후 범죄발생 동향은 1993년까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1997년을 기점으로 서서히 안정적인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sup>299)</sup> <표 5-1>에서

파악하고 있다. 스킨헤드 등 비조직적인 극우파의 숫자도 1만명을 넘어서는 등 계속 늘고 있다. (‘동독과 동베를린서 인종주의 폭력 주의해야’, <베를린=연합뉴스>, 2006.6.7)

298) 기광도, 『체제통합에 따른 사회변화와 범죄양상』, 83면.

299) 독일 일간지 ‘빌트’는 2004년 10월 3일자 일요판에서 통일 후 14년이 흐른 지금 동·서독의 사회, 경제, 문화적 차이를 정부 통계와 그동안 발표되었던 다양한 여론, 생활실태 조사 결과를 종합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2004년 8월 기준 실업자 비율은 서독 8.4%, 동독 18.3% 나타났으며, 범죄율은 인구 10만명당 범죄 건수는 서독이 7천8백22건, 동독 8천6백73건으로 이중 살인과 과실치사 등 중범죄 비율이 서독 3건 : 동독 3건, 성폭행 및 성적 강요는 서독 11건 : 동독 8건, 자동차 절도는 서독 69건 : 동독 114건으로 나타났다.(최병국, “통일 14주년 동·서독 지역 간 차이”, <연합뉴스>, 2004.10.4)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도 독일전역에서 발생한 총범죄 건수는 교통과실범죄 및 국가적 법익침해범죄를 제외하고 6,264,723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살인사건 2,770건, 강도 59,414건, 중(重)상해 116,912건, 강간 등 7,499건, 절도 2,983,269건, 사기 771,367건 등이었다.<sup>300)</sup>

#### 다. 범죄발생 요인과 특징

통일 후 서독지역의 경우에는 사회체제 자체는 그대로 존속하지만 통일과정에서 100만명 이상의 이주민이 유입되고, 경기침체, 실업증가와 소득감소 등을 경험하였다. 이에 비하여 동독은 과거의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고 자본주의체제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업과 빈곤의 증가, 급속한 경제개혁 및 성장,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새로운 법체계의 적용 등을 겪고 있다.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서의 주된 사회문제로는 고실업, 인구감소, 사회적 불평등, 우익 및 외국인에 대한 테러, 동독주민의 아노미현상, 긴장, 불안, 불만, 절망 등이다. 이는 소비감소, 폭력, 자살, 알콜중독, 약물남용, 범죄 등의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들은 동독지역의 고실업, 경제적 격차, 불평등이 심화된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sup>301)</sup> 이러한 동서독의 실업률과 전체범죄율간의 관계는 실업률과 범죄율간의 비교적 정비례의 관계가 있으며, 실업률이 높은 동독지역에서 범죄발생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sup>302)</sup>

##### 1) 범죄발생 요인<sup>303)</sup>

첫째, 독일통일 이후 절도범죄, 강도범죄, 사기범죄, 사기범죄, 손괴범죄, 경제범죄, 방화범죄 등 재산관련 범죄가 증가한 근본적인 요인은 사회주의 붕괴가

300) BundesKriminalamt, PKS 2000, in <http://www.bka.de/pks/pks2000/p-2-1-1.html>, 2002.5.31; 임준태, “경찰의 효율적인 범죄예방전략”, 80-81면 재인용.

301) 기광도, 『체제통합에 따른 사회변화와 범죄양상』, 117면.

302) 위의 책, 134면.

303) 김주진, “통일한국에 대비한 경찰력 배치 방안”(부산대 석사학위논문, 2003), 64-66면 재정리.

시작된 1990년 이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동독의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동·서베를린시의 지역간 생활수준의 차이에 있었다. 그리고 재산권의 사유화 과정에서 소유권에 대한 범죄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는 구 동독지역의 재산권제도의 사유화 과정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다.

둘째, 독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1997년 베를린 시의 1년간 전체 범죄 55만여 건 중 30%가 자동차 절도범죄였다. 범죄 발생률보다 더 큰 문제는 자동차 절도 범인의 66% 정도가 20세 이하의 청소년이라는 점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구동독의 초라한 자동차와는 비교도 안 될 서독제 자동차를 타보고 싶다는 호기심에 아무런 죄책감 없이 절도행위를 자행했다. 때문에 독일통일 직후 자동차를 이용한 타 범죄 수단으로 차량절도나 파손, 밀수, 방화, 기타 교통사고 등의 범죄유형이 급증하였다.<sup>304)</sup>

셋째, 독일통일 이후 범죄와 실업률의 증가로 동·서독지역 모두 결혼 건수가 감소하였다. 서독지역은 통일전 40여년간 연평균 0.64%씩 감소하던 결혼 건수가 통일 후 3년동안(1991-93) 연평균 1.73%씩 감소했다. 동독지역은 동기간 통일전 연평균 1.85%씩 줄던 것이 통일 후 21.5%나 감소했다. 동독지역 출생자 가운데 사상이 비율 또한 1993년 한 해 동안 41.1%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통일 이후 급격한 체제변화에 따른 사회문제가 심각했음을 보여준다.<sup>305)</sup> 또한 동독여성들이 서독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장래전망이 어두운 동독남성과 결혼을 기피하게 되었고, 기혼여성들조차 이혼하기도 했다. 따라서 동독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동독이 붕괴된 직접적인 원인은 하루 2천명 이상이 서독으로 탈출했기 때문이다. 1989년부터 1993년까지 5년동안 126만명(동독인구의 8%)이 서독으로 넘어왔고,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주한 사람은 1990년 9월부터 1993년까지

304) 이경훈·이용숙, 『통일 그날 이후』 (서울: 길벗, 1994), 261면.

305) “통계로 본 독일의 통일비용”, <중앙일보>, 1996.7.22.

33만여명에 불과하였다. 이는 결국 동서독의 실업률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다섯째, 독일통일 후 가장 충격적인 현상은 청소년들의 집단적인 폭력행위가 증가한 것이다. 베를린 경찰청은 “재산관련 범죄에 비해서는 덜한 편이지만 폭력사범도 크게 늘고 있다고 밝히면서 폭력사범 가운데 청소년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으며, 학교 내 폭력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설명한다. 1990년 한 해 동안 동·서 베를린시에서 발생한 범죄 35만건에서 약 3천여건이 청소년폭력으로 큰거리, 골목길, 광장에서 일어난 강도사건이 155%나 증가했다고 한다.<sup>306)</sup>

## 2) 범죄양상의 특징<sup>307)</sup>

첫째, 전체범죄 발생률의 경우 통일 후 서독지역에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동독지역에서는 통일 형법이 적용된 1991년부터 1993년까지 급증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 수준의 범죄율을 보였다. 그리고 전체범죄 발생률에서는 서독보다는 동독지역에서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의 경우 동독의 범죄율은 서독보다 1.26배정도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통일 이후 증가한 범죄유형으로는 강도, 사기, 경제범죄, 폭행, 상해, 문서위조범죄, 개인자유침해범죄, 약물범죄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범죄유형 가운데 강도, 사기범죄는 동서독 지역과 관계없이 증가하였다. 경제범죄와 약물범죄는 서독지역에서 현저하게 증가하였고, 폭행 및 상해, 문서위조, 개인자유침해범죄는 동독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물범죄의 경우에는 서독에서는 감소한 반면 동독에서는 급증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306) 연합통신 특별취재팀, 『(현장대르포) 독일통일의 명암: 통독 3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서울: 연합통신, 1993); 김주진, “통일한국에 대비한 경찰력 배치 방안”, 66면 재인용.

307) 기광도, 체제통합에 따른 사회변화와 범죄양상, 115-117면 재정리.

셋째, 범죄유형에 따라 동서독간의 범죄율 빈도에 차이가 있었다. 서독지역에서는 사기, 경제범죄, 상해, 강간, 약물범죄가, 동독지역에서는 중절도, 강도, 손괴, 방화, 폭행 범죄가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순절도, 강도, 살인범죄 등은 통일 직후부터 동서독이 유사한 범죄율을 보였다. 장물, 상해, 문서위조, 개인자유침해범죄는 통일 직후에는 서독보다 동독지역에서 낮은 범죄율을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서독의 범죄율과 유사하거나 더 높은 범죄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범죄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먼저 성별의 경우 통일 직후 전체 범죄자 가운데 남자가 77%, 여자는 23%정도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통일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 범죄유형별로는 성별구조에서 다소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남성의 경우 단순절도는 감소하고 강도와 약물범죄가 증가하고, 여성은 폭행과 상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 연령의 경우 전체범죄자 가운데 통일 이후에는 10대의 범죄자가 증가하고, 20-30대의 성인범죄자는 감소했는데, 범죄자의 저연령화는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더 현저하게 나타났다. 외국의 범죄의 경우에는 통일직후 전체범죄자 가운데 28%가 외국인이었으며, 이러한 비율은 통일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독보다는 서독지역에 외국인 범죄자의 비율이 높았다.

## 2. 독일경찰의 임무와 범죄예방 정책

### 가. 경찰기관의 주요 임무

1949년 본(Boon)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독일 경찰조직과 권한은 동법 제30조와 70조에 의해 주(州)의 권한에 속하도록 하여 각 주별로 고유한 경찰법과 경찰조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예외적으로 기본법 제87조 1항 등에 의하여 전국적 사항이나 긴급사태 등을 대비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연방정부의 경찰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 각주의 경찰은 일반적으로 유니폼을 착용하는 일반예방경찰

(치안경찰)과 수사경찰로 구분된다. 주 경찰기관들의 경우 각주의 내무부에 소속되어 있고, 연방경찰로 불리는 법집행기관들도 역시 연방내무부에 소속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범죄예방순찰업무는 연방국경수비대의 집행경찰조직과 각주 내무부 소속 경찰서 및 ‘지구경찰서 순찰과’와 ‘파출소’경찰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연방경찰기관과 주 경찰의 임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sup>308)</sup>

첫째, 독일의 연방수사국(BKA), 연방국경수비대, 연방헌법보호청 등은 연방내무부에 소속되어 있다. 연방수사국(BKA)은 연방내무부산하 외청(外廳)으로 국제적 범죄, 조직범죄, 마약, 폭발물관련 범죄, 화폐위조사건, 무기밀매, 요인암살기도 등 특정한 범죄유형의 수사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며, 범죄정보수집과 분석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외국과의 수사협조(인터폴 독일총국), 경찰전산업무, 경찰의 수사활동에 대한 장비와 인력지원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연방수사국설치법’에 의하여 내무부산하에 주(州)범죄수사국을 설치하고 있다.

연방헌법보호청은 연방헌법의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집행기관은 가지고 있지 않다. 반(反)국가사범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정보를 경찰수사당국에 이첩하는 역할을 하며, 수사는 경찰이 담당한다. 각주에는 내무부산하에 주(州)헌법보호청이 설치되어 연방과 주(州)정부간의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반국가사범에 대한 수사권은 없다.

연방국경수비대는 연방수사국 같은 외청이 아닌 연방내무부의 국경수비국 소속이다. 연방국경수비대는 항만, 공항, 국경통제소 등에서 출입국관리업무와 철도상의 경비, 테러진압업무 등을 수행한다.<sup>309)</sup> 그리고 대규모 시위사태와 대규모의 자연재해발생·외국원수 등의 방문·범죄자 수배 등 경비수요가 발생할 시에는 각주를 지원하기도 한다. 전(全)연방 북부, 서부, 중부, 남부, 동부의 5개 국경수비사령부에 39,000여명(2001.1 기준)의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308) 임준태, “경찰의 효율적인 범죄예방전략”, 84-88면 재정리.

309) 국경수비대는 국경지역 감시, 국경통과 차량과 사람의 통제, 국경에서 30km 이내의 장해제거, 자연재해 외에 국가 비상사태시 위해방지, 헌법기관과 외국기관의 보호, 주 경찰조직의 지원, 테러진압(1972년 대테러부대 창설)업무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연방경찰관리자아카데미는 연방과 각주의 경찰간부의 재교육과 전문화 교육 그리고 경찰관련분야(치안정책) 연구의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매년 범죄통제정책과 관련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고 우수한 논문들을 정리하여 출판하고 있다. 매년 200여명의 고급간부후보생을 교육시키기도 한다.

둘째, 각주(州)의 최상급 경찰관청은 주내무부장관이다. 주내무부에는 경찰담당국(경찰청)이, 도단위에는 경찰담당부서(지방경찰청)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 이들 경찰 담당부서는 집행기관이 아니라 하급 경찰관서에 대한 인사, 예산, 지원, 감독, 통제업무를 수행한다. 주범죄수사국, 주기동경찰, 주경찰대학 등이 경찰청 소속으로 편성되어 있다.

각주의 경찰은 크게 일반예방경찰, 수사경찰, 기동경찰, 수상경찰 등 4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예방경찰은 치안경찰이라고도 지칭한다. 범죄예방을 위한 기동 및 도보순찰, 교통위반단속, 사고의 처리 및 기타 전문경찰분야를 제외한 일반적 경찰업무를 수행한다. 수사경찰은 각종 범죄의 수사 및 예방활동, 형사소추에 관련된 임무를 수행한다. 기동(機動)경찰은 대규모 시위나 각종 행사의 경비임무수행, 대형사고와 자연재해 등의 처리와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국가비상사태나 중대한 자연재해 발생시 다른 주를 지원하기도 한다. 한국의 해양경찰과 유사한 수상(水上)경찰은 항만, 하천, 호수를 중심으로 수로와 해로상의 안전유지, 해난사고의 조사와 예방, 내수면과 해양환경오염방지·단속, 기타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셋째, 도(道 단위의 경찰은 지방경찰청과 시·군·구 지역마다 경찰서가 있으며, 읍·면·동에 해당하는 행정구역에 파출소가 설치되어 있다. 특징적인 것은 경찰서와 파출소 중간단계에 지구((地區)경찰서가 있다는 점이다. 경찰서마다 2-3에서 10개미만 정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거점인 파출소는 지구경찰서 소속이다. 독일 대부분의 경찰관서에서는 지구경찰서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주요 임무는 범죄예방순찰을 담당하고 있다.

### 나. 경찰기관의 범죄예방책

독일은 통일 이후 실업, 범죄, 환경문제를 비롯한 정치적 과거 불법청산문제, 동독지역의 새로운 행정과 사법체제의 구축문제,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도산,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낙후와 부족, 소유권 등 재산권의 처리문제, 재산권의 불확실로 인한 위기감 등 수 많은 사회문제에 직면하였다. 특히 서독주민에 대한 동독주민들의 열등감에 따른 사회 심리적 병리현상과 자본주의 환경에 적응해야하는 좌절감은 매우 심각하여 대부분 사회범죄로 이어졌다. 그 결과 치안문제가 통일의 후유증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sup>310)</sup>

독일 경찰은 동서독의 통합 후유증에 따른 범죄를 비롯한 동유럽지역 국경개방과 단일통화에 기반을 둔 유럽연합(EU)의 출범 등으로 급증하는 마약, 총기, 인신매매, 화폐위조, 조직범죄 등 내·외국인범죄와 테러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많은 수의 순찰차량과 경찰인력을 집중 투입시켜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폴란드, 체코지역 등 국경지역의 경비를 강화하여 자동차 절도단, 마약범죄 조직, 불법무기밀매, 인신매매 등 각종 국제범죄의 예방과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동독지역에 신설된 신연방주의 범죄율은 여전히 높은 실정에 있다.

독일경찰의 범죄예방활동은 각주의 순찰경찰(지구경찰서와 파출소)이 주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독일 파출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며 본인이 그만 둘 때까지, 지구경찰서장은 10년 이상, 경찰서장은 보통 10년, 연방수사국장은 5년 전후, 연방내무부장은 3-4년 정도의 안정된 임기보장과 전문성강화로 일관성이 있는 범죄통제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순찰경찰의 근무방식과 여건, 순찰근무자의 직무 전문성, 경찰관서장의 안정된 임기보장과 전문성 등은 우리에게

310) 1992년 독일 연방범죄수사청이 실시한 '통일이후 주민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여론조사 결과, 동독지역 주민들은 범죄의 증가 64%, 실업률 증가 58%, 에너지비용 증가 52%, 서독지역 주민은 물가상승 46%, 망명입국자 증가 46%, 범죄의 증가 39%로 응답하는 등 망명 입국자의 증가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는 등 치안부재 의식이 만연되고 있음을 나타냈다.(김주전, "통일한국에 대비한 경찰력 배치 방안", 67면)

게 시사(示唆)하는 바가 크다.

독일경찰은 1990년대 초반 북유럽을 시작으로 소개된 미국식 지역사회 경찰 활동을 통해 범죄예방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연방국경수비대와 연방수사국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강화되고 있다. 연방법무부, 연방가족부, 연방보건부 등에서도 범죄업무와 관련된 범죄유형에 대해 특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수사경찰 부서에서는 ‘범죄예방상담소’<sup>311)</sup>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범죄문제와 관련된 민간부문과의 협력이 강조되면서 민간경비산업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주경찰은 ‘연방 및 주수사경찰차원의 범죄예방프로그램’<sup>312)</sup>, 범죄예방위원회,<sup>313)</sup> 안전파트너제도,<sup>314)</sup> 안전감시제도,<sup>315)</sup> 우범지역비디오 감시, 유급(有給)자원경찰제도,<sup>316)</sup> 마약수사반의

- 311) ‘범죄예방상담소’는 수사경찰이 시민들과 개별상담을 통해 범죄예방을 조언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주거침입절도와 같은 범죄유형에 대하여 전기장치 혹은 기계적 수단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언한다. 동 상담소에는 각종 범죄예방 안내책자(청소년, 약물, 성폭력 등), 유인물 등이 전시된다.
- 312)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언론매체(라디오, TV, 신문 등)를 통해 범죄발생 형태, 범죄억제 가능성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범죄예방교육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즉, 주로 유인물, 현수막, 범죄예방책자 등을 출판하며, 1994년부터는 “당신의 경찰과 함께 안전한 생활”이라는 무가지(無價紙) 신문을 연 2회에 걸쳐 2백만부 정도를 발행하여 배포하고 있다.
- 313) 독일은 범죄로 진전될 우려가 있는 공동체적 원인과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1990년 10월 29일부터 주정부내각의 의결을 통해 ‘범죄예방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동호회, 어린이보호단체, 노인복지회, 보호관찰협회, 노동조합, 언론, 보험회사, 경찰, 법무부, 주정부의 타부처 등 각급 사회단체원 등이 명예직으로 참석하고 있으며, 1997년 51개 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다.
- 314) 구동독주였던 브란덴부르크주에서는 1993-94년경 급증하는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안전파트너제도를 운영했다. 안전을 위한 협력은 연방국경수비대와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맥클린부르크-포포메른주, 작센주, 니더작센주, 부란덴부르크주와 쉴레스비히-홀슈타인주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 315) 바이에른주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안전감시제도’와 ‘안전위원회’를 두고 있다. 안전감시제도는 1994.1.1-1996.12.31까지 유효한 ‘안전감시제도시범실시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주내무부의 주도하에 1994년 4월부터 3년간 시범도시에서 실시하였으며, 동법은 1997년 1월부터 ‘안전감시법’으로 개칭된 뒤 현재까지 유효하다. 안전위원회는 가장 낮은 단계에서 범죄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도모하는 범죄예방적 조직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동 위원회의 임무는 시민들의 안전감을 강화하고 예방적 범죄투쟁을 위한 공동노력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있다.
- 316) 1963년부터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 처음 실시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자원경찰근무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경합동 근무제도로써 경찰과 시민간의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지역의 집행경찰조직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자원경찰은 대개 본업을 가지며 토·일요일, 공휴일 등 경찰관의 휴무일에 투입되며 근무중에 출퇴근대차 허용된다. 근무 중 부상 등 각종 사고발생시 경찰관 신분

‘Anti-Drogen-Disko’(ADD),<sup>317)</sup> 길거리 농구대회,<sup>318)</sup> 교통교육 및 인터넷을 활용한 경찰홍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지역 실정에 맞는 범죄예방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다. 개별 경찰관서에서는 도보순찰강화, 경찰존재가시성 강화 프로그램, 특별범죄유형대책반 운영 등 보다 상세하고 다양한 내용의 범죄통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sup>319)</sup>

## 제2절 남북한 통일 전후 범죄 전망과 대책

이 글에서 논의되는 남북한 통일은 남한 주도하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통합과정을 전제로 한다. 남한에 의한 북한체제의 통합은 북한의 급변사태<sup>320)</sup>나 남북한 합의에 의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분단국가의 통일 과정에서 경험하였듯이 전자의 경우는 북한정권이 쿠데타, 인민봉기 등 체제내적 요인과 무력충돌, 전쟁 수행, 연착륙 등 체제외적 요인에 의해 정권교체나 체제변화 그리고 총체적 국가체제의 변화를<sup>321)</sup> 포괄하는 개념으로, 매우 빠른 시간이나 단

에 준하는 보장을 받는다. 관련법에 의하면 정규 직업경찰관 정원의 50% 이상을 자원경찰관으로 배치할 수 없다. 1997년 현재 2,550여명이 활동하고 시간당 12마르크(1997년 기준 7,200원) 정도이며, 정규경찰관 3.5명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55명을 고용할 수 있다.

317) ‘Anti-Drogen-Disko’(ADD)는 1987년 6월 3일부터 마약수사반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이다. 14-18세의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약물남용 및 중독에 대한 위험성을 알려주고, 예방상담 등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청소년을 위하여 개조한 경찰기동대 버스를 학교주변에 배치하여 버스에 디스코텍을 설치한 후 3-4시간 정도의 무료 디스코텍 장을 운영한다. 행사 진행을 통해 마약수사반 경찰관들은 청소년들과 대화를 통해 마약의 위험을 전파하고, 마약 유희에 대한 역할연기, 마약문제와 관련한 퀴즈대회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318) 지역사회 유관단체들과 공동주관으로 ‘길거리 농구대회’(My Way-Fair Play)를 개최하여 경찰관들과 지역의 청소년들이 직접적이고 정기적인 접촉을 통하여, 청소년들에 경기규칙을 준수하고 인내심과 질서 및 페어 플레이정신을 함양하도록 유도한다.

319) 임준태, “경찰의 효율적인 범죄예방전략”, 112면.

320) 김윤영, 『김정일 체제의 위기와 위기관리』, 105면 참고.

321) 정권(regime)교체는 지도자의 실각 등에 의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변화로서 대체로 체제의 속성에 변화를 유발하지 않는다. 체제(organization)변화는 권력 당국자의 교체보다는 포괄적인 것으로서 구성원들 사이의 행동양식에 있어 상당한 폭의 수정을 수반한다. 총체적 국가체제(total Establishment)의 변화는 국가의 해체 또는 유사한 속성을 지닌 인접 국가들의 통합(integration)

기간 내에 대규모 또는 근본적인 변화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사태를 의미하며,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과 핵문제로 인한 국제적인 갈등 등 대내외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남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있어서는 북한이 위험수위에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sup>322)</sup>

후자는 전자와는 달리 북한정권의 협조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한 통일을 의미한다. 이 경우 북한의 당·정·군이나 사회단체 등의 조직적이고 전면적인 저항이 없어야 하고, 북한지역의 불법 과거사 청산도 병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북한정권이 당의 영도적 지위를 포기하고 모든 정부기관을 남한정부에 이양해야만 가능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남북한 통일은 정치·경제·사회통합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전제로 하고 통일 이후 남북한지역에서 예상되는 치안환경의 변화와 범죄발생을 전망하고자 한다. 남북한의 통일에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경찰은 통일시대와 관련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치안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앞에서 고찰한 독일통일을 토대로 통일대비와 통일 후 예상되는 사회변화와 범죄양상에 대한 치안대책을 논하고자 한다.

## 1. 남북한 치안환경의 변화와 범죄전망

### 가. 남북한 치안환경의 변화

#### 1) 남한의 치안환경 변화

우리는 이미 독일의 체제통합과정에서 치안환경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남북한 체제통합 역시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북한의 급변사태나 남북한 합의에 의한 남한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통일에 의한 후유증은

을 통해서 나타난다.(남성욱, “한반도 급변사태와 우리의 효율적인 대응방안”, 『북한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 ‘NDI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과 ‘고려대학교 북한학연구소’ 공동 주체 학술회의 자료집, 2006.9.20. 46면)

322) 김윤영, 『북한의 인민보안성(경찰)에 관한 연구』, 103면.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통일에 따른 남북한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변화와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첫째, 통일과정이나 통일 후 막대한 통일비용의 지출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은 남북한 체제통합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각종 경제지원에 지출되는 경제적 측면과 정치·사회적·문화적 통합에 필요한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통일비용은 통일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경제적·비경제적 비용을 의미한다.<sup>323)</sup>

독일 통일직전(1989) 동서독 1인당 국민소득의 차이는 3.3배였고, 통일 후 매년 서독의 국내총생산(GDP)의 5~6%를 동독지역에 지원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2004년 현재 남북한 1인당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이 15.5배로<sup>324)</sup> 나타나 통일당시 동서독보다도 5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어, 독일보다 훨씬 높은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인구에 있어서도 통일비용을 부담한 서독의 인구가 동독인구의 4배였던 것에 비해 남한의 인구는 북한인구의 2배에 머물고 있다. 경제력 역시 1990년 통독당시 서독의 1인당 GNI 2만 4천 달러인데 비해 2006년도 우리의 1인당 GNI는 1만 7천 달러 수준에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우리 국민들이 통일과정에 담당해야 할 경제적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남북한의 통일 초기에는 매년 국내총생산의 10%정도를 북한지역에 지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통일비용의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조세, 국채발행, 해외차입 등이 있다. 그러나 모든 통일비용은 남한국민이 부담해야 하며, 그 결과 조세부담, 물가상승, 실질소득 감소, 실업증가, 경제침체 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sup>325)</sup>

323) 통일비용은 분단비용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분단비용은 군사대치로 인한 경쟁적 군사비 지출을 비롯한 분단으로 인해 지출되는 유형·무형의 모든 사회경제적 비용으로 통일 후에는 복지시설비 등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324) 한국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2004년 현재 1인당 국민총소득은 남한 14,162달러, 북한 914달러로 남북한 격차가 15.5배에 이른다.

325) 기광도, 『체제통합에 따른 사회변화와 범죄양상』, 209면.

〈표 5-2〉 동서독과 남북한 비교

구 분	서독 : 동독(1989년)	남한 : 북한(2004)
인구수	4.0 : 1	2.1 : 1
국민총소득(GNI)	13.2 : 1	32.9 : 1
1인당 국민총소득	3.3 : 1	15.5 : 1

미국 국방장관실(OSD)의 요청에 따라 민간연구단체인 ‘랜드연구소(www.rand.org)’가 작성하여 2005년 공개한 “북한의 역설: 한반도 통일의 상황·비용·결과”라는 연구보고서는 남북한의 통일비용이 500억 달러(약 50조원)에서 6,700억 달러(약 6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 연구소는 ‘통일 4~5년 내에 북한의 국내총생산(GDP)을 2배로 증대’시킨다는 가정 아래 통일비용을 계산했다. 즉, 매년 14% 성장을 위해 투입되어야 하는 외부자본의 규모를 통일비용으로 잡은 것이다. 2002년 현재 한국의 25~27분의 1로 추정되는 북한 경제의 규모, 통일 후 제도개혁, 군비축소 등 수많은 변수들을 종합해 분석해 본 결과 최소 500억달러(2003년 미화기준)에서 최대 6,700억달러가 소요된다는 것이다.<sup>326)</sup> 그리고 남한의 실제 재정 부담을 전체 비용의 3분의 1 수준인 170억~2,230억 달러로 내다보았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및 국제기구 등 한반도 개발에 관심을 갖는 국가들이 비용을 분담할 것이기 때문에 남한의 부담은 남한 국내총생산(GDP)의 0.9~11%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sup>327)</sup>

326) 독일은 1990년 통일 이후 14년간 1조 8000억 마르크(약 1260조원)의 통일비용이 들어갔다고 지적하면서, 한반도 통일비용은 이 보다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북한의 1인당 GDP는 한국의 6-12%)가 동서독의 격차(동독의 1인당 GDP는 서독의 25-33%)보다 크고 인구비율(남한 대 북한=2대1, 서독 대 동독=4대1)로 한국의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반도 통일비용 최대 6700억달러 추산”, <조선일보>, 2005.6.7)

327) 김승련, “남북통일비용 50조-670조원 들것”, <동아일보>, 2005.6.7.

<표 5-3> 랜드 연구소의 통일비용 산출방식

(통일비용=통일 4년 내에 북한 GDP를 2배로 증대시키는 비용)

한국 GDP에 대한 * 북한 GDP의 비율	자본투자 부담	북한 준비축소에 따른 비용 절감	통일비용 (기타변수종합)
3% 수준일 때	868억달러	-360억달러	500억달러
4% 수준일 때	1,140억달러	-420억달러	1,860억달러
5% 수준일 때	2,390억달러	-480억달러	6,670억달러
* 한국 GDP(국내총생산, 2002년 4,760억달러)를 북한 GDP(2002년 170억달러)의 25-27배로 가정			

\* 출처: “한반도 통일비용 최대 6700억달러 추산”, <조선일보>, 2005.6.7.

둘째, 남북한 경제통합에 따른 사회문제이다. 최근 남한기업들이 쉰 노동력을 찾아 개성공단지역에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 통일 후에는 북으로 자본이동과 함께 북한의 주민들은 과거 고도 성장기 남한의 농촌이 그랬듯이 취업기회와 임금이 높은 남한의 도시들을 향해 대거 이주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인구인동이 크면 클수록 그와 관련된 남한지역의 실업증가, 물가상승, 재정증가 등의 사회문제는 다양화되고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전문가들은 남북통일 후 북한지역 주민들이 남한으로 이주할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sup>328)</sup> 보이고 있으나, 동독주민의 8%(약 135만)가 서독으로 이주한 후 안정화되었다는 경험을 고려하여, 남북한 통일시점의 북한 인구를 2,500만명<sup>329)</sup>으로 가정하면 약 200만명 이상이 남한으로 넘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sup>330)</sup> 이주자들은 대체적으로 절대빈곤과 취업을 위해 남하(南下)하기

328) 국토개발연구원 김원배는 “남북통일후 도시정책에 관한 한-독 국제회의”에서 “통일 이후 5년간 최소 1백 50만명의 북한주민이 남한으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김원배, “북한 경제 전환 따른 고용·인구이동”, 남북통일후 도시정책에 관한 한-독 국제회의, 1997.11.6; <한국경제>, 1997.11.6). 그리고 서울시립대 안종범(安鍾範) 교수는 남한으로의 이주민 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통일 이후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이주비율(이주민수/총인구)은 동독에 비해 다소 낮은 6-7%, 이주민 수는 1백70만-2백만명 수준으로 추정하였다.

329) 북한의 2004년도 “조선중앙년감”은 2001년도 북한의 인구를 2,314만명으로 발표하였다.

때문에 이들에 대한 취업과 생계보조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셋째, 북한주민의 남한으로 이주 증가는 남한의 부족한 노동력을 충원할 수 있는 순기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 이주자들은 생산직 근로자, 취업전의 청년, 해고된 공무원, 군인 등 20~55세의 생산성 높은 인력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들은 남한의 3D업종<sup>331)</sup>과 농업부문, 청소, 건설 등 일용직이나 공해업종, 중소기업 등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량 이주자는 노동력의 과잉공급을 유발하여 임금을 감소시키거나 실업자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최근 북한의 청소년들이 가출하거나 공장·기업소에서 무단이탈하여 떠돌면서 절도, 폭행 등을 일삼고 있는 부랑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듯이, 통일 후 남한의 노동력으로 흡수되지 못한 북한의 미취업 이주자들이 서울이나 수도권의 공단주변에 빈민촌을 형성하여 임대료와 물가상승은 물론, 범죄 및 사회일탈 등 도시의 부랑자로 전락되어 각종 사회문제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 2) 북한지역의 치안환경 변화

남북통일은 궁극적으로 남북합의나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한 남한주도의 통일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통일 후 북한사회는 체제전환, 산업화, 도시화로 변화가 동반된다. 다시 말해 북한은 다원적 정치집단과 하위체계의 자율성과 분화 등의 자유화현상, 사유재산제와 자유경제체제의 도입 등의 자본주의화, 사회주의 법체계 폐지와 자유적인 남한의 법체계 등을 수용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경기침체, 대량실업, 인구이동 등이 초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는 개인의 생활조건이나 양식에 영향

330) 박진, “통일후 북한주민 얼마나 넘어올까?”, <매일경제>, 2004.6.12 18면.

331) 3D 업종이라면 Dirty, Difficult, Danger의 세 가지 항목을 일컫는 말로서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일은 회피한다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을 미쳐 다양한 사회병리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후 북한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변화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일당독재체제가 해체되고 복수정당 제도를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이익집단과 정치단체들이 형성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 행정기구와 각종 국가기관에 대한 개혁과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체나 재교육이 진행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과거 사회주의 체제하의 기득권을 유지했던 당 관료나 권력엘리트, 군부 등의 저항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북한 내의 남한 동조세력과 저항세력간의 갈등, 과거 사회주의체제 하의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간의 갈등 등이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경제로 전환되어 사유재산제와 자유경쟁체제 도입으로 산업구조의 개선과 주요 산업의 민영화, 토지, 공장과 같은 생산수단의 사유화로 대량실업과 절대빈곤, 사회불평등 등이 심화되어 사회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사회주의체제 하에서는 주민들의 직장, 주택, 의료, 교육 등 문제를 국가가 해결하여 왔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통합정부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거나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지역에서의 사회불안과 봉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통일 후 북한주민들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 남한으로 대량 이주하게 될 것이며, 북한 지역 내에서도 농촌에서 도시로,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대도시 등으로의 이동이 심화되어 농촌이나 지방도시 인구의 공동화(空洞化)가 심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북한지역의 실업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문가들은 북한 전체 고용자의 약 25%(2백 30만명) 내지 30%(2백 60만명)가 실업상태에 놓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up>332)</sup> 또한 중국 등의 해외동포들의 북한지역으로 유입하거나 북한지역의 자본주의화를 위한 행정인력이나 교육관련 담당자 등이 남한에서 북한으로 이주하는 현상도 나타날 것이다.

넷째, 북한의 집단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사회체제가 자유화, 자율화, 개인

332) 김원배, <한국경제>, 1997.11.6.

주의화, 자유경쟁 사회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북한주민의 사적 자율화가 증대할 수록 개인적 이기주의, 물질주의, 배금주의, 뇌물과 절도 같은 사회병리현상 증가할 것이다. 자유시장경제로의 이행 과정에서 이기주의 사고의 확산으로 사회주의 집단체제가 해체되고 가족제도, 교육제도, 직업활동, 사회계층 등의 다양한 영역에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지역의 자본주의화는 개인경쟁을 유발하여 개인간과 계층간의 소득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다. 소득의 불평등은 다양한 영역에서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섯째, 오랫동안 폐쇄된 사회에서 살아왔던 북한주민들이 급격한 개방으로 인해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자본주의 문화를 접함으로써 문화적 충격을 겪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주민들은 자아에 대한 가치관, 도덕관 등에 대한 정체성 혼란과 사회적 불안이 가중될 것이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문화의 병폐인 개인이기주의 팽배, 가족주의 해체, 불신풍조, 부도덕성, 타락 등이 만연하여 범죄율을 증가시킬 것이다.

#### 나. 통일 후 남북한 범죄전망<sup>333)</sup>

남북통일이 통일이 되더라도 남북한 모두에게 통일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하게 나타날 것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 후 서독은 막대한 통일비용 지출로 인한 경기 침체와 대량실업, 이주민에 의한 고용과 주택문제 등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경험을 고려해 볼 때 남북한은 통일 이후 새로운 사회변화 속에서 실업율의 급증, 사회통제 및 범죄통제력의 약화, 대량실업, 사회적 무질서,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 등으로 범죄발생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예측을 토대로 교통, 재산, 폭력, 부정부패, 청소년 범죄 등에 대한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교통범죄는 자동차 보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자동차 보유수가 적은 북한지역이 남한지역에 비해 적게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333) 기광도, 『체제통합에 따른 사회변화와 범죄양상』, 227-233 재정리.

통일독일의 경험에서 보았듯이 북한지역 주민들에 의한 차량절도 행위가 급증하게 될 것이다.

둘째, 통일 이후 상대적으로 남한에 비해 경기침체와 고실업이 지속화될 북한 지역에서는 재산형 범죄가 남한에 비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북한지역에서는 남한출신자들을 중심으로 국가소유의 토지와 생산수단의 사유화에 따른 사기가 증가할 것을 예측된다. 북한지역의 사회적 불평등은 개인의 상대적 박탈감 등을 야기하여 사회적 분노로 표출되는 과정에서 방화나 손괴와 같은 범죄가 증가할 것이다.

셋째, 북한의 자본주의화에 따른 아노미(anomie) 현상의 심화는 폭력범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경제난과 고실업이 가중된 지역에서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북한지역의 당원이나 공직을 담당했던 자들은 사회적 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넷째, 통일 후 남북한 지역 모두 부정부패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남북한의 공공근무자들에 의한 부정부패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모든 조직에서 뇌물 수수가 관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정·군의 공직자들에 의한 부정부패는 심각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넷째, 북한지역의 청소년들이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부적응으로 인해 각종 사회일탈행동이나 범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북한 청소년들의 범죄유형은 절도와 강도, 폭력 그리고 성범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범죄유형은 통일 후 사회해체와 가족해체, 빈곤 등이 심화되면 더욱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통일 후 자본주의 체제의 심리적, 정서적 충격으로 체제적응에 실패한 청소년들은 비합리적인 생활을 통해 각종 범죄행각을 벌일 것이다.

여섯째, 통일 후 북한지역에 알코올중독자, 마약, 매춘, 불량자들이 증가할 것이다.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 다량의 술이 싼값에 유입됨으로써,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좌절감이나 긴장감을 해소하고자 술에 의존하게 되어

알코올 중독자들이 급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통일 후 여성의 실업률이 높아지면 전문기술이 없는 젊은 여성들이 비교적 쉽게 돈을 벌수 있는 유흥산업에 종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매매춘이 행위가 급증하게 될 것이다.

여섯째, 통일 이후에는 부랑자들이 급증하게 될 것이다. 현재 북한에선 경제적 어려움으로 떠돌이 생활을 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한 역시 경제침체와 높은 실업률로 인해 노숙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인원들은 통일 이후에도 새로운 체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여 결국 부랑자로 남게 될 수 있다. 북한지역은 자본주의 체제로의 변혁과정에서 경제범죄 등이 남북지역보다도 급증하게 될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 비롯된 경제적인 빈곤과 심리적 불안정, 과거 김일성·김정일 체제하의 왜곡된 법집행 등은 북한지역 주민들의 법에 대한 경시풍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2. 통일대비 경찰통합과 치안대책

### 가. 통일대비 남북한 경찰통합 방안<sup>334)</sup>

전술한 바와 같이 남북한 통일은 남한주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경찰통합 방향 역시 남한경찰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통일국가의 선포와 동시에 남북경찰을 발전적으로 확대 개편하고자 한쪽의 경찰체제로 통합하고 부분적으로 병합하는 형식 즉, 남한의 경찰체제를 중심으로 북한의 인민보안성을 통합하고, 부분적인 조직과 기능은 병합하여 북한경찰의 불필요한 조직과 인적자원을 과감하게 감축하는 방식을 상정하기로 한다.

334) 김윤영, 『북한의 인민보안성(경찰)에 관한 연구』, 128-138쪽 재정리.

## 1) 경찰통합의 원칙과 모델

### 가) 경찰통합의 원칙

경찰통합에 대한 의미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두 개 이상의 경찰단위가 상호 협력과 공조를 통해 공동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나의 경찰단위로 통일되는 과정이나 그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남북한의 경찰통합은 남북경찰을 하나의 단위<sup>335)</sup>로 합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통합은 조직적 결합과정일 뿐만 아니라 남북한 경찰 상호간과 경찰과 국민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극복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왜야하면 경찰통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통합과 연계되어 상호보완적으로 이루어져야하고, 다른 분야의 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과 혼란을 해결·조정하고, 동시에 이들 통합이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sup>336)</sup>

경찰통합은 과정론적 접근방법에 따르면 체제통합<sup>337)</sup>의 하나이고, 기능행태적 접근방법에 의한 분류로는 정치통합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찰통합은 대개 분단국의 국가통합 직전 또는 이후에 이루어지는 통합이다. 내용적으로는 상이한 두 체제의 정치적 통합으로 인한 중앙 및 지방경찰 조직의 변화, 경찰조직의 계층구조에 대한 개편이나 조정, 단일의 경찰공무원제도 구축, 국가통합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임시적 조직설치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경찰통합은 단순히 경찰조직의 개편, 경찰 공무원 제도의 확립, 경찰구역의 조정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경찰통합 및 과정을 통해 새로운 경찰체제의 구축 내지는 경찰개

335) 경찰통합은 나이(Nye)의 통합유형에 따르면 정치통합의 일부로서 하나의 경찰단위가 되기 위해서는 단일정책수립기관이 형성되어야 하며(기관통합), 대내외 정책이 한 가지로 되어야 하고(정책통합), 주요사태 판단에 대한 공통된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하고(태도통합), 나아가서는 구성원 사이에 하나의 공동체에 속하고 있다는 유대의식이 형성되어야 한다(안전공동체). (J.S. Nye, *Peace in Parts : Integration and Conflict in Regional Organization*, Boston : Little Brown, 1971, 24-25; 임용환,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 경찰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04, 102면 재인용)

336) 위의 논문, 102면.

337) 심익섭, 『독일 통일과 행정통합에 관한 연구』(서울: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1994), 15면.

혁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sup>338)</sup>

남북경찰 통합은 다음과 같은 원칙이 선행되어야 한다.<sup>339)</sup> 첫째, 경찰통합은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남북한을 통해 전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통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경찰행정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시민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남북한간의 지역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찰체제가 이루어질 때만이 내적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 분단국가의 경찰통합 사례를 보면 피통합국가에 대한 통합국가의 과도한 행정지원이 현지주민들의 소외감을 초래한 적이 많다. 이는 내적 통합의 실패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사회불안과 정치적 불신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베트남이나 독일의 경우는 통일이후 북베트남이나 서독에 의한 지나친 권력독점이 내적 통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경찰통합 후 당면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정치·사회적 안정을 이룩할 수 있는 경찰체제를 구축해야한다. 체제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통일이후 북한출신들에 의한 지역 안배 인사나 무조건적인 배제보다는 능력위주의 인사와 경찰조직의 지휘체계가 유지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화합적인 조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sup>340)</sup>

넷째, 경찰통합은 통일된 지휘체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경찰통합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과 혼란을 조기 해결·조정하고, 동시에 이들 통합이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나친 지역안배 권력구조로 인하여 합의에 의한 통일이 실패하고 내전을 겪게 된 예멘의 경찰통합의 예는 좋은 교훈

338) 남궁승필, “남북한 통합경찰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135면.

339) 임용환,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 경찰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107-110면.

340) 독일의 경우 공산당원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던 국장급 이상 직원을 포함하여 구동독 전체 공무원 200만명 중 140만명이 해임되었고, 잔류한 60만명도 재교육을 거쳐 재임용 여부를 판정받도록 하였다.(통일원, 『통독 2주년 보고서』, 서울: 통일원, 1992, 3면)

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남북예멘은 ‘일대일’ 통합원칙에 입각하여 남북예멘의 정치엘리트와 관료들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은 권력안배가 통일을 촉진시킨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으나, 결과적으로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통합은 중앙정부의 행정조직을 사실상 이원화시킴으로써 행정의 비대화와 비효율성을 초래하였다.<sup>341)</sup> 또한 정치적 통합은 중앙행정조직에 국한되었을 뿐 부족사회와 지방행정조직은 여전히 통일 이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sup>342)</sup> 특히 통일정부가 군, 경찰 등 물리력을 통일적으로 장악하지 못한 채 이들 조직이 여전히 과거 남북예멘의 지휘체계 하에서 각기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남북예멘간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었다.<sup>343)</sup>

결국 경찰통합은 국가통합 과정에서 정치체제간의 통합 후 하위체계로 시작되어야 한다. 하위체계의 통합이 뒤따르지 않는 정치적 통합은 불안정한 국가통합에 있어서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남북예멘의 경우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정치적 통일이 이루어졌으나 하위체계의 통합노력이 부족하여 결국은 내전을 통한 재통합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나) 남북한 경찰통합 모델

남북한의 통일은 새로운 국가체제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행정발전과 새로운 행정수요를 창출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들은 통일방법이나 통일국가의 모형에 따라 남북한 경찰통합의 방식도 다르게 전개된다. 예상되는 남북한의 통일방식을 고려하여 경찰통합의 모형을 흡수통합,<sup>344)</sup> 연방식 통합(병합),<sup>345)</sup> 흡수+병합의 세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341) 김국신, 『예멘 통합 사례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124면.

342) 유지호, “예멘통일이후 문제점”(『예멘통일의 문제점』,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3면.

343) 김국신, 『예멘 통합 사례연구』, 110면.

344) 남북통일이 정치,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 통일독일과 같이 북한을 흡수하여 통일할 경우, 경찰 통합 역시 인민보안성을 흡수 통합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적·단계적 통일방식과는 배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흡수통합의 경우 그 절차가 단순하고 완전통일에 대한 남한국민의 우월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통합경찰이 이질화된 남북

것이다.

앞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통일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적 토대 위에 시장경제가 기능하는 사회구성체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통일경찰체제의 중심은 한국경찰이 되어야 한다. 남북한 경찰대표는 통일을 대비하여 이상적인 경찰제도의 협의를 위하여 통일경찰 제도를 구상하고 통일과 함께 합의된 제도를 완전히 실행해야 한다.

남북한 경찰통합 모델은 분단국가의 다양한 통합 경험을 참고하여 한국 경찰의 조직체계와 장비 그리고 시설체계를 중심으로 인민보안성을 통합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이 경우 인민보안성의 불필요한 조직과 기능, 예산, 장비를 과감하게 감축해야 한다. 법적통일과 함께 인민보안성을 해체하고 인적자원은 심사 후 재임용·재배치해야 한다. 다시 말해 통일과정에서 통일정부의 통치구조가 구체화되었지만, 병합의 형태나, 한쪽 체제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한 체제로의 흡수의 형태이던지, 한 가지 통일방식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며, 부분적으로 병합 또는 흡수의 방식인 남북통합형(흡수+병합) 모델이 채택되어질 것이다.<sup>346)</sup> 이를 위해 통합경찰은 통일한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와 치안확보에 필요한 정예화된 경찰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

주민의 감정을 만족시키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따를 수 있다. 서독경찰에 의해 흡수 통합된 동서독 경찰통합의 문제점을 고려해 볼 때, 현실적으로 남한에 의한 흡수 경찰통합 방안은 인적, 물적 비용 등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은 전적으로 남한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345) 연방식(병합) 통합방안은 상이한 남북한의 경찰 제도를 인정하고 양자가 교류체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은 체제 이질화에 따른 상호 다양성과 차이점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보장하여 양제도의 고유성을 최대한 허용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러나 연방식 통합은 남북한 주민간의 이동이 없는 안정적인 정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통합이라 할 수 없어 통일의 의미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 특히 이 방식은 예멘의 모자이크 통합방식과 유사한 경우로 예멘은 권력안배와 인력통합 등으로 방만한 조직 확대와 책임소재의 불분명, 행정의 낭비현상 등을 초래했다. 또한 통합된 각 행정부에서 남북예멘 출신 관료들간의 첨예한 경쟁적 세력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남북경찰 통합방식으로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방식은 완전통합을 위한 과도기적 경찰체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346) 임용환,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 경찰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104면.

## 2) 경찰통합 대비 방안

### 가) 특별전담 기구 설치<sup>347)</sup>

통일과정에서의 경찰통합은 절차적, 내용적, 화합적 결합이 가능하도록 경찰통합 특별전담 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남북한은 통일직전 법적인 통합과정에서 남북한의 경찰관계는 정책적·실무적 차원에서 조정체제를 형성해야 하고, 실질적 경찰통합의 과제수행에 대한 협력적 집행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남북한의 경찰고위급(경찰청장-인민보안상)을 공동위원장으로 국장급을 위원으로 하는 가칭 ‘경찰통합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위원회는 정책적·실무적 차원의 조정 체제로 경찰통합의 기본방향 및 절차 등을 협의·제정하며 경찰관련 법규와 제도의 정비방안, 경찰통합에 따른 장단기 대책 등 경찰관련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해야 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남북경찰의 분야별 실무자급으로 구성된 가칭 ‘총괄조정단, 제도개선단, 치안대책단’ 등을 두어 위원회업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총괄조정단은 통합의 기본방향 설정 및 각 ‘단’ 업무의 총괄과 조정 통제업무를 수행하고, 제도개선단은 독일의 베를린 내무성에 경찰통합을 위한 기획단내의 실무기획단 구성을 참고하여 인사 및 교육, 법규, 조직, 시설 및 장비, 기타분야로 나누어 실무대책팀을 둔다. 그리고 치안대책단은 경비, 교통, 수사 등 경찰의 각 기능별 치안대책팀을 두도록 한다. 또한 통일전후 남북경찰인력의 교류 및 지원체제를 협의하기 위해 가칭 ‘인력교류협력단’을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협력적 집행체제로는 남북한 경찰기구에 각기 통일대비 전담기구로 가칭 ‘경찰통합추진단’의 설치를 고려할 수 있다. 남한경찰은 가칭 ‘경찰통합추진단’을 설치하여 통일문제에 관한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의 수립과 조직간에 효율적인 공조 등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경찰통합추진단은 차장급을 단장으로 하고 경찰통합위원회와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서 하부

347) 위의 논문, 111-113면 제정리.

조직 위원회로 가칭 ‘총괄조정팀, 제도개선팀, 치안대책팀’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 후 북한지역 경찰기관의 전문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남한지역에서는 북한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인력을 양성하고,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요원 등을 양성하기 위한 가칭 ‘인력지원팀’을 둔다. 이를 통해 전문인력 지원은 물론 인력계획 전반에 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경찰의 경우도 남한과 동일한 체제로 ‘경찰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한다. 다만 남북간 경찰체제의 이질성이 심각하고 북한에서의 경찰조직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특별시, 직할시 및 도단위 경찰관서에 ‘경찰통합추진기획단’ 또는 ‘경찰개혁지원단’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독일 경찰통합의 경험을 반영하여 남한의 지방경찰청과 자매결연을 맺어 지방청별 지원 및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한다. 남북한 경찰의 자매결연은 주민성향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나) 경찰통합의 법령 정비

남북한 통합조직은 합리적인 조직운동을 위한 법률과 법령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남북한이 서로 상이한 체제에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경찰통합을 위한 법령을 서로 만족한 차원에서 정비하기까지는 큰 난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몇 단계에 걸친 법령정비를 계속했던 독일통일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법령을 정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1) 법령구축의 기본방향

남북통합을 위해서는 가칭 ‘통일합의서체결 → 남북통합법 제정 → 분야별 과도기적 특별조치법 제정 → 통일헌법 제정 → 하위법령 제정과 개정’ 등의 순으로 법령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논의의 전제가 남북합의에 의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기 때문에, 법령 정비시 법정신 및 법질서 구축의 모델은 남한의 법체계가 되어야 한다.

첫째, 남북경찰의 효율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칙하에 경찰관련 법령의 제정과 정비 등 충분한 법적 대응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전에 법적 대비 없는 임기응변식의 남북경찰의 통합은 통일을 전후하여 엄청난 혼란과 후유증 그리고 저항을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원활한 경찰통합을 위해서는 북한경찰의 실정을 고려하여 경합통합의 법적 근거가 되는 관련법을 제정하고 정비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법정비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가칭 ‘통일합의서’에 경찰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 통일합의서에는 경찰통합의 근거가 되는 ‘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성의 임무와 권한은 통합정부 경찰청 소속하에 귀속한다’(가칭)는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지역의 치안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남한의 경찰기능과 체제, 법령이 유효하도록 하여 북한지역에 적용시킬 과도기적 경찰관련법령을 명시하여 가칭 ‘북한경찰청’이나 ‘인민보안성’에서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합의서’에 기초한 가칭 ‘남북통합법’에는 남북한 행정통합의 일환으로 경찰권 통합문제를 명시해야 한다. 남북통합법에 명시해야 할 경찰관련 법은 경찰통합의 규정, 북한지역 내 과도기적 ‘북한경찰청’과 각 도별 ‘지방청’ 그리고 ‘경찰서’(가칭)<sup>348)</sup> 신설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북한 스스로 인민보안성 조직 및 임무를 남한경찰과 유사하게 개편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남북당국의 합의에 따라 남북 통합업무를 시작한 시점부터 완전한 통일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북한지역 치안확보를 위해서 과도기적으로 운용될 한시적인 ‘특별조치법’(가칭)이 제정되어야 한다. 특별조치법에는 통일합의서나 통합법에 기초하여 북한지역 ‘북한경찰청’(가칭) 설치, 인민보안성의 ‘북한경찰청’ 귀속 문제, ‘북한경찰청’의 업무와 권한의 범위, 북한경찰청 조직, 타행정기관과의 관계와 부칙, 동 법의 한시적 성격 등을 규정해야 한다. 인민보안원의 심사분류원

348) 북한지역 역시 남한의 각 지방경찰청과 같은 각 지방경찰청을 두는 방안이다.

칙, 재임용, 신규충원 등에 관한 시행령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2) 통일경찰법 제정과 법령정비

남북경찰통합은 남북한이 완전한 정치사회적 통합 직전까지 남북경찰관련 법규를 검토·분석하여 '통일헌법'(가칭)의 하위법 체계로 '통일경찰법'(가칭)을 제정해야 한다. '통일헌법'에 의하여 경찰조직의 위상이 확정되면 통합정부 내각 내 독립기관으로 둘 것인지 아니면 현재 남한의 경우와 같이 통합행정부 행정자치부 소속의 독립청(경찰청)을 존속시킬 것인지 여부 문제와 통합경찰의 유형이 국가경찰제 또는 자치경찰인지 아니면 국가-자치경찰 혼합제인지 등이 결정되면 이에 근거한 '통일경찰법'을 제정해야 한다.

통일경찰법은 남북통합 직후 상당기간 통합경찰을 운영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한 후 완성형의 '통합경찰법'(가칭)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현재 남한의 경찰관련법은 통일된 법체계를 갖지 못하고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다수의 개별 법령에 의거 경찰작용이 행해지는 결과, 경찰작용의 통일성, 능률성이 결여되고 국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도 다수의 문제점을 들어내고 있기 때문이다.<sup>349)</sup> 따라서 경찰의 조직, 임무와 권한, 작용 등에 문제점을 보완하여 경찰통합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 다) 인민보안성의 기구 재편

분단국의 경찰통합 사례에서와 같이 통일이 임박하게 되면 통일관련 특수치안 수요가 급증함으로 사전에 대비하는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북한 인민보안성의 관할을 통합정부로 이양하고, 법적인 문제 등을 고려한 가운데 인민보안성을 재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49) 홍준형 외, 『경찰통합법에 관한 연구』 (용인: 치안연구소, 1997), 16면.

### (1) 인민보안성의 조직 통합

본격적으로 남북통합이 시작되면 통일에 대한 기대와 불안으로 주민들의 심리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은 새로운 환경(자본주의사회)에 대한 부적응은 치안수요의 증가요인이 될 수 있다. 치안혼란을 수습하고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 강력한 통제력을 갖춘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로 통합해야 할 것이다. 국가경찰제도는 타 행정부처와 원활한 업무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 시 중앙경찰의 일원화된 명령체계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 경찰의 평준화 작업에도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남한의 경찰 조직은 경찰청-지방경찰청-경찰서-지구대·파출소로, 북한 역시 인민보안성-인민보안국-인민보안서-인민보안소로 각각 4단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나 기존의 조직구도를 유지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남북한 경찰조직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게 된다면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남한 경찰조직을 기본으로 인민보안성을 흡수하여 통합하는 기본 원칙하에 부분기능을 병합하는 형태인 ‘남북통합형(흡수+병합) 모델’이 합리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통합경찰조직은 남북경찰조직을 모델로 북한경찰조직을 흡수 통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통합경찰조직은 첫째, 체제가 안정될 때까지는 인민보안성을 가칭 ‘북한경찰청’으로 개칭하고, 시·도(직할시)는 지방경찰청, 구·시·군은 경찰서, 리·동은 지구대로 개칭하여 남한의 경찰청 지휘하에 북한지역에 맞는 치안행정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완전통합 후에는 장관급을 책임자로 하여 조직을 확대 개편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경찰의 장비나 문서 등에 대한 주도면밀한 인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통합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무기를 유출하고, 문서를 파괴하거나 은닉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경찰청에 가칭 ‘문서관리국’을 신설하여 문서를 보존하여 불법청산 자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의 ‘인민경비대’는 국방부, 해양경찰청, 기동대 등으로 이관하여 경비국 소속으로 하던지, 가칭 ‘국경수비대’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넷째, 인민

보안성의 경찰기능 외의 국토관리, 공병, 산림, 주민등록, 교화소, 이산가족 찾기 등 일반 행정기능 업무는 유관부처에 이관하거나 폐지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치안예산의 확보와 장비보강, 급변사태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분야별 특별전담팀(Task Force)을 운영하여 대처해야 할 것이다.<sup>350)</sup>

〈표 5-4〉 특별전담팀의 분야별 업무

분야	관련 업무
인사·교육	· 남북 경찰관 인사와 교류, 북한경찰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등
법규	· 경찰조직법 등 각종 법규정비
조직·제도	· 각종 경찰조직과 제도 정비
예방치안	· 방법, 교통경찰 등
수사경찰	· 북한지역 범죄예방 및 수사경찰
경비경찰	· 인민경비대 등
직할부대	· 기동대, 기마대, 항공대 등
장비·예산	· 각종 장비 및 예산 지원

## (2) 인민보안성 기능 조정

북한의 급변사태나 남북한 합의하에 남한 중심으로 통일이 되면 인민보안성의 기능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맞는 방식으로 남한경찰이나 유관부처로 이관 또는 흡수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인민보안성의 기능 중 주민성분 분류, 주민등록사업관리, 공민증 발급, 주민들의 거주와 이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은 폐지하거나 부분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둘째, 인민보안성의 정치국 및 보위부는 국가정보원으로 이관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350) 김주진, “통일한국에 대비한 경찰력 배치방안”, 114-116면 재정리.

셋째, 공병총국의 지하철 건설공사, 지상과 지하의 특수시설, 국가의 공공건물의 건설공사, 도로총국과 국토총국의 일반도로 및 고속도로 건설과 관리, 보수업무는 건설교통부나 자치단체의 민간기업 등으로 이관해야 한다.

넷째, 교화국의 복역자·교화소 관리업무는 법무부로, 지하철도관리국의 지하철 운영 및 관리업무는 지하철 공사로, 철도보안국의 철도안전업무는 철도청으로, 호안국의 재해사건·사고 예방 및 위생검열, 주민등록국의 신분등록과 인구동태 파악·공민증발급, 반항공처의 민방공업무 등은 행정자치부로 이관해야 한다. 병기국의 무기관리 및 권총공장 등은 국방부로, 상표인쇄처의 화폐인쇄 업무 등은 조폐창으로 이관해야 한다. 산업감찰국의 경제감찰업무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 5-5> 인민보안성 조정 방안

인민보안성의 기능	통합경찰로 조정 방안
· 일반적 치안질서 유지	· 흡수 통합
· 당 정책 및 안전사업 총괄	· 폐지 또는 국정원으로 이관
· 주민감시 및 통제기능	· 폐지 또는 부분적 흡수
· 국가주관 적대행위자 색출	· 폐지 또는 부분적 흡수
· 복역자·교화소 관리	· 법무부 이관
· 국경·해안선 경비	· 국방부 협의로 흡수통합
· 지하철·철도 발전소 등 건설	· 건설관련부처 및 일반사업체 이관
· 재해사건·사고 예방 · 위생검열 · 주민등록국의 신분등록과 인구동태 파악·공민증발급 · 반항공처의 민방공업무	· 행정자치부로 이관
· 무기관리, 권총공장	· 국방부 이관
· 화폐인쇄	· 조폐창 이관
· 산업감찰국	· 폐지 또는 경제부처로 이관

### (3) 인력 재배치

남북통일이 본격화되면 북한지역의 사회적 혼란은 급속히 확산될 수 있다. 불법과 탈법이 난무한 지역의 사회안정 확보에 필요한 치안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치안인력의 충원이나 확보는 단시일에 해결될 수 없고, 최소한 채용-교육-임용이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단기적 속성 과정이라 해도 최소 3-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sup>351)</sup>

<표 5-6> 통일한국의 인구추계와 경찰인력 소요 예상(2010-2015)<sup>352)</sup>

연도별	경찰 1인당 인구(명)	경찰인력 소요(천명)			총인구 전망(천명)		
		전국	남한	북한	전국	남한	북한
2007	450	158.6	108.2	50.4	71,362	48,692	22,670
2010	400	180.3	123.1	57.2	72,127	49,220	22,907
2015	350	208.9	142.3	66.6	73,102	49,803	23,299
	330	221.5	150.9	70.6			

통합경찰의 경우 경찰관 1인당 담당하는 국민의 수가 적어도 300명까지는 유지되어야 한다. 현재의 전·의경도 궁극적으로는 정규경찰인력으로 완전히 대체되어야 한다. 현재 남한경찰은 9만 5천명으로 남한국민을 4천 8백 5십만명<sup>353)</sup>으로 추산하여 계산하면 현재 남한경찰은 1인당 약 510명의 시민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경찰은 선진화·세계화를 기본목표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통일

351) 독일통일시 구 동독 국경수비대의 2/3이상 인력을 국경수비대로 흡수한 것은 국민통합의 의미와 함께 치안인력을 확보해야하는 필요성 때문이었다.

352) 통계청, “세계 ‘장래인구’ 수치”, 통계청(<http://kosis.nso.go.kr>), 2006.10.21 검색.

353) 통계청이 조사한 자료로 2005년 12월말 현재기준이다.(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2006.10.21 검색)

경찰의 1인당 담당인구를 현재 선진국의 수준<sup>354)</sup>으로 향상시킨다고 할 때, 2010년 남북한 인구 7천 2백 1십 2만 7천명을 기준으로 경찰 1인당 담당인구 400명으로 하면 남북한 합쳐 약 18만여명(18만 3천여명)의 경찰인력이 필요하다. 2015년 선진국 수준인 350명을 담당할 경우 21만여명(20만 9천여명), 330명을 수준일 때는 22만여명(22만 1천 5백여명)의 경찰인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2015년 통일된다는 가정 하에 현재 남한경찰을 9만 5천으로 보고 2015년에 필요한 22만여명(330명 기준) 중 12만 5천여명이 부족하여 인민보안요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찰통합 과정에서 북한경찰에 대한 대다수의 인적청산이 요구되나 이 경우 인적자원의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인적자원 계획수립으로 원활한 인력수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경찰통합 과정에서 북한지역 치안인력 확보방안으로는 통일시기를 전후하여 퇴임경찰관의 재활용, 전역한 전·의경 출신 중 경찰관 특채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들은 경찰업무에 대한 기본지식이 축적되어 있어 비상시 치안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장점 있다. 2년 이내의 퇴임 또는 전역한 자원은 약 5만명으로 추정되어, 이들 인력자원 중에서 최소한 1만 5천에서 2만여명을 충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sup>355)</sup> 그리고 일반대학 경찰학과 출신들을 대상으로 예비경찰요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있다. 현재 전국소재 대학의 경찰학과 출신들은 전공을 통해 이론부분을 숙지한 후 졸업하게 됨으로써, 특별 채용 후 단기간 내에 소정의 실무교육만 이수하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자원의 특별채용을 통해 즉각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남북한 통일시 사회안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정비와 경찰인력의 관리 및 충원 그리고 배분이 매우 중요하다. 남한에서 북한지역의 치안권을 인수

354) 선진 5개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의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평균 331명이다.(박기륜, “통일에 따른 한국경찰기구 통합모형에 관한 연구”, 157면)

355) 이철성, “통일대비 남북한 경찰통합방안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0.6, 106면.

하게 되면, 남한경찰은 인민보안성을 통합하여 북한지역의 효율적인 치안을 확보하고자 그 지역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각 시·군(구역)의 인민보안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권력남용과 횡포로 북한주민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 되었던 사실을 고려한다면 모든 인민보안원을 흡수할 수 없고 대폭적인 감축방안은 필수불가결한 작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경우 독일의 경우처럼 북한경찰 요원을 선별적으로 재심사하여 재교육과 훈련을 통해 배치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sup>356)</sup>

특히 인민보안원의 조정은 시·군(구역) 인민보안서장 이상의 고위직은 모두 해고 대상이 되며, 대위 이상의 중견인 보안원들과 일반 보안원들은 철저히 재심사를 통해 재임용토록 해야 한다. 비당원으로 소외된 보안원들은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북한지역 출신의 신규임용은 통합관리에 필요한 전문성과 지역주민에 대한 호감도 등 철저한 심사를 거쳐 임용하도록 한다. 특히 감축되고 전역된 인민보안원의 사회복귀 및 적응 문제는 사회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 경찰 내부적으로는 재임용된 인민보안원 출신과 북한지역 출신 채용자의 적응문제가 또 다른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안원 출신자에 대한 계급과 보수문제, 연금 산정문제, 기타 사회복지적 대우문제, 전역 인민보안원에 대한 연금지급문제 등도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sup>357)</sup>

#### 나. 통일대비 경찰의 치안대책<sup>358)</sup>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은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 등으로 불거진 1차 핵 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거론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 부분적 개

356) 서독은 인수된 동독경찰 67,356명에 대한 심사를 통해 85.6%인 54,944명을 재임용하였다. 베를린경찰청의 경우 동독인민경찰에 소속된 11,797명 중 일반경찰업무에 종사할 9,600명을 인수하였다. 특히 독일 통계청의 보고서에 의하면 통일직후인 1991년 독일에는 약 680만명의 공직자가 있었는데 1995년말 552만명의 공직자가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4년 동안 약 127만명의 공직자가 감축되었다.

357) 남궁 승필, “남북한 통합경찰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189면.

358) 김윤영, 『북한의 인민보안성(경찰)에 관한 연구』, 113-122 제정리.

방과<sup>359)</sup> 우리정부의 대북포용정책으로 그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2006년 7월 5일 미사일발사에 이어 10월 9일 전격적인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압박과 경제제재 등 강도 높은 대북 압박으로 급변사태 가능성이 또 다시 다시 높아지고 있다. 핵실험으로 북한의 내부 결속력은 강화될 수 있겠지만 주변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데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360)</sup> 다시 말해 북한 핵실험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장기화되어 경제난이 악화될 경우 체제 정통성은 물론 주민 통제력이 약화되어 북한체제의 위기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

북한이 급변사태에 직면하게 되면 남북관계의 질서가 붕괴되어 북한은 물론 남한에도 과도기적으로 상당한 치안상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예상되는 치안상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대규모 군중시위 발생과 식량난 등 위기국면을 타개하기 위하여 대남 무력도발을 강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량 탈북난민들의 국내 유입은 남한 내 치안수요를 급증시키게 될 것이다. 셋째, 남한에서는 통일에 대한 기대감과 전쟁에 대한 불안심리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치안질서가 문란해 질 것이다. 즉, 무분별한 대북접촉 추진과 감상적 통일논의가 가열되는 가운데 전쟁에 대한 공포 심리로 생필품사재기, 예금인출 및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할 것이다. 넷째, 극소수 안보위해세력들은 약화된 입지를 돌파하기 위해서

359)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불거진 1차 핵 위기에 대해 김정일 체제는 '수령 영도권 확립', '새로운 통치 이념과 방식', '개혁과 개방', '대량파괴 무기 개발', '전방위 외교정책 추진' 등 '우리식 위기관리'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불식시키고 체제를 지탱하여 왔다.

360) 특히 쌀 등 대북지원이 중단될 경우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북한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연간 식량소요량은 650만톤이지만 자체 생산량은 450만톤에 불과해 매년 200만톤 가량의 식량이 부족하다. 20-30만톤의 식량을 지원해 오던 세계식량계획(WFP)은 올해 쌀 지원을 15만톤으로 줄였으며 매년 50만톤의 쌀을 지원했던 우리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쌀 지원을 끊었다. 이 때문에 2005년 7월 수해로 농업에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 지원중단이 장기화되면 1990년대 중반의 대량 아사자 발생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동아일보>, 2006.10.13, 8면)

이관사관식 투쟁으로 극단적인 사회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이다.<sup>361)</sup>

한 국가에 치안혼란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경찰이다. 우리 경찰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북한체제가 갑작스러운 급변사태를 맞이하게 될 때를 대비하여 예상되는 북한 주민들의 대량 난민사태와 그들의 국내입국문제에 따른 치안확보 문제나 그들이 대규모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다른 국가(중국, 몽고, 일본, 러시아, 동남아 등)와의 치안확보 협조, 북한체제가 붕괴 된 후 북한지역의 치안접수 등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치안활동을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포괄적인 치안대책을 논의한 연구서는 미비한 실정에 놓여 있다.<sup>362)</sup>

결국 북한체제의 내적 모순과 북 핵보유로 인한 국제적인 압박과 고립으로 인한 극심한 식량난 등 남북관계가 급속히 악화된 상태에서 북한체제가 급변사태로 붕괴된다면 심각한 치안혼란 상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경찰기관의 인적교류나 전문가들의 상호교차방문, 북한경찰에 대한 수사 장비와 수사 기법 지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지구 등에 대한 남북한경찰의 공동치안 대책 시범실시, 남북수사공조를 위한 남북경찰기관의 합의서 채택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1) 남한지역의 치안대책

북한의 급변사태, 통일 과도기, 통일 전후 예상되는 치안혼란에 대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치안위기관리팀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한 와해나

361) 삼성경제연구소, 『남북한 통일 시나리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6), 33-35면; 박기륜, “통일에 따른 한국경찰기구 통합모형에 관한 연구”, 122-123면.

362) 김윤영, 『김정일 체제의 위기와 위기관리』, 『북한 인민보안성(경찰)에 관한 연구』 등은 북한의 급변사태와 관련하여 경찰기관에서 작성된 초기의 연구서라 할 수 있다.

붕괴 등에 대비하여 경찰청에 가칭 ‘치안위기관리팀’을 설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치안위기관리팀에는 경비, 방법, 교통, 형사, 보안, 외사 등 분야별 대책반을 두어 총체적인 치안대책과 모든 경찰활동을 통제하고 지원·조정해야 한다. 실무대책반의 구체적인 임무를 <표 5-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북한 급변 사태 양상을 고려하여 실무대책팀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5-7> 실무대책반 임무<sup>363)</sup>

구분	임무
경비대책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시설 경비강화</li> <li>· 공항과 항만, 해상경계대세 강화</li> <li>· 북한이탈주민 난민수용소 및 특별경계지역 선정 경비</li> <li>· 급진 안보위해세력 집단시위 진압</li> <li>· 도보 및 기동순찰 수행</li> <li>· 요인인물 및 거주지 경호</li> <li>· 주요 관공서나 국가보안 목표에 대한 시설 경비강화</li> </ul>
방법대책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수용 화약 안전관리</li> <li>· 불법무기, 민수용 총포 관리</li> <li>· 112 기동순찰 등 외근활동 강화</li> </ul>
교통대책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안전 시설 적재적소 설치</li> <li>· 탈북난민 호송 및 교통소통 관리</li> <li>· 교통상황 유지와 계몽</li> </ul>
형사·수사 대책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북난민자들의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li> <li>· 경제질서 문란사범, 탈북난민자 대상 범죄행위 등에 대한 수사활동</li> </ul>
정보대책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인적위해분자 사전관리</li> <li>· 예고 정보활동강화로 불순책동 봉쇄</li> <li>· 치안취약 요소에 대한 정보 수집·분석</li> </ul>
보안대책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기관과 합동 협신조를 편성·운영</li> <li>· 대북정보 수집활동 강화와 관련부서와 공유</li> <li>· 이념계도 교육 및 보안활동 강화</li> </ul>
외사대책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공항 출입국 관리기능 강화</li> <li>· 해외 첩보수집 활동의 확대에 정보기능과 공조하여 긴밀한 대처</li> <li>· 외국인 신변보호</li> <li>· 국제공조 수사체제 강화</li> </ul>

363) 박기륜, “통일에 따른 한국경찰기구 통합모형에 관한 연구”, 124-126면 재정리.

둘째, 북한의 상황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북한의 무력도발, 탈북난민들의 대량 유입, 군사분계선이나 해외를 통해 남북한 주민의 자유왕래 급증 등은 국내의 치안질서를 문란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은 사태진전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비상근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비상근무태세에 돌입하면 예상되는 치안수요를 파악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적절한 치안인력을 즉각 투입하여 치안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사회의 혼란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위기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대남도발이 표면화되면 비상사태로 전환하고 작전태세를 유지하여 주요관공서 및 국가보안 목표와 시설에 대한 경비요원배치 및 경계활동 강화, 공항과 항만 그리고 해상 경계활동 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북한주민들의 대규모 탈북으로 인한 난민사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체제의 통제력이 약화되어 대규모의 탈북난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도 북한과 중국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식량난 해결과 질 높은 삶을 찾아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표 5-8> 북한이탈주민 국내입국 현황<sup>364)</sup>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국내입국자 수(명)	312	583	1,139	1,281	1,894	1,383	2,019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 주민이 탈북 할 수 있는 경로는 중국이나 러시아 국경지역을 넘는 경우, 서해와 동해 해상을 통한 경우, 휴전선을 넘는 경우 등 세 가지로 상정해 볼 수 있다.<sup>365)</sup>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탈북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붕괴로 이어질 경우에는 서해나 동해

364) 통일부 통계자료(<http://www.unikorea.go.kr>).

365) 남성욱은 북한 급변사태 징후단계 이후부터 2개월간 탈북자들이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남성욱, “한반도 급변사태와 우리의 효율적인 대응방안”, 50면)

를 통한 탈북이나 휴전선을 넘는 탈북을 시도할 것이다. 대량 탈북자들의 국내 유입 사태가 이어질 경우 우리사회의 혼란이 극심해질 수 있다.<sup>366)</sup> 정부는 난민 수용소 시설을 마련하고 경찰은 탈북자들을 수용하여 관리해야 한다.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탈북난민에 대한 대비책은 동독의 통일사례에서 제기된 문제와 6.25전쟁 당시의 거제도 포로수용소 사례가 그 대책을 시사해주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사례를 충분히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대비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다.<sup>367)</sup>

- ① 탈북난민에 대한 사전 첩보나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
- ② 탈북난민에 대한 국제법상 또는 국내법상 지위를 규정해야 한다.
- ③ 탈북난민의 규모를 정확히 추정 분석하여 탈북난민 수용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 ④ 탈북난민 발견과 신병처리는 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주요통과 예상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해상 및 해안 경계활동을 강화하여 난민발견에 주력해야 한다. 이들 주요 이동로에 대한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난민 및 귀순자는 관계기관과의 합신조를 편성하여 탈북동기 과정, 남한내 연고자 등을 조사하여 북한 공작원의 위장잠입 등 불순책동을 사전에 봉쇄해야 한다.
- ⑤ 탈북난민에 대한 개별적인 심문이 끝난 다음에는 난민수용소에 수용해야 한다. 경찰은 탈북난민 호송과 수용소 경비를 담당해야 한다. 수용소 출입문에서 위해 물품반입을 차단하고 수용소 주변이나 접근로에 대한 보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경계활동을 강화하여 불순분자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특히 수용된 탈북자들은 남한사회로 잠입하기 위한 저항과 난민 수용소 시설내의 폭동사태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난민 수용시설 내에 경찰을 배치하여 수용자의 신변보호와 질서유지는 물론 불순분자 색출에 노력해야 한다.

366) 독일의 경우 베를린 장벽 붕괴를 전후한 2개월 동안 약 18만명의 동독주민이 서독으로 탈출한 바 있다.

367) 남궁 승필, “남북한 통합경찰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204-205면.

⑥ 탈북난민 수용시설에 대한 치안확보에 필요한 예산, 장비, 인력 등에 대한 치안대책을 마련하여 유사시 담당부처와의 원활한 업무 협조 하에 치안인력을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외도 탈북난민 수용소나 종교단체를 비롯한 특정단체에서 남한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이 완료된 후에 경찰은 이들이 남한사회에 조기정착 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일탈행위와 범죄예방 교육, 신변보호 등을 지원하는 전담반을 편성·운영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한다. 부족한 경찰인력은 경찰서간 자체 인력 조정이나 정부차원에서 지원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왕래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정권이 무력화되면 휴전선을 통해 대규모 월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제3국이나 휴전선을 통해 북한주민이 대규모적으로 국내에 유입되면 사회적 혼란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①남북한 방문희망자 규모를 정확히 판단하여 육상과 해상, 공항 등에 출입통제소를 설치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②남북한 주민의 방문에 따른 이산가족 재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휴전선 지역 일대에 ‘이산가족 찾기 센터’를 개설·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③남북자유왕래는 물론 탈북 난민수용소와 관련하여 과생되는 교통관리 문제를 전담하는 가칭 ‘교통지원팀’을 개설·운영하여 호송, 수용소주변 교통관리, 북한주민 방한단에 대한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다. 방한 북한주민이 관련되는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sup>368)</sup>

다섯째, 민생범죄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는 전쟁위기, 대규모 탈북난민이나 남북주민들의 자유왕래에 따른 경제범죄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불안감이 혼란으로 야기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통일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전쟁에 대한 불안감은 주요 생필품 사재기나 폭리취득, 매전 매석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368) 박기륜, “통일에 따른 한국경찰기구 통합모형에 관한 연구”, 129-130면.

경찰은 매전매석 행위, 경제질서 문란사범 등에 대한 범죄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사회질서 유지에 대한 치안대책을 수립하고, 상황 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조치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특히 탈북난민을 상대로 하는 범죄와 현실에 적응치 못하는 탈북난민에 의한 각종 범죄예방에도 노력해야 한다. 경찰의 완벽한 치안활동 태세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해야 한다. 그리고 집단민원과 시위 등 다중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민심동향과 범죄전과자 동향을 파악하고 해외범죄단체나 범법자의 국내 잠입 등을 차단해야 한다.

여섯째, 통일과도기와 통일 후 사회안정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급변사태나 통일이 되면 민족통일전선이나 연방제통일 주장 세력들은 위기의식이 고조되어 이관사관식의 극단적인 사회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한 사회안정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sup>369)</sup> ①북한의 급변사태에 위기의식을 느낀 친북 추종세력들은 극단적인 반체제 투쟁으로 사회혼란을 조성할 수 있다. 특히 해외 친북반한세력들은 사회혼란을 틈타 국내에 잠입하여 국내 반체제세력과 연계할 수 있다. 경찰은 이들 세력의 결집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경찰청 보안국은 가칭 ‘보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안보위해 세력들의 전략전술에 신속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지방단위로는 ‘지방보안관리위원회’를 실정에 맞게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북한의 급변사태 이후 통일 과도기에는 북한내 기득권층이나 극렬 공산주의자들이 산업현장에서 불법파업과 태업책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남한의 공단지역에 대한 특별정보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③통일단계에서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같은 주변국가의 치안협력의 필요성이 급증될 것이다. 따라서 주변국과의 범인인도, 공조수사, 정보교환, 경찰관 교류 등 치안공조 협력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주한외국공관, 주한 외국정보기관, 상주 외신기관, 해외주재관, 인터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④탈북난민이나 귀순자들을 통해 대북첩보 활동을 전개하여 탈북난민을 위장한 간첩이나 불순분자를

369) 남궁 승필, “남북한 통합경찰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206-208면 참조.

색출하고 탈북난민들을 남한사회에 조기 정착시킬 수 있도록 가칭 '탈북난민전담팀'을 편성하여 운영해야 한다.

## 2) 북한지역 치안대책

북한이 국가붕괴로 이어지거나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남한경찰은 북한지역의 치안을 담당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다양한 치안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국군이 북한 지역을 접수한 후 무장세력의 활동이 제거되면 경찰인력이 투입되어 치안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첫째, 북한의 경찰(인민보안성)조직을 재정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 지역의 치안활동은 남북한의 두 개의 경찰체제를 잠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과 새로운 경찰을 창설하는 방안 그리고 북한의 경찰을 남한경찰에 흡수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고려방안 중에서 어느 한쪽의 경찰을 통합하는 형식을 취한 기본틀 속에서, 남한의 경찰체제를 중심으로 인민보안성을 통합하고 북한경찰의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경찰 조직의 대폭적인 감축으로 전역된 보안원들의 사회복귀 및 적응문제는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경찰 내부에서는 부분적으로 흡수된 보안원과 북한지역 출신자로 채용된 자들의 적응문제가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보안원 출신자에 대한 계급, 임금 및 연금산정문제, 기타 사회복지적 대우문제, 전역 인민보안원에 대한 연금지급문제 등도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은 북한지역의 치안대책에 필요한 다양한 갈등 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통일독일 경찰의 치안대책은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북한의 경찰인력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

지역과 주민들의 의식성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보안원들을 통해 치안을 담당하게 하면 조기에 사회를 안정화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북한 출신 경찰은 오랫동안 집단주의, 조직사회, 계획사회의 사회구조 아래서 생활하여 왔기 때문에 개방적인 기타 사회부분보다 경찰에의 적응이 좀 더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통일 후 관료조직 내부에서의 동서독 경찰통합이 타 분야보다 모범적으로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sup>370)</sup>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보안원들에 대한 과거 권위와 탄압에 대한 부정 인식이 팽배한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기에 보안원들에 대한 재교육은 필수적이다. 재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시설, 자원 등에 대한 대응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보안원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통해 갈등원인을 미연에 해소하거나 그들의 적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서 있다. 여기서 보안원의 의식을 전환시켜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경찰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동화교육’은 재교육 프로그램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상황이다.

셋째, 통일과도기나 통일 후 북한지역에 예상되는 범죄유형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현재 식량 및 생필품의 부족 등 경제적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경제범죄가 급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절도와 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sup>371)</sup> 이러한 생계형 범죄는 통일 이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경제난과 자본주의화에 따른 아노미현상은 개인에게 좌절과 긴장을 야기하고 더 나아가 경제난은 지역적으로 폭동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최근 북한 청소년들이 절도와 강도, 폭력 그리고 성범죄 등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통합될 경우 가장 심리적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청소년들이 체제전환의 부적응으로 각종 일탈행동이나 범죄행위의 가능성은 높아 질 것이다.<sup>372)</sup>

370) 위의 논문, 192면.

371) 이진중·이경렬, 『남북한 사법운용 및 범죄처리에 관한 비교연구』(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115면.

넷째, 북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치안활동에 대한 선무활동 대책이 요구된다.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주민들이 치안부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치안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방송이나 신문 등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불안감을 해소시켜야 한다. 주민들은 경찰의 치안능력을 믿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사회가 안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

372) 기광도, 『체제통합에 따른 사회변화와 범죄양상』, 17-19면.

## 제6장 결 론

### 제1절 요약

지금까지 북한사회에 나타난 범죄발생 실태와 대책을 살펴 본 후, 통일대비 범죄 전망과 치안대책 등을 제언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은 범죄의 개념을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침해하고 사회주의 법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정치적 범죄(반국가, 반민족범죄)와 일반범죄(경제범죄, 문화범죄, 행정질서범죄, 공동생활침해범죄, 생명·재산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위법행위 처리 기관으로는 인민보안성(경찰), 국가안전보위부,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 검찰소, 재판소, 변호사 등이 있고, 위법행위에 대해 수사, 예심, 기소, 재판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범죄자 처리 유사법제로는 ‘사회안전단속법’,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동지심판회’ 등이 있다.

둘째, 북한은 형벌을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반대하고 저해하며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유린하고 침해하는 반혁명범죄들과 일반범죄자들에게 가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폭력적인 진압수단이며 제재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형벌은 기본형(사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노동단련형)과 부가형(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치범죄의 처벌은 법제제재 원칙이 적용되나, 일반범죄는 사회적 교양 위주의 법적 제재를 배합하는 원칙을 따르고 있다.

셋째, 북한은 ‘계급으로부터 해방’된 범죄 없는 지상낙원의 사회주의사회로 선전하고 있으나, 북한에 근무했던 외교관·탈북자·방북자의 증언, 북한 내부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각종 범죄가 빈발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에 들어 식량난이 극심해지자 절도범죄, 사회범죄(성범죄, 청소년범죄, 마약범죄, 미사회주의범죄 등), 권력형범죄(뇌물수수, 간통, 몰자유용, 사례금 착복 등), 정

치범죄(반체제범죄, 반김정일 비난 등) 등이 만연하고 있었다. 북한은 범죄발생 원인을 부르주아 의식의 잔재와 자본주의 사회로부터 오는 물질주의나 상업주의의 나쁜 영향력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체제외적인 요인으로 돌리고 있다. 그리고 북한당국은 위조지폐·가짜담배·마약 등을 생산하여 국제사회에 유통시켜 외화를 획득하고, 테러범죄를 자행하기도 했다. 북한은 국제범죄행위에 대해 ‘사회주의 혁명위업’ 달성을 위한 정당한 공작활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넷째, 북한은 내부적으로 다양화되는 반당·반혁명적 요소의 발호(반국가범죄), 간부계층의 부정부패 만연(권력형범죄),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물질만능풍조(경제범죄 또는 생계형범죄), 청소년 계층의 사상적 이완(청소년 범죄) 등을 ‘내부의 병폐현상’으로 규정하여 문제화하는 한편, 범죄 예방과 단속을 위해 경찰의 포고령(양곡 절도·상행위 금지 포고령 1997.8.5, 전력선·통신선·마약 범죄와 관련한 포고령 2006.3.1)과 김정일의 아편 재배 및 마약 밀매 금지지시(2002), 밀수행위 단속(밀수행위를 뿌리뽑기 위한 투쟁을 강하게 벌리자, 조선노동당 함경북도위원회 2003.11), 자본주의 문화차단(이색적인 녹록화물과 출판선전물들을 리용 류포시키는 현상과 강하게 투쟁하자, 조선노동당, 2003.11) 등 각종 지시를 하달하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은 청소년들 사이에 자본의 문화가 확산되자, 이를 ‘얼빠진 사고방식’, ‘씩어빠진 부르조아적 유행’ 등으로 비판하는 한편, 김정일은 ‘자본주의적 풍조’를 경계하여 ‘군대문화 따라 배우기운동’, ‘모기장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자유화바람’을 차단하여 사상이탈을 방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범죄단속을 목적으로 규찰대(인민순찰대), 현지공개재판, ‘보안위원회’, ‘교방검열(임의의 2개 지역을 선정하여 서로 상대 지역을 검열)’, 수사 그루빠(소조) 등을 비롯하여 비사회주의그루빠, 6·4그루빠, 유동그루빠, 마약단소그루빠 등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종 사회단체(직총, 농근맹, 청년동맹, 여맹, 소년단 등)와 범죄단속 기구(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국가검열성, 인민반 등) 등을 운용하고 있다. 경찰기관은 범죄자 수용시설로 대기실, 구류장, 집결소, 교화소, 노동교양소, 강제노동집결소 등을 운영하고, 사회일탈현장과 범

죄발생을 규제하기 위한 정치사업, 주민요해 사업, 주민성분조사사업, 교화사업, 주소안내 등의 특수 임무를 통해 김정일의 지배체제를 지탱하는 한 축이 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위부는 정치범수용소인 관리소를 담당하고 있다.

북한의 범죄 예방과 단속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식’으로 경제난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외자도입, 원조 의존, 남북교류·협력 등 주변국과의 경제교류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 사상이 유입되어 새로운 사회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내부에 잠재했던 반체제세력이 발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업율의 증가, 사회통제 약화,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양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독일의 체제통합과정에서 치안환경의 변화를 경험했듯이, 남북한 체제통합 역시 치안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북한의 급변사태나 남북한 합의에 의한 남한주도의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통일 후 실업율의 급증, 사회통제 및 범죄통제력의 약화, 대량실업, 사회적 무질서,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 등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날 것이다. 특히 통일 후 북한 지역은 다원적 정치집단, 하위체계의 자율성과 분화 등의 자유화현상, 사유재산제와 자유경제체제의 도입 등의 자본주의화, 사회주의 법체계 폐지와 남한의 법체계의 수용과 적용 문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경기침체, 대량실업, 인구이동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는 개인의 생활조건이나 양식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사회병리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국가경찰은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남한경찰을 중심으로 북한경찰을 통합하고, 부분적인 조직과 기능을 병합하는 경찰통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남북한 경찰통합에 대비한 특별전담기구 설치, 경찰통합의 법령 정비, 북한경찰의 기구재편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통일국가의 치안을 확보하기 위한 치안위기관리팀 운영, 북한지역의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태세, 대규모 탈북으로 인한 난민사태, 남북한 주민들의 자유왕래에 대한 대비책, 민생범죄예방 대책, 통일과

도기와 통일 후 사회안정화 대비책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지역의 치안확보를 위해서 북한경찰 조직의 재정비와 인력의 재활용 방안, 통일과도기나 통일 후 북한지역에 예상되는 범죄유형에 대한 대응책, 북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무활동 등에 대한 대응책을 검토하는 등의 대비태세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제2절 정책적 제언

최근의 한반도 정세는 남북정상회담과 북한의 핵 위기 등 탈냉전적 화해와 냉전적 대결 기류가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갈등이 상존해 있음에도 분단국가의 예에서 보듯이 남북한의 통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운 시일 내에 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경찰은 남북교류 활성화, 대규모 민간인 왕래, 급변사태 발생에 따른 급작스러운 통일실현, 통일시대 경찰통합과 범죄양상에 대비한 인력과 장비, 예산 등 치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기 위한 치안대책을 수립해야하는 시점에 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축적된 통일대비 치안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경찰관련 전문가나 경찰관 등에 의해서 기능별 치안시스템 개발에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통일을 대비한 치안정책에 이론적 틀을 제공하고, 통일에 대비한 치안수요에 대한 예측과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으로 통일과도기와 통일 후 사회안정 확보와 유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경찰은 통일 전후 예상되는 치안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sup>373)</sup>

첫째, 북한사회의 범죄 실상과 범죄대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자료들이 축적될 수 있도록 증진해야 할 것이다.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특수성상 범죄통계 자

373) 김윤영, 『북한의 인민보안성(경찰)에 관한 연구』, 140-141면 재정리.

료나 그와 관련한 정보나 문헌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험 등의 관찰법이 사용될 수 없는 지역이다. 따라서 북한의 범죄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나, 전직 경찰출신 탈북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범죄 실태와 대책에 대한 세심한 분석을 하기에는 태생적 한계에 놓여 있다. 경찰청에서는 북한지역 근무 경험이 있는 주변국 외교관이나 경찰 출신의 탈북자와 심층면접을 통해 범죄 실태에 대한 첩보나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이들을 경찰관으로 채용하여 남한 경찰조직의 적응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범죄심리·조직생활 적응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자료로 생산해야 할 것이다. 기초연구 자료들을 관련 전문가나 연구자들에게 제공하여 진보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는 남북한 경찰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선형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들 수 있다.

둘째,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경찰은 동질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남북분단 이후 경찰은 서로 다른 이념체제 하에서 극단적으로 이질화되어 왔기 때문에 ‘동화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남북한 경찰기관(경찰청과 인민보안성)은 통일대비 경찰업무에 관한 상호교류와 협약을 체결하고 상설협의 기구 등을 설치하여 경찰통합에 관한 공동연구를 병행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남북한 경찰의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통해 북한경찰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각종자료나 현황을 입수해야 하고, 낙후된 북한의 치안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남한경찰은 선진화된 범죄신고 시스템과 교통관리 시스템, 과학수사기법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경찰관이나 전문가들의 상호교차방문이나 파견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경찰은 통일과도기 범죄양상에 따른 치안수요를 예측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주민들간의 사상이나 이념적 갈등과 사회변화에 따른 경제범죄의 급증,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가치관 혼란 등으로 치안혼란이나 치안공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치안수요가 요구될 수 있다. 통일과정에서 치안수요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치적 통일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느냐 달려 있다. 남북경찰의 교류·협력과정에서 남북경찰간의 이질성과 갈등을 단기간 내에 완전히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갈등은 쉽게 조성될 수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중요한 것은 남북한 통합사회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제반분야에서 갈등이 구조화되지 않도록 슬기로운 해결방법을 찾는데 경찰이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통일과도기 통일경찰을 위한 지원단을 설치하여 인적·물적(장비) 자원과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통일국가의 치안확보를 위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화되어야 한다.

넷째, 통일 이후 북한주민들의 대량 탈북난민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동서독이 통일된 힘은 동독주민의 탈출 러시에 있었다. 북한주민의 대량탈북 행위는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남한 내 치안환경을 상당부분 변화시키는 과도기 현상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에서의 성공적인 정착 모습은 남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와 입장뿐만 아니라, 북한주민들이 통일에 대한 태도와 결심을 결정하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경찰(보안경찰)이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임무 중 하나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있다. 보안경찰은 통일을 염원하고 준비하는 많은 시민단체들과 종교단체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수용시설과 지원대책 등 당사자국과의 협력 체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통일과정과 통일 후 예상되는 범죄유형에 대한 치안수요 예측의 성공여부는 통일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남북한이 어떠한 형태의 통합이 되더라도 신속하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범죄대책을 강구하여 경찰인력을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을 때만이 통일한국은 사회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통

일 전후 사회안정 확보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는 국가적인 지원 하에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아쉬웠던 것은 그동안의 북한범죄에 대한 연구가 북한이탈주민들의 진술을 토대로 한 개괄적일 뿐만 아니라, 범죄 실태와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북한 범죄전문가나 경찰관의 교류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여 북한경찰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최근의 치안정세는 세계화와 개방화로 국제간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경을 초월하는 국제적 범죄현상들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남북한의 경찰교류·협력만이 통일 전후 예상되는 치안환경과 국제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고, 국제화, 정보화, 과학화로 거듭나 선진경찰의 기틀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1. 북한 문헌

- 김근식, 『형법학 (1)』,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86.
- \_\_\_\_\_, 『형법학 2』,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70년 11월 2일.
- \_\_\_\_\_, “국가재산을 애호절약하며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9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9년 6월 30일.
- \_\_\_\_\_, 『김일성저작집 2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김정일, “당사업을 강화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1월 1일.
- \_\_\_\_\_, “도, 시, 군 당위원회들앞에 나서는 과업”(도당책임비서협의회에서 한 연설), 1981년 4월 3일.
- \_\_\_\_\_, “사법검찰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전국사법검찰일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1982년 11월 21일.
- \_\_\_\_\_, “사회안전일군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사회 안전성 정치국 일군들과 한 담화), 1970년 3월 29일.
- \_\_\_\_\_, “음악 창작과 보급 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음악예술부문 창작가, 예술인들과 한 담화), 1990년 12월 27일.
- \_\_\_\_\_, 『김정일선집(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 \_\_\_\_\_, 『김정일선집(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_\_\_\_\_, 『김정일선집(1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_\_\_\_\_, 『김정일 선집 (1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돌베개 편집부, 『북한 ‘조선로동당’대회 주요 문헌집』, 서울: 돌베개, 1988.
- 리재도, 『형사소송법학』,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7.
- 사회과학출판사 어문편집부, 『조선문화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원 어문학연구소, 1973.

-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검찰감시법”, 1998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보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대중용)』, 평양: 법률출판사, 2004.8.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대중용) 증보판』 2004.7-2005.12, 법률출판사, 2006.3.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안전단속법”, 1999년 3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40호로 수정보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방주권기관법”, 1999년 1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2호로 수정보충.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형법”, 주체93(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2호로 수정보충.
- 조선외무성 대변인, “우리는 위조화폐의 피해자로 되고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 2006.2.28.
- “전국분주소장회의 및 국가표창수여식 진행”, <로동신문>, 1999.10.2.
- 최길상, “우리 식대로 창작하는것은 주체문학의 위력을 강화하는 근본담보”, 『조선문학』 1998.1호,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8.
- “관결판정집행법”, 1998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정령 제160호로 수정보충.
- 학습제강 “자본주의사상문화적침투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리데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2.
- “행정법적제재규정”,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정령 제4252호, 1995.3.30.
- 허종호,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 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5.
- 홍극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 2. 국내문헌

### 1) 단행본

- 권영성, 『헌법학원리』, 서울: 법문사, 1997.

- 기광도, 『체제통합에 따른 사회변화와 범죄양상』,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 김국신, 『예멘 통합 사례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김문조, 『북한 사회론』, 서울: 나남, 1994.
- 김성수, 『통일독일의 혁신체제 전환과 자원배분』, 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1.
- 김수암,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김용기, 『북한실상종합』, 서울: 내외통신사, 1996.
- 김윤영, 『김정일 체제의 위기와 위기관리』, 용인: 치안정책연구소, 2005.
- \_\_\_\_\_, 『북한의 인민보안성(경찰)에 관한 연구』, 용인: 치안정책연구소, 2006.
- 김현성, 『통일과도기 치안수요예측과 경찰대응방안 연구』, 용인: 치안연구소, 1998.
- 김현 외, 『2006 북한인권백서』,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2006.
- 내외통신사, 『북한실상 종합자료집』, 서울: 내외통신사, 1996.
- 내외통신사, 『북한용어 400선집』, 서울: 내외통신사, 1998.
- 박형중, 『불량국가 대응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법무부, 『개정 북한형사법제 해설』, 서울: 법무부, 2005.
- \_\_\_\_\_,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I)』, 서울: 법무부, 1993.
- 법무부 법무실, 『북한법연구(VII)』 법무자료 제128집, 서울: 법무부, 1990.
- 법제처, 『북한법제개요』, 서울: 법제처 1991.
- 법원행정처, 『북한사법제도 개관』, 서울: 법원행정처, 1996.
- 『북한동향』, 국가정보원, 2005.12.2-2006.1.13.
- 북한법연구회, 『북한법연구』, 서울: 북한법연구회, 2003.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서울: 북한연구소, 1994.
- 『북한조사연구』 제6권 제2호, 서울: 통일정책연구소, 2002.12.
- 삼성경제연구소, 『남북한 통일 시나리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6.
-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서울: 나남, 1995.
- \_\_\_\_\_, 『북한인권백서 2003』,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세종연구소 편, 『북한법 체계와 특색』, 성남: 세종연구소, 1994.
- 심익섭, 『독일 통일과 행정통합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1994.

- 연합통신 특별취재팀, 『(현장대르포) 독일통일의 명암: 통독 3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서울: 연합통신, 1993.
- 육군대학, 『적전술(보충교재)』, 서울: 육군대학, 2002.1.
- 이건중·이경렬, 『남북한 사법운용 및 범죄처리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 이경훈·이용숙, 『통일 그날 이후』, 서울: 길벗, 1994.
- 이관희, 『독일통일과 독일 경찰조직의 정비』, 용인: 치안연구소, 1996.
- 이교덕, 『김정일선집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1.
- 이금순 외, 『북한인권백서 2004』,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이우영, 『전환기의 북한사회 통제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1999.
- 이운주 『경찰학개론』, 용인: 경찰대학, 1998.
- 이향우, 『경찰행정학』, 서울: 법문사, 2002.
- 이향우·조병인·최응렬, 『경찰학개론』,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 이윤희 외, 『2007년 경찰학술세미나』, 서울: 경찰청, 2007.4.10.
- 이재현, 『북한의 치안행정실태와 강약점 분석』, 서울: 국토통일원, 1986.
- 전영신, 『북한의 문학예술 운영체계와 문예이론』, 서울: 도서출판 역락, 2002.
-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서울: 통일연구원, 2003.
- 정열철 외,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변화』, 서울: KBS 한국방송 남북교류협력팀, 2005.
- 조한범, 『러시아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서울: 통일연구원, 2002.
- 통일부 정보분석국, 『북한 기관단체별 인명집』 2000, 2002, 2003, 2004, 2005, 서울: 통일부, 2001-2005.
- \_\_\_\_\_, 『2000 북한개요』, 서울: 통일부, 1999.
- \_\_\_\_\_, 『2004 북한개요』, 서울: 통일부, 2003.
- \_\_\_\_\_, 『2005 북한개요』, 서울: 통일부, 2005.
-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팀, 『2000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0.
- \_\_\_\_\_, 『2001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1.

- \_\_\_\_\_, 『2002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2.
- \_\_\_\_\_, 『2005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5.
- \_\_\_\_\_, 『2006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6.
- \_\_\_\_\_, 『2007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7.
- 통일원, 『통독 2주년 보고서』, 서울: 통일원, 1992
- 한상완, 『학술정보 교류 방안: 북한의 학술정보 유통현황 및 교류방안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001.9.25.
- 허경미, 『경찰정보론』, 용인: 경찰대학, 2001.
- 호혜일, 『북한 요지경』, 서울: 맑은소리, 2006.
- 홍준형 외, 『경찰통합법에 관한 연구』, 용인: 치안연구소, 1997.

## 2) 논문

- 강구진, “북한의 법체제연구: 형법상의 재산범죄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1.
- 고성호, “북한주민의 범죄와 이탈”,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 변화』, 서울: 한국방송공사 남북교류협력팀, 2005.12.
- 김동한, “북한 사법관련법의 동향과 평가”, 『분단 60년: 북한법의 어제와 오늘』 북한법연구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5.
- 김승수, “통일후 북한지역의 범죄와 사회전망”, 『청람 17호』, 용인: 경찰대학, 2001.
- 김원배, “북한 경제 전환 따른 고용·인구이동”, 남북통일후 도시정책에 관한 한-독 국제회의, 1997.11.6.
- 김윤영, “북한소설의 갈등양상 연구”, 수원대 박사논문, 2003.
- 김재윤,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형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제4회 한-중 형법 국제 학술심포지움) -러시아, 중국, 북한의 경제형법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 서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6.
- 김종일, “범죄의 늪에 빠진 북한정권: 북한정권은 범죄행위 중단으로 국제적인 오명을 씻어야 한다”, 『북한』 2006년 3월호, 서울: 북한연구소, 2006.

- 김주진, “통일한국에 대비한 경찰력 배치 방안”, 부산대 석사논문, 2003.
- 김학범, “통일후 경찰통합을 위한 남북한 경찰조직기구와 기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김현지, “통일한국의 사회갈등과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연구”, 동아대 석사논문, 2002.
- 나용찬, “남북한 통일과 경찰통합에 관한 연구”, 경기대 석사학위논문, 1998.
- 남궁 승필, “남북한 통합경찰체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 박사학위논문, 2003.
- 남성욱, “한반도 급변사태와 우리의 효율적인 대응방안”, 『북한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 ‘NDI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과 ‘고려대학교 북한학연구소’ 공동 주체 학술회의 자료집, 2006.9.20.
- 류길재, “김일성·김정일 문헌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북한연구 방법론』,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3.
- 문정민, “북한형법상의 인신침해죄에 관한 고찰”, 『통일문제연구』, 조선대, 1987.
- 박광섭, “북한의 경제침해에 대한 형사적 규제”, 『경남법학』, 경남대학교법학연구회, 1993.
- 박기륜, “통일에 따른 한국경찰기구 통합모형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1997.
- \_\_\_\_\_, “분단국 통일사례에서 나타난 치안문제와 한반도 통일에 따른 대비방안”, 『대학원연구논집』 Vol.27, 동국대학교 대학원, 1997.
- 박세진, “북한형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4.
- 박원홍, “북한주민의 이탈현상과 부조리 실태 연구”, 명지대 석사논문, 2002.
- 백원기, “북한 형사법체제에 관한 연구”, 『북한·통일 연구논문집(V)』, 서울: 통일원, 1991.
- 사회과학출판사, 『조선말대사전(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 심지연, “북한연구에 대한 역사적 접근”, 『북한연구방법론』,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3.
- 여환명, “북한의 대남테러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한남대 석사논문, 2003.
- 유지호, “예멘통일이후 문제점”, 『예멘통일의 문제점』,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尹益洙, “北韓刑法의 反革命的 犯罪와 南韓의 國家 保安法上의 規定과의 比較考察”, 『東

- 北亞研究論叢』, 강릉: 關東大學校 東北亞平和研究所, 1995.
- 이덕구, “북한형법상의 범죄의 성립요건”, 『統一問題와 國際關係』, 인천: 仁川大學校 平和統一研究所, 2001.
- 이상준, “북한의 국토개발 및 관리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 국토연구원, 2005.12.
- 이종호, “통일후 북한지역에 있어서의 불법 과거사 청산에 관한연구”, 아주대 석사논문, 2001.
- 이철성, “통일대비 남북한 경찰통합방안 연구”, 연세대 석사논문, 2000.6.
- 임용환,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 경찰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04, 107-110면.
- 임준태, “동서독 통일후 동독경찰의 민주화 과정”, 『한국경찰학회보』 제3호, 서울: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2000.
- 장명봉, “북한의 최근 법제동향과 전망”, 『2005년도 남북법제개선 연구보고서』, 서울: 법제처, 2005.
- 정원경, “북한은 국제범죄 종합 백화점”, 『주간동아』 546호, 서울: 동아일보사, 2006.8.1.
- 정찬성, “북한형법에 관한 연구”, 한양대 석사논문, 1999.
- 제성호, “남북한 법제통합의 방향모색”, 『법정논총』,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1986.
- 최인섭, “북한의 일반범죄에 관한 예비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9』,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1992.
- 韓寅燮, “북한의 형법, 변화하고 있는가?”, 『북한법연구』, 서울: 북한법연구회, 2003.

### 3) 기타

- 강재혁 기자(함흥출신, 2004년 입국), “평양 反체제조직 ‘우리들의 투쟁’ 최후”(데일리 NK: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1300&num=35768>). 2007.1.17.
- 김광인, “내부단속 강화 ‘교방검열’ 실시”, <조선일보>, 2002.4.17.
- 김덕홍, “北반체제 단체들 공개활동”, <경향신문>, 2004.8.5.

- 김승련, “남북통일비용 50조-670조원 들것”, <동아일보>, 2005.6.7.
- “남북인원 통계는 통계청 세계 ‘장래인구’ 수치”, 통계청(<http://kosis.nso.go.kr>, 2006.10.21 검색).
- “남북통일비용 50조-670조 들것”, <동아일보>, 2005.6.7.
- 내외통신사, <내외통신 790호>, 1992.4.9.
- “동독과 동베를린서 인종주의 폭력 주의해야”, <베를린=연합뉴스>, 2006.6.7. <동아일보>, 2006.10.13.
- 문성규, “北노동당 중앙위, 위폐유통 단속 지시”, <연합뉴스>, 2006.5.3.
- 박진, “통일후 북한주민 얼마나 넘어올까?”, <매일경제>, 2004.6.12 18면.
- “北 ‘6군단 쿠데타모의사건’ 아시나요?”(<데일리NK>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100&num=1337>), 2005.01.22.
- “북한의 납치범죄”(http://www.koreascope.org/tt/northkoreatoday/search/북한의%20납치), 2006.8.16.
- “북한의 달러위조 범죄”(http://www.koreascope.org/tt/northkoreatoday/entry/북한의-달러위조-범죄), 2006.8.1.
- “북한의 마약밀매”(koreascope:http://www.koreascope.org/tt/northkoreatoday/search/국제범죄), 2006.8.16.
- “북한의 테러범죄”(http://www.koreascope.org/tt/northkoreatoday/search/북한의%20테러), 2006.8.16.
- 사단법인 좋은벗들 북한연구소, “마약 거래 단속 강화”, <오늘의 북한소식 제57호>, 2007.3.16.
- \_\_\_\_\_, “술한 단속에도 한국 영화 열풍 확산”, <오늘의 북한소식>, 2007.2.28.
- \_\_\_\_\_, “10월부터 시장 판매 금지 물품 공고”, <오늘의 북한소식 44호>, 2007.2.12.
- \_\_\_\_\_, “외화벌이 회사 일대 검거 선풍”, <오늘의 북한소식 제43호>, 2006.11.1.
- \_\_\_\_\_, “외화벌이 회사 일대 검거 선풍”, <오늘의 북한소식 제62호>, 2007.3.7.
- \_\_\_\_\_, “자동차 충전지 절도사건 빈발”, <오늘의 북한소식 제62호>, 2007.3.7.
- \_\_\_\_\_, “7월의 비사그루빠 활동”, <오늘의 북한소식 제1호>, 2006.09.16.

- \_\_\_\_\_, “회령시, 인신매매범 공개재판 실시”, <오늘의 북한소식> 제60호, 2007.2.21.
- 송의달, “북 나진에 세계최대 위조담배 공장”, <조선일보>, 2006년 1월 29일.  
<연합통신>, 2004.7.10.
- 이영화, “北 개척 밀수망, 거꾸로 김정일 덮친다”(테일리NK), 2005.4.20.
- 장용훈, “北사회 마약으로 신음”, <연합뉴스>, 2006.6.8.
- \_\_\_\_\_, “北 포고령 ‘마약 생산·수출·거래 최고 사형’”, <연합뉴스>, 2006.3.18.
- 전우택, “사람의 통일, 땅의 통일”, <조선일보>, 2007.4.9.
- 주성하, “히로뽕에 찌든 북한… 20, 30대男 5%이상 투약”, <동아일보>, 2006.9.30.  
<조선일보>, 2003.2.17/ 2006.8.18.
- 최덕성, “통일보다 더 시급한일”(http://blog.daum.net/gajach/3044538?nil\_profile=blog),  
2005.8.10.
- 최병국, “통일14주년 동.서독 지역간 차이”, <연합뉴스>, 2004.10.4.
- 최이락, “북한에 각성제 공장 최소 3곳 <요미우리>”, <도쿄=연합뉴스>, 2007.3.17.
- “통계로 본 독일의 통일비용”, <중앙일보>, 1996.7.22.
-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2006.10.21 검색.
- 통일부 통계자료(http://www.unikorea.go.kr).
- <한국경제>, 1997.11.6.
- “한반도 통일비용 최대 6700억달러 추산”, <조선일보>, 2005.6.7.
- 한영진 기자(평양출신 2002년 입국), “김정일, 공개총살 ‘3중효과’ 노린다”(테일리NK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100&num=353),  
2005.3.21.
- \_\_\_\_\_, “김일성 유적지서 反김정일 뼈라 뿌려져”(테일리NK), 2006.2.17.
- \_\_\_\_\_, “함흥 대극장 김정일 비난 구호사건 있었다”(테일리NK), 2006.2.2.
- The Daily NK 특별취재팀, “반체제 활동, 함경도 등 국경지역 집중”(테일리NK: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cataId=nk00100&num=1255),  
2005.1.17.
- BundesKriminalamt, PKS 2000, in http://www.bka.de/pks/pks2000/p-2-1-1.html

<http://terms.naver.com/item.php?d1id=8&docid=41>, 2006년 4월 19일 검색.

### 3. 외국 문헌

데이빗 호크/이재광 역, 『감춰진 수용소』, 서울: 시대정신, 2003.

J.S. Nye, *Peace in Parts : Integration and Conflict in Regional Organization*,  
Boston : Little Brown, 1971.

Timur Kuran, "Now Out of Never : The Element of Surprise in the East European  
Revolution of 1989", *World Politics*, 44(1).

Savelsberg, J.J., "Crime, Inequality, and Justice in Eastern Europe : Anomie,  
Domination, and Revolutionary Change." *Crime and Inequality*. John Hagen  
and Ruth D. Peterson(ed). Stanford University Press.

책임연구보고서 2007-14

## 통일대비 북한의 범죄양상과 치안대책에 관한 연구

---

---

2007년 12월 발행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1길 29

---

---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